

1. 개정 이유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 신설에 따라 연금계좌 납입에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고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매입자발행계산서 서식 및 거래사실 확인기간 연장사유 규정,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한 간이지급명세서 작성방법 위임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복권당첨금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용역 제공자 소득자료 제출대상업종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신청서 및 1주택 확인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며,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전체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규정함.

나.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한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위임(안 제96조의4)

간이지급명세서를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국세청 고시로 위임함.

다.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안 제97조제1항제4호 신설)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품권, 추첨권 등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9억원”을 “12억원”으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신청) ① 영 제40조의2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8호의4서식의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40조의2제7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38호의5서식의 1주택 확인서
2. 축소주택을 일반 매매 외의 방식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잔금영수증 등)

제16조의3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영 제40조의2 제2항제1호다목3)을 적용할 때 주택전체의 가액은 공동 소유자가 보유한 해당 지분의 가액을 해당 지분의 지분율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23조제1항 중 “12를”을 “29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을 “(기업업무추

진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으로 한다.

제57조 중 “12를”을 “29를”로 한다.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영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납부한 같은 항에 따른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은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을 지급받은 날 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9조의2(국외금융투자소득의 범위) 영 제150조의6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호의 소득(이하 “국외금융투자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법 제87조의2제1호에 따른 주식등(이하 “주식등”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채권등(이하 “채권등”

이라 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이하 “해외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채권등으로서 영 제150조의14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지 않은 것

다. 법 제8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국외에서 발행된 것

2. 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

3. 법 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서 국외에서 발행된 것으로부터의 이익

4. 법 제87조의6제1항제6호에 따른 파생상품으로서 국외에서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9조의3을 삭제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9조의7의 제목 “(국외금융투자자산의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국외금융투자소득 계산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외금융투자자산”을 “해당자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외금융투자자산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국외금융투자소득의 소득금액”으로, “양도가

액 및 필요경비의 외화환산”을 “외화환산”으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9조의9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9조의13의 제목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을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요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1항) 제2호 중 “제150조의17제3항제1호가목”을 “제150조의17제2항제1호가목(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한다) 및 나목”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50조의26제3호”를 “영 제150조의26제2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중 “영 제150조의26제1호”를 “영 제150조의26제2항제1호”로, “영 제150조의26제3호”를 “영 제150조의26제2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계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150조의26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은 집

합투자재산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 귀속되지 않은 이익으로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이자, 미수 배당금, 미수 임대료 수입 등을 포함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영 제15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및 분배·유보 내역 신고서를 결산·분배일이 속하는 반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A \times \frac{B_1+B_2}{C}$$

A: 적격제한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보유한 공모국내주식형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가액

B₁: 공모국내주식형적격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보유한 제1항 각 호의 자산 가액

B₂: 공모국내주식형적격집합투자기구가 다른 공모국내주식형적격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여 간접 보유한 제1항 각호의 자산 가액(다른 공모국내주식형펀드에 투자한 금액에 다른 공모국내주식형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제1항 각호의 가액의 비중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C: 공모국내주식형적격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제72조제7항 중 “영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 제8항”을 “영 제155조제8항”으로, “영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 및 제10항제5호”를 “영 제155조제10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주민등록표등본(영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를 말한다)”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한다.

제7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4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영 제155조의3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종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한 경우
2.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제7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58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말한다.

제81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65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94조의3제2항 중 “영 제203조의2제7항”을 “영 제203조의2제9항”으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9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03조의2제12항”을 “영 제203조의2제1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주식등이”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금융투자상품이”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2025년 1월 1일”을 “주식등이 2025년 1월 1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상속, 증여 또는 대차

나. 금융회사등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지 않는 양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 금융회사등이 금융투자상품의 금융투자소득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94조의3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203조의20제1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제5호에 따른 전자등록 방법 및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한다.

제95조의3제9호가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96조의4를 제96조의5로 하고, 제9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6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 ① 영 제212조의4제1항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212조의4제7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자의 부도,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공급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2. 세무공무원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2회 이상 공급자를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③ 영 제212조의4제9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

제96조의5의 제목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등)”을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지급명세서등의 작성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213조의2제2항”을 “영 제213조의2제2항 및 제3항”으로, “지급명세서”를 “지급명세서등”으로 한다.

제97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법 제14조제3항제8호라 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은 제외한다)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제99조의3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제100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영 제117조의2제6항 및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6호에 따른 별지 제66호서식을 준용한다.

제102조제2항제9호 중 “접대비조정명세서(1)·(2)”를 “기업업무추진비
조정명세서(1)·(2)”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02조의2제1호
중 “영 제150조의7제2항제3호”를 “영 제150조의26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영 제203조의2제6항”을 “영 제203조의2제6항 및 제7
항”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영 제203조의2제13항”을 “영 제203조의2
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영 제203조의2제14항”을 “영 제203
조의2제16항”으로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03조제13항 중
“제84호”를 “제108호”로 한다.

별지 제10호의4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19호의5
서식, 별지 제19호의13서식(1), 별지 제19호의13서식(2), 별지 제19호의1
3서식(3), 별지 제19호의14서식(1), 별지 제19호의14서식(2), 별지 제20호
서식, 별지 제20호의5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1), 별지
제23호서식(3), 별지 제23호서식(4), 별지 제23호서식(6), 별지 제24호서
식(1), 별지 제24호서식(3), 별지 제24호서식(4), 별지 제24호의4서식(1),
별지 제24호의4서식(2), 별지 제24호의4서식(3), 별지 제25호서식(2), 별
지 제25호서식(4), 별지 제27호서식(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의2서식, 별지 제28호의3서식, 별지 제28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9호서식(1), 별지 제29호서식(2), 제29호의2서식(1), 제29호의2서
식(2), 제29호의2서식(4), 별지 제29호의3서식, 별지 제29호의4서식, 별지
제29호의6서식, 별지 제29호의7서식(1), 별지 제29호의7서식(2), 별지 제
29호의9서식, 별지 제29호의14서식, 별지 제29호의15서식, 별지 제33호
의2서식, 별지 제37호서식(1), 별지 제37호서식(2), 별지 제37호의2서식
및 별지 제38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8호의4서식 및 별지 제38호의5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
다.

별지 제40호서식(1), 별지 제40호서식(4), 별지 제40호서식(5), 별지 제40
호서식(6), 별지 제40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의4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별지 제45호의2서식, 별지 제56호서식, 별지 제59호서

식, 별지 제63호서식 및 별지 제7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76호서식, 별지 제77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및 별지 제77호서식 부표 1-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77호서식 부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77호서식 부표 2 및 별지 제77호서식 부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77호서식 부표 4 및 별지 제77호서식 부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77호서식 부표 6, 별지 제78호서식, 별지 제7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8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79호서식, 별지 제80호서식, 별지 제8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80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80호의7서식 및 별지 제80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3호의4서식, 별지 제84호서식 및 별지 제84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5조의 제목, 제99조의4제4호, 제102조제2항제9호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3조, 제69조의2, 제69조의3, 제69조의7제1항 및 제3항 및 제69조의13,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94조의3제2항 및 제4항, 제102조의2, 별지 제76호서식, 별지 제77호서식 부표 외의 부분, 별지 제77호서식 부표 1-1, 별지 제77호서식 부표 2, 별지 제77호서식 부표 3, 별지 제77호서식 부표 6, 별지 제78호서식, 별지 제7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8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79호서식, 별지 제80호서식, 별지 제80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80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80호의7서식 및 별지 제80호의8서식, 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9조의9제1호, 제94조의3제3항, 별지 제77호서식 부표 1-2, 별지 제77호서식 부표 4 및 별지 제77호서식 부표 5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3. 제60조의2 및 제100조제11호의2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4.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03조제13항 및 별지 제108호서식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전자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1. 신고인 인적사항

①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	④ 전화번호
⑤ 사업장 소재지	
⑥ 직전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합계액 3억원 미만 사업자 여부 [] 여, [] 부	

2. 전자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계산신고 내용

가. 전자계산서 발급건당 공제세액

⑦ 전자계산서 발급건수	⑧ 건당 공제금액	⑨ 발급건당 공제세액 (⑦ × 200원)
	200원	

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⑩ 종합소득금액	⑪ 사업소득금액	⑫ 종합소득산출세액	⑬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 (⑪/⑩×⑫)

다. 공제할 세액

⑭ 공제대상세액 (⑨와 ⑬ 중 적은 금액)	⑮ 연간 공제 한도액	⑯ 공제할 세액 (⑭와 ⑮ 중 적은 금액)
	100만원	

「소득세법」 제56조의3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하는 외국법인세액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전에 발생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제5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서식의 개정에 따라 신고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종전의 서식에 따른다.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년 월 귀속)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측시
신고인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주 소	④ 전화번호	

구 분		세율구분코드	세율구분코드	합 계
매매가액(실지거래가액)	⑤			
필요경비	⑥			
장기보유특별공제	⑦			
토지등 매매차익(⑤-⑥-⑦)	⑧			
기신고(결정)된 매매차익 합계액	⑨			
토지등 매매차익 합계액(⑧+⑨)	⑩			
양도소득세 세율	⑪			
산출세액	⑫			
가산세	⑬			
기납부세액	⑭			
납부할 총세액(⑫+⑬-⑭)	⑮			
분납할 세액(2개월 이내)	⑯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⑮-⑯)	⑰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 서류	1.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부표) 1부 2. 매매계약서 및 필요경비 증명서류 1부	수수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건물(토지)등기부 등본 2. 건축물(토지)대장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세율구분란은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의 세율구분코드가 동일한 자산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3. ㉔ 산출세액란: 토지등 매매차익 합계액(㉑란)에 아래 세율표의 자산에 해당하는 코드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세 율 표

세 율 구 분	토지·건물											
	일반	미통기	비사업용토지									
			2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내						
						2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세율	6~45%	70%	16~55%	40%	16~55%	50%	16~55%	26~65%	40%	26~65%	50%	26~65%
코드	10	30	11	35	11	36	11	31	37	31	38	31

세 율 구 분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21.5.31.양도분)												조정대상 지역내 분양권 (·21.5.31. 양도분)
	1세대2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임주권(21.1.0이후 취득 분양 포함)의 합이 2인 경우 해당 주택				1세대3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임주권(21.1.0이후 취득 분양 포함)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1년 이상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 미만 보유			
	세율	16~55%	40%	16~55%	16~55%	40%	16~55%	26~65%	40%	26~65%	26~65%	40%	
코드	51	53	51	52	54	52	55	57	55	56	58	56	21

세 율 구 분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21.6.1.이후 .양도분)															주택 조합원주권 분양권	주택 조합원주권 분양권	분양권			
	1세대2주택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임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1개 보유한 경우 해당주택			1세대3주택 이상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임주권 또는 분양권(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세율	26~ 65%	60%	26~ 65%	70%	26~ 65%	60%	26~ 65%	70%	36~ 75%	60%	36~ 75%	70%	36~ 75%	60%	36~ 75%	70%	36~ 75%	60%		
코드	47	82	47	84	48	83	48	85	49	86	49	88	49	50	87	50	89	50	46	39	23

※ 지정지역은 「소득세법」 제10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3에 따른 지정지역을 말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을 말합니다.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

과세표준	귀속년도 2017년		과세표준	귀속년도 2018~2020년		과세표준	귀속년도 2021·2022년		과세표준	귀속년도 2023년	
	종합소득세 세율	누진공제액		종합소득세 세율	누진공제액		종합소득세 세율	누진공제액		종합소득세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m²)

작성 방법														
1. 관리번호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2.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16호서식)는 이 서식을 먼저 작성한 후 이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며, 사업장 단위마다 별지로 작성해야 합니다. 3. ⑥ 세율구분란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고, 코드는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16호서식)의 세율표 중 해당 자산별 코드를 적습니다. - 2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1세대 2주택(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부수토지 포함],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부수토지 포함], 비사업용토지, 미등기자산 4. ⑦ 자산종류란은 아래의 자산종류에 해당하는 코드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20%;">자산종류</th> <th style="width: 20%;">토지</th> <th style="width: 20%;">고가주택</th> <th style="width: 20%;">일반주택</th> <th style="width: 20%;">기타건물</th> </tr> </thead> <tbody> <tr> <td>코드</td> <td>1</td> <td>2</td> <td>3</td> <td>4</td> </tr> </tbody> </table> 5. ⑩ 매매가액란: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6. 필요경비(⑫ ~ ⑰)란: 필요경비를 각 난에 적고 ⑰란에 그 합계를 적습니다. 다만,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⑫ 취득가액란과 ⑰란에 각각 적습니다. 가. 단순경비를 적용대상자: ⑩ 매매가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기준경비를 적용대상자: ⑩ 매매가액에서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기준경비를 적용대상자)」(별지 제16호서식 부표 2)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 7. ⑬ 장기보유특별공제란: [(⑩란의 매매가액 - ⑰란의 필요경비 계) ×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을 적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공제율을 의미합니다.					자산종류	토지	고가주택	일반주택	기타건물	코드	1	2	3	4
자산종류	토지	고가주택	일반주택	기타건물										
코드	1	2	3	4										

210mm×297mm(백상지 80g/m²)

토지등 매매차익 계산명세서(기준경비를 적용대상자)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	------	----

①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생년월일	
⑤ 사업장 소재지		

② 양도자산 명세		
⑥ 세율구분(코드)		
⑦ 자 산 종 류		
⑧ 부동산 소재지		

③ 매매가액 계산		
⑨ 양 도 일		
⑩ 양 도 면 적		
⑪ 매 매 가 액		

④ 매매차익 계산					
기 준 소 득 금 액	필요 경비	주 요 경 비	⑫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⑬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㉞)		
			⑭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⑮ 계(⑫+⑬-⑭)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 산 한 경 비		⑯ 기준경비율	
		⑰ 금액(⑪×⑯)			
		⑱ 필요경비 계(⑮+⑰)			
⑲ 기준소득금액(⑪-⑱)					
비교 소득 금액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	⑳ 단순경비율			
		㉑ 금액[⑪×(1-㉑)]			
	㉒ 비교소득금액(㉑×「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에서 정하는 배율)				
㉓ 소 득 금 액(⑲ 또는 ㉒ 중 적은 금액)					

⑤ 당기 지출 주요경비 계산명세						
구 분	계(A) (=B+C+D)	정규증빙서류 수 취 금 액(B)	주요경비지출명 세서작성금액(C)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금액(D)		
매입비용	㉔	㉕	㉖	㉗		
임차료	㉘	㉙	㉚	㉛		
인건비	㉜	㉝	㉞	㉟		
계(㉞ = ㉛)	㊱	㊲	㊳	㊴		
첨부서류	주요경비지출명세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부동산매매업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사업장 단위마다 별지로 작성해야 합니다.
- 관리번호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 ⑥ 세율구분란은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고, 코드는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별지 제16호서식)의 세율표 중 해당 자산별 코드를 적습니다.
- 2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1세대 2주택(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부수토지 포함],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부수토지 포함], 비사업용토지, 미등기자산
- ⑪ 매매가액란: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 ⑫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와 ⑭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는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 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⑬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는 " ⑤ 당기 지출 주요경비 계산명세"상의 ㉞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⑮ 기준경비율란: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습니다.
- ㉑ 단순경비율란: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습니다. ㉑란은 "1"에서 단순경비율(㉑란)을 뺀 비율에 매매가액(⑪란)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㉒ 비교소득금액란: ㉑란의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배율(복식부기의 무자: 3.4, 간편장부대상자: 2.8)"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㉓ 소득금액란: ⑲란의 기준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⑲란의 기준소득금액과 ㉒란의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 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 " ⑤ 당기 지출 주요경비 계산명세" 중 매입비용과 임차료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정규증명서류)을 수취한 금액은 ㉕·㉖란에 적습니다.
나. 정규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적은 금액을 ㉙·㉚란에 적습니다.
다. 공금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거래 등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㉟·㊴란에 적습니다.
- " 5. 당기 지출 주요경비 계산명세" 중 인건비의 경우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가. 급여·임금·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경우의 금액은 ㉛란에 적습니다.
나. 원천징수영수증과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 관련 증명서류를 비치·보관하고 금액을 ㉟란에 적습니 다.

※ 주요경비의 범위, 증명서류의 종류,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제외금액 등은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8-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사업장 현황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사업 []어 []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①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단위: 원)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합 계	수입금액	수입금액 제외
(1)						
(2)						
(3)						
(4)						
(5)						
	합 계					

② 수입금액(매출액) 구성 명세 (단위: 원)

합 계	계산서발행금액		계산서발행금액 이외 매출		
	계산서 발급분	매입자발행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기타 매출

③ 적격증명(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 수취금액 (단위: 원)

합 계	매입 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금액
	계산서 수취분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전자 계산서	전자 계산서 외	전자 세금계산서	전자 세금계산서 외		

④ 폐업 신고	폐업연월일	.	.	폐업사유	
---------	-------	---	---	------	--

첨부서류(해당 내용 표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 전자신고 ☐ 전산매체 ☐ 서면 ☐ 해당 없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전자신고 ☐ 전산매체 ☐ 서면 ☐ 해당 없음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 전자신고 ☐ 전산매체 ☐ 서면 ☐ 해당 없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전자신고 ☐ 전산매체 ☐ 서면 ☐ 해당 없음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 전자신고 ☐ 전산매체 ☐ 서면 ☐ 해당 없음 수입금액검토표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1조에 따라 신고하 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

세무대리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 공동사업자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⑤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부표

[illegible]

첨부서류	1.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2.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3.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5.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6. 수입금액검토표	수수로 없음
------	---	-----------

작성 방법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며,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 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3. 이 서식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납세조합가입자는 제외합니다)가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하며,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자 대표자가 수입금액 등의 합계를 신고하고 ⑤의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부표"**에 **구성원 수입금액 등을 분배비율에 따라 작성**함으로써 구성원은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4. 수입금액(매출액) 명세란: **업태 · 종목별로 구분**하여 수입금액[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부동산 제외) 양도금액 포함]을 적습니다. **수입금액 제외**란은 간판장부대상자의 자산 매각 등 **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5. 수입금액(매출액) 구성 명세란:
 - 합계란은 ①의 **"수입금액(매출액) 명세"의 수입금액 합계와 일치한** 금액을 적으며, 계산서발행금액과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기타 매출이 **중복된 경우에는 계산서발행금액에만** 적습니다.
 - 수입금액의 구성 명세는 계산서발행금액(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금액** 중 **사업자 본인의 계산서 발급분과 매입자발행계산서제도에 따라 매입자가 발급한 매입자발행계산서에 대한 매출분은 구분하여 작성**)과 계산서발행금액 이외의 신용카드매출액(「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를 포함), 현금영수증매출액 및 기타매출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 **계산서발행금액**은 ①의 "수입금액(매출액) 명세"의 **"수입금액 제외"를 뺀 수입금액** 중에서 계산서발행금액을 적습니다.
6. 적격증명(계산서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수취금액란:
 - 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 관련 매입금액 중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금액**, 매입 계산서(매입자발행계산서가 있는 경우 **계산서 수취분과 매입자발행계산서 금액 구분**)과 매입 세금계산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분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금액 구분**), 신용카드 등으로 매입한 금액을 구분하여 각각 적으며, 수취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나. **"전자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출처가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한 분을 적습니다.
7. 폐업신고란: 과세기간 중 폐업자는 폐업원일과 폐업사유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폐업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8.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부표란**:
 - **분배비를 합계란은 100%가 되어야 하며**, 수입금액 합계란은 ①의 **"수입금액(매출액) 명세"의 수입금액 합계** 및 ②의 **"수입금액(매출액) 결자양세표 구성명세"의 합계와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앞쪽)

1. 기본사항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상호			③ 성명		
④ 생년월일				⑤ 종목			⑥ 업종코드		
사업장 시설	⑦ 강의실 () ㎡		⑧ 강의실 수 () 개		⑬ 강좌수 ()개				
	⑨ 사무실 () ㎡		⑩ 책상 수 () 개		⑭ 단과반	⑮ 종합반	⑯ 주간반	⑰ 야간반	
	⑪ 휴게실 외 () ㎡		⑫ 통학버스등 () 대		()개	()개	()개	()개	

2. 직원현황 (단위: 명, 원)				
구분		⑭ 인원	⑮ 연간총급여액	⑯ 원천징수세액
⑰ 강사				
⑱ 사무직 등 그 밖의 직원				

3. 교습현황(별지 작성 가능) (단위: 명, 원)							
⑳ 종합/단과	㉑ 주간/야간	㉒ 과목명(과정명)	㉓ 개강회수	㉔ 정원	㉕ 수강연인원	㉖ 수강단가	㉗ 총수강료(=㉕×㉖)

4. 총수입금액 명세 (단위: 원)							
구분	해당과세기간						
	㉘ 합계	㉙ 수강료	㉚ 특강비	㉛ 입학금	㉜ 교재대	㉝ 모의고사비	㉞ 고용보험기금등지원금액
㉟ 총수입금액							㊱ 기타수입

5. 주요 기본경비 사용금액 검토 (단위: 원)						
㊲ 교재구입비 ·제조비	㊳ 광고선전비	사업장 임차비용		㊴ 차량유지비	㊵ 전기료	㊶ 그 밖의 증명수취경비
		㊷ 보증금	㊸ 연간임차료			
			(월)			

()학원에 대한 수입금액 및 주요경비 사용금액 등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 학원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작성대상

- 자동차학원을 제외한 모든 학원사업자가 작성합니다.

2. 기본사항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사업장 시설과 강좌 수를 작성합니다.

3. 직원현황

- 직원현황은 해당 과세기간에의 강사, 직원 인원과 급여 및 수당 등으로 직원·강사 등에게 지급된 ⑮ 연간총급여액, ⑯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4. 교습현황

- 종합반·단과반과 주간반·야간반의 개설현황을 구분·작성하고, 과목명(과정명)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합니다.

- ㉔ 정원은 교육청에 등록된 정원을 적습니다.

· ㉕ 수강연인원은 매월 실제 수강인원의 합계를 적습니다.

· ㉖ 수강단가는 과정별로 월수강료가 변경된 경우 수강단가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총수입금액 명세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수강료(특강비 등 포함), 특강비, 입학금, 교재대, 모의고사비, 고용보험기금 등 지원금액, 기타수입(입학금, 교재대, 모의고사비 등 포함)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6. 주요 기본경비 사용금액 검토

- 해당 과세기간의 교재구입(제조)비, 광고선전비, 사업장 임차비용 등을 연 합계액으로 적습니다.

※ 해당되는 [], □에 √ 표를 합니다.

소득자 (투자자)	①유형	☐ 개인 ☐ 국외투자기구(☐ 공모, ☐ 사모)			
	②성명				
	③주소				
	④납세자번호			⑤생년월일	
	⑥거주지국		⑦거주지국코드		⑧국적
소득지급자	⑨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⑩대표자(성명)				
	⑪납세자번호			⑫전화번호	
	⑬소재지 또는 주소				

항 목	예	아니오
㉠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 최근 1년 동안 대한민국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입니까?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까?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입니까?		
㉧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국가명을 기입하십시오.		

「소득세법」 제119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의4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라 소득세 부과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신청인 소득자(투자자)		(서명 또는 인)
(경유) 국외투자기구		(서명 또는 인)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리인	⑮대리인유형 []납세관리인 []그 외 대리인	⑯성명 또는 법인명	⑰납세자번호	
	⑮주소 또는 소재지			
	⑲납세지관할세무서		⑳전화번호	

신청서 제출 절차	1. 소득자(투자자)는 이 신청서와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국제청정이 고시하는 서류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합니다. 다만,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취득·보유·양도하는 국제·통화안정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들을 국외투자기구에 제출하고,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합니다. 2. 소득지급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14서식(1)에 따른 국제·통화안정증권 거래·보유 명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소득자(투자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들과 함께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	---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
아
도

세무서장 직인

1.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9조의3에 따른 국제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 또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2. ① 유형란의 국외투자기구는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이 아니면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경우의 국외사모투자기구 또는 국외공모투자기구인 경우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국외공모투자기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설립지국의 법령 등에 따라 공모투자기구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이거나, **투자설명서 작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투자자에게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국외투자기구를** 말합니다.
3. ② 성명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명칭을 적습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에 적힌 영문성명(full name)을 적습니다.
4. ③ 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국가(Country) 및 우편번호(postal zone) 순으로 적습니다.
5. ④·⑪·⑰ 납세자번호란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번호를 적습니다.
 - 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나.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
 - 1)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대한민국거소신고증의 대한민국거소신고번호
 - 2)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외국인등록표의 외국인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
 - 3) 재외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적자: 주민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6. ⑤ 생년월일란은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 여권에 적힌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7. ⑥ 거주지국·⑦ 거주지국코드·⑧ 국적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8. ⑨ 법인명(상호)란에는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하며 ⑩ 대표자(성명)란에는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9. ⑬ 소재지 또는 주소란에는 소득지급자의 본점(사업장)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적습니다.
10. ⑭ 비거주자 판정기준의 작성 결과 ㉑ ~ ㉔항 항목 중 한가지 항목이라도 "예"로 표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거주자·비거주자에 대한 판정은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 등의 보유 여부를 불문합니다. 다만, 주한외교관과 주한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대한민국 국민 제외) 및 한미 행정협정(SOFA) 제1조에서 규정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과 그들의 가족은 판정표의 작성내용에 관계없이 비거주자로 판정합니다.
11. ⑮ ~ ㉒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란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 이자소득
[] 양도소득 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 (비거주자용)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취득·보유·양도하는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경우]

* 해당되는 [], □에 √표를 합니다.

소득자 (투자자)	①유형	☐ 개인 ☐ 국외투자기구(☐ 공모, ☐ 사모)		
	②성명			
	③주소			
	④납세자번호		⑤생년월일	
	⑥거주지국		⑦거주지국코드	⑧국적

⑨비거주자 판정기준

항 목	예	아니오
㉮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 최근 1년 동안 대한민국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입니까?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와 자녀 등)이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습니까?		
㉼ 대한민국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습니까?		
㉽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까?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법인의 해외지점, 영업소 또는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입니까?		
㊱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국가명을 기입하십시오.		

「소득세법」 제119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의4제2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소득세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득자(투자자) (서명 또는 인)
(경유) 국외투자기구 (서명 또는 인)

적격외국금융회사 등 귀하

대 리 인	⑩대리인유형 []납세관리인 []그 외 대리인	⑪성명 또는 법인명	⑫납세자번호
	⑬주소 또는 소재지		
	⑭납세지관할세무서	⑮전화번호	

신청서 제출 절차	1. 소득자(투자자)는 이 신청서와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 하는 서류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 제출합니다. 다만,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취득·보유·양도하는 국채·통 화안정증권의 경우에는 해당 서류들을 국외투자기구에 제출하고,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 제 출합니다.
	2. 이 신청서를 제출받은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14서식(2)에 따른 거래 ·보유 명세서와 별지 제19호의13서식(3)에 따른 비과세 신청서를 작성해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소득지 급자는 이를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적 격 외 국 금 용 회 사 등

직인

작 성 방 법

-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9조의3에 따른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받기 위해 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은 후 신청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대한민 국 국세청장으로부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려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 소득을 실질적으로 받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효력이 없습니다.
- ①유형란의 국외투자기구는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이 아니면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경우의 국외사모투자기구 또는 국외공모투자기구인 경우에 체크합니다. 그리고 국외공 모투자기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 구로서 설립지국의 법령 등에 따라 공모투자기구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이거나, 투자설명서 작 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투자자에게 증권 취득의 청약권 권유 한 국외투자기구를 말합니다.
- ②성명란에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명칭을 적습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에 적힌 영문성명(full name)을 적습니다.
- ③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국가(Country) 및 우편번호 (postal zone) 순으로 적습니다.
- ④·⑫납세자번호란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번호를 적습니다.
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나.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
1)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대한민국거소신고증의 대한민국거소신고번호
2)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외국인등록표의 외국인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 호
3) 재외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 ⑤생년월일란은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 여권에 적힌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 ⑥거주지국·⑦거주지국코드·⑧국적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 ⑨비거주자 판정기준의 작성 결과 ㉮ ~ ㉾번 항목 중 한가지 항목이라도 "예"로 표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로 판정됩니다. 거주자·비거주자에 대한 판정은 외국 국적이거나, 영주권 등의 보유 여부를 불문합니다. 다만, 주한외교관과 주한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대한민국 국 민 제외) 및 한미 행정협정(SOFA) 제1조에서 규정하는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무원과 그들의 가 족은 판정표의 작성내용에 관계없이 비거주자로 판정합니다.
- ⑩~⑮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란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 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 이자소득
[] 양도소득 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소득자(투자자)의 비과세 신청서를 취합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해당되는 □에 √ 표를 합니다.

적격외국 금융회사등	①법인명(성명)			
	②대표자(성명)			
	③납세자번호		④승인받은 날	
	⑤주 소			
	⑥거주지국		⑦거주지국코드	
소득지급자	⑧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⑨대표자(성명)			
	⑩납세자번호		⑪전화번호	
	⑫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세법」 제119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의4제2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소득세 비과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적격외국금융회사등 (서명 또는 인)
(경유)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 리 인	⑬대리인유형	☐ 납세관리인 ☐ 기타 대리인		
	⑭성명 또는 법인명			
	⑮납세자번호			
	⑯주소 또는 소재지			
	⑰납세지관할세무서		⑱전화번호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소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직인

첨부서류	국채·통화안정증권 거래·보유 명세서[별지 제19호의14서식(2)]
------	--------------------------------------

210mm×297mm[백상지(80g/㎡)]

작성방법

- 이 신청서는 대한민국 국세청장으로부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으로 승인을 받은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의 이자 또는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받으려는 비거주자의 비과세 신청서를 취합하여 제출(제출 후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①법인명(성명)란에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명칭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 ③·⑩·⑮납세자번호란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번호를 적습니다.
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나.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인 경우:
1)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대한민국거소신고증의 대한민국거소신고번호
2)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외국인등록표의 외국인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
3) 재외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 ⑤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국가(Country) 및 우편번호(postal zone) 순으로 적습니다.
- ⑥거주지국·⑦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 ⑧법인명(상호)란에는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하며 ⑨대표자(성명)란에는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 ⑫소재지 또는 주소란에는 소득지급자의 본점(사업장)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 ⑬~⑱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란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거래·보유 명세서(소득지급자용)

1. 소득지급자

①법인명	(국문)	(영문)
②대표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 소		
⑤연락처(전화)	⑥부서명	⑦담당자

2. 거래 및 이자지급명세서 < 제출대상 기간 : . . . ~ . . . >

소득자(투자자) 인적사항						채권		거래(보유)명세						이자지급명세	
⑧ 유형	⑨ 법인명 (성명)	⑩ 국적	⑪ 거주 지국	⑫ 주소	⑬ 납세자번호	⑭ 종목	⑮ 종목 번호	⑯ 거래 구분	⑰ 거래 일자	⑱ 결제 일자	⑲ 액면금액 (원)	거래금액		㉒ 지급일	㉓ 이자금액 (원)
												㉔ 금액	㉕ 통화		

-※ 자료가 많은 경우 엑셀프로그램서식에 입력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4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거래·보유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작성자 소득지급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뒤쪽)

작성 방법

- 이 명세서는 소득자가 비파세 신청서를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소득지급자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소득지급자가 작성합니다.
- ⑧~㉑란은 소득자가 실질귀속자인 국외사모투자기구 또는 국외공모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국외사모투자기구, 국외공모투자기구 단위로 적고, 실질귀속자가 아닌 국외사모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각 실질귀속자인 투자자의 소득금액을 포함하여 국외사모투자기구 단위로 적습니다.
※ ‘국외공모투자기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설립지국의 법령 등에 따라 공모투자기구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이거나, 투자설명서 작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투자자에게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국외투자기구를 말합니다.
- ⑧유형란에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소득자(투자자)가 개인이면 “1”, 국외공모투자기구이면 “2”, 국외사모투자기구이면 “3”,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면 “4”, 연기금이면 “5”, 금융기관이면 “6”, 그 밖의 법인이면 “7”
- ⑨법인명(성명)란에는 법인명(성명)을 영문(full name)으로 적고, 개인의 경우 여권에 적힌 영문 이름(full name)을 그대로 적습니다.
- ⑬납세자번호란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번호를 적습니다.
가.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나.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인 경우:
1)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대한민국거소신고증의 대한민국거소신고번호
2)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외국인등록표의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
3) 재외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 ⑯거래구분란에는 투자자가 국채 등을 매수한 경우 “매수”, 매도한 경우 “매도”, 그 밖에 이자·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해당거래 유형을 적습니다. (예: 대차중개, Repo, 담보거래, 계좌대체 등)
- ⑰·⑱·㉒란의 날짜는 YYYYMMDD 형식으로 기입합니다.
※ 예시: 2009년 7월 1일인 경우 “20090701”
- ㉒금액·㉓통화란은 거래된 현지(해당 국가)의 통화금액 및 통화종류를 적습니다.
- ㉒·㉓란은 제출대상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적습니다.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거래·보유 명세서(적격외국금융회사등용)

1. 적격외국금융회사등

①법인명			
②대표자		③납세자번호	
④주 소			
⑤거주지국		⑥거주지국코드	
⑦연락처(전화)		⑧부서명	⑨담당자

2. 대리인

⑩유형	⑪성명 또는 법인명	⑫납세자번호	⑬주소	⑭전화	⑮담당자
☐ 납세관리인, ☐ 기타관리인					

3. 소득지급자

⑯법인명			
⑰대표자		⑱사업자등록번호	
⑲주 소			

4. 거래 및 이자지급 명세서 < 제출대상 기간 : . . . ~ . . . >

⑲ 국제 예탁 결제 기구 명칭	⑳ 적격외국 금융회사 등 명칭	소득자(투자자) 인적사항					채권		거래(보유)명세					이자지급명세			
		㉒ 유형	㉓ 법인명 (성명)	㉔ 국적	㉕ 거주 지국	㉖ 주소	㉗ 납세자번호	㉘ 종목명	㉙ 종목 번호	㉚ 거래 구분	㉛ 거래 일자	㉜ 결제 일자	㉝ 액면금액 (원)	㉞ 거래금액 통화	㉟ 국채 장외 거래 여부	㊱ 지급일	㊲ 이자금액 (원)

※ 자료가 많은 경우 엑셀프로그램서식에 입력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의4제2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라 거래·보유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작성자 적격외국금융회사등
(경유) 소득지급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뒤쪽)

작성 방법

- 이 명세서는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투자자의 비과세 신청서를 취합하여 제출하는 경우(제출 후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하며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작성합니다.
- 이 명세서를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출하는 때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①·⑪·⑯·㉓법인명(성명)란에는 법인명(성명)을 영문(full name)으로 적고, 개인의 경우 여권에 적힌 영문 이름(full name)을 그대로 적습니다.
- ③·⑫·⑬·㉗ 납세자번호란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번호를 적습니다.
 -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대한민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인 경우:
 -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대한민국거소신고증의 대한민국거소신고번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외국인등록표의 외국인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관리번호
 - 재외국민 또는 대한민국 국적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대리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 ④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국가(Country) 및 우편번호(postal zone) 순으로 적습니다.
- ⑤거주지국·⑥거주지국코드·㉔국적·㉕거주지국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 ㉚~㉜란은 소득자가 실질귀속자인 국외사모투자기구 또는 국외공모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국외사모투자기구·국외공모투자기구 단위로 적고, 실질귀속자가 아닌 국외사모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각 실질귀속자인 투자자의 소득금액을 포함하여 국외사모투자기구 단위로 적습니다.

※ ‘국외공모투자기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설립지국의 법령 등에 따라 공모투자기구로 인정되는 국외투자기구이거나, 투자설명서 작성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국외에서 50명 이상의 일반투자자에게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한 국외투자기구를 말합니다.
- ㉙유형란에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소득자(투자자)가 개인이면 “1”, 국외공모투자기구이면 “2”, 국외사모투자기구이면 “3”,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면 “4”, 연기금이면 “5”, 금융기관이면 “6”, 그 밖의 법인이면 “7”

- ㉚거래구분란에는 투자자가 국채 등을 매수한 경우 “매수”, 매도한 경우 “매도”, 그 밖에 이자·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는 해당거래 유형을 적습니다. (ex, 대차중개, Repo, 담보거래, 계좌대체 등)
- ㉛·㉜·㉟란의 날짜는 YYYYMMDD 형식으로 적습니다.

※ 예시: 2009년 7월 1일인 경우 “20090701”
- ㉞금액·㉞통화란은 거래된 현지(해당 국가)의 통화금액 및 통화종류를 적습니다.
- ㉟국채장외거래여부란은 국채예탁결제기구 내 계좌를 보유한 외국인 간 국채예탁결제기구 내에서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를 적습니다.
- ㊱·㊲란은 제출대상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적습니다.

대표신고자 일괄신고 동의서

단체 기본사항	단체명		고유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외국인)번호 호		
	소재지			
대표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비거주자 구성원	성명		납세자번호	
	주소			
	거주지국		전화번호	

「소득세법」 제1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2조제2항에 따라 대표신고자가 비거주자
구성원의 ()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한 사항을 일괄신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
호
지

비거주자 구성원

(서명 또는 인)

주요경비지출명세서

※ 뒤쪽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제출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비지출명세 제출대상 거래내용

[illegible]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요령

-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기준경비율적용대상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매입비용 또는 임차료 중에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를 수령하지 않은 금액은 그 거래내용을 적습니다.
 -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포함)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과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에 해당하는 거래는 적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 >
-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3만원 이하인 경우
 -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비영리법인(수익사업 관련 부분 제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2항>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신불카드, 기명식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에 의한 거래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령한 것으로 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구매·경매·수용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적은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용폐자원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는 경우

① 신고구분						[원천징수소득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처분	환급신청					③ 지급연월		년	월				
원천징수 의무자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과세 여부		여, 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①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 천 징 수 명 세						⑨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 득 지 급 (과세 미입,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⑩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⑪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개 인 (거주자·비거주자)	수입 금액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 정산	합계	A04													
			분납신천	A05													
			납부금액	A06													
	퇴직 소득	가감계	A10														
		연금계좌	A21														
		그 외	A22														
	사업 소득	가감계	A20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기타 소득	가감계	A30														
		연금계좌	A41														
		종교인 소득	매월징수	A43													
			연말정산	A44													
		가상자산	A49														
		그 외	A42														
	「가산과세 대상」	가감계	A40														
		연금계좌	A48														
공적연금(매월)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법인	배당소득	A60															
	금융투자소득	A71															
	저축 등 해지 추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임대소득	A70															
	내·외국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 합 계		A99															
② 환급세액 조정 (단위: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⑬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⑮+⑯+⑰)		⑲ 당월 조정 환급세액계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 (⑱-⑲)	㉑ 환급 신청액					
⑫ 전월 미환급세액	⑮ 기환급 신청세액	⑭ 차감전액 (⑫-⑬)	⑯ 일반 환급	⑰ 선택자산 (금융회사 등)	⑱ 그 밖의 환급 (금용회사 등 합병 등)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 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서 부표 작성 여부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부표(4~5쪽)														환급(7쪽~9쪽)		승계명세(10쪽)	
년 월 일																	
세무대리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 환급금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에임처																	
예금종류																	
계좌번호																	
세무서장 귀하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 참고사항

- 신고서(부표 등) 작성 여부란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작성 여부를 해당란의 () 안에 "○" 표시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A01, A02, A03, A04, A10) 중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기타소득 중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A49),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금융투자소득(A71), 법인원천(A80)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 등 해지 추정세액 등(A69) 및 연금저축해지가산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환급신청대상 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은 환급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으며, 5천만원 이상인 경우 별도 "계좌계상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관하여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비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관하여는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금융투자소득(A71)에 관하여는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1.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리인, 위임받은 자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및 「법인세법」 제120조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를 포함합니다)는 납부(환급)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당월분과 함께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귀속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가. 「부가치세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월 이후 지급하거나, 연말정산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기본사항 및 소득구분
- 가. ① 신고구분란은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에, 반기별 신고서는 "반기"에, 수정신고서는 "수정"에,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 시에는 "소득처분"에 "○" 표시(지정법인·국가기관 및 개인은 제외합니다)를 하며, 매월분 신고서에 계속근로자의 연말정산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월" 및 "연말"란 두 곳에 모두 "○" 표시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하려는 경우 "환급신청"란에도 "○" 표시를 합니다.
- 나. ② 귀속연월란은 소득발생 연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 다. ③ 지급연월란은 지급한 월(또는 지급시기 외제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종료월(예: 상반기는 ××년 6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 라. ⑤ **총지급액**란은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금융투자소득의 경우 금융투자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며, 비과세 종교인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해당하는 금액(「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은 제외합니다.
- 마. [A26]연말정산란은 보험포집인 등 사업소득자(중도해약자를 포함합니다) 연말정산분을 함께 적습니다.
- 바. 가산세(⑧·⑩)란에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 사.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02개분본은 아래의 예와 같이 소득종류별로 거주자분과 합산하여 해당 소득란에 적고, 비거주자 중 법인본은 법인원천[A80]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 예) 임대·인적용역·사용료소득 등은 사업소득[A25, A26, A30]란, 유가증권양도소득 등은 비거주자 양도소득[A70]란에 합산합니다.

3.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㉑)과 환급세액 조정(㉒)
- 가. 소득지급(④·⑤)란에는 과세미달분과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금융투자소득의 경우 금융투자소득금액)과 총인원을 적고, 퇴직·기타·연금소득의 연금계좌란은 연금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을 적습니다(그 외는 연금계좌 외로 지급되는 금액을 적음). 다만, 총지급액은 근로소득(A02, A04) 퇴직소득(A20), 사업소득(A26), 기타소득(A44)의 경우에는 주(현), 종(전) 근무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총지급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나. 징수세액(⑥~⑧)란에는 각 소득별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적되, 납부할 세액의 합계는 총합계(A99)의 ⑥~⑧)에 적고, 환급할 세액은 해당란에 "△" 표시하여 적은 후 그 합계액은 ⑮ 일반환급란에 적습니다["△" 표시된 세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총합계를(A99)의 ⑥~⑩)란에는 적지 않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방법 (2)

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분납신청(A05)은 분납할 인원(④), 징수세액(⑥~⑧)만 기재, 징수세액란은 A04=A05+A06이 되도록 기재합니다.

1) 인원(④), 총지급액(⑤)의 가감계(A10) = (A01 + A02 + A03 + A04), 징수세액(⑥~⑧)의 가감계(A10) = (A01 + A02 + A03 + A06)

※ 3월 신고분 분납신청(A05) = 4월 신고분 납부금액(A06) + 5월 신고분 납부금액(A06)

라.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연금소득 경우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의 계산은 코드별 가감 계[A10, A30, A40, 또는 A47]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징수세액(⑥~⑧)란에 납부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납부세액(⑩·⑪)란에 옮겨 적습니다.

2) 징수세액(⑥~⑧)란에 환급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그 합계를 ⑮ 일반환급란에 적습니다.

3) 징수세액(⑥~⑧)란에 각 소득종류별로 납부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이 각각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조정대상 환급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⑬ 조정대상환급세액란의 금액을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코드 [A10, A20, . . .]순서대로 적어 조정환급하고, 잔액은 납부세액(⑩·⑪)란에 적습니다.

나)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환급할 세액인 ⑬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여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납부세액(⑩·⑪)란에 적지 아니하며, ⑳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 위의 가) 및 나)에 따른 세목(소득세·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간 조정환급은 그 조정환급 명세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적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적지 않고 임의 조정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무납부로 처리됩니다.

다)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의 합계액[A99코드의 ⑨]은 ⑰ 당월조정환급세액계란에 옮겨 적습니다.

4) 금융회사 등 신탁재산의 경우 당월발생 환급세액(⑮~⑰)란의 ⑮ 신탁재산의 금액은 신탁재산이 원천징수된 세액에서 신탁 재산분등법인원천세액환급(총당)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⑦ 법인세란의 계 금액을 뺀 금액을 적어 먼저 법인세부터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3)의 방법과 같이 조정합니다.

5) ⑰ 그 밖의 환급세액란은 금융회사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을 "금융회사 등"란에 적어 먼저 법인세부터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3)의 방법과 같이 조정합니다.

또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최종 차월 이월 환급세액을 승계하거나, 사업자단위과세로 지정 등의 최종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금액을 "합병 등"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합병 등"란에 피합병법인 및 지정 등의 최종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적은 경우에는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서(제8쪽)를 제출해야 합니다.

6) 4)번 및 5)번 모두 조정환급하려는 경우에는 4)번부터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7) ㉑ 차월이월 환급세액 중 환급받으려는 금액을 ㉒ 환급신청액에 적고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합니다.

마. 저축 등 해지 추정세액 등(A69)란은 이 서식 부표의 [C41, C42, C43, C44, C45]의 합계를 적습니다.

바. 납부세액의 납부서는 신고서·소득종류별(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로 별지에 작성하여 납부합니다.

4. 반기별 신고·납부자의 신고서 작성방법

가. 인원

1) 간이세액(A01): 반기(6개월)의 마지막 달의 인원을 적습니다.

2) 중도퇴사(A02): 반기(6개월) 중 중도퇴사자의 총인원을 적습니다.

3) 일용근로(A03): 월별 순인원의 6개월 합계 인원을 적습니다.

4) 사업(A25)·기타소득(A40):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원(순인원)을 적습니다.

5) 퇴직(A20)·이자(A50)·배당(A60)·및 법인원천(A80):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나. 지급액: 신고·납부 대상 6개월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 귀속월, 지급월, 제출일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1) 1월 신고·납부: 귀속월 201X년 7월, 지급월 201X년 12월, 제출일 201X년 1월

2) 7월 신고·납부: 귀속월 201X년 1월, 지급월 201X년 6월, 제출일 201X년 7월

라. 반기납 포기를 하는 경우 반기납 개시월부터 포기월까지의 신고서를 한 장으로 작성합니다.

(예) 2010년 4월 반기납 포기: 귀속연월에는 반기납 개시월(2010년 1월)을, 지급연월에는 반기납 포기월(2010년 4월)을 적습니다.

※ 수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① 신고구분란에 수정으로 표시된 경우를 말합니다)

1. 처음 신고분 자체의 오류정정만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추가지급 등에 의한 신고는 귀속연월을 정확히 적어 정상신고해야 합니다).
2. 수정신고서는 별지로 작성·제출하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반드시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3. 수정 전의 모든 숫자는 상단에 빨강색으로, 수정 후 모든 숫자는 하단에 검정색으로 적습니다.
4.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은 수정 신고서의 [A90]란은 적지 않으며, 그 세액은 수정신고하는 월에 제출하는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 [A90]란에 옮겨 적어 납부·환급세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사업자등록번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조정환급 세액	납부세액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소득세 등 (가산세)	농어촌 특별세						
거주자 (개인)	이자· 배당 소득	비과세 소득	장기주택마련저축	C01														
			비과세종합저축	C02														
			개인연금저축	C03														
			장기저축성보험차익	C05														
			조합 등 예탁금	C06														
			조합 등 출자금	C07														
			농어가목돈마련저축	C08														
			우리사주 배당소득	C10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C20														
			영농·영여조합법인 배당소득	C23														
			재형저축 이자·배당소득	C4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배당소득	C60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C27														
			장병내일준비적금	C31														
			기타 비과세이자소득	C19														
			기타 비과세배당소득	C29														
		세금 특례	기타 이자·배당소득	C11														
			영농·영여조합법인 배당소득	C54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C55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 증권의 배당소득	C56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당소득	C5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배당소득	C93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 증권의 배당소득	C94														
		세금 우대	이자소득(9%)	C12														
			배당소득(9%)	C22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9%)	C95														
	일반 세율 (14%) 분리 과세	일반 과세	기타 분리과세 이자소득	C1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C18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 집합투자 증권의 배당소득	C58														
			기타 분리과세 배당소득	C39														
		고배당 기업	투융자집합투자기구 배당소득	C96														
			이자소득	C14														
			배당소득	C24														
			배당소득(9%)	C91														
			배당소득(25%)	C92														
			비실명이자소득	C15														
	비실명 소득	비실명배당소득	C25															
		비영업대금이익 (25%)	C16															
		출자공동사업자(25%)	C26															
		이자·배당소득 계	C30															
근로 소득	비과세 소득	비과세 소득	비과세종합저축	C32														
			재형저축	C3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C34														
			기타 비과세 금융투자소득	C47														
		분리 과세	9%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	C35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C36													
				세금우대종합저축	C37													
			1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C78													
				투융자집합투자기구	C38													
				일반과세	C79													
				금융투자소득 계	C8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중도해지 등 추정세액	C97														
		해지 추징 액 등	해지 추징 액	해지 추징 액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19%	C59											
					벤처기업투자신탁	3.5%	C41											
					장기주택마련저축	4.8%	C42											
연금저축	2%				C43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2%				C44													
주택청약종합저축	6%				C45													
장기집합투자증권권저축	6%				C46													
해지추징 계					C5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소득세 등 (가산세)	농어촌특별세			
비거주자 (개인)		이자	제한, 20%	C61											
	사업	배당	제한, 20%	C62											
			선박 등 임대, 사업	2%	C63										
	양도	인적용역	20%, 3%	C64											
			사용료	제한, 20%	C65										
	기타	유가증권 양도	10%, 20%	C66											
법인원천	내국법인	부동산 양도	10%, 20%	C67											
			가상자산	10%, 20%	C77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가상자산 외	20%	C68											
		근로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19%	C69										
	법인세	이자	14%	C71											
			투자신탁의 이익	14%	C72										
		신택재산 분배	14%	C73											
		신택업자 징수분	14%	C74											
		비영업대금의 이익(25%)		C75											
	법인세	비과세 소득 등		C76											
		이자	제한, 20%	C81											
			배당	제한, 20%	C82										
		선박 등 임대, 사업	2%	C83											
		인적용역	20%, 3%	C84											
	법인세	사용료	제한, 20%	C85											
			유가증권양도	10%, 20%	C86										
		부동산 양도	10%, 20%	C87											
		가상자산	10%, 20%	C89											
		가상자산 외	20%	C88											
	법인세	법인세 계		C90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작성방법

- ◇ 이 서식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1쪽의 근로소득(A01, A02, A03, A04, A10) 중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기타소득 중 가상자산소득(A49),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금융투자소득(A71), 비거주자양도소득(A70), 법인원천(A80) 원천징수명세(④ ~ ⑧) 및 납부세액(⑩ ~ ⑪), 저축해지주최금액(A69), 사업소득(A25, A26, A30), 기타소득(A40) 중 비거주자분에 대한 원천징수명세 및 납부세액 대하여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
- ◇ 이 서식의 신고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1쪽의 내용도 수정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1. [C01~C10, C20, C23, C27, C31, C40, C60] : 「조세특례제한법」의 장기투자확인자택, 조합세종합착취, 개인종합착취, 조합 등 예탁금, 조합 등 출자금, 농어가농민지원자책, 유산사주 배당소득, 영농(영)조합법인 배당소득, 영농(영)조합법인 배당소득, 재형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저금 등 비과세 이자·배당소득과 「소득세법」의 저축성보통이자에 해당하지 않은 비과세 보편사항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해당 저축성소득의 총지급금의 인원, 총지급금액을 적으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C19, C29]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저축성품목 [C01~C10, C20, C23, C28, C40] 내 작성대상 저축성품목 제외)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지급금의 인원, 총지급금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3. [C11, C54, C55, C56, C57, C39, C94]는 장기채권 (30%), 「조세특례제한법」의 영농(영)조합법인 배당소득 등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소득지급금의 인원, 총지급금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4. [C12, C22, C95]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특정사회복지시설 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의 인원, 총지급금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5. [C13, C18, C39, C58]는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분리과세되는 소득과 직장공제회초과 반환금(기분세율)으로 분리과세 해당하는 소득의 소득지급금의 인원, 총지급금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6. [C14, C24]는 일반세율(22%, 20%, 15%, 14% 등)이 적용되고, 거주자에 지급하는 소득지급금의 인원, 총지급금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적습니다.
7. [C15, C25]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90% 세율이 적용되는 비실명 거래본과 「소득세법」에 따라 비실명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적습니다.
8. [C16]는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9. [C26]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10. [C30]는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합계액을 적으며 C30, C61, C62의 합계액과 A50, A60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11. [C59], [C69]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A01, A02, A03, A04, A10) 중 사용내국법인에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의 원천징수 명세를 적습니다.
12. [C1]〔벤처기업투자신탁〕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추정하는 해지 추정세액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정하는 배당소득은 [C2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3. [C42]〔장기주택저당저축추진세액〕란은 장기주택저당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정하는 해지 추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배당소득은 [C2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4. [C43]〔연금저축해지기산선〕란은 연금저축을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취급 금융회사 등이 추정하는 해지기산선(세목: 근로소득)을 적으며, 저축납입계약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제1목) [A40]〔근로소득〕란에만 적습니다. 연금소득은 (제1목) [A45]〔연금소득 및 연금저축〕란에만 적습니다.
15. [C44]〔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기산선〕란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이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해지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정하는 해지기산선(세목: 근로소득)을 적으며, 공제계약금으로 인한 기타소득은 (제1목) [A40]〔기타소득〕란에만 적습니다.
16. [C45]〔주택청약종합저축추진세액〕란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담당한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정하는 해지 추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7. [C46]〔장기주택저당증권추진세액〕란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정하는 해지 추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8. [C50]란은 저축 등 해지 추정세액의 합계액을 적으며 추정세액은 근로소득으로 납부합니다.
19. [C61~C70, C77]〔비거주자란〕은 「소득세법」 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양도소득·기타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으며, 신고서 제1목의 해당 소득 [A25], [A40], [A50], [A60], [A69], [A70]란에 각각 적습니다.
20. [C71]〔이자〕란은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일반세율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C72]〔투자신탁의 이익〕란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21. [C73]〔신탁재산 분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이익을 분배하면서 원천징수한 명세를 적습니다.
22. [C74]〔신탁업자 구분〕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자산의 신탁재산에 원천징수한 명세를 적고, 신탁업자가 신탁재산 귀속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명세는 [C72] 투자신탁의 이익란에 적습니다.
23. [C75]〔비영업대금의 이익〕란은 내국법인에 지급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24. [C76]〔비과세법인소득〕란은 내국법인에 지급한 비과세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25. [C81~C89]란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26. [C90]〔법인세계〕란은 법인(외국법인 포함)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합계액을 적습니다.법인원천(A80)=법인세 계(C90)]
27. [C32, C33, C34, C47]란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종합저축, 재형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으로부터 발생한 비과세 금융투자자산의 소득지급금 인원과 금융투자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28. [C35, C36, C37, C78]란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분리과세(9%) 적용 대상사회복지시설집합투자기구,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세금우대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발생하여 지급한 금융투자소득을 [C38]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분리과세(14%) 적용 대상투자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을 소득지급금 인원과 금융투자소득금액의 합계액을 각각 적습니다.
29. [C79]란은 일반세율(20%)이 적용되고, 금융투자소득의 소득지급금 인원과 금융투자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30. [C80]란은 금융투자자산 총지급금액의 합계액을 적으며 A71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31. [C78]란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종료하여 또는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 인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제8항제2호에 따른 계산한 금융투자자산 추정세액을 적습니다. (해지에 따른 이자, 배당소득 제외)

- ◇ 채권 등의 중도매매 관련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 시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제46조가 적용되는 채권의 중도매매의 경우 채권 등을 거주자 등으로부터 매수한 법인은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며, 거주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지급명세서에 제출한다.
 - 대항과세 특례의 경우 비거주자에 「061」소득지급란의 인원 및 총지급액에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른 환배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 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포함하여 적고, 환급세액을 조정환급세액란에 적는다.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단위: 원)

[illegible]

작성 방법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등에 따라 제출합니다.
2. 이 부표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제1쪽)의 ② 환급신청란에 환급신청액을 적어 환급신청을 한 경우 작성합니다.
3. 소득의 종류란은 환급대상 원천징수 세목의 소득을 적습니다.
4. 귀속연월은 신청한 환급세액이 발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② 귀속연월을 적습니다.
5. 지급연월은 신청한 환급세액이 발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③ 지급연월을 적습니다.
6. 코드란은 환급 신청대상 원천징수 소득의 해당 코드(제1쪽의 코드 참조)를 적으며, 인원란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제1쪽)의 소득자 소득구분 및 코드에 해당하는 인원을 적습니다. 소득지급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⑤ 총지급액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작성합니다.
6. ① 결정세액, 기납부 원천징수세액(② 계, 기납부세액[주(현)], 기납부세액[중(전)]란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 기납부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적어야 하며, 기납부세액[주(현), 중(전)]이 있는 경우에는 「기납부세액 명세서(제8쪽)」를 작성해야 합니다.
7. ③ 차감세액란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8. ④ 분납금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⑥소득세 등(A05)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9. ⑤ 조정환급세액란은 환급할 세액에서 차감한 같은 세목의 납부할 세액을 포함하여 적으며, ④ 분납금액에서 ③ 차감세액과 ⑥ 환급 신청액을 각각 차감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10. 합계는 ① 환급신청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② 환급신청액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환급신청 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2. 환급세액 조정의 ⑫ 전월미환급세액란에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제9쪽)」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1. 환급신청서 부표에 포함되는 소득지급명세서는 별도로 제출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법정제출기한 내에 해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환급신청자가 「기납부세액 명세서(제8쪽)」 및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제9쪽)」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해당 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 제출기간은 환급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기 납 부 세 액 명 세 서			
(단위: 원)														
❶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														
소득의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코드	인원	총지급액	징수세액			합 계					
						① 소득세 등	②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합 계														
❷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														
소득의 구분	성명	주민등 록번호	주(현)근무지		중(전)근무지 결정세액				계					
			③ 소득 세 등	④ 농어촌 특별세	중(전) 근무지	사업자 등록번호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합 계														
❸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														
소득세 등			농어촌특별세				사 유							
① 소득세 등 합계	③ 소득세 등 합계	차이금액 (③ - ①)	② 농어촌특 별세 합계	④ 농어촌특별 세 합계	차이금액 (④ - ②)									

작성 방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등에 따라 제출합니다.
-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은 환급신청 대상 세목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을 적습니다. 작성대상이 많은 경우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에 대해 합계를 적고 해당 명세에 대한 형식을 참고하여 별지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은 환급신청 대상 세목에 대한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을 적습니다. 작성대상이 많은 경우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에 대하여 합계를 적고 해당 명세에 대한 형식을 참고하여 별지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의 ① 소득세 등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주(현)근무지 ③ 소득세 등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의 ②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주(현)근무지 ④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의 ① 소득세 등의 합계, ②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주(현)근무지 ③ 소득세 등의 합계, ④ 농어촌특별세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3.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을 작성해야 합니다.
- [3.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은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 과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을 비교하여 작성하여 차이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명확히 적고 적을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사업자등록번호 □□□-□□-□□□□□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단위: 원)													
❶ 환급 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 명세													
귀속연월	지급연월	신고구분	세목 및 코드	① 발생환급 세액	② 같은 세목의 납부할세액	③ 당월발생 환급세액 (① - ②)							
❷ 환급세액 조정 현황													
귀속연월	지급연월	전월미환급세액			⑦ 당월발생 환급세액	⑧ 조정대상 환급세액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⑩ 차월이월 환급세액					
		④ 전월미 환급세액	⑤ 기환급 세액	⑥ 차감잔액									

작성 방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등에 따라 제출합니다.
-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는 환급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1. 환급 신청시 전월미환급세액 명세]는 환급신청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환급세액 조정」의 ⑫ 전월미환급세액란에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⑫ 전월미환급세액의 최초 발생 시의 명세를 적습니다. 신고구분란에는 해당 ⑫ 전월미환급세액의 발생 사유를 연달정산, 수정신고 등 해당되는 사유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세목 및 코드는 해당 ⑫ 전월미환급세액의 세목 및 해당 세목의 코드를 적습니다.
- [환급세액 조정현황]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환급세액 조정」란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⑦ 당월발생환급세액란에는 [1. 환급 신청시 전월미환급세액 명세]의 ③ 당월발생금세액을 적습니다. ⑩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은 환급 신청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환급세액 조정」의 ⑫ 전월미환급세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방법

1. 서식제목: 해당 자료(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명【 】안에 "√"표시를 하여, 관련번호에는 적지 않습니다.
2. ① 법인명(상호)란: 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고,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상호를 적습니다.
3. ①-1 영문법인명(상호)란: 지급받는 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인 경우에 한정하여 징수의무자의 법인명(상호)을 영문으로 적습니다.
4. ② 대표자(성명)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5. ③ 사업자등록번호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④ 주민(법인)등록번호란: 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 법인등록번호를 적고,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7. ⑤ 소재지 또는 주소란: 징수의무자인 본점(사업장)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8. ⑥ 성명(상호)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등 명칭을 영문으로 적되, 머리글자(Initial)를 적지 않고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글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머리글자 뒤에 괄호로 정식 명칭 전부를 적습니다.
9.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10. ⑦-1의 생년월일란: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어 여권번호 등을 적은 경우에는 반드시 생년월일을 적어야 합니다. (예: 생년월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는 "20060101"을 적습니다.)
11. ⑧ 소득자구분코드란: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실 지 영 의 구 분		명 의	번 호	코 드	
개 인	내 국 인	주민등록번호 부여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111
		주민등록번호 미부여자	성 명	의료보호증관리번호	112
	재외국민 및 외 국 인 등	재외국민등록증 소유자	성 명	재외국민등록번호	122
		외국인등록증 소유자	성 명	외국인등록번호	131
		주민등록증(재외국민)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123
		국내거소신고증 소유자	성 명	국내거소신고번호	141
기타		성 명	여권번호,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121	
법 인	국내 사업자등록번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고유번호)가 부여된 내·외국 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211
	사업자등록번호가 미부여된 외국 법인		법인명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222
단 체	개인단체	개인단체 고유번호 부여자	단체명	고유번호	311
	외국단체		단체명	외국단체 등록번호 또는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321
기 타	기타임의단체	개인으로 보는 단체	대표자명(단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331
	비거주 외국인(단체)인 증권거래자		성명, 단체명	투자등록증 고유번호	411
기 타	투자기업설립을 위한 외국인(단체)		성명, 단체명	관련문서번호	413
	명의 또는 번호 등이 빈칸 또는 비실명인 경우			빈칸	999

12. ⑨ 주소란: 주소가 외국인 경우 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순으로 영문으로 적습니다. 우편사서함에 적지 않습니다.
13. ⑩ 거주구분란: □안에 "√"표시를 하여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합니다.
14. ⑪ 거주지국과 ⑩-1 거주지국코드란: 소득자가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천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15. ⑫ 계좌번호(발행번호)란: 숫자인 적고, 저축과 같이 반복적인 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로 부여된 고유관리번호(계좌번호)에 의하여 소득자의 거래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번호를 적습니다(배당소득 및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소득자의 금융계좌에 입금시키는 경우에도 소득자의 금융계좌번호를 적습니다). 이자·배당소득자가 채권·주권 등을 실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채권등의 발행번호를 수록하며, 채권등의 종류, 발행일, 이자지급일이 동일하고 보유수량이 다량인 경우에는 대표발행번호를 적습니다.
16. ⑬ 신탁이의 여부란: 「√」안에 "√"표시를 하여 「소득세법」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신탁의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17. ⑭ 지급일란: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날짜를 적으며, 「소득세법」 제131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적습니다.
18. ⑮ 귀속연월란: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이자·배당소득의 수입시기를 적습니다.
19. ⑯ 과세구분, ⑰ 소득의 종류, ⑱ 조세특례 등란: 지급하는 이자·배당소득의 과세유형 및 소득의 종류, 적용되는 조세특례 등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아래 분리과세는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⑯ 과세구분														
비과세, 면제	개인					총합과세		원천징수 대상소득 (소액 부정수 포함)	법인				과세제외 (「소득세법」상 미결제 소득 /법인세 납세무 없는 법인 소득)	
	분리과세			일반과세		원천징수대상 외의 소득	비과세, 면제		투자신탁 자산 귀속 소득	신탁재산 귀속 소득	그 밖의 원천징수대상 외의 소득			
	저율과세 (<14%)	고율과세 (>14%)	비실명	일반세율 (14%)	기본세율 (6~45%)									
	L	H	R	O	B	T	D	G	C	X	F	I	W	N

⑱ 조세특례 등													
조세특례 등을 적용받지 않고 원천징수한 경우										NN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조특법 §14④)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조특법 §86의3)										SB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이 조합원에 지급하는 배당소득(조특법 §14④)		
장기주택마련저축(조특법 §87)										SC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조특법 §20①)		
주택청약종합저축(조특법 §87)										SD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121의2③)		
농어가목돈마련저축(조특법 §87의2)										SE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조특법 §21①①)		
신박투자회사 배당(조특법 §87의5)										SF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채무에 대한 이자(조특법 §21①②)		
부동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투자회사 배당(조특법 §87의6)										SG	금융기관 국외발행(매각) 외화표시어음과 예금증서의 이자(조특법 §21①③)		
비과세종합저축(조특법 §88의2)										SH	비거주자들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조특법 §21의2①)		
우ரி사주조합 배당(조특법 §88의4⑨)										SI	사회기반시설채권 이자(조특법 §29)		
노협 근로자의 자사지분 배당(조특법 §88의4⑩)										SJ	영농조합법인 배당(조특법 §66②, ③)		
조합 등 출자금(조특법 §88의5)										SK	영여조합법인 배당(조특법 §67②, ③)		
세금우대종합저축(조특법 §89)										SL	조합 회사 배당(조특법 §68④)		
조합 등 예탁금(조특법 §89의3)										SM	세금우대종합저축(조특법 §89)		
재외동포전문 투자신탁(조특법 §91의12)										SU	동업기업에 지급하는 소득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동업자에 귀속되는 소득		
재정저축(조특법 §91의14)										SV	동업기업에 지급하는 소득 중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동업자에 귀속되는 소득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조특법 §91의15)										SW	「신탁법」 제65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소득세법 §12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조특법 §91의18)										SX	발행일·상환일·정리일이 10년 이상으로 분리과세 신청한 장기채권·구 소법 §129①1가, 조간부채권 제외) * 과법조항 중 "구"는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2028호 개정)이 전의 것에서 조항을 위함이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조특법 §87)										SZ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 이자소득(소득세법 §129②1)		
장병내일준비저축금(조특법 §91의19)										TA	실지명령이 확인되지 않는 소득(소득세법 §129②2분문)		
공무보통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배당(조특법 §87의7)										TB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실명 소득(소득세법 §129②2 단서)		
청년희망저축(조특법 §91의21)										TC	외국소득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한 경우(소득세법 §129④)		
청년희망저축(조특법 §91의22)										TD	외국법인의 국제통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법인세법 §93의2)		
										TE	해외채권으로 "PO"와 "PS"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한 경우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면제한 경우		
											거주자·내국법인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26의2)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27)		
											기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2. ㉔ 채권이자구분란: 「소득세법」 제46조(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8조의3)에 따른 채권등의 이자의 원천징수인 경우에만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의제별신청서 적용 채권등 '06.12.31.이전 또는 '07.1.1. ~ '06.6.30. 사이에 취득한 채권의 이자소득을 '05.7.1. 이후 최초로 지급받거나, 매도하는 경우 등)	00	채권등의 이자지급기간 중 매입·매도 시 또는 채권등의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55	구 「소득세법」(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2항에 따른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채권등으로 금융회사 등이 환급세액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
	66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 이자등 지급금액[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1항제2호]
	77	구 「소득세법」(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4항에 따라 채권등의 중도매도 시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는 보유기간 이자상당액[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1항제1호]
	88	구 「소득세법」(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3항(외국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98조제3항1호)에 따른 높은 세율 적용 시 원천징수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1항제1호]
	99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등의 보유자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제11항제2호]

26. ㉔ 소득세 · ㉕ 법인세 · ㉖ 지방소득세 및 ㉗ 농어촌특별세라는 원단의 이하는 적지 않고, 소액 부징수(거주자인 경우 배당소득 1천원 미만, 내국법인인 경우 이자·배당소득 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징수 의무자	② 법 인 명 (상호)										③ 대표자(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주민(법인)등록번호										⑥ 소재지(주소)																									
	⑦ 상 호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사 업 장 소 재 지																																			
소득자	⑩ 성 명										⑪ 주민등록번호																									
	⑫ 주 소																																			
수입 금액	⑬ 발생처 구 분			⑭ 법인명 (상 호)			⑮ 사업자등록번호										⑯ 발생기간 (연·월·일)										⑰ 지급액 (수입금액)									
	주(현)									-				-					.	.	.	.	.													
	중(전)									-				-				.	.	.	.	.														
	사업별 수입금액 계						보험모집 수입금액 계																													
							방문판매 수입금액 계																													
							음료배달 수입금액 계																													
							합 계 (124)																													

소득 금액	사 업 별	⑮ 수입금액(⑰)	⑰ 적용소득률		⑳ 소득금액			㉑ 비고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합 계	
	보험모집							
	방문판매							
	음료배달							
	(124) 합계							

⑫ 사업소득금액 (20)			⑬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구 분	소득세	지방 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계
인 적 공 제	기본공제	㉔ 본 인	㉔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㉔ 결정세액				
		㉔ 배우자	㉔ 소득공제 등 종합합산도 초과액		가 납 부 세 액	㉔중(전) 근무지		
		㉔ 부양가족 (명)	㉔ 종합소득과세표준			㉔주(현) 근무지		
	추가공제	㉔ 경로우대 (명)	㉔ 산출세액	㉔ 차감 납부할 세액				
		㉔ 장애인 (명)	㉔ 자녀 세액 공제		위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세무서장 귀하	(서명 또는 인)		
		㉔ 부녀자					㉔ 공제대상자녀 (명)	
		㉔ 한부모가족					출산·입양자 (명)	
	㉔ 연금보험료공제			㉔ 연금계좌차 세액공제	위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세무서장 귀하 (서명 또는 인)			
㉔ 기부금(이월분)			㉔ 정치자금					
㉔ 종합소득공제 계			㉔ 특례기부금					
㉔ 개인연금 저축소득공제			㉔ 우리사주조합 일반기부금					
			㉔ 표준세액공제					

⑤ 인건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부양 등으로 공제금액 계산명세가 있는 자만 적습니다. 다만, 본인은 표기하지 않습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

작성 방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으로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성"의 위와 "성"의 "㉔"인 "법인"을 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 적습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일·폐업한 경우에는 휴일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을 말 달일)까지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4. "㉔" 차감 납부할 세액"란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함)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적습니다.
5.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소수점 이하 값은 버립니다.
6. 해당 소득자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시 해당 명세서(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귀속
연도

년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발행자 보고용)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 보관용 소득자별 연간집계표)

관리
번호

① 법 인 명 (상호,성명)	② 사업자(주 민) 등 록 번 호	③ 소 재 지 (주 소)	④ 연간 소득 인원	⑤ 연 간 총지 급 수	⑥ 연간 총지급액 계	⑦ 비과 세 소득	⑧ 연간 소득금액 계	⑨ 세액 집계현황				
								⑩ 소 득세	⑪ 지 방소득 세	⑫ 농어 촌특별세	⑬ 계	

② 소득자 인적사항 및 연간 소득내용															
일련 번호	⑭ 소득 구분 코드	⑮ 소득자 성명 (상호)	⑯ 주민(사업 자) 등록번호	⑰ 내·외 국인	⑱ 지 급 연 도	⑲ 지급 건수	⑳ (연간) 지급총 액	㉑ 비 과세소 득	㉒ 필요경 비	㉓ 소득 금액	㉔ 세율	㉕ 소득세	㉖ 지방 소득세	㉗ 농어촌 특별세	㉘ 계
1															
2															
3															
4															
5															
6															
7															
8															
9															
10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작성하며, ⑭ 소득구분코드란은 제2쪽을 참조하여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2. ㉙부터 ㉙까지 중 세액이 소액 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하는 ⑥ 연간 총지급액계는 소득자별 ㉑(연간)지급총액 합계와, ⑥연간 소득금액계(소액 부징수를 포함합니다)는 소득자별 ㉘소득금액 합계와 각각 일치해야 합니다.	
3. ④ 연간소득인원란은 ⑯ 소득자성명(상호)란의 인원을, ⑤ 연간총지급건수란은 ⑱ 지급건수(소액 부징수를 포함합니다)의 합계를 적으며, 연간 지급한 원천징수소득 중 소득자를 기준으로 합계하여 제출합니다.	
4. ⑰ 내·외국인란은 내국인의 경우 "1"을 외국인의 경우 "9"를 각각 적습니다.	
5. ㉑ (연간)지급총액란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을 제외하고 적습니다.	
6. ㉒ 비과세소득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의 금액(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적습니다.	
7. ㉓ 소득금액란은 ㉑ (연간)지급총액에서 ㉒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소득구분코드 64)의 경우 4쪽의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⑭ 소득구분코드의 작성은 다음 표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작성 방법	
코드	소득구분
7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주 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이하 "상금 및 부상"이라 함)
72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영업권(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인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이하 "광업권 등"이라 함)
7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지역권등"이라고 함)
74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임주지체상금(이하 "주택임주지체상금"이라고 함)
7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이하 "원료등"이라 함)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63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 소득 * 연금저축계좌 해지 등 연금외수령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6) 연금계좌지급명세서에 별도로 적습니다.
7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자문료 및 고문료를 제외하며, 이하 "강연료등"이라 함)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대학이 자체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 포함)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6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 신청한 경우로서 벤처기업 임원 또는 종업원이 퇴직 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납부).
65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지급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소득
64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한 소득(양도일 현재 생존한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
77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제14항에 따른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
78	사례금
79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자문 또는 고문 활동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하 "자문료등"이라 함)
8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68	비과세 기타소득
69	분리과세 기타소득
60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코드 61, 63, 65, 78코드 제외)
62	그 밖에 필요경비가 있는 기타소득(코드 64, 68, 69, 71 ~ 77, 79코드 제외)

- * 64코드: 필요경비 90% 적용, 1억원 초과 분은 필요경비 80% 적용, 다만, 서화·골동품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1억원 초과 분도 90% 적용하고, 실제 든 필요경비가 90(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 * 65코드: 비과세 한도는 연간 500만원(근로소득에서 비과세한 직무발명 보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과세금액을 더하여 연간 500만원 한도를 적용)
- * 71, 74코드: 필요경비 80%를 적용, 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코드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 72, 73, 75, 76, 79, 80코드: 다음 표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 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코드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수입시기	필요경비
2018.3.31. 이전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018.4.1. ~ 2018.12.31.	100분의 70
2019.1.1. 이후	100분의 60

- * 77코드: 다음 표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 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비과세소득 제외)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210mm× 297mm(백상지 80g/㎡)

관리
번호

귀속 연도	년
----------	---

부표)

)

25

- 57 -

작성 방법

- 210mm× 297mm(백상지 80g/m
- ²
-)

기부금명세서

① 인적사항

징 수 의무자	① 종교단체명	② 사업자등록(고유)번호
	③ 소 재 지 (전화번호 :)	
소득자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주 소 (전화번호 :)	

② 해당 연도 기부 명세

[illegible]

③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기부자 구 분	총 계	공제대상 기부금					공제 제외 기부금	
		특례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우리사주조합 기 부 금	기부차려금 신청금액	기타
코 드		10	20	40	41	42	10, 40, 41	50
합 계								
본 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 외								

④ 기부금 조정 명세

[illegible]

210mm × 297mm(백상지 80g/m²)

작성 방법

※ 이 서식 제1쪽의 ㉔ 기부금세액공제를 받는 소득자(종교 관련 종사자)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세서를 작성해야 하며, 종교인소득 지급영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기부금영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㉓ 코단란: 다음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도 아래의 기부금 유형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코드번호 "0"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코드번호 "20"
 - 다.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하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제외): 코드번호 "40"
 - 라.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코드번호 "41"
 -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코드번호 "42"
 - 바.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미지급분 기부금 포함): 「공제제외 기타
2. ㉔ 기부내용에는 금전기부의 경우 "금전"으로, 금전 외의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표시하고 자산명세를 간략히 적습니다. 현물의 경우 기부금액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3. ㉕ 상호(법인명)란: 상호·법인명·단체명·성명을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4. ㉖ 사업자등록번호 등란: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적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제외합니다). 다만,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기부처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정치자금 기부금은 기부처 구분 없이 과세연도 합계액을 "2. 해당연도 기부명세"의 최상단에 적고, ㉗ 상호(법인명)란과 ㉘ 사업자등록번호 등란은 적지 않습니다. ㉚ 기부 명세 합계액에는 "정치자금분"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을 포함하여 기부한 정치자금을 적습니다.
6. ㉙ 기부자란: 관계코드(1. 거주자, 2. 배우자, 3. 직계비속, 4. 직계존속, 5. 형제자매, 6. 그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7. ㉚ 공제대상기부금액란: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코드번호 "10", "20", "40" ~ "42")하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가자급으로 처리한 기부금액은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은 공제대상기부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8. ㉛ 기부장려금 신청금액란: 코드번호 "10", "41", "42"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5조에 따라 기부장려금단체에 기부장려금으로 신청한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9. ㉜ 기타란: 그 밖의 기부금으로서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세액공제금액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미지급분 기부금액의 경우도 기타란에 적습니다.
10. ㉝ 3.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는 "2. 해당 연도 기부 명세"의 ㉚ 공제대상 기부금액을 코드별로 집계하여 적으며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조정명세서(별지 제56호서식)의 각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11. 아래의 기부금 중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않거나 손금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다음에 해당 하는 기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합니다.
(2013년 이후 기부금부터)

구 분	특례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코 드	10	20	42	40	41
이월공제가능기간	10년	-	-	10년	10년

12. "4. 기부금 조정 명세" 작성 방법
- 가. 전년 이월 기부금액과 "3. 구분코드별 기부금 합계"의 기부금액에 대해 기부금코드 및 기부연도별로 작성하며 해당 연도 공제금액 및 이월금액(소멸금액)을 계산합니다.
- 나.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중 이월가능 기간이 지난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멸금액연에 적습니다.
- 다.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기부금명세서는 기부금코드, 기부연도, ㉞ 기부금액, ㉟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㊱ 공제대상금액 까지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라.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소득자는 전년도의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계속근로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마. 정치자금기부금,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순서로 공제합니다.
- 일반기부금**에 종교단체 기부금과 종교단체 외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우선 종교단체 외 기부금부터 공제합니다.
- 바. 2013. 12. 31.이전 지출 기부금 중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하며, 이후 이월된 기부금은 2014년・2015년 기부금, 2016년 이후 기부금 순서로 공제합니다.
- 사.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부터 공제를 적용합니다.
- 아.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 이후 기본공제대상자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210mm × 297mm(백상지 80g/m²)

관리 번호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정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 호) ③ 사업자등록번호 ③-1 사업자단위과세자 여부		② 대표자성명) ④ 주민등록번호 ③-2 중사업장 일련번호			
소득자		⑥ 성명 ⑧ 주 소		⑦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I 근로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⑩-1 납세조합	합 계	
	⑨ 근무처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근무기간	~	~	~	~	~	
	⑫ 감면기간	~	~	~	~	~	
	⑬ 급 여						
	⑭ 상 여						
	⑮ 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⑮-4 직무발명보상금						
	⑯ 계						
	II 비과세및감면소득명세	⑯ 국외근로	MOX				
		⑯-1 야간근로수당	OOX				
⑯-2 출산·보육수당		QOX					
⑯-4 연구보조비		HGX					
⑯-5							
⑯-6							
~							
⑯-39							
⑯ 수련보조수당		Y22					
⑳ 비과세소득 계							
⑳-1 감면소득 계							
III 세액명세		구 분	㉞ 소득세		㉟ 지방소득세	㊱ 농어촌특별세	
		㉞ 결정세액					
		기납부 세액	㉟ 종(전)근무지 (결정세액란의 세액을 적용한다)	사업자 등록 번호			
			㊱ 주(현)근무지				
	㊲ 납부특례세액						
	㊳ 차 감 정 수 세 액 (㉞-㉟-㊱-㊲)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IV 정산명세	㉑ 총급여(㉒, 외국인단일세를 적용시 연간 근로소득)				
	㉒ 근로소득공제				
	㉓ 근로소득금액				
	기 본 공 제	㉔ 본 인			
		㉕ 배 우 자			
		㉖ 부 양 가 족(명)			
		㉗ 경 로 우 대(명)			
		㉘ 장 애 인(명)			
		㉙ 부 녀 자			
		㉚ 한 부 모 가 족			
		연 금 보 험 료 공 제	㉛ 국민연금보험료	대상금액 공제금액	
			㉜ 공 민 연 금 보 험 료 공 제	㉜ 공무원연금	대상금액 공제금액
				㉜ 군인연금	대상금액 공제금액
	㉜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상금액 공제금액	
	㉜ 별정우체국연금			대상금액 공제금액	
	㉝ 보 험 료		㉝ 건강보험료(노인장기 요양보험료포함)	대상금액 공제금액	
			㉝ 고용보험료	대상금액 공제금액	
			㉞ 특 별 소 득 공 제	㉞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대출기관 거주자 15년 미만 15년~29년 30년 이상
				㉞ 장기주택 차입금 이자 상환액	2011년 이전 차입분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 이면서 비거치상환 대출 고정금리 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그 밖의 대출
	2015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 이거나, 비거치상환 대출			
	㉞ 기부금(이월분)				
	㉞ 계				
	㉟ 차 감 소 득 금 액				
	그 밖 의 소 득 공 제	㊱ 개인연금저축			
		㊱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㊱ 주 택 마 련 저 축 소 득 공 제	㊱ 청약저축		
			㊱ 주택청약종합저축		
			㊱ 근로자주택마련저축		
		㊱ 투자조합출자 등			
		㊱ 신용카드등 사용액			
		㊱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㊱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㊱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㊱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㊱ 그 밖의 소득공제 계				
	㊱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세 액 공 제	㊱ 종합소득 과세표준			
		㊱ 산출세액			
		세 액 감 면	㊱ 「소득세법」		
㊱ 「조세특례제한법」 (㊱ 제외)					
㊱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㊱ 조세조약					
㊱ 세액감면계					
㊱ 근로소득					
연 금 계 좌		㊱ 자녀	공제대상자녀 (명) 출산·임양자 (명)		
		㊱ 에 따 른 퇴 직 연 금	㊱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㊱ 연금저축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㊱ ㊱-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 액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㊱ 보 험 료	㊱ 보장성 장에 인정용 보장성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㊱ 의 료 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㊱ 교 육 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특 별 세 액 공 제	㊱ 정 기 자 금 기 부 금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㊱ 특 례 기 부 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㊱ 우 리 사 주 조 합 기 부 금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㊱ 일 반 기 부 금 (종교단체 외)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㊱ 일 반 기 부 금 (종교단체)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㊱ 계					
㊱ 표준세액공제					
㊱ 납세조합공제					
㊱ 주택차입금					
㊱ 외국납부					
㊱ 월 세 액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㊱ 세 액 공 제 계				
	㊱ 결 정 세 액 (㊱-㊱-㊱)				
㊱ 실효세율(%) (㊱/㊱) × 100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관계 코드	성 명	기본 공제	경로 우대	출산 입양	자료 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내·외 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 자	한부모	장애 인		자녀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 전용 보장성	일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난 임	65세이상·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 자	실손 의료 보험금	일반	장애인 특수교육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 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국세청 계																	
	0		○			기타 계																	
	(근로자 본인)					기타																	
	-					국세청 기타																	
	-					국세청 기타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																							
신용카드등 사용액공제																							
자료 구분	신용카드	직불카드등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등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지만 기재)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소비증가분		기부금													
						2021년 1-6월	2022년 7-12월	2021년 전제	2022년 전제														
국세청 계																							
기타 계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작성 방법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조합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에도 사용하며, 이 경우 「⑨ 근무처명」란 및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실제 근무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납세조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근로소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ISO국가코드: 국제청홈페이지→국제정책/제도→국제조세정보→참고자료실→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코드에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 KR, 미국 : US
-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외국인"란에 "외국인 9"를 선택하고 "국적 및 국적코드"란에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 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해당 근로소득자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외국인단일세율 적용"란에 여1을 선택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자가 종교관련종사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교관련종사자 여부"란에 여1을 선택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단위 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③-1에서 여1을 선택하고, ③-2에 소득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종사업장 일련번호를 기재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휴일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일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I. 근무처별 소득명세"란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항목별로 적고, "II.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에는 지급명세서 작성대상 비과세소득 및 감면대상을 해당 코드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적용 항목이 많은 경우 "II. 비과세 및 감면소득 명세"란의 "㉓ 비과세소득 계"란 및 "㉔-1 감면세액 계"란에 총액만 적고, "II. 비과세 소득"란을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과 그 외 근로소득[주(원)란] 더하여 연말정산하는 때에는 "㉔-1 납세조합"란에 각각 근로소득납세조합과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을 적고 「소득세법」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금제금액을 「㉔ 납세조합공제」란에 적습니다. 합병, 기업형태 변경 등으로 존속 법인 등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업형태 변경 전의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중(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또한, 동일회사 내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곳에서 전입 등을 하여 해당 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전입하기 전 지점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근무처별 소득명세 중(전)"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 "㉔ 총급여"란에는 "㉔계"란의 금액을 적되, 외국인근로자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이 서식에서 "조특법"이라 합니다)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㉔계"의 금액과 비과세소득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공제·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 특별소득공제(㉔-㉔)"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㉔-㉔)"란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적습니다(소득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 "연금계좌(㉔-㉔-1)"란과 "특별세액공제(㉔-㉔-1)"란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대상금액 및 세액공제액을 적습니다.

작성 방법

- ㉔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㉔ 주택자금공제(㉔+㉔), 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㉔+㉔+㉔), ㉔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는 제외), ㉔ 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액, ㉔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액, 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액 전체를 합한 금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습니다.
- ㉔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㉔ 차감소득금액에서 ㉔ 그 밖의 소득공제 계를 차감하고 ㉔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 ㉔ 납부특례세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원천 또는 종업원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 파견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경우 기납부세액은 해당 파견근로자 개인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 실제 원천징수된 세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다만, 파견근로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파견근로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액(2018. 6. 30.이전 17%, 2018. 7. 1.이후 19%)에 총 파견근로자의 결정세액 합계에 대한 각 파견근로자별 결정세액의 비율을 곱하여 적습니다.
- 이 서식에 적는 금액 중 ㉔실효세율은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숫점 첫째 자리만으로 표시하고 그 외는 소수점 이하 값만 버리며, ㉔ 차감징수세액이 소액 부정수(1천원 미만)를 말함)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 "㉔ 소득·세액공제 명세"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 관계코드란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득세법 § 50 ① 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 50 ① 3 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 50 ① 3 가)	2
배우자 (소득세법 § 50 ① 2)	3	직계비속(자녀·임양자) (소득세법 § 50 ① 3 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득세법 § 50 ① 3 나)	5*
형제자매 (소득세법 § 50 ① 3 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득세법 § 50 ① 3 라)	7	위탁아동 (소득세법 § 50 ① 3 마)	8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는 포함하지 코드 4는 제외합니다.

※ 관계코드 4~6는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나. 내·외국인란: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적습니다.

다. 인적공제항목란: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라. 국세청 자료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각 소득·세액공제 항목의 금액 중 소득·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마. 기타 자료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류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예를 들면,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항목"의 "기타"란에 적습니다).

바.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란: 소득·세액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적습니다(소득·세액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을 공제항목별로 구분된 범위 안에 적습니다).

사. 의료비(일반,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난임, 65세이상·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총액을 적습니다.(실손의료보험금란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적습니다)

- 해당 근로소득자가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근로소득자가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퇴직연금·연금저축·기부금 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시 해당 명세서(기부금세액공제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5호서식 기부금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㉔ 주택자금공제의 15년 이상 29년 이하, 30년 이상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이하 이 서식에서 "소득령"이라 합니다) 제112조제10항제5호가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 ㉔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 시 인적공제 항목 중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다음의 코드를 해당 항목에 적습니다.

구분	코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료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2
그 밖에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	3

- 전통시장 사용액과 대중교통 이용액은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 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선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이하 이 서식에서 "도서·공연등 사용분"이라 합니다)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적용하되 도서·공연등 사용분이 전통시장 사용분에도 해당할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공제 받습니다(신문 사용분의 경우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등 결제수단별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합니다.

비과세 및 감면 소득 코드					
구분	법조문	코드	기재란	비과세항목	지급명세서 작성 여부
비과세	소득세법 § 12 3 가	A01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
	소득세법 § 12 3 나	B01		법률에 따라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소득세법 § 12 3 다	C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소득세법 § 12 3 라	D01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소득세법 § 12 3 마	E01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등	×
		E02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	×
	소득세법 § 12 3 바	E10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에 한함) 및 사망일시금	×
	소득세법 § 12 3 사	F01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받는 요양비 등	×
	소득세법 § 12 3 아	G01	⑬-5	비과세 학자금(소득령 § 11)	○
		H02		소득령 § 12 2 ~ 3(일직료·숙직료 등)	×
		H03		소득령 § 12 3(자가운전보조금)	×
		H04		소득령 § 12 4, 8(법령에 따라 적용하는 제복 등)	×
		H05	⑬-18	소득령 § 12 9 ~ 11(경호수당, 승선수당 등)	○
		H06	⑬-4	소득령 § 12 12 가(연구보조비 등)~「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
		H07	⑬-4	소득령 § 12 12 가(연구보조비 등)~「고등교육법」	○
		H08	⑬-4	소득령 § 12 12 가(연구보조비 등)~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
		H09	⑬-4	소득령 § 12 12 나(연구보조비 등)	○
	소득세법 § 12 3 자	H10	⑬-4	소득령 § 12 12 다(연구보조비 등)	○
		H14	⑬-22	소득령 § 12 13 가(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H15	⑬-23	소득령 § 12 13 나(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유아교육법 시행령」	○
		H11	⑬-6	소득령 § 12 14 (취재수당)	○
		H12	⑬-7	소득령 § 12 15 (벽지수당)	○
		H13	⑬-8	소득령 § 12 16 (천재·지변 등 재해로 받는 급여)	○
		H16	⑬-24	소득령 § 12 17 (정부·공공기관 중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전지원금)	○
		H17	⑬-30	소득령 § 12 18(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는 급여 및 물품)	○
	소득세법 § 12 3 차	I01	⑬-19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비과세	○
	소득세법 § 12 3 카	J0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모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	×
	소득세법 § 12 3 타	J10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소득세법 § 12 3 파	K01	⑬-10	직전임무 수행을 위해 외국에 주둔하는 군인 등이 받는 급여	×
	소득세법 § 12 3 하	L01		충군한 군인 등이 전사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급여	×
		M01	⑬	소득령 § 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100만원	○
	소득세법 § 12 3 거	M02	⑬	소득령 § 16①1(국외 등에서 근로에 대한 보수) 300만원	○
		M03	⑬	소득령 § 16①2(국외근로)	○
	소득세법 § 12 3 너	N01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
	소득세법 § 12 3 더	O01	⑬-1	생신직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수당 등	×
	소득세법 § 12 3 러	P01		비과세 식사대(월 20만원 이하)	○
		P02		현물 급식	×
	소득세법 § 12 3 머	Q01	⑬-2	출산,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 관련 비과세 급여(월 10만원 이내)	×
	소득세법 § 12 3 버	R01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등	○
	소득세법 § 12 3 서	R10	⑬-21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
	소득세법 § 12 3 어	R11	⑬-29	소득령 17의3 비과세 직무발명보상금	○
감면		V01		사택 제공 이익	×
		V02		주택 자금 저리·무상 대여 이익	×
	소득세법 § 12 3 저	V03		종업원 등을 수익자로하는 보험료·신탁부금·공제부금	×
		V04		공무원이 받는 상급과 부상(연 240만원 이내)	×
	구 조특법 § 15	S01	⑬-11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
	조특법 § 16의2	U01	⑬-31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
		Y02	⑬-14	우리스주조합 인출금 비과세(50%)	○
	조특법 § 88의4⑥	Y03	⑬-15	우리스주조합 인출금 비과세(75%)	○
		Y04	⑬-16	우리스주조합 인출금 비과세(100%)	○
	소득세법 § 12 3 자	Y22	⑬	소득령 § 12 13 다(전공의 수련보조수당)	○
	조특법 § 18	T01	⑬-1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50%)	○
		T02	⑬-36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70%)	○
	조특법 § 19	T30	⑬-33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자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조특법 § 29조의6	T40	⑬-34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성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50%)	○
		T41	⑬-37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성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30%)	○
		T42	⑬-38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성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청년 90%)	○
		T43	⑬-39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성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청년 50%)	○
	조특법 § 18조의3	T50	⑬-35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T11	⑬-26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50%)	○
	조특법 § 30	T12	⑬-2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70%)	○
		T13	⑬-3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90%)	○
	조세조약	T20	⑬-28	조세조약상 소득세 면제(교사·교수)	○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2. 연금계좌 세액공제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세액 공제금액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 납입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5.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투자연도	투자구분	금융기관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6.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가입일	계약기간	금융기관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작성 방법

-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납입금액과 소득·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연금 구분"란은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과학기술인연금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 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연금 구분"란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세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약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합니다.(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저축 구분"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의 "투자 구분"란은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 조합1(「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제5호), 조합2(「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서 "계약기간"란은 계약기간을 개별 수로 적습니다.(월수 계산 시 1월 미만은 1월로 합니다.)
-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무주택자 해당여부 []여, []부]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2.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

⑦ 임대인명 (상 호)	⑧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⑨ 유형	⑩ 계약 면적(㎡)	⑪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⑫ 계약서 상 임대차 계약기간 개시일 종료일	⑬ 연간 월세액(원)	⑭ 세액공제금액 (원)

※ ⑨ 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 : 7, 기타: 8

※ ⑫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3.01.01.

3.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⑮ 대주(貸主)	⑮ 주민등록번호	⑮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	⑮ 차입금 이자율	원리금 상환액			⑮ 공제금액
				⑮ 계	⑮ 원금	⑮ 이자	

2) 임대차 계약내용

㉓ 임대인명 (상 호)	㉓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㉓ 유형	㉓ 계약 면적(㎡)	㉓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㉓ 계약서 상 임대차 계약기간		㉓ 전세보증금 (원)
					개시일	종료일	

※ ㉓ 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1, 다가구주택: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 : 7, 기타: 8

※ ㉓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3.01.01.

작성 방법

- 월세액 세액공제나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세액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 해당 임대차 계약별 연간 합계한 월세액·원리금상환액과 소득·세액공제금액을 적으며,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㉓, ㉓ 유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유형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 ㉓ 전세보증금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적습니다.

관리 번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매월분) ([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거주지국코드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여 1 / 부 2		국적 국적코드		
징수 의무자	① 법인명(상 호)	② 대표자(성 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민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⑥ 성 명		⑦ 주민등록번호							
소득자		⑧ 주 소								
I 근로처별소득명세	구 분		국 내		국 외		합 계			
	⑨ 근무처명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근무기간		~		~		~			
	⑫ 감면기간		~		~		~			
	⑬ 급 여									
	⑭ 상 여									
	⑮ 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⑮-2 우리사주조합인출금									
	⑮-3 임원 퇴직소득금액 환산금액									
	⑮-4									
	⑮ 계									
	II 비과세및감면소득명세	⑬ 국외근로		MOX						
		⑬-1 야간근로수당		OOX						
		⑬-2 출산·보육수당		QOX						
⑬-4 연구보조비		HOX								
⑬-5										
⑬-6										
~										
⑬-39										
⑬ 수련보조수당		Y22								
⑮ 비과세소득 계										
⑮-1 감면소득 계										
III 세액계산	㉑ 근로소득				차 감 남 부 세 액					
	㉒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				㉒ 소 득 세					
	㉓ 외국납부				㉓ 지방소득세					
	㉓ 납세조항 [(㉓-㉔)× 5/100]				㉓ 농어촌특별세					
	㉓ 납부특례세액									
	위의 납부 세액을 영수합니다.									
납세조항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성 방법										

- 「소득세법」 제149조제1호에 해당하는 납세조항이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매월분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⑨ 근무처명」란 및 「⑩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실제 근무처의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무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납세조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 소득자 보관용 (☐) 지급자 보관용)

외국인 여부
(예, 아니오)

[illegible]

위의 일용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을 지급(영수)합니다.

5

2011

2012

정 수 의 무 자 (지 급 자)

(서명 또는 인)

※ 서식작성에 관한 설명은 제2~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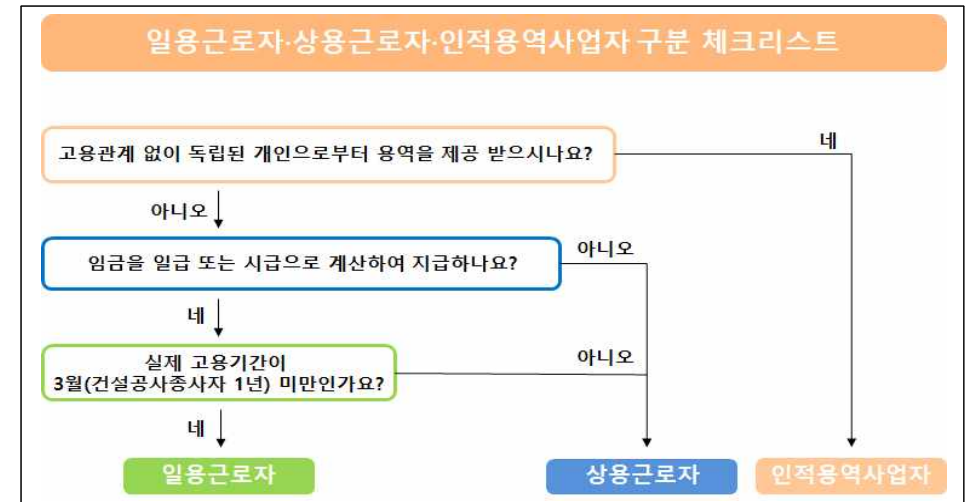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지급자)가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2부를 작성하여 "지급자보관용"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보관하고, "소득자보관용"은 일용근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해당 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 2022년 12월 근무에 대한 소득을 2023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022년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적습니다.)

- 가. 일용근로자란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입니다.



2. 이 서식은 아래 순서에 따라 작성합니다.

- 가. 원천징수의무자(지급자)란의 ④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비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자 보관용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나. 외국인의 경우는 제1쪽 우측 상단에 외국인 해당 여부를 표시해야 하며, ⑧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예: 123456-50000000) 또는 여권번호(예: A1234567)를 적습니다.

- 다. ⑪ 귀속연도란은 근로를 제공받은 연도를 적습니다.

※ 예를 들면, 근로를 제공받은 연도가 2022년도인 경우 "2022"을 적습니다.

- 라. 12 지급월란은 급여를 지급한 월(해당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는 12월)에 "○"를 표시합니다.

- 마. ⑬ 근무월란은 근로를 제공받은 월을 적습니다.

- 바. ⑭ 근무일수란 ⑬ 근무월 중 근로를 제공받은 일수를 적습니다.

※ 예를 들면 2022년 3월에 10일, 4월에 15일간 근로를 제공받고, 4월에 급여를 지급한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㉑ 귀속연도	2022		⑫ 지급월 (해당월에 "○")											
			[] 1월	[] 2월	[] 3월	[O]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귀	속	⑮ 과세소득		⑯ 비과세소득		원천징수세액							
	⑬ 근무월	⑭ 근무일수					⑰ 소득세		⑱ 지방소득세					
	3	10												
	4	15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종질지80g]

작성 방법

사. ⑮ 과세소득란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월급여액의 월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과세소득란에 근로소득공제금액(1일 15만원)을 차감하여 작성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아. ⑯ 비과세소득란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 통상임금에 더하여 지급하는 비과세소득의 월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비과세소득란에 근로소득공제금액(1일 15만원)을 작성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 예를 들면, 2022년 3월에 7일간 근로를 제공받고 4월에 일당 20만원을 지급한 경우로서 비과세소득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⑪ 귀속연도	2022	⑫ 지급월 (해당월에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원천징수세액	
귀 속		⑬ 과세소득	⑭ 비과세소득	⑰ 소득세	⑱ 지방소득세
⑬ 근무월	⑭ 근무일수				
3	7	1,400,000		9,450	940

자. ⑰ 소득세란은 [(일급여액 - 근로소득공제금액(1일 15만원)) × 6%(원천징수세율)] × 45%를 적용하여 계산한 월별 합계액을 적습니다.

차. ⑲ 지방소득세란은 ⑰ 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

※ 급여액이 1일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없으므로 ⑮ 과세소득란과 ⑯ 비과세소득란만 적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계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계산하는 것이며, 그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하여 ⑮ 과세소득란과 ⑯ 비과세소득란만 적습니다(소액 부정수).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소득세) 계산 예시

○ 일용근로자에게 7일 동안 일당 20만원을 지급한 경우(비과세소득은 없음)

(1) 1일 소득세 : [(200,000원 - 150,000원) × 6%] × 45% = 1,350원

※ 약식 계산 : (200,000원 - 150,000원) × 0.027 = 1,350원

(2) 원천징수할 소득세 : 9,450원(1,350원 × 7일 = 9,450원)

(3) 지방소득세 : 940원(소득세의 10%)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월별 제출집계표]

지급자	① 상 호 (법인명)	② 성 명 (대표자)	③ 사 업 자 등록번호
	④ 주민(법인) 등록번호	⑤ 소재 지 (주 소)	
	⑥ 전화번호	⑦ 전자우편주소	

① 월별 원천징수 집계현황

⑧ 귀속연도	⑨ 지급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원천징수세액 합계		
⑩ 일용근로자수 (⑪번에 적은 칸의 개수, 단 동일인의 경우 1명으로 합계) 명	⑪ 제출자료건수 (⑫번에 적은 칸의 개수) 건	⑫ 과세소득 합계 (⑬번 합계)	⑬ 비과세소득 합계 (⑭번 합계)	⑭ 소득세 (⑮번 합계)	⑮ 지방소득세 (⑯번 합계)

② 소득자 인적사항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내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에 적은 지급명세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⑩ 번호	⑪ 성 명	⑫ 외국 인 여부	⑬ 주민등록 번호	귀 속		⑭ 과세소득	⑮ 비과세소득	원천징수세액	
	⑪ 전 화 번 호			⑯ 근무월	⑰ 근무일수			⑱ 소득세	⑲ 지방소득세
1									
2									
3									
4									
5									
6									
7									
8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또는 인)

징수의무자(지급자)

(서명)

※ 작성방법은 제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사용하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4호서식(3)]을 근로자별·월별로 합계하여 작성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㉑ 귀속연도란은 근로를 제공받은 연도를 적으며, ㉒ 지급월란은 급여를 지급한 월(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에 "○"를 표시합니다.
- ㉓ 일용근로자수(동일인을 여러번 작성한 경우 근로자 1명으로 합계)란부터 ㉔ 지방소득세란까지는 「2. 소득자 인적 사항 및 일용근로소득 내용」의 합계 사항을 적습니다.
- ㉕ 외국인 여부란은 일용근로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를 표시해야 하며(내국인일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㉖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 ㉗ 근무월란은 급여를 지급한 월에 해당하는 근무한 월(근로를 제공받은 월)을 적습니다.
㉘ 근무일수란은 ㉗ 근무월 중 근로를 제공받은 일수를 적습니다.
※ 예를 들면, 3월에 근로를 15일간 제공받고, 4월에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 지급월 4월에 "○"를 표시하고, 근무월에는 3월, 근무일수에는 15일을 적습니다.
- ㉙ 과세소득란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월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소득은 제외(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하고, 근로소득공제액(1일 15만원)을 차감하지 않고 적습니다.
- ㉚ 비과세소득란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소득의 월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㉛ 소득세란의 소득세는 [근로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6%)]×45%를 적용하여 계산한 월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일 급여액에서 1일 15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소득세) 계산방법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금액 : 1일 15만원

⇒ 일용근로자 납부세액 = [(일당 - 근로소득공제금액) × 6%] × 45%

○ 일용근로자에게 7일 동안 일당 20만원으로 지급한 경우

(1) [(200,000원 - 150,000원) × 6%] × 45% = 1,350원

※ 약식 계산 : (200,000원 - 150,000원) × 0.027 = 1,350원

(2) 원천징수할 소득세 : 9,450원(1,350원 × 7일 = 9,450원)

(3) 지방소득세 : 940원(소득세의 10%)

9. 소득세액이 소액 부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10. ㉜ 지방소득세란은 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

11.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12. 일용근로자가 많은 경우에는 이어서 제3쪽에 작성합니다.

※ 해당 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 2021년 12월 근무에 대한 소득을 2022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021년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적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귀속연도	지급월											
			-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㉑ 번호	㉒ 성명 전화 번호	㉓ 외국인 여부	㉔ 주민등록 번호	귀속		㉙ 과세소득	㉚ 비과세소득	원천징수세액	
				㉕ 근무 월	㉖ 근무 일수			㉛ 소득세	㉜ 지방소득세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 일용근로자가 많아서 제1쪽의 「㉑ 소득자 인적사항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이 서식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의무자 구분	사업장1/공적연금사업자3

징수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명(상호)	③ 대표자(성명)
	④ 법인(주인)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소득자	⑥ 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소		⑨ 임원 여부 []여 []부
	⑩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일		⑪ 2011.12.31.퇴직금

귀속연도	부터 까지	⑫ 퇴직사유	[]정년퇴직 []임원퇴직	[]정리해고 []중간정산	[]자발적 퇴직 []기타
------	----------	--------	--------------------	--------------------	--------------------

퇴직급여현황	근무처구분	중간지급등	최종	정산
	⑬ 근무처명			
	⑭ 사업자등록번호			
	⑮ 퇴직급여			
	⑯ 비과세 퇴직급여			
	⑰ 과세대상 퇴직급여(⑮-⑯)			

근속연수	구분	⑬ 입사일	⑱ 기산일	⑳ 퇴사일	㉑ 지급일	㉒ 근속월수	㉓ 제외월수	㉔ 가산월수	㉕ 증분월수	㉖ 근속연수
	중간지급 근속연수									
	최종 근속연수									
	정산 근속연수									

과세표준 계산	계산내용	금액
	㉗ 퇴직소득(⑰)	
	㉘ 근속연수공제	
	㉙ 환산급여 [(㉗-㉘)×12배/정산근속연수]	
	㉚ 환산급여별공제	
	㉛ 퇴직소득과세표준(㉙-㉚)	

퇴직소득 세액계산	계산내용	금액
	㉜ 환산산출세액(㉛×세율)	
	㉝ 퇴직소득 산출세액(㉜×정산근속연수/12배)	
	㉞ 세액공제	
	㉟ 기납부(또는 기과세이연) 세액	
	㊱ 신고대상세액(㉝-㉞-㉟)	

이연퇴직 소득세액 계산	㊲ 신고대상세액(㉟)	연금계좌 입금명세				㉡ 퇴직급여(⑰)	㉢ 이연 퇴직소득세 (㉡×㉢/㉣)	
		연금계좌취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일			㉣계좌입금금액
	㉤ 합계							

납부명세	구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 신고대상세액(㉟)				
	㉧ 이연퇴직소득세(㉢)				
	㉨ 차감환급금(㉦-㉧)				

위의 원천징수세액(퇴직소득)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1. 퇴직소득자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4항 제4호의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만 "종교관련종사자 여부"란에 여 1을 선택합니다.

2.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를 제공받은 사업장의 지위로서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업장1'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연금사업자의 경우에는 '공적연금사업자3'를 체크합니다. 연금계좌 취급자가 지급하는 퇴직소득은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이 서식을 제출합니다.

5. 징수의무자란의 ④ 법인(주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6. 소득자란의 임원 여부 ⑨에서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⑨에서 임원으로 표시하는 경우 ⑩ 2011.12.31.퇴직금 란에 해당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습니다.

7. ⑩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일란: 해당 퇴직자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인 경우만 적습니다.

8. 퇴직급여현황(⑮~⑰)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⑮ 근무처명 및 ⑮ 사업자등록번호란: 해당 퇴직자의 근무처를 적습니다. 중간지급 등란에는 현 근무처의 퇴직 전 중간지급, 퇴직금의 분할지급 또는 퇴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생한 퇴직금이 있는 경우 그 퇴직금이 발생한 근무처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나. ⑮ 퇴직급여, ⑮ 비과세퇴직급여, ⑰ 과세대상 퇴직급여란: 사용자에게 퇴직으로 지급받은 퇴직소득(임원의 경우 임원퇴직소득 한도초과금액은 제외합니다)과 퇴직소득 중 비과세퇴직소득을 적습니다.

9. 근속연수(⑬~㉖)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⑬ 입사일란: 해당 근무처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적습니다.

나. ⑱ 기산일란: 해당 근무처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적습니다. 다만, 중간지급을 받은 경우 중간지급 받은 날의 다음 날을 적습니다.

다. ⑲ 퇴사일란: 퇴직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라 퇴직한 날로 보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적습니다.

라. ㉒ 제외월수란: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서 제외된 기간의 월수를 적습니다.

마. ㉔ 가산월수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에 따른 근속연수가 입사일·퇴사일로 계산한 근속연수와 다른 경우 가산해야 하는 월수를 적습니다.

10.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㉜-㉟)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㉗ 퇴직소득란: ⑰ 과세대상 퇴직급여를 적습니다.

나. ㉙ 환산급여별공제란: 환산급여에 따라 아래의 공제액을 적습니다.

구분\환산급여	8백만원 이하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의 100%	8백만원+ (8백만원 초과분의 60%)	4천520만원+ (7천만원 초과분의 55%)	6천170만원+ (1억원 초과분의 45%)	1억5천170만원+ (3억원 초과분의 35%)

다. ㉚ 환산산출세액란: ⑰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

라. ㉜ 세액공제란: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라 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기재합니다.

11. 이연퇴직소득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액을 연금계좌에 입금(이체)하여 퇴직소득세 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작성합니다.(거주자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가. ㉡ 계좌입금액란: 과세이연계좌에 입금(이체)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징수 후 환급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과세이연계좌신고서에 입금금액으로 표기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 퇴직급여란: ⑰ 퇴직급여를 적습니다. 다만, 징수 후 환급하는 경우 퇴직급여액에서 처음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 이연퇴직소득세란: ㉡ 신고대상세액에 연금계좌 입금비율(㉢ 계좌입금금액 / ㉢ 퇴직급여)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12. 납부명세(㉦~㉨)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 신고대상세액란: 퇴직소득세액계산에서 산출된 ㉟ 신고대상세액을 적습니다.

나. ㉧ 이연퇴직소득세란: 이연퇴직소득세로 계산된 세액(㉣)을 적습니다.

다. ㉨ 차감환급금세액란: ㉦ 신고대상세액에서 ㉧ 이연퇴직소득세를 차감한 값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외국인 여부
(예, 아니오)

[illegible]

110

111

(서명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자 보관용에는 원천징수의무자(지급자)란의 ④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2.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은 아래 순서에 따라 작성합니다.

나. ⑪ 귀속연도란은 근로를 제공받은 연도를 적습니다.

다. ⑫ 지급월란은 급여를 지급한 월(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에 "○"를 표시합니다.

⑭ 근무일수란 ⑬ 근무월 중 근로를 제공받은 일수를 적습니다.

⇒ 지급월 4월에 "○"를 표시하고, 근무월에는 3월, 근무일수에는 15일을 적습니다.

⑬ 비과세소득란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소득의 월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바. ⑮ 지방소득세란은 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 계산은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계산하는 것이며, 그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하여 ⑮ 과세소득률과 ⑯ 비과세소득률만 적습니다(소득 부정수).

$$\Rightarrow \text{일용근로자 납부세액} = [(\text{일당} - \text{근로소득공제금액}) \times 6\%] \times 45\%$$
$$(1) [(200,000\text{원} - 150,000\text{원}) \times 6\%] \times 45\% = 1,350\text{원}$$

(2) 원천징수할 소득세 : 9,450원(1,350원 × 7일 = 9,450원)

(3) 지방소득세 : 940원(소득세의 10%)

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명세(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 소득자보관용) 자료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발급·제출해야 합니다.

(예: 2021년 12월 근무에 대한 소득을 2022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021년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적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제출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월별 제출집계표]

지 급 자	① 상 호 (법인명)	② 성 명 (대표자)	③ 사 업 자 등록번호
	④ 주민(법인) 등록번호	⑤ 소재 지 (주 소)	
	⑥ 전화번호	⑦ 전자우편주소	

① 월별 원천징수 집계현황

⑧ 귀속연도		⑨ 지급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⑩ 일용근로자수 (⑪번에 적은 칸의 개수, 단 동일인의 경우 1명으로 합계) 명		⑪ 제출자료건수 (⑫번에 적은 칸의 개수) 건		⑫ 과세소득 합계 (⑬번 합계)		⑬ 비과세소득 합계 (⑭번 합계)		원천징수세액 합계	
						⑭ 소득세 (⑮번 합계)		⑮ 지방소득세 (⑯번 합계)	

② 소득자 인적사항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내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에 적은 지급명세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⑯ 번 호	⑰ 성 명 ⑱ 전 화 번 호	⑲ 외국 인 여부	⑳ 주민등록 번호	귀속		㉓ 과세소득	㉔ 비과세소득	원천징수세액	
				㉑ 근무월	㉒ 근무일수			㉕ 소득세	㉖ 지방소득세
1									
2									
3									
4									
5									
6									
7									
8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또는 인)

징수의무자(지급자)

(서명

※ 작성방법은 제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사용하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4호서식(3)]를 근로자별·월별로 함께하여 작성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2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⑧ 귀속연도란은 근로를 제공받은 연도를 적으며, ⑨ 지급월란은 급여를 지급한 월(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에 "○"를 표시합니다.
- ⑩ 일용근로자수(동일인을 여러번 작성한 경우 근로자 1명으로 합계)란부터 ⑯ 지방소득세란까지는 「2. 소득자 인적 사항 및 일용근로소득 내용」의 합계 사항을 적습니다.
- ⑰ 외국인 여부란은 일용근로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를 표시해야 하며(내국인일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⑳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 ㉑ 근무월란은 급여를 지급한 월에 해당하는 근무한 월(근로를 제공받은 월)을 적습니다.
㉒ 근무일수란은 ㉑ 근무월 중 근로를 제공받은 일수를 적습니다.
※ 예를 들면, 3월에 근로를 15일간 제공받고, 4월에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 지급월 4월에 "○"를 표시하고, 근무월에는 3월, 근무일수에는 15일을 적습니다.
- ㉓ 과세소득란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월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소득은 제외(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통해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하고, 근로소득공제액(1일 15만원)을 차감하지 않고 적습니다.
- ㉔ 비과세소득란은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소득의 월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㉕ 소득세란의 소득세는 [근로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6%)]×45%를 적용하여 계산한 월별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일 급여액에서 1일 15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합계입니다.

※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소득세) 계산방법

$$\begin{aligned} & \text{※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금액 : 1일 15만원} \\ & \Rightarrow \text{일용근로자 납부세액} = [(\text{일당} - \text{근로소득공제금액}) \times 6\%] \times 45\% \end{aligned}$$

○ 일용근로자에게 7일 동안 일당 20만원으로 지급한 경우

$$(1) [(200,000\text{원} - 150,000\text{원}) \times 6\%] \times 45\% = 1,350\text{원}$$

$$\text{※ 약식 계산 : } (200,000\text{원} - 150,000\text{원}) \times 0.027 = 1,350\text{원}$$

$$(2) \text{원천징수할 소득세 : } 9,450\text{원}(1,350\text{원} \times 7\text{일} = 9,450\text{원})$$

$$(3) \text{지방소득세 : } 940\text{원}(\text{소득세의 } 10\%)$$

- 소득세액이 소액 부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㉖ 지방소득세란은 소득세의 10%를 적습니다.
-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 일용근로자가 많은 경우에는 이어서 제3쪽에 작성합니다.

※ 해당 연도 귀속 일용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 : 2021년 12월 근무에 대한 소득을 2022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021년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사업자등록번호										귀속연도	지급월
			-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⑮ 번호	⑮ 성명 전화 번호	⑮ 외국인 여부	⑮ 주민등록 번호	귀속		⑮ 과세소득	⑮ 비과세소득	원천징수세액	
				⑮ 근무 월	⑮ 근무 일수			⑮ 소득세	⑮ 지방소득세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일용근로자가 많아서 제1쪽의 「② 소득자 인적사항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이 서식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연금소득 지 급 명 세 서(연말정산용)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 법인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② 대표자 ④ 법인등록번호			
소득자	⑥ 성명 ⑧ 주소			⑦ 주민등록번호			
9 귀속연도		부터		까지		⑩ 감면기간	
연금지급내역		⑪ 총연금수령액		⑫ 연금제외소득 (2001.12.31.이전분)		⑬ 장애인연금 비과세연금	
						⑭ 총연금액(⑪-⑫-⑬)	
정 산 명 세							
⑮ 총연금액(=⑭)				⑯ 종합소득 과세표준(⑰-⑱)			
⑯ 연금소득공제				⑰ 산출세액			
				⑱ 「소득세법」			
				⑲ 「조세특례제한법」			
⑰ 연금소득금액(⑮-⑯)				⑳ 감면세액 계			
종합 소득 공제	기본 공제	⑰ 본인			세액 공제	㉑ 자녀 공제대상자녀 (명)	
		⑰ 배우자				출생·입양자 (명)	
		⑰ 부양가족(명)					
		⑰ 경로우대(명)				㉒ 표준세액공제	
		⑰ 장애인(명)				㉓ 외국납부	
	추가 공제	⑰ 부녀자					㉔ 세액공제 계
⑰ 한부모							
㉕ 소득공제 계							
세 액 명 세	구 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㉕ 결정세액						계
	㉕ 기납부세액						
	㉕ 차감징수세액						
㉕ 부양가족공제자 명세(해당 소득자의 기본공제 또는 추가공제를 받는 자를 적으며, 본인은 적지 않습니다)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관계코드: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자녀·입양자)=4, 직계비속(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하되 코드 4 제외) = 5, 형제자매=6, 수급자=7(코드1~6제외), 위탁아동=8 *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정수(보고)의무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143조의4에 따라 연금소득세액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 소득자 보관용에는 징수의무자란의 ④ 법인등록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㉕ 차감징수세액이 소액 부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0"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앞쪽)

관리번호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배우자·승계 여부	[]여 []부
		의료비연금계좌	[]여 []부

징수 의무자	① 사업등록번호	② 법인명(상호)	③ 대표자(성명)
	④ 법인(주인)등록번호	⑤ 소재지(주소)	
소득자	⑥ 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 주소		

계좌 명세	⑨ 계좌번호	⑩ 연금수령개시신청일	⑪ 연금계좌평가액
	⑫ 연금수령 기산연도	⑬ 연금계좌 가입시기	⑭ 연금 수령연차
		2013.3.1. 전[] 이후[]	⑮ 연금수령한도 ([⑩]/(11-⑭))×120%

소득 명세	⑰ 귀속연월	⑱ 퇴직분					
	인출 분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	⑳ 부득이한 사유		
						세액이연분	전환분
			㉑ 일반연금				
			㉒ 의료비인출				
		㉓ 부득이한 사유					
㉔ 연금외수령							

세액 명세	구분			지급액		세액
	소득	원천	세율			
	㉕ 과세제외금액					
	연금소득	㉖ 이연퇴직소득	세액이연분			
			전환분			
		㉗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		3%		
				4%		
			5%			
	퇴직소득	㉘ 이연퇴직소득	세액이연분			
			전환분			
㉙ 퇴직분						
기타소득	㉚ 연금외수령	15%				

세액 명세	구분		지급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세액계
	소득	원천	세율			
	㉕ 과세제외금액					
	연금소득	㉖ 이연퇴직소득	세액이연분			
			전환분			
		㉗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		3%		
				4%		
			5%			
	퇴직소득	㉘ 이연퇴직소득	세액이연분			
			전환분			
㉙ 퇴직분						
기타소득	㉚ 연금외수령	15%				

납부 명세	구분		지급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세액계
	㉛ 연금소득	종합과세				
		무조건분리과세				
	㉜ 퇴직소득					
㉝ 기타소득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부표 작성 여부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㉞ 퇴직	㉟ 세액이연 퇴직소득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 방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2. 배우자·승계 여부는 승계를 했으면 '여', 승계하지 않았으면 '부'에 "√"표를 하고, 의료비연금계좌란은 의료비연금계좌로 지정되었으면 '여', 지정되지 않았으면 '부'에 "√"표를 합니다.

3. 징수의무자란의 ④ 법인(주민)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4. 계좌명세란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⑩ 연금수령개시신청일란: 연금수령을 개시하기로 사전약정하였고 별도로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전약정한 날을 적습니다.

나. ⑪ 연금계좌평가액란: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수령개시신청한 연금계좌의 경우 ⑩ 연금수령개시신청일 현재 평가액을 적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연금계좌의 과세기간개시일 현재 평가액을 적습니다.

다. ⑫ 연금수령기산연도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적습니다.

라. ⑬ 연금계좌 가입시기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연금계좌 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시기가 2013년 1월 1일 전인 경우 2013.1.1. 전[]란에, 2013년 1월 1일 이후이고 2013년 3월 1일 전인 경우 2013. 3. 1. 전[]란에, 2013년 3월 1일 이후인 경우 이후[]란에 "√"표를 합니다.

마. ⑭ 연금 수령연차란: 해당 과세연도에서 연금수령기산연도를 차감한 연차에 1(다만,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경우 6)을 더하여 산출합니다.

바. ⑮ 연금수령한도란: ⑪ 연금계좌평가액/(11-⑭ 연금수령연차)×120%을 적습니다.(⑭ 연금수령연차가 11 이상인 경우에는 "0"으로 기재합니다.)

사. ⑯ 연금 실제 수령연차란: ⑭ 연금 수령연차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7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 실제 수령연차를 적습니다.

5. 소득명세 중 ⑱ 퇴직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제2호의 퇴직연금계좌에서 지급되는 「소득세법」 제22조제1항의 퇴직소득을 기재합니다.

6. 소득명세 중 인출분의 작성방법은 수령 형태, 소득 원천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란에 기재합니다.

가. 수령 형태의 구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인출액은 ㉒ 부득이한사유 란에 적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인출액은 ㉑ 의료비인출 란에 적으며,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과 의료비인출 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출액은 ⑩ 일반연금란에 적으며, 그 외의 인출액은 ㉒ 연금외수령란에 적습니다.

나. 소득원천의 구분: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의 소득원천에 따라 해당 란에 기재하며, 이연퇴직소득 중 전환분은 「소득세법」 제146조의2에 따라 소득이연 퇴직소득이 세액이연 퇴직소득으로 전환된 금액을 적습니다.

7. 세액명세의 세율 및 지급액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고 각 세액란은 각 세율과 해당하는 지급액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가. ㉕ 과세제외금액란: 소득명세의 연금수령 및 연금외수령한 과세제외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나. 연금소득의 ㉖ 이연퇴직소득의 세액이연분(전환분)란: 세율 란은 부표㉞의 ⑤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세율에 70%(연금 실제 수령 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60%)를 곱한 수를 % 단위로 적고 지급액 란에 소득명세의 이연퇴직소득의 세액이연분(전환분) 중 연금수령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퇴직소득 세액이연분의 입금으로 인해 세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지급시 적용된 각 세율을 지급된 금액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적습니다.

다. 연금소득의 ㉗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란: 가입자의 나이에 따른 세율에 해당하는 지급액 란은 소득명세의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의 연금수령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라. 퇴직소득의 ㉘ 이연퇴직소득의 세액이연분(전환분)란: 세율 란은 부표㉟의 ⑤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세율을 % 단위로 적고 지급액 란에 소득명세의 이연퇴직소득의 세액이연분(전환분)의 연금외수령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퇴직소득 세액이연분의 입금으로 인해 세율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지급시 적용된 각 세율을 지급된 금액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적습니다.

마. 퇴직소득의 ㉙ 퇴직분란: 지급액 란은 소득명세의 ⑱ 퇴직분의 금액을 적고 세액 란은 부표㉟의 ㉟자감원천징수세액 란의 세액을 적습니다.

바. 기타소득: 지급액 란은 소득명세의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의 연금외수령 금액을 적습니다.

8. 납부 명세는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가. 지급액 란: ㉛ 연금소득의 종합과세는 소득명세의 연금수령의 일반연금이면서 세액공제분 및 운용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고, 연금소득의 무조건 분리과세 란은 세액명세의 연금소득 지급액 합계에서 종합과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으며, ㉜ 퇴직소득, ㉝ 기타소득은 세액명세의 소득별 지급액 합계를 각각 적습니다.

나. 소득세 란은 세액 명세의 소득별 세액의 합계를 각각 적고, 지방세 란은 해당하는 소득세에 10%를 곱한 금액을 적으며, 세액계 란은 소득세와 해당하는 지방소득세의 합계를 적습니다.

9. 부표 ㉞, ㉟은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사업자등록번호 []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단위: 원)

❶ 소득원천별 잔액관리

소득원천			① 과세제외금액	② 소득이연 전환분	③ 세액이연 퇴직소득	④ 세액공제분 (소득공제분)	⑤ 운용수익
⑥ 과거 증감 누계	증가	이체					
		입금					
	감소	이체					
		인출					
	전기말잔액						
⑦ 당기 증감 누계	증가	이체					
		입금					
	감소	이체					
		인출					
	당기잔액						

작 성 방 법

❶ 소득원천별 잔액관리

- ① 과세제외금액 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적습니다.
- ② 소득이연 전환분란: 「소득세법」 제146조의 2에 따라 소득이연 퇴직소득이 세액이연 퇴직소득으로 전환된 금액을 적으며, 2015년 귀속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작성 시에는 ⑥ 과거 증감 누계의 입금란과 전기말잔액란에 적습니다.
- ③ 세액이연 퇴직소득란: 「소득세법」 제146조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 정수를 이연한 금액을 적습니다.
- ④ 세액공제분(소득공제분)은 가입자가 납입하여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2013년 1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2항 및 제2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가입자의 부담으로 납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은 제외)입니다.
- ⑥ 과거 증감 누계의 증가 및 감소는 연금계좌 개설일부터 해당 연도 전까지의 이체, 입금 및 인출로 인한 증가액 및 감소액을 합계액으로 적고, 전기 말잔액은 그 증가액에서 그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⑤ 운용수익의 전기말잔액은 직전 연도 말 기준의 연금계좌평가액에서 ①~④의 전기말잔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증가 및 감소는 해당 연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마지막 인출일까지 이체, 입금 및 인출로 인한 증가액 및 감소액을 합계액으로 적고, 당기잔액은 전기말잔액에서 그 증가액을 더하고 그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⑤ 운용수익의 당기잔액은 마지막 인출일의 인출 후의 연금계좌평가액에서 ①~⑤의 당기잔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해당 연도 납입액의 경우는 ① 과세제외금액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 직전 연도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 이내의 금액은 ① 과세제외금액의 ⑥ 과거 증감 누계의 인출란과 ④ 세액공제분(소득공제분)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과세기간 개시일에 과세제외금액을 세액공제분으로 전환)
- 연금수령개시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입액은 연금수령개시신청일 이후에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할 때, 해당 연도 납입 금액 중 세액공제한도 이내의 금액은 ① 과세제외금액의 ⑦ 당기증감누계의 인출란과 ④ 세액공제분(소득공제분)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연금수령개시신청일에 과세제외금액을 세액공제분으로 전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에 따라 과세제외금액을 해당 연도 납입액으로 전환한 경우 ① 과세제외금액의 ⑦ 당기 증감 누계의 인출란과 ① 과세제외금액의 ⑦ 당기증감누계의 입금란에 합산하여 작성합니다.(초과납입금 → 해당 연도 납입액)

※ DC계좌에 과세제외금액, 이연퇴직소득, 세액공제 받은 또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금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❷ 연금계좌 가입자의 퇴직으로 인한 연금외지급 명세

퇴직 급여 현황	근 무 처 구 분		중간지급 등		최종		정산				
	① 근무처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퇴직급여										
근속 연수	구 분		④ 입사일	⑤ 기산일	⑥ 퇴사일	⑦ 지급일	⑧ 근속월수	⑨ 제외월수	⑩ 가산월수	⑪ 중복월수	⑫ 근속연수
	중간지급 근속연수										
	최종 근속연수										
	정산 근속연수										
과세표준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⑬ 정산퇴직소득(③)										
	⑭ 근속연수공제										
	⑮ 환산급여 [(⑬-⑭) × 12배/정산근속연수]										
	⑯ 환산급여별공제										
	⑰ 퇴직소득과세표준(⑮-⑯)										
퇴직소득 세액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⑱ 환산산출세액(⑰× 세율)										
	⑲ 퇴직소득 산출세액(⑱× 정산근속연수/12배)										
	㉑ 가납부(또는 기과세이연) 세액										
	㉒ 신고대상세액										
	㉓ 이연 퇴직소득세										
이연 세액	차감원천징수세액(㉒-㉓)										
	연금계좌취급자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입금일	계좌입금금액	퇴직급여	이연퇴직소득세				
	㉔ 합 계										

작성방법

❷ 연금계좌 가입자의 퇴직으로 인한 연금외지급 명세

별지 제24호서식(2)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㉔ 세액이연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계산

		① 이연퇴직소득 증가액	② 이연퇴직소득세 증가액	③ 이연퇴직소득	④ 이연퇴직소득세	⑤ 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세율	⑥ 이연퇴직소득 감소액	⑦ 이연퇴직소득세 감소액	⑧ 이연퇴직소득 전액	⑨ 이연퇴직소득세 전액
전환분	증가 없음									
	1									
	2									
	3									
	4									

작성 방법

㉔ 세액이연된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 계산

1. 세액이연분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작성할 때는 '이연퇴직소득 증가 없음' 행에만 작성하며, 아래의 작성방법에서 해당 연도에 이연퇴직소득의 증가가 없는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2. ① 이연퇴직소득 증가액, ② 이연퇴직소득세 증가액 및 이연퇴직소득 증가 회차는 해당 연도에 이연퇴직소득이 증가되는 경우에만 적으며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① 이연퇴직소득 증가액, ② 이연퇴직소득세 증가액은 입금 및 이체되는 이연퇴직소득금액과 해당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적습니다.
나. 이연퇴직소득이 1회차 증가한 이후 2회차 증가 전까지 지급된 이연퇴직소득 합계액에 대해서 ⑤~⑨에 해당하는 금액은 1회차 행에 적고, 2회차, 3회차 등도 같은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3. ③ 이연퇴직소득란과 ④ 이연퇴직소득세란: 해당 연도에 이연퇴직소득의 입금이 없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0시의 이연퇴직소득 전액과 이연퇴직소득세 전액을 적고, 이연퇴직소득의 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작전 이연퇴직소득 입금 회차와 ⑥ 이연퇴직소득 전액과 ⑧ 이연퇴직소득세 전액에 각각 해당 입금 회차와 ① 이연퇴직소득 증가액과 ② 이연퇴직소득세 증가액을 더한 값을 적습니다.
4. ⑤ 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세율란은 같은 행의 ④ 이연퇴직소득세를 ③ 이연퇴직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 단위로 적습니다.
5. ⑥ 이연퇴직소득 감소액란은 연금계좌에서 이체 및 인출된 이연퇴직소득 감소액을 적습니다.
6. ⑦ 이연퇴직소득세 감소액란은 ⑥ 이연퇴직소득 감소액에 ⑤ 이연퇴직소득 연금외수령 세율을 곱한 값을 적습니다.
7. ⑧ 이연퇴직소득 전액은 ③ 이연퇴직소득에서 ⑥ 이연퇴직소득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⑨ 이연퇴직소득세 전액은 ④ 이연퇴직소득세에서 ⑦ 이연퇴직소득세 감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7)] <개정 2014.3.14>

관리번호 귀속연도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유가증권양도소득 지 급 명 세 서 ([]소득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수 의무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법인명 또는 상호						③ 성명			
	④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⑤ 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 성명 (법 인 명)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 주 소															
⑨ 구 분	1. 상장주식 2. 비상장주식 3. 채권 4. 기타						⑩ 소득자구분코드			⑪ 계좌번호			⑫ 실명구분			
유가증권 발행법인		⑬사업자등록번호						⑭ 법인명								
⑮ 양도일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⑯ 양도수량	⑰ 양도가액	⑱ 취득가액	⑲ 양도 차익	⑳ 세율	㉑ 소 득 세	㉒ 법 인 세	㉓ 지방소득세	㉔ 농어촌특별 세	㉕ 계				
㉖세액감면 및 제한세를 근거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귀하																
※ 1. 이 서식은 비거주자가 유가증권양도소득 및 부동산주식등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작성하며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2. 소득자 보관용에는 징수의무자란의 ④ 주민(법인)등록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고, 별지 제30호서식(2)의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세액이 소액 부정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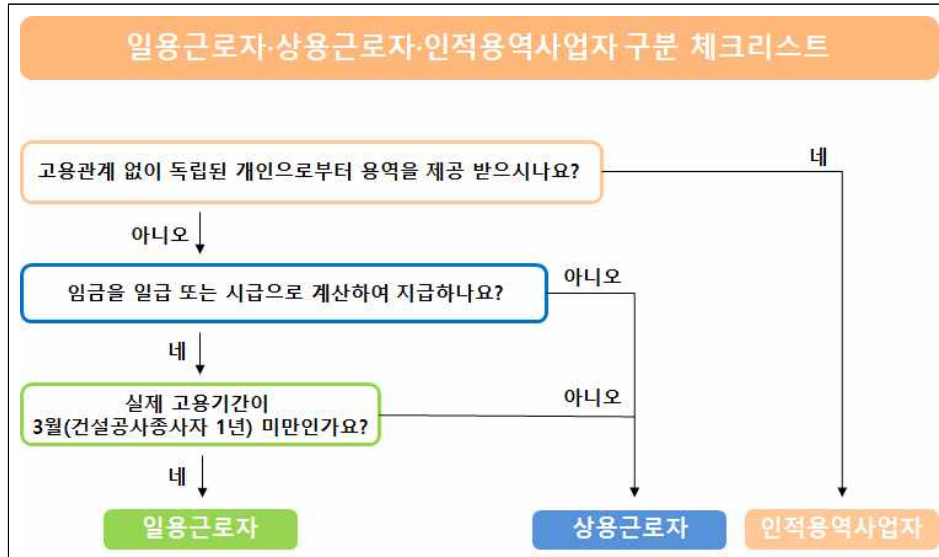
1. 이 식은 비거주자(외국인)을 포함한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다만, 유가증권양도소득 및 부동산소득 등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7)에 작성합니다.
2. 거주자코드 거주지국코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거주자가 말레이시아나 라부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3. ③, ⑦ 주민(사업자)등록번호는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4. ⑭ 양도가액란은 실시거래가액을 적으며, ⑮ 필요경비란은 양도자의 원래 설치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인터넷을 이용한 홈택스(www.hometax.go.kr), 스마트폰 손택스(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1. 이 서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이 서식은 아래 순서에 따라 작성합니다.

가. ⑥ 귀속연도란 근로를 제공받은 연도를 적습니다.

나. ⑦ 지급월란은 지급일이 속하는 월에 [○]를 표시합니다.

- 12월 지급분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귀속연도의 근로소득을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도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예: 2024년 12월 근무에 대한 소득을 2025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024년 12월 지급분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2025년 1월 지급분 제출시에는 제외)

다. ⑤ 총 지급액란은 소득자별 ⑭ 급여 등 및 ⑮ 인정상여의 합계를 모두 더해서 적습니다.

라. ⑩ 외국인 여부란은 소득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를 표시해야 하며 내국인일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마. ⑪ 비거주자 여부란은 소득자가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를 표시해야 하며 거주자일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바. ⑫ 퇴사일란은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을 월일로 적습니다.(예: 5월 20일 퇴사한 경우 05.20.로 적습니다)

사. ⑬ 근무기간은 월일로 적습니다.(예: 01.01. - 01.31.)

아. ⑭ 급여 등란에는 근로소득(식사대 등 비과세소득 제외)에서 ⑮ 인정상여를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자. ⑮ 인정상여란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적습니다.

- 지급월의 근로소득이 근무기간 한달 이상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경우(여러달 근무기간의 근로소득을 한 월에 지급받는 경우) ⑬ 근무기간과 ⑭ 급여 등 및 ⑮ 인정상여를 월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예 : 03.01. - 04.30. 두달 근무기간의 근로소득을 5월에 지급받는 경우, ⑦ 지급월란은 5월에 [○]를 표시하고 ⑬ 근무기간 03.01. - 03.31. ⑭ 급여 등 및 ⑮ 인정상여를 적고 ⑬ 근무기간 04.01. - 04.30. ⑭ 급여 등 및 ⑮ 인정상여를 월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간 이 지 급 명 세 서 부 표 (근로소득) ([]지급자 보관용 []지급자 제출용)

⑥ 귀속연도		⑦ 지급월 (해당월에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② 소득자 인적사항 및 근로소득 내용 (사업자등록번호 :)

일련 번호	⑧ 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외국인 여부 (외국인 "○")	⑪ 비거주자 여부 (비거주자 "○")	⑫ 퇴사일	⑬ 근무기간	⑭ 급여 등	⑮ 인정상여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 소득자가 많아서 제1쪽의 「② 소득자 인적사항 및 근로소득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이 서식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간 이 지 급 명 세 서
(거 주 자 의 사 업 소 득)

([] 지 급 자 보 관 용 [] 지 급 자 제 출 용)

① 지급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 법인명 (상호, 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③ 소재지 (주 소)	④ 소득인원	⑤ 총지급액 (⑫번 합계)
⑥ 지급연월	년	월	⑦ 귀속연도	년

② 소득자 인적사항 및 월별 소득내용

일련 번호	⑧ 귀속월	⑨ 업종 구분	⑩ 소득자 성명(상호)	⑪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⑫ 외국인 여부 (외국인 "○")	⑬ 지급액	⑭ 세율	⑮ 소득세	⑯ 지방 소득세	⑰ 계 (⑮+⑯)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지급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급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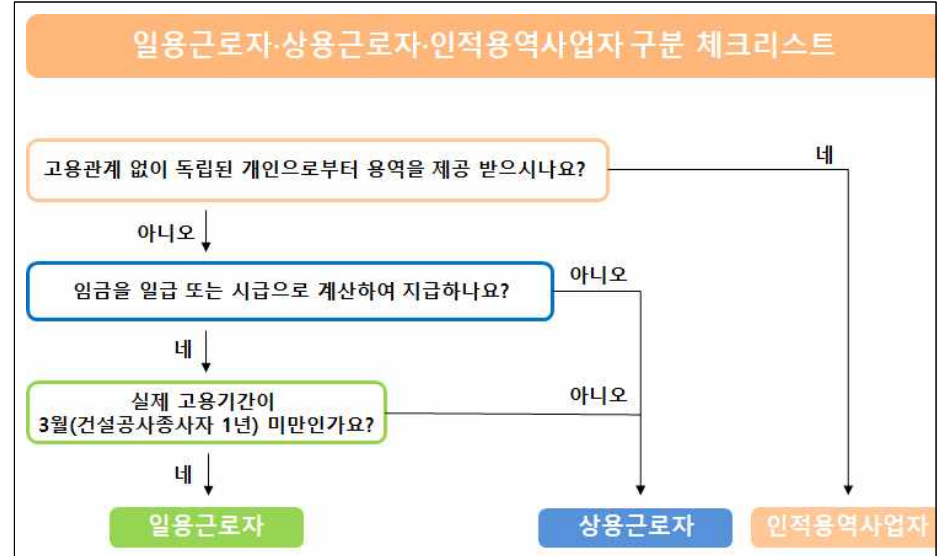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서식작성에 관한 설명은 뒷면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에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 포함)을 지급한 경우에 작성합니다.
 - 비거주자(국내에 주소가 없고 183일 미만 거소를 둔 개인)인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지급한 소득은 작성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예: 식당주방보조원, 시간제 편의점근무자, 건설노동자 등)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고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합니다.(아래 체크리스트 참조)



- 지급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이 서식은 아래 순서에 따라 작성합니다.
 - 가. ⑥ 지급연월란은 소득을 지급한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 나. ⑦ 귀속연도란과 ⑧귀속월란은 용역을 제공받은 연도와 월을 적습니다.
 - ※ 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의 경우, 해당 귀속연도의 사업소득을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경우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 2022년 12월 근무에 대한 소득을 2023년 1월에 지급한 경우 2022년 12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2023년 1월 지급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에는 제외)
 - 다. ⑨ 업종구분란은 소득자의 업종에 해당하는 다음 페이지(4쪽 중 제3쪽)의 업종코드번호를 적습니다.
 - 라. ⑩~⑰란은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가 병의원(851101)인 경우에만 상호,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 마. ⑫ 외국인 여부란은 소득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를 표시해야 하며 내국인일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 바. ⑬ 지급액란에는 소득자를 기준으로 해당 월에 지급한 금액을 적습니다.
[건별 소액부징수(⑮ 소득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되는 지급액도 적어 제출합니다.]
 - ※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해 수당 환수액이 있는 경우 환수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을 적습니다.
(예: 해당 월의 수당이 100만원이나 전월 계약해지로 인한 환수액 5만원을 차감한 후 95만원을 지급한 경우, ⑮ 지급액란에는 100만원을 적습니다.)
 - 자. ⑭ 세율란에는 3%를 적습니다. 다만, 직업운동가(940904) 중 프로스포츠 구단과의 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외국인 직업 운동가는 20%, 봉사료 수취자(940905)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에 해당하는 봉사료 수입금액은 5%를 적습니다.
- 이 서식은 인터넷을 이용한 홈택스(www.hometax.go.kr), 스마트폰 손택스(앱)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 업종코드번호

종목	업종 코드	적용범위	종목	업종 코드	적용범위
가수	940304	가수	자문·고문	940600	자문, 감독, 지도료, 교정, 고증, 필경, 타자 등
성악가 등	940305	성악가, 국악인, 무용가, 고전음악연주가, 악사, 영화감독, 연출가	바둑기사	940901	바둑기사
작곡가	940301	작곡작사가, 편곡가, 각색영화편집	꽃꽂이교사	940902	꽃꽂이, 무용, 음악, 사교댄스 및 요리교사
저술가/작가	940100	학술문예에 관한 번역수입금액 포함	학원강사	940903	학원강사, 강사, 과외교습자, 제단사
화가관련 예술가	940200	회화, 서예가, 조각가, 만화가, 삽화가, 도예가	학습지 방문강사	940920	학습지 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내용 지도
배우	940302	탤런트, 성우, MC, 코미디언, 개그맨, 단담가	교육교구 방문강사	940921	유아/아동에게 학습지가 아닌 교재/교구를 활용지도
모델	940303	탤런트, 배우 등의 광고모델수입 포함	방과후강사	940925	학교 정기수업 외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총사
연예보조	940500	연예보조출연자, 조명, 촬영, 장치, 녹음, 분장 등	대리운전	940913	대리운전용역을 직접 제공
1인미디어 콘텐츠창작자	940306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퀵서비스	940918	퀵서비스배달원, 배달대행업체배달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940926	소프트웨어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	심부름용역	940917	심부름센터, 말벗서비스
기타 모집수당	940911	증권매입권유, 저축권장 분양알선, 모집알선, 채권회수수당	물품운반	940919	의류(직물)운반, 이삿짐운반, 짐운반원
대출모집인	940923	대출관련 업무수행 (금융회사, 대출모집법인)	캐디	940914	골프장 경기자의 보조용역수행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940924	신용카드발급 관련 업무수행	직업운동가	940904	운동지도가, 역사(심판포함), 경륜·경정선수, 기수, 경기기록원, 감독 등 포함
음료배달	940907	우유배달판매, 요구르트배달판매	보험설계사	940906	보험가입자의 모집 등 활동
방문판매원	940908	서적외판원, 학습자·화장품·정수기·자동차 등 방문판매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940922	가정/사무실 등 방문하여 대여제품의 정기 점검활동
중고자동차 판매원	940929	중고자동차의 매입과 알선 및 판매	관광통역 안내사	940927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내관광 안내
다단계판매	940910	다단계 판매원의 우원수당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940928	어린이(13세미만) 통학버스를 운전
간병인	940912	개인간병, 방문간호, 파출간병인서비스 등	봉사료수취자	940905	유형접객원, 댄서
목욕관리사	940915	목욕관리사	병의원	851101	요양병원, 정신병원, 병원급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행사도우미	940916	상품 및 시설의 장점, 기능 등 홍보	기타자영업	940909	조율사, 전기가스검침원 등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업종

※ 기타자영업 코드(940909)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않고 그 실적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위 표에서 기타자영업을 제외한 39개 업종코드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지 않는 업종[예: 컴퓨터 프로그래머(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제외), 전기·가스검침원 등]인 경우 적습니다.

※ 업종코드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우 소득자의 소득세가 과다 계산되거나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간 이 지 급 명 세 서 부 표

(거 주 자 의 사 업 소 득)

([]지 급 자 보 관 용 []지 급 자 제 출 용)

⑥ 지급연월		년		월		⑦ 귀속연도		년		
② 소득자 인적사항 및 월별 소득내용 (사업자등록번호:)										
일련 번호	⑧ 귀속월	⑨ 업종 구분	⑩ 소득자 성명(상호)	⑪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⑫ 외국인 여부 (외국인 “U”)	⑬ 지급액	⑭ 세율	⑮ 소득세	⑯ 지 방 소득세	⑰ 계 (⑮+⑯)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소득자가 많아서 제1쪽의 「② 소득자 인적사항 및 월별 소득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이 서식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간 이 지 급 명 세 서

(거 주 자 의 기 타 소 득)

([] 지 급 자 보 관 용 [] 지 급 자 제 출 용)

① 지급자 인적사항 및 지급내용 합계사항

① 상호 (법인명, 성명)	②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③ 소재지 (주 소)	④ 소득인원	⑤ 총지급액 (⑭번 합계)
⑥ 귀속연도		⑦ 지급월 (해당월에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② 소득자 인적사항 및 기타소득 내용

일련 번호	⑧ 귀속월	⑨ 소득 구분	⑩ 소득자 성명(상호)	⑪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⑫ 외국인 여부 (외국인 "○")	⑬ 지급 건수	⑭ 지급액	⑮ 필요 경비	⑯ 소득 금액	⑰ 세율	⑱ 소득세	⑲ 지방 소득세	⑳ 계 (⑬+⑲)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지급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지급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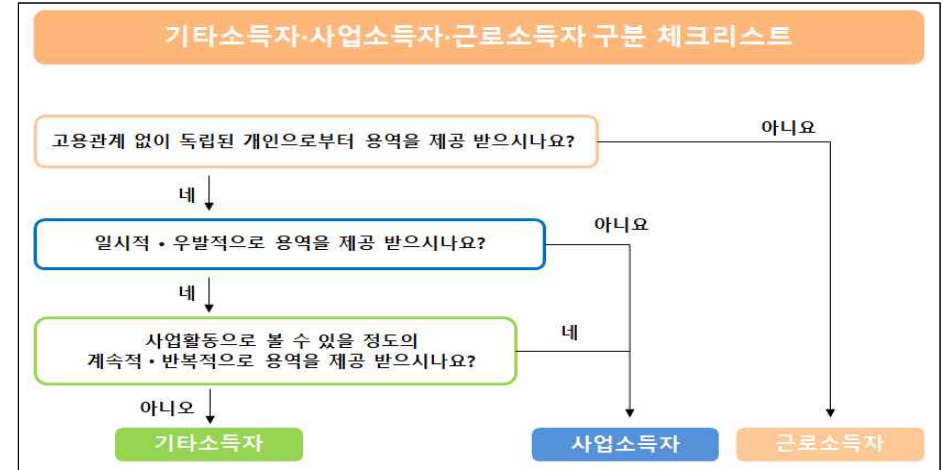
※ 서식작성에 관한 설명은 뒷면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인터넷을 이용한 홈택스(www.hometax.go.kr), 스마트폰 손택스(앱)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에게 제21조제1항제19호의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21호에 따라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영리목적의 독립적이고 계속·반복적 소득(예: 학원강사, 전문 컨설턴트)에 대해서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고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작성합니다.



- 지급자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이 서식은 아래 순서에 따라 작성합니다.
 - ⑥ 귀속연도란은 용역을 제공받은 연도를 적습니다.
 - ⑦ 지급월란은 대가를 지급한 월을 ⑧ 귀속월란은 용역을 제공받은 월을 적습니다.
 - ⑨ 소득구분란은 아래의 소득구분표에서 해당하는 코드번호를 적습니다.

코드	소득구분
7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자문료 및 고문료를 제외하며, 이하 "강연료등"이라 함)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대학이 자체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 포함)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79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자문 또는 고문 활동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하 "자문료등"이라 함)

- ⑩~⑪란은 소득자의 성명(상호), 주민(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⑫ 외국인 여부란은 소득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를 표시해야 하며 내국인일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 ⑭ 지급액란에는 소득자를 기준으로 해당 월에 지급한 금액을 적습니다.
[건별 소액부정수(⑮ 소득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되는 지급액도 적어 제출합니다.]
- ⑮ 필요경비란에는 ⑭지급액의 100분의 60을 적습니다. 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100분의 60의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하여 적습니다.
- ⑯ 소득금액란은 ⑭ 지급액에서 ⑮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 ⑰ 세율란에는 20%를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간 이 지 급 명 세 서 부 표
(거 주 자 의 기 타 소 득)
([] 지 급 자 보 관 용 [] 지 급 자 제 출 용)

⑥ 귀속연도		⑦ 지급월 (해당월에 "○")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	---

㉔ 소득자 인적사항 및 기타소득 내용 (사업자등록번호 :)													
일련 번호	⑧ 귀속월	⑨ 소득 구분	⑩ 소득자 성명(상호)	⑪ 주·인(사업자) 등록번호	⑫ 외국인 여부 (외국인 "○")	⑬ 지급 건수	⑭ 지급액	⑮ 필요 경비	⑯ 소득 금액	⑰ 세율	⑱ 소득세	⑲ 지방 소득세	⑳ 계 (⑯+⑱)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 소득자가 많아서 제1쪽의 「㉔ 소득자 인적사항 및 월별 소득내용」 란이 부족한 경우 이 서식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1)] <개정 2014.3.14>

(3쪽 중 제1쪽)

① 귀속연도		소 득 자 별 근 로 소 득 원 천 징 수 부													
징수의무자	② 법 인 명(상호)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근무처															
소 득 자	⑤ 성 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입사일 퇴사일						
	⑧ 내·외국인 구분 내·국인1/외·국인9				⑨ 국적				(국적코드 :)						
	⑩ 공제대상가족의 수(본인·배우자를 각각 1명으로 봄) 명														
	⑪ 20세 이하 자녀의 수 명														
	⑫ 감면 적용 여부				여 1, 부 2				⑬ 감면규정				⑭ 감면기간 ~		
1. 근 로 소 득 지 급 명 세															
월별	⑮ 지급 연월	1. 총 급 여								2. 징수세액					
		⑯ 급 여	⑰ 상 여	⑱ 인정 상여	⑲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⑳ 우리사주 조합 인출금	㉑ 임원·퇴 직소득금 액 한도초 과액	㉒ ~ ~ ㉔	㉕ 계	간이세액표 적용 대상		그 외	㉖ 소득세 (㉒+㉓)	㉗ 지방 소득세	
										㉒ 소득세	㉓ 소득세				
1										㉒	㉓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illegible]

- 103 -

[illegible]

※ ㉒ 비고란에는 ㉑ 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금유형 및 코드를 적습니다.

소득자별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1 관련)														
소 득 자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	가 족 사 랑	⑦ 배 우 자		유·무	⑪ 70세 이상	명	
	③ 사 업 장 소 재 지						부양가족		⑧ 20세 이하		명	⑫ 장 애 인	명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			⑨ 60세 이상		명	⑬ 부 녀 자	여·부	
	⑥ 주 소								⑩ 신고서제출일		.	.	.	⑭ 한 부모
⑮ 월 별	⑯ 지급일		⑰ 지급액 (수입금액)		원 천 징 수 세 액			⑳ 월 별	㉑ 지급일		㉒ 지급액 (수입금액)		원천징수세액	
					⑱ 소득세	㉓ 지방소득세					㉔ 원천징수세액		㉕ 지방소득세	
1월분								7월분						
2월분								8월분						
3월분								9월분						
4월분								10월분						
5월분								11월분						
6월분								12월분						
								계						
㉖ 수입금액 (=⑰+㉒)					소득금액의 계산									
					㉘ 구 분		㉚ 수입금액 (=㉖)		㉛ 적용소득률		㉜ 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분									
					4천만원 초과분									
					계									
㉞ 사 업 소 득 금 액 (=㉖)														
인 적 공 제	기본 공제	㉟ 본 인		㊲ 종합소득공제			㉝ 결 정 세 액							
		㊴ 배우자		㊳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㊵ 부양가족		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추가 공제	㊶ 경로우대		㊵ 투자가합출자등소득 공제			㉞ 종(전)근무지에서 원천징수한 세액 ㉞ 주(현)근무지에 서 원천징수한 세액 ㉞ 차감원천징수세액							
		㊷ 장애인		㊶ 목돈안드는 전세이사환액공제										
		㊸ 부녀자		㊷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초과액										
		㊹ 한부모가족		㊸ 종합소득과세표준										
				㊹ 산출세액										
㉟ 연금보험료공제				㊺ 자녀			㉟ 차 감 환 급 세 액							
기부금	㊻ 일반기부금		세액공제		㊻ 연금계좌									
	㊼ 일반기부금 외				㊼ 표준세액공제									
				㊽ 기부금정치자금										

[illegible]

소득자별 종교인소득 원천징수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4 관련)

징수 의무자	① 종교단체명	② 사업자등록 번호(고유번호)	- -	가족 사항	⑦ 배 우 자	유·무	⑪ 70세 이상	명	
	③ 소 재 지				부양가족	⑧ 20세 이하	명	⑫ 장 애 인	명
소득자	④ 성 명	⑤ 주민등록번호	-			⑨ 60세 이상	명	⑬ 부 녀 자	여·부
	⑥ 주 소					⑩ 신고서제출일	. . .	⑭ 한 부 모	여·부

⑮ 월 별	⑯ 지급일	⑰ 지급액 (비과세소득 제외)	원 천 징 수 세 액		⑳ 월 별	㉑ 지급일	㉒ 지급액 (비과세소득 제외)	원천징수세액	
			⑬ 소득세	⑭ 지방소득세				㉓ 소득세	㉔ 지방소득세
1월분	. . .				7월분	. . .			
2월분	. . .				8월분	. . .			
3월분	. . .				9월분	. . .			
4월분	. . .				10월분	. . .			
5월분	. . .				11월분	. . .			
6월분	. . .				12월분	. . .			
					계				

㉕ 종교인소득(=⑰+㉑)	소득금액의 계산		
	㉖ 종교인소득(=㉓)	㉗ 필요경비	㉘ 소득금액(㉖-㉗)

㉙ 종교인소득 소득금액 (㉓)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인적공제	기본공제	㉚ 본 인	㉜ 종합소득공제	㉝결 정 세 액					
		㉛ 배 우 자	㉝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㉞ 부양가족	㉞ 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추가공제	㉟ 경로우대	㉟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초과액	㉞총(전)근무지에서 원천징수한 세액					
		㊱ 장 애 인	㊱ 종 합 소 득 과 세 표 준		㊱ 주(현)근무지에서 원천징수한 세액				
		㊲ 부 녀 자	㊲ 산 출 세 액						
	㊳ 한부모가족	㊳ 세액공제	㊳ 차감원천징수세액						
㊴ 연 금 보 험 료 공 제		㊴ 연금계좌 세액공제		㊴ 차감환급세액					
기부금(이월분)	㊵ 일반기부금	㊵ 기부금세액공제							
	㊶ 일반기부금 외	㊶ 외국납부세액공제							

364mm × 257mm (백상지(1종) 70g/m²)

관 리 번호		납세조합영수증(사업소득자용)				납 세 조 합	① 조 합 명 ② 소 재 지 ③ 조 합 장 성 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 소득자 보관용 ☐ 발행자 보관용 ☐ 발행자 보고용					

⑤ 과 세 월 분		년	월분	⑥ 세 목	종합소득세	인 적 공 제	인적공제명세		인원	금액	
소 득 자	⑦ 성 명			⑧ 주 민 등 록 번 호			기 본 공 제	⑮ 본 인			
	⑨ 주 소							⑯ 배 우 자	유 · 무		
	⑩ 상 호			⑪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⑰ 부양가족			
	⑫ 사업장소재지							⑱ 경로우대			
	⑬ 사 업 명							⑲ 장 애 인			
소득 금액 및 과세 표준 계산	⑮ 해당월분의 총수입금액	세 액 계 산	⑳ 산출세액(㉔×㉑)				추 가 공 제	㉑ 부녀자			
	⑯ (1-단 순 경 비 율)							㉒ 자녀양육비			
	㉒ 해당월분의 소득금액(㉕×㉖)		㉓ 해당월분 소득세액(㉔÷12)					㉓ 출산·임양			
	㉔ 연간 환산소득금액(㉗×12)	㉕ 다자녀추가공제									
	㉕ 총 합 소 득 공 제 액			기납부 세액 및 세액공제	㉖ 거 래 원 천 징 수 세 액						
	㉖ 연 간 환 산 과 세 표 준(㉙-㉚)	㉗ 총납부세액(㉘-㉙)									
	㉗ 기 본 세 율	납 부 세 액	㉘ 납세조합공제(㉙×5/100)								
㉘ 차감납부세액(㉙-㉚)	㉙ 차감납부세액(㉙-㉚)										

위의 납부세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납세조합 (서명 또는 인)

 귀하

22226-61833일

297mm×210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납세조합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① 징수년월	년 월			
				② 납부년월	년 월			
1. 기본사항 (단위 : 업체, 원)								
원천징수 납세조합	③ 조 합 명			④ 등 록 번 호				
	⑤ 소 재 지			⑥ 진 화 번 호				
	⑦ 전체조합원			⑧ 징 수 조 합 원				
	⑨ 수입금액계			⑩ 징 수 세 액 계				
2. 세부 징수내역 (단위 : 원, %)								
⑪ 연번	징수대상 조합원		⑭ 수입금액	⑮ 단순경비율 코드	⑯ 단순 경비율	⑰ 종합 소득공제	⑱ 산출세액	⑲ 징수세액
	⑫ 상호	⑬ 사업자등록번호						
납세조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5조제4항에 따라 위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납세조합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납 세 조 합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쪽)

작성방법

※ 본 서식은 「소득세법」 제149조제2호에 의해 조직된 납세조합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① 징수년월란은 「소득세법」 제150조제1항에 의거 소득세를 징수한 월을 적습니다.

② 납부년월란은 징수세액을 납부한 연월을 적습니다.

③ 조합명란은 과세관청에 등록된 납세조합의 명칭을 적습니다.

④ 등록번호란은 납세조합의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⑤ 소재지란은 납세조합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⑥ 전화번호란은 납세조합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⑦ 전체조합원란은 소득세 징수시점의 전체 조합원 수를 적습니다.

⑧ 징수조합원란은 전체조합원 중 징수세액이 있는 조합원의 수를 적습니다.

⑨ 수입금액계란은 전체조합원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⑩ 징수세액계란은 징수조합원의 징수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 2. 세부 징수내역란은 전체조합원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징수세액이 없는 경우도 작성합니다.)

⑫ 상호란은 조합원의 상호를 적습니다.

⑬ 사업자등록번호란은 조합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⑭ 수입금액란은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163조제2항에 의한 수입금액을 적습니다.

⑮ 단순경비율코드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5조제3항에 규정한 매월분 소득 계산시 적용한 단순경비율코드를 적습니다.

⑯ 단순경비율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5조제3항에 규정한 매월분 소득 계산시 적용한 단순경비율을 적습니다.

⑰ 종합소득공제란은 「소득세법」 제152조제1항에 규정한 징수할 세액 계산시 적용한 종합소득공제금액을 적습니다.

⑱ 산출세액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5조제3항에 규정한 매월분 소득에 12를 곱한 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2분의 1을 적습니다.

⑲ 징수세액란은 납세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illegible]

※ 본 서식은 「소득세법」 제149조제2호에 의해 조직된 납세조합만을 대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변동내역이 없는 달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① 해당년월란은 소득세 징수년월을 적습니다.
- ② 조합명란은 과세관청에 등록된 납세조합의 명칭을 적습니다.
- ③ 등록번호란은 납세조합의 고유번호를 적습니다.
- ④ 소재지란은 납세조합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 ⑤ 전화번호란은 납세조합의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⑥ 전월전체란은 전월 소득세 징수시점의 전체 조합원 수를 적습니다.
- ⑦ 당월탈퇴란은 전월 소득세 징수시점 이후 당월 소득세 징수시점까지 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 수를 적습니다.
- ⑧ 당월가입란은 전월 소득세 징수시점 이후 당월 소득세 징수시점까지 조합에 신규로 가입한 조합원 수를 적습니다.
- ⑨ 당월전체란은 당월 소득세 징수시점의 전체 조합원 수를 적습니다.(=⑥-⑦+⑧)

※ 조합원 변동내역의 세부내역(⑩~⑯)은 당월에 탈퇴 및 가입한 조합원 만을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 ① 구분란에란 탈퇴의 경우 '1', 신규가입의 경우 '2'를 적습니다.
- ② 상호란에는 조합원의 상호를 적습니다.
- ③ 사업자등록번호란은 조합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④ 탈퇴(가입)일은 납세조합에서 탈퇴 또는 가입한 날을 적습니다.(예 : 2008.01.01.)
- ⑤ 연락처는 조합원의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⑥ 비고란에는 탈퇴사유 및 가입제한대상 해당여부 등을 간략히 적습니다.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매입자발행계산서 발급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	-----	------

1. 신청인 인적사항

① 상호(법인명)		② 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명)		④ 전화번호	
⑤ 사업장소재지			
사업의 종류	⑥ 업태		⑦ 종목

2. 공급자 인적사항

⑧ 상호(법인명)		⑨ 사업자등록번호	
⑩ 성명(대표자명)		⑪ 전 화 번 호	
⑫ 사업장소재지			

3. 신청 내용

⑬ 공급가액	
--------	--

4. 거래내역 명세서

NO	⑭ 거래일	⑮ 거래품목	⑯ 규격	⑰ 수량	⑱ 공급가액	⑲ 비고 (대금결제방법)
	합계					

매입자발행계산서의 발행을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의4제1항에 따라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대금결제 증명자료(필수) 2. 그 밖의 거래사실 증명자료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이 신청서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거주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법」 제163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신청인 인적사항(①~⑤)

등록번호(②)는 신청인이 사업자 또는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 공급자 인적사항(⑧ ~ ⑫)

가. 신청대상 거래의 공급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나. ⑧, ⑪, ⑫란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다.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보정기간 내에 보정되지 아니한 경우 확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거래 당시 미등록사업자, 휴업자·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확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 내용(⑬)

공급가액(⑬)은 신청인이 공급자에게 지급한 총공급가액을 적으며, 대상금액은 **거래건당 공급가액이 5만원 이상인** 거래분입니다.

※ 거래내역 명세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4. 거래내역 명세서(⑭ ~ ⑲)

가. 위 거래내역에 대한 세부명세를 적습니다.

나. 공급가액(⑬)의 합계는 신청내용의 공급가액(⑬)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다. 비고(⑲)란에는 대금결제방법을 적습니다.

※ 구비서류

가. 공급자가 발행한 영수증(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대금결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그 밖에 거래사실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매 입 자 발 행 계 산 서(공급자 보관용)

책 번 호

권

호

일련번호

-

공급자

등록번호

-

상 호(법인명)

성 명

사업장주소

업 태

종 목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상 호(법인명)

성 명

사업장주소

업 태

종 목

작성

공 급 가 액

비 고

년

월

일

빈칸수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월

일

품 목

규 격

수 량

단 가

공 급 가 액

비 고

합 계 금 액

현 금

수 표

어 음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영수 청구 함

22226-61922일

182mm×128mm

95.3.14 승인

(인쇄용지(특급) 34g/m²)

매 입 자 발 행 계 산 서(공급받는자 보관용)

책 번 호

권

호

일련번호

-

공급자

등록번호

-

상 호(법인명)

성 명

사업장주소

업 태

종 목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상 호(법인명)

성 명

사업장주소

업 태

종 목

작성

공 급 가 액

비 고

년

월

일

빈칸수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일

월

일

품 목

규 격

수 량

단 가

공 급 가 액

비 고

합 계 금 액

현 금

수 표

어 음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영수 청구 함

22226-61921일

182mm×128mm

95.3.14 승인

(인쇄용지(특급) 34g/m²)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갑)

(년 기)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제출자 인적사항

(1) 등록번호		(2) 상호(법인명)	
(3)성 명(대 표 자)		(4) 사업장소재지	
(5) 거래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6) 작성일자	년 월 일

2. 매입자발행계산서 총합계

구 분	(7)매입처수	(8)매수	(9) 공 급 가 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합 계							

3. 매입처별 명세 (합계금액으로 적음)

(10)번호	(11)사업자등록번호	(12)상 호(법인명)	(13)매수	(14) 공 급 가 액				비고
				조	십억	백만	천	일
1								
2								
3								
4								
5								
6								
7								
8								
9								
10								

() 쪽

(15) 관리번호(매입)

-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을)

등록번호

[illegible]

()쪽

관리번호(매입)

- 118 -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갑)
(년 기)

(앞쪽)

1. 제출자 인적사항

(1) 사업자등록번호	- -	(2) 상호(법인명)	
(3) 성명(대표자)		(4) 사업장	
(5) 거래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6) 작성일	

2. 매출계산서 총합계

구 분		(7) 매출 처수	(8) 매수	(9) 매 출 (수 입) 금 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합 계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 계산서 발급분	사업자등록 번호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소 계							
위 전자 계산서 외의 발급분	사업자등록 번호 발급분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소 계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별 명세
(합계금액으로 적음)

(10) 번호	(11) 사업자 등록번호	(12)상 호 (법인명)	(13) 매수	(1 4) 공 급 가 액					비고
				조	십억	백만	천	일	
1									
2									
3									
4									
5									

() 쪽

(15) 관리번호(매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방법

이 합계표는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게 선명하게 적어야 하며, 매출(수입)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하여야 합니다.

(1)~(4): 제출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5): 신고대상기간을 적습니다(예시: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6): 이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연월일을 적습니다.

(7)~(9): 합계란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발급분 소계와 위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분 소계의 단순합계를 적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발급분에는 전자적으로 발급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전자계산서 또는 매입자발행계산서제도에 따라 매입자가 발급한 매입자발행계산서에 대한 매출처 수, 총매수, 총매출(수입)금액을 적습니다.

위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분에는 종이로 발급한 계산서, 전자적으로 발급하였으나 그 개별명세를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은 전자계산서 또는 매입자발행계산서제도에 따라 매입자가 발급한 매입자발행계산서에 대한 매출처 수, 총매수, 총매출(수입)금액을 적습니다.

(10):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별 명세에는 위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분에 대한 각각의 매출처별로 1번부터 순위를 부여하여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적습니다[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갑)서식을 초과하는 매출처별 거래분에 대해서는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을)서식에 연속하여 적습니다].

(11)·(12): 위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분 계산서의 거래처(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법인명)를 적습니다.

(13)·(14): 위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분 계산서를 거래처(공급받는 자)별로 더한 계산서 매수, 공급가액을 적습니다. 수정 계산서의 경우에도 매수와 금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5):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권번호-페이지번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을)

(년 기)

사업자등록번호	—	—
---------	---	---

[illegible]

※ 이 서식은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가 ~~10개~~ 6개 이상
 으로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갑)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 쪽

관리 번호 (매출)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갑)

(년 기)

(앞쪽)

1. 제출자 인적사항

(1) 사업자등록번호	- -	(2) 상호(법인명)	
(3) 성명(대표자)		(4) 사업장소재지	
(5) 거래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6) 작성일자	년 월 일

2. 매입계산서 총합계

구 분	(7) 매입 처수	(8) 매수	(9) 공 급 가 액				
			조	십억	백만	천	일
합 계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 계산서 발급받은분							
위 전자계산서 외의 발급받은분							

3.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외 발급받은 매입처별 명세
(합계금액으로 적음)

[illegible]

() 짝

(15) 관리번호(매입)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을)

사업자등록번호	— —
---------	-----

[illegible]

()쪽

관리번호(매입)	—
----------	---

- 123 -

([]이자 []배당 []사용료 []기타)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소득세 []법인세) 비과세·면제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소득자	① 성명(법인명)		
	②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생년월일	⑤ 거 주 지 국	⑥ 거주지국 코드
소득 지급자	⑦ 법 인 명(상 호) (국문) (영문)		
	⑧ 대 표 재(성 명)		
	⑨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소득유형	⑩ 소재지 또는 주소		
	⑪ 이 자 []공사채 []공사채투자신탁 []예금과 적금 []대부금 []기타		
	⑫ 배 당 []증권투자신탁 []의제배당 []법인간 배당 []기타		
	⑬ 사용료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장비 임차 []기타		
⑭ 기 타			

이자·배당소득				
⑮ 계좌번호			⑯ 실명 구분	

(단위: 원)

⑰ 지급일	⑱ 지급액	⑲ 세율	⑳ 원천징수할 세액	㉑ 비과세·면제세액
㉒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 제 항 제 호			
㉓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소득세법」(「법인세법」) 제156조의2(제98조의4) 및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38조의4)에 따라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	소득자	(서명 또는 인)
(경유) 소득지급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 리 인	㉔ 대리인 유형	[]납세관리인 []기타 대리인
	㉕ 성명 또는 법인명	
	㉖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㉗ 주소 또는 소재지	
첨부서류	㉘ 납세지 관할 세무서	
	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2. 계약서등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 세무서장은 이 확인서에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 접수번호 및 접수일은 신청인 또는 소득지급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위 소득이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어 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9항 단서(「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9항 단서)에 따라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 이 신청서는 3부를 작성하고 소득자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아래의 표에 따른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소득의 지급자에게 제출하며 해당 소득의 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는 제출 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및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구 분	첨부서류(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법인	거주자증명서	
	(1)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세액이 10억원 이상(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은 세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포함)인 외국법인	외국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주주등의 인적사항 및 지분현황(다만 주주등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별 주주등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
	-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법인세법」 제98조의4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국외투자기구를 포함)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 체결 상대국의 정부기관등인 경우는 제외	최근 3년(설립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서등의 제출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외국법인이 거주지국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2) (1)에서 정하는 경우 이외의 외국법인	「법인세법」 제93조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사용료 소득의 경우: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의 사용허여(使用許與) 계약서 등 해당 권리등의 등록지 및 소유권자·실시권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비거주자	거주자증명서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소득은 여권 사본 또는 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증명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이 신청서는 소득자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적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 효력이 없습니다.
- 해당자료명 []란에 "√"를 표시합니다.
- ① 성명란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고,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 ②, ③, ㉖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 (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 번호(Tax 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 ③ 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 ④ 생년월일란은 소득자가 비거주자(개인)에 해당할 경우에 반드시 작성합니다.(예: 생년월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는 "20060101"을 적습니다.)
- ⑤ 거주지국란과 ⑥ 거주지국 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 ⑦ 법인명(상호)란은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함께 적으며 ⑧ 대표자(성명)란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 ㉙ 소재지 또는 주소란은 지급자의 본점(사업장) 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 ㉙~㉛ 소득유형란은 해당 유형을 찾아 []에 "√"를 표시합니다.
- ㉜ 실명구분란은 실명확인 또는 실명전환된 실명계좌는 "실명"으로, 그 이외의 계좌는 "비실명"으로 적습니다. 기발행된 채권·증권 등을 실물로 직접 보유한 자가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 실질명의를 확인한 경우에는 "실명"으로, 그 이외의 경우는 "비실명"으로 적습니다.
- ㉝ 지급액란은 신청 시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면제세액은 소득 지급시점의 환율에 의한 원화금액으로 계산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 ㉞~㉟란은 신청서를 본인 이외에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에 의해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간 보관해야 하며,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Application for Non-Taxation • Exemption of
([] Individual Income Tax [] Corporate Income Tax) on
Korean Source ([] Interest [] Dividend [] Royalty [] Other) Income
under the Tax Treaty

※ Please put a check in applicable []. (Front)

Receipt No.	Receipt Date	Required to be processed upon receipt		
Beneficiary	① Name of Individual (or Corporation)			
	② Business (Resident or Alien) Registration No.			
	③ Address (or Location of Business)			
	④ Date of Birth	⑤ Country of Residence	⑥ Country Code	
Income Payer	⑦ Name of Corporation (Korean) (English)			
	⑧ Name of Representative			
	⑨ Business (Resident or Alien) Registration No.			
	⑩ Address (or Location of Business)			
Type of Income	⑪ Interest	[] Bonds [] Bonds Investment Trust [] Deposit and Savings [] Loans [] Others		
	⑫ Dividend	[] Securities Investment Trust [] Deemed Dividends [] Dividend Paid from One Corporation to Another [] Others		
	⑬ Royalty	[] Patents, Trademark [] Copyrights [] Equipment Lease [] Others		
	⑭ Others			
	Interest / Dividend Income			
⑮ Account No.		⑯ Real name confirmed		
(Unit: KRW)				
⑰ Date of Payment	⑱ Amount Paid	⑲ Tax Rate	⑳ Tax to be Withheld	㉑ Tax Exempted
㉒ Basis for Non-Taxation or Tax Exemption		Article (), Paragraph (), Clause () of the Tax Treaty between Korea and ()		
㉓ Covered Period		. . . ~ . . . (YYYY/MM/DD)		

I hereby submit an "Application for Non-Taxation • Exemption of Individual (or Corporate) Income Tax on Non-Resident's Korean Source () Income" under Article 156-2 (or 98-4) of the "Income Tax Act(or Corporate Tax Act)" and Article 207-2 (or 138-4) of its Enforcement Decree.

Date:
Applicant (Beneficiary): (Signature or Seal)
(Via) Income Payer: (Signature or Seal)

To The Head of () District Tax Office

Agent	㉔ Type of Agent	[]Tax Agent []Others
	㉕ Name of Individual (or Corporation)	
	㉖ Business (Resident or Alien) Reg. No.	
	㉗ Address (or Location of Business)	
	㉘ Competent District Tax Office	
Attached Documents	1. A certificate of residence issu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e beneficiary's resident jurisdiction (for a foreign corporation, evidentiary documentation proving the status as a beneficial owner in accordance with any of the subparagraphs of Article138-4 (2)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2. A copy of a supporting document for non-taxation or tax exemption (e.g. Agreement or contract)	

I hereby confirm the above facts.

Date:

Head of () District Tax Office Seal

* Irrespective of this confirmation of the submitted application, the head of district tax office can correct or determine taxes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aws if the information in this application is found to be different from actual facts.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Instructions

- ※ The receipt number and date is not for the applicant or income payer to enter.
- This application shall be submitted when non-resident individuals or foreign corporations wish to request for non-taxation • tax exemption under the tax treaty of Korean source interest, dividend, royalty and other incomes that are subject to taxes under the Korean tax law, or when the above-mentioned types of income are paid through an Overseas Public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OPCIV"), which in turn requests for non-taxation • tax exemption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207-2(9)/Article 138-4(9)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Corporate Tax Act.
 - This application shall be prepared in three copies, one of which shall be submitted to an income payer along with documentation proving the status as a beneficial owner, and the income payer, in turn, shall submit the other two copies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ayer's place for tax payment by no later than the nin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to which the date of income payment belongs. In the event of changes in the submitted application or after a lapse of three years from the submission, the old application shall be replaced with a new one.

Type	Attached documents (documentation that proving the status as a beneficial owner)
Foreign corporation	Certificate of Residence documents regarding the name and address of the members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a foreign corporation, personal information of shareholders and the status of their shares (however, in the case of more than 100 shareholders, submit a description of the number of shareholders and total investment amount by country) Audit reports submitted by the foreign corporation to its resident jurisdiction in the past three years (or from the date of establishment to the day before the submission of the application if three years have not passed since the establishment) In the case of domestic source royalty income under Article 93(8) of the Corporate Tax Act, documents confirming the registration place of the right, owner and licensee such as a contract for permission to use rights, assets and information falling under any of the items of the same paragraph.
(1) the total amount of tax to which non-taxation or exemption is applied is KRW 1 billion or more including cases where the total amount of tax to which non-taxation or exemption has been applied within the past 1 year from the last day of the month in which the payment date of domestic source income to which non-taxation or exemption is applied is KRW 1 billion or more - Excluding cases where domestic source income is paid through an overseas investment vehicle or the beneficial owner of such income is the government agency of a contracting state under the tax treaty	
(2) other than those specified in (1).	Certificate of Residence (In the case of incomes under Article 119-12(f)(g) of the Income Tax Act, this can be replaced with a copy of passport or a certificate of entry/departure record that shows his/her recent entry/departure spanning one year from the date of arrival in the Republic of Korea)
non-resident	

- This application is null and void if the beneficiary submits it without documentation proving the status as a beneficial owner, or presents agent's information in the sections where beneficiary's is required.
- Put a check in applicable [].
- Section ①. Enter beneficiary's name. If the beneficiary is a foreign corporation, enter corporate name. For a foreigner, enter full name in English as shown in his/her passport.
- Sections ②, ⑨, and ㉓. Refer to the below table.

	Registration Number
(1) General rul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business registration number
(2) When (1) is not available	Enter domestic residence card number (for a Korean national residing abroad or a Korean with a foreign nationality), or passport number (in the absence of domestic residence card number).
(3) When neither (1) nor (2) is available	Enter investment registration number, or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n the absence of investment registration number).

- Section ③. Enter beneficiary's address in the following order: number, street, city, state, postal code and country.
- Section ④. Enter date of birth if the beneficiary is a non-resident individual (for example, enter "20060101" if the date of birth is January 1, 2006).
- Sections ⑤ and ⑥. Enter country abbreviation and code from ISO Country Codes set by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 Section ⑦. Enter corporate name both in Korean and English for a corporate income payer, or shop name both in Korean and English for an individual income payer. Section ⑧. Enter name of representative and business operator.
- Section ⑩. Enter location of the payer's headquarters (place of business), or payer's address in the absence of such location.
- Sections ⑪~⑭. Put a check in applicable [].
- ~Item ⑯. Enter 'real name' for a real name account that confirmed real name or conversed by real name and enter 'non-real name' for other accounts. Where an interest or a dividend has been distributed to a direct owner of bond • security that have already been issued and he/she confirmed that he/she is an actual owner of account, enter 'real name.' Except for this case, enter 'non-real name'.
- Section ⑰. Enter the amount in Korean won using the exchange rate at the time of application. The amount for non-taxation • tax exemption to be confirmed later is calculated in Korean won using the exchange rate at the time of income payment.
- Sections ㉔~㉘ shall be filled when an agent files this application. Please submit a letter of attorney that proves beneficiary-agent relationship along with a copy of its Korean translation in the case of application by an agent other than a tax manager under Article 8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 The income payer who receives this application (including its attached documents, if any) shall submit it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ayer's place for tax payment no later than the nin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month to which the date of income payment belongs, under Article 207-2(1)/Article 138-4(1)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Corporate Tax Act.
- The income payer or foreign investment vehicle that receives this application (including its attached documents, if any) shall keep it for five years from the date right after the period stated under Article 207-2(1)/Article 138-4(1)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Corporate Tax Act, and submit it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tax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ayer's place for tax payment if required.

(Front)

Seal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비과세·면제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	-----	------	----

양도자	① 성 명(법인명)		
	②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생년월일	⑤ 거주지국	⑥ 거주지국코드
양수자	⑦ 법인명(상 호) (국문) (영문)		
	⑧ 대표자(성 명)		
	⑨ 사업자등록번호		
	⑩ 소재지 또는 주소		
⑪ 소 득 유 형		〔 〕토지 〔 〕건물 〔 〕주식 〔 〕기타	
⑫ 자산 소재지			
⑬ 계 작 번 호			
⑭ 양도일		⑮ 양도가액	⑯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⑰ 양도차익	
⑱ 양도가액 × 10%		⑲ 양도차익 × 20%	⑳ 원천징수할 세액
		㉑ 비과세·면제세액	
㉒ 비과세 또는 면제근거		대한민국과 간의 조세조약 제 조제 항제 호	
㉓ 비과세 또는 면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소득세법」(「법인세법」) 제156조의2(제98조의4) 및 「소득세법 시행령」(「법인세법 시행령」) 제207조의 2(제138조의4)에 따라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의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양도자 (서명 또는 인)
(경유) 양수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대리인	㉔ 대리인유형	〔 〕납세관리인 〔 〕기타 대리인
	㉕ 성명 또는 법인명	
	㉖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	
	㉗ 주소 또는 소재지	
	㉘ 납세지 관할 세무서	

첨부서류 1. 소득자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자가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외국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4제2항 각 호에 따른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2. 부동산매매계약서, 주식매각신고서(양도자산이 부동산 주식인 경우) 사본
3.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비과세 또는 면제 근거서류 사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직인

* 세무서장은 이 확인서에 불구하고 위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경정 또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작성방법

※ 접수번호 및 접수일은 신청인 또는 소득지급자가 작성하지 않습니다.

- 이 신청서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세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경우 또는 위 소득이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어 그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9항 단서(「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9항 단서)에 따라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의 명의 로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 이 신청서는 3부를 작성하고 소득자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아래의 표에 따른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소득의 지급자에게 제출하며 해당 소득의 지급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그 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2부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는 제출 후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및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구 분	첨부서류(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법인	거주자증명서 외국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성명 및 주소, 주주등의 인적 사항 및 지분현황(다만 주주등이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가별 주주등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 최근 3년(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해당 법인의 설립일부터 신청서등의 제출일 전날까지의 기간) 동안 외국법인이 거주지국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거주자증명서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소득은 여권 사본 또는 입국일부터 최근 1년간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 이 신청서는 소득자가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못하거나 소득자란에 대리인을 적는 경우에는 이 신청서의 제출 효 력이 없습니다.
- 해당 자료명 〔 〕란에 "√"를 표시하여 구분합니다.
- ① 성명란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다만, 외국인은 성명을 영문으로 적고,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어야 합니다.
- ②, ⑨, ㉖ 사업자(주민, 외국인)등록번호란: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 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 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 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 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 ③ 주소란은 번지(number), 거리(street), 시 (city), 도(state), 우편번호(postal zone), 국가(Country) 순으로 적습니다.
- ④ 생년월일란은 소득자가 비거주자(개인)에 해당할 경우에 반드시 작성합니다.(예: 생년월일이 2006년 1월 1일인 경우는 "20060101"을 적습니다.)
- ⑤ 거주지국란과 ⑥ 거주지국코드란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 ⑦ 법인명(상호)란은 지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한글과 영문으로 함께 적으며, ⑧ 대표자(성명)란은 대표자 및 사업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 ⑩ 소재지 또는 주소란은 지급자의 본점(사업장) 소재지를 적고,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적습니다.
- ㉑ 소득유형란은 해당 유형을 찾아 〔 〕란에 "√"를 표시합니다.
- ⑫ 자산 소재지에는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인 경우 소재지를 적고, 주식등인 경우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를 적습니다.
- ⑮, ⑯ 및 ㉗란은 신청 시의 환율에 따른 원화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추후 확정되는 비과세·면제세액은 지급시점의 환율에 의한 원 화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 ㉔~㉘란은 신청서를 본인 외에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적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외의 대리인이 제 출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관계를 증명하는 위임장을 그 국문번역문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신청서(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를 포함합니다)를 제출받은 소득지급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는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제1항)에 따른 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 간 보관해야 하며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서명 또는 인)

※ 위 확인서에 따라 양수인의 원천징수의무는 면제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원천징수등록사전승인신청서				
신 청 인	① 상 (법 인 호 명)	② 거 주 지 국 가	(코드 :)	
	③ 성 (대 표 명 자)	④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⑤ 업 종	⑥ 국 내 연 락 처		
	⑦ 소 재 지 (주 소)			
대 리 인 등	⑧ 법 인 명 (성 명)	⑨ 사업자등록번호		
	⑩ 생 년 월 일	⑪ 전 화 번 호		
	⑫ 소 재 지 (주 소)			
원천징수 의무자	⑬ 법 인 명 (상 호)	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⑮ 관 할 세 무 서	⑯ 전 화 번 호		
	⑰ 소 재 지			
사전승인 대상 투자 소득 종류 및 내역				
실질귀속자 해당 유형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4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5제2항)				
첨부서류 목록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1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비거주자 원천징수등록 사전승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경우 수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소득은 전제소득을 사전승인 신청대상으로 하여 최초에 한번만 제출할 수 있으며, 최초 사전승인 신청한 내용이 추후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등 (서명 또는 인)				
국 세 청 장 귀 하				
작 성 방 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부안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2. ④, ⑭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칙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원천징수특례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청구인	① 상 (법 인 명) 호		② 거 주 지 국 가	(코드:)
	③ 성 (대 표 자)		④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⑤ 업 종		⑥ 국 내 연 락 처	
	⑦ 소 재 지 (주소)			
대리인등	⑧ 법 인 명 (성명)		⑨ 사업자등록번호	
	⑩ 생 년 월 일		⑪ 전 화 번 호	
	⑫ 소 재 지 (주소)			
원천징수 의무자	⑬ 법 인 명 (상호)		⑭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⑮ 관 할 세 무 서		⑯ 전 화 번 호	
	⑰ 소 재 지			
청 구 내 용				
「소득세법」 제156조의4제2항 및 「법인세법」 제98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천징수특례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위 대리인 등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 첨부서류 :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작 성 방 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을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소득자의 거주지가 말레이시아 라 불안인 경우에는 라부안 코드(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LM,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LN)를 적습니다.				
2. ④, ⑭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 :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 분	기 재 번 호		
(1)	원 직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1)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개인]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1),(2)의 기재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투자등록증상의 투자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거주지국의 납세번호(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적습니다.		

[illegible]

작성 방법

기부명세의 코드란에는 **특례기부금(10)**, **일반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41)**, **종교단체기부금을 제외한 일반기부금(40)**, **정치자금기부금(20)**, **우리사주조합기부금(42)**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기 부 금 영 수 증 발 급 명 세 서

사업연도
(과세기간)

· · ~ · ·

1.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단체)	① 단 체 명	② 대 표 자
	③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④ 전화번호
	⑤ 소 재 지	
	⑥ 유 형 ☐ 정부등 공공 ☐ 교육 ☐ 종교 ☐ 사회복지 (해당란에 √) ☐ 자선 ☐ 의료 ☐ 문화 ☐ 학술 ☐ 기타	

2.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현황

(단위: 원)

⑫ 기부자 ⑦ 구 분	⑧ 합 계		⑨ 특례기부금		⑩ 일반기부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법 인						
개 인						

「소득세법」 제160조의3제3항에 따른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⑥유형란: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단체)에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 ⑧ ~ ⑩란: 해당 사업연도의 해당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총 발급금액을 적습니다.
-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소득세법」 제81의7 및 제160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을 발급하는 분부터는 본 서식을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장소재지 (☎ :)		
⑥ 금융기관명	⑦계좌번호	⑧예금주명	⑨구 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제9항에 따라 사업용계좌[]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주민등록번호 :) 관 계 :

주소 전화번호 :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1. 위임장 2. 위임자 및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수수료
없 음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5에 따른 사업용계좌를 신고·변경·추가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1월 1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연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0조의2에 따른 확정신고기한까지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용계좌는 1개의 계좌로 2 이상의 사업장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2 이상의 계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⑨구분란에는 신규, 추가, 해지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 해당되는 []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① 명 칭(성 명)	② 납세자번호	
	③ 소재지(주소)		
	④ 전화번호	⑤ 청구인 유형 []실질귀속자 []원천징수의무자	
대리인	⑥ 법인명(성명)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생년월일	⑨ 전화번호	
	⑩ 주소		
실질 귀속자	⑪ 성 명	⑫ 납세자번호	
	⑬ 생년월일	⑭ 국내 전화번호	
	⑮ 거주지국	⑯ 거주지국코드	
	⑰ 주소		
원천징수 의무자	⑰ 법인명(성명)	⑰ 납세자번호	
	⑳ 관할 세무서	㉑ 전화번호	
	㉒ 소재지		
청구내용	㉓ 청구세액(원)	㉔ 소득종류	
	㉕ 청구사유		

「소득세법」 제156조의6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제출 서류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제한세를 적용신청서 2.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3. 거주자증명서를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가. 여권 사본 또는 그 밖에 성명, 주소가 확인되는 신분증 또는 첨부기관 발급 서류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8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 또는 기금;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정부기관 및 그 밖의 경우: 투자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기관 발급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4. 「소득세법」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조세조약 상 비과세 · 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 해당되는 []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청구인	① 명 칭(성 명)	② 납세자번호	
	③ 소재지(주소)		
	④ 전화번호	⑤ 청구인 유형 []실질귀속자 [] 소득지급자	
대리인	⑥ 법인명(성명)	⑦ 사업자등록번호	
	⑧ 생년월일	⑨ 전화번호	
	⑩ 주소		
실질 귀속자	⑪ 성 명	⑫ 납세자번호	
	⑬ 생년월일	⑭ 국내 전화번호	
	⑮ 거주지국	⑯ 거주지국코드	
	⑰ 주소		
소득 지급자	⑱ 법인명(성명)	⑲ 납세자번호	
	㉑ 관할 세무서	㉒ 전화번호	
	㉓ 소재지		
청구내용	㉔ 청구세액(원)	㉕ 소득종류	
	㉖ 청구사유		

「소득세법」 제156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제출 서류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2제1항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서 2.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3. 거주자증명서를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가. 여권 사본 또는 그 밖에 성명, 주소가 확인되는 신분증 또는 첨부기관 발급 서류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8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 또는 기금;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정부기관 및 그 밖의 경우: 투자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기관 발급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4. 「소득세법」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관리번호

사업장 제공사 등 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 제출자 보관용 [] 제출자 보고용)

※ 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쪽 중 제1쪽)

1. 제출자 인적사항 및 총 제출 인원

① 법인명(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사업장 소재지							④ 총 제출 인원							
⑤ 귀속연도	년	⑥ 귀속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2.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및 용역제공 자료내용

일련 번호	⑦ 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 내·외국인 (외국인 "○")	⑩ 용역구분	용역제공기간			⑭ 용역제공대가
					⑪ 개시일	⑫ 종료일	⑬ 용역제공 일수(횟수)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장 제공사 등 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대리운전, 소포배달(퀵서비스) 등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용역제공자가 사업장을 제공받거나 용역을 알선·중개받아 최종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직접 수령하는 경우, 사업장 제공자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가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다만, 해당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법 제127조에 따른 소득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가. 용역제공자란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인적용역 사업자로서 대리운전, 소포배달(퀵서비스), 간병, 골프장경기보조, 파출수하물운반, 중고자동차판매, 육실종사 등 8개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나. 사업장 제공자란 골프장사업자, 병원사업자 등 용역제공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 알선·중개하는 자란 직업소개업자 등 제3자의 위치에서 계약의 성립을 위해 용역제공자와 최종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가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와 노무제공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알선·중개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를 해당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로 봅니다.

< 예시 : 제출자 유형 >

사업장 제공자

사업장 제공자
(골프장사업자)

사업장 제공

용역제공자
(캐디)

용역 제공

고객
(개인)

용역제공대가

알선·중개자

용역 알선·중개

알선·중개자
(직업소개소)

용역 알선·중개

수수료

용역제공자
(가사도우미)

용역 제공

고객
(개인)

용역제공대가

2. ④ 총 제출 인원란은 일련번호가 부여된 총 인원을 적습니다. 이 경우 일련번호란의 마지막 번호와 총 제출 인원의 숫자가 일치해야 합니다.

3. ⑥ 귀속월란은 용역의 제공으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날(용역제공자가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또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 시작한 날 중 빠른 날)이 속하는 달에 “√” 를 표시합니다.

※ 예를 들면, 1) 1월에 용역을 제공하고 2월에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귀속월은 1월입니다.

2) 1~2월에 용역을 제공하고 3월까지 그 대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1월에 제공한 용역의 귀속월은 1월이고, 2월에 제공한 용역의 귀속월은 2월입니다.

4. ⑨ 내·외국인란에는 해당 용역제공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를 표시해야 하며 내국인일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5. ⑩ 용역구분란은 아래 용역구분코드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용역구분 코드	골프장 경기보조	간병	대리운전	소포배달 (퀵서비스)	파출용역	수하물 운반	중고자동차 판매	육실종사
	11	12	13	14	15	16	17	18

* 업무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정의를 따릅니다.

골프장 경기보조(11) : 골프장에서 골프 치는 사람들을 위해 골프백이나 골프기구를 정리하고, 거리에 따라 알맞은 골프기구를 선정해주고, 골프코스나 골프장의 지형지물에 대해 조언하고 골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

간병(12) : 병원, 요양소, 기타 관련기관 및 가정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

대리운전(13) : 자가용 운전자를 대리하여 목적지까지 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

소포배달(퀵서비스)(14) : 배달대행업체나 배달중개 프로그램을 통해 배달의뢰가 들어오면 의뢰자로부터 물품을 수령하여 지정된 수령자에게 물품을 배달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

파출용역(15) : 고용된 가정을 방문하여 청소, 세탁, 요리 등 가사노동을 수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

수하물운반(16) :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

중고자동차판매(17) : 중고차의 매입과 알선 및 판매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

육실종사(18) : 손님이 목욕하는 것을 도와주며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안마, 미용서비스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

6. 용역제공기간란 중 “㉠ 개시일”은 해당 월 중 처음으로 용역을 제공한 날을, “㉡ 종료일”은 해당 월 중 마지막으로 용역을 제공한 날을, “㉢ 용역제공일수(횟수)”는 ㉠ 개시일과 ㉡ 종료일 기간 중 용역을 제공한 일수를 적고, 괄호 안에 용역을 제공한 월간 총 횟수를 적습니다.

※ 예를 들면, 1일부터 3일까지 대리운전 용역을 10회 제공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일수(횟수)란에 “3(10)”를 기재합니다.

7. ⑭ 용역제공대가란은 용역제공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하였거나 수령하기로 한 용역제공대가의 월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이때 알선수수료를 기재하거나 용역제공대가에서 알선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기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출의무자가 용역제공자와 관련된 전산자료, 증빙자료 등으로도 용역제공대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제공대가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10mm×297mm(백상지 80g/㎡)

- 143 -

- 144 -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부표
([] 제출자 보관용 [] 제출자 보고용)

② 사업자등록번호		⑤ 귀속연도		⑥ 귀속월				
		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일련 번호	⑦ 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 내·외국인 (외국인 "○")	⑩ 용역구분	용역제공기간			⑭ 용역제공대가
					⑪ 개시일	⑫ 종료일	⑬ 용역제공 일수(횟수)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용역제공자가 많아서 제1쪽의 「2.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및 용역제공 자료내용」 란이 부족한 경우 이 서식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세대주 여부 []세대주 []세대원		국 적 (국적 코드:)	
근무기간 ~		감면기간 ~	
거주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전년과 동일 []변동		분납신청 여부 []신청 []미신청	
원천징수세액 선택 []120% []100% []80%		※ 근로소득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매월 원천징수하는 세액을 법령상 세액의 120%, 100%, 80%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관계코드	성 명	소득금액 기준	기본 공제	경로 우대	출산 입양	자료 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건강	고용	보장성	장애인 고용 보장성	장애인 일반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난임 시술 비	65세이상·장애인 건강보험	실손의료 보험금	일반	장애인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 (백만원 초과여부)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자녀											
인적공제 대상인원수를 적습니다.							국세청계 기타 계										
0					○		국세청 기타										
-							국세청 기타										
-							국세청 기타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자료 구분	신용카드	직불카드등	현금영수증	도서공연등사용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인 기재)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		소비증가분		기부금	
						1-6월	7-12월	2021년	2022년		
								전체	전통 시장		전체
국세청 계											
기타 계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유의사항

1.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란에는 해당 항목에 "√" 표시합니다(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득세법」 제50조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제50조3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제50조3가)	2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2)	3	직계비속(자녀·입양자) (「소득세법」 제50조3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득세법」 제50조3다)	5*
형제자매 (「소득세법」 제50조3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득세법」 제50조3라)	7	위탁아동 (「소득세법」 제50조3마)	8

* 관계코드 5: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말하며, 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3. 연령기준 및 소득기준
-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표시합니다.
- 소득금액기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 표시합니다.
4. "부녀자 공제"란에는 소득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일 것
5. "장애인 공제"란에는 다음의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 중 발달장애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료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해당코드	1	2	3

6.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7.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II. 연금 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	국민연금보험료	중(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공적 연금보험료	중(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연금보험료 계								
III. 특 별 소 득 공 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중(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고용보험		중(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보험료 계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대출기관차입 거주자 차입		원리금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15년~29년						
				30년 이상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처상환 대출						
			2012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2015년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처상환 대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처상환 대출			
							기타 대출			
		주택자금 공제액 계								
		기부금 (이월분)	특례기부금				기부금이월액			
			일반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기부금이월액		작성방법 참조	
	일반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기부금이월액					
	기부금이월분(합계)									
	IV. 그 밖 의 소 득 공 제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납입금액		납입액 40%와 72만원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청약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계										
투자조합 출자 등		2020년 출자·투자분	벤처 등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조합1							
			조합2							
			2021년 출자·투자분	벤처 등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조합1								
			조합2							
			2022년 출자·투자분	벤처 등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조합1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계										
신용카드등 사용액		① 신용카드				사용금액				
		② 직불·신용카드				사용금액				
		③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④ 도서·공연사용분 등(총급여 7천만원 이하)				사용금액				
		⑤ 전통시장사용분				사용금액				
		⑥ 대중교통이용분				사용금액				
	⑦ 연간 사용금액 전체 소비증가분 (2022년 신용 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증가금액					
	⑧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 (2022년 전 통시장 사용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 하여 증가한 금액)				증가금액					
	계(①+②+③+④+⑤+⑥+⑦+⑧)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출연금액		작성방법 참조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삭감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구분		세액감면·공제명세		세액감면·공제 명세			
세액감면	외국인 근로자	입국목적	[]정부간 협약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조세조약 상 감면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접수일	감면기간 만료일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		접수일		제출일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상 면제		접수일		제출일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금 감면		시작일		종료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금 수령액 감면		시작일		종료일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감면		시작일		종료일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취업일		감면기간 종료일		
	공 제 종 류		명세	한도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연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12%, 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금액				
		연금저축	납입금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납입금액				
	연금계좌 계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12%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15%	
	보험료 계						
	의료비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	지출액		작성방법 참조	15%	
		난임시술비	지출액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지출액			20%	
		그 밖의 공제대상자	지출액			15%	
		실손의료보험금 계	수령액				
		의료비 계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전액		
		취학전 아동 (명)	유치원·학원비 등		1명당 300만원	15%	
		초·중·고등학교 (명)	공납금		1명당 300만원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명)	공납금		1명당 900만원		
		장애인 (명)	특수교육비		전액		
		교육비 계					
	기부금	정처자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액		100/110	
		기부금	10만원 초과	기부금액		15%, 25%	
		특례기부금	기부금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부금액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기부금액			15% 또는 30% (2021년, 2022년의 경우 20% 또는 35%)	
		일반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기부금액				
	기부금 계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월세액 세액공제		이자상환액		30%		
			지출액		15% 또는 17%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44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VI. 추가 제출 서류				제출 ()	
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또는 × 로 적습니다)					
2. 중(전)근무지 명세		중(전)근무지명	중(전)급여총액	중(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3.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제출 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중(전) 결정세액		
				제출 () ※ 연금계좌,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 공제 명세서 제출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그 밖의 추가 제출 서류				① 의료비지급명세서 (), ② 기부금명세서 (), ③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유의사항

1. 근로소득자가 중(전)근무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통보이력이 따릅니다.
2. 원 근로지의 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방법

-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등이 부모·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서에 적지 않습니다.
- 부녀자공제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해 연 50만원을 공제합니다.
- 한부모가족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 장애인공제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인 해당 부양가족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 인적공제 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란에 "○"표시를 합니다.
 - 각종 소득공제 항목에서 보험료에는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포함하고,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 「국세청 자료」란은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세액공제 명세의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 기타 자료란은 소득자가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을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금액을 적습니다.
- 소득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특별소득공제명세 작성방법

일반사항	주택자금상환증명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의 납입금액 또는 상환액을 적습니다.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해당 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기관차입분, 거주자로부터 차입분을 구분하여 작성하며 공제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원금상환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2011년 이전 차입분은 상환기간 15년 미만, 15년 이상 29년 이하(「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5호 포함), 30년 이상(「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5호 포함)으로 구분하여 적고, 2012년 이후 차입분(상환기간 15년 이상)은 고정금리·비거처식 상환분과 기타 상환분을 구분하여 적고, 2015년 이후 차입분은 상환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 15년 미만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기부금(이월분)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한도초과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을 적습니다. 해당 연도 기부금액과 합하여 기부금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연도 기부금보다 우선하여 공제 적용합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작성방법

개인연금저축공제	공제금액은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8쪽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연 120만원 한도(2015년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 240만원 한도)]을 기준으로 40%까지 공제됩니다.(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017년 납입 분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공제)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8쪽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소득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근로소득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 근로소득금액 1억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투자조합 출자공제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적습니다. 공제금액은 출자금액 등의 10%까지 공제되나,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치기업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출자금액 등의 3천만원 이하분은 100%, 5천만원 이하분은 70%, 5천만원 초과분은 30%까지 공제됩니다. ※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 조합1(「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제5호), 조합2(「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구분	공제율	한도액
	2020년 ~ 2022년 출자·투자분	10%(100%, 70%, 30%)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치기업투자신탁 투자에 대한 1인당 소득공제액은 최대 3백만원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1. "사용금액"란에는 카드사 등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따른 공제대상액의 합계액(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사용금액에는 사업관련비용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2.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도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정합니다. 3. 공제금액: ①+②+③+④+⑤-⑥+⑦+⑧에 해당하는 금액 ※ 도서·공연등 사용분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7천만원 초과자는 각 지불수단별 사용금액의 합계액에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40%(7~12월 사용분 80%) ③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이하 이 서식에서 "도서·공연등 사용분"이라 하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인 기재합니다)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 30% ④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대중교통, 도서·공연등 이용(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30% ⑤ 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도서·공연등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 15%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최저사용금액 × 15%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30%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사용분(1월~6월)	신용카드사용분 × 15%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40%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사용분(1월~6월) <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사용분 × 15%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30%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사용분(1월~6월)) × 4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 직불선불카드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공연등 사용분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사용분(1월~6월)) × 80%
⑦ 2022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1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20%		
⑧ 2022년 전통시장 사용금액에서 2021년 전통시장 사용금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의 20%		
4. 공제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300만원(2020년 과세연도의 경우 330만원)과 총급여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 총급여 7천만원 초과~1.2억원 이하자는 250만원(2020년 과세연도의 경우 280만원), 총급여 1.2억원 초과자는 200만원(2020년 과세연도의 경우 23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①+②+⑦+⑧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③의 금액을 추가로 합친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①, ②, ③, ⑦+⑧)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금액에 추가합니다.		
우리사주조합 출원금 소득공제	우리사주출원금 중 연 4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벤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연 1,5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그 밖의 소득공제 작성방법

전소득이 해당 과세기

자금·신용카드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 화 번 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			
2. 연금계좌 세액공제					
1) 퇴직연금계좌 * 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2)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세액 공제금액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 납입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연금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세액공제금액	
3.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저축 구분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4.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합니다.					
	금융회사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5.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투자연도	투자 구분	금융기관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6.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가입일	계약기간	금융기관 등	계좌번호 (또는 증권번호)	납입금액	소득공제금액

작성 방법

- 연금계좌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를 받는 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납입금액과 소득·세액 공제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연금 구분"란은 퇴직연금(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중소기업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 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연금 구분"란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세액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합니다(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저축 구분"란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근로자주택마련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의 "투자 구분"란은 벤처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3호·제4호·제6호), 조합1(「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1호·제5호), 조합2(「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서 "계약기간"란은 계약기간을 개월 수로 적습니다.(월수 계산 시 1월 미만은 1월로 합니다.)
-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무주택자 해당여부 []여, []부]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 화 번 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

2.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

⑦ 임대인 성명 (상 호)	⑧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⑨ 유형	⑩ 계약면적(㎡)	⑪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⑫ 계약서 상 임대차 계약기간 개시일 종료일	⑬ 연간 월세액(원)	⑭ 세액공제금액 (원)

※ ⑨ 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 7 기타: 8
 ※ ⑫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7.01.01.

3.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⑮ 대주(貸主)	⑯ 주민등록번호	⑰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	⑱ 차입금 이자율	원리금 상환액			㉒ 공제금액
				⑲ 계	㉑ 원금	㉑ 이자	

2) 임대차 계약내용

㉓ 임대인 성명 (상 호)	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㉕ 유형	㉖ 계약면적(㎡)	㉗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㉘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개시일 종료일		㉙ 전세보증금 (원)

※ ㉕ 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고시원: 7 기타: 8
 ※ ㉘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7.01.01.

작성 방법

- 월세액 세액공제나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세액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한 월세액·원리금상환액과 소득·세액공제금액을 적으며,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⑨, ㉕ 유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유형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 ㉙ 전세보증금은 과세기간 종료일(12. 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년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 2018년 1월 1일 이후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려는 종교관련종사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무자(종교단체)에게 제출하면, 원천징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종교인소득(기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을 하고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즉시 종교인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시 해당 종교관련종사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무자는 종교관련종사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종교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
세대주 여부 []세대주 []세대원	국 적	(국적 코드:)
근무기간 ~	거주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전년과 동일 []변동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1.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명세	관계코드	성 명	기본공제		경로우대	출산·임양	자료 구분	기부금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국세청
								기타
		0			○			국세청
			(근로자 본인)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국세청		
						기타		

유의사항

1.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란에는 해당 항목에 "√" 표시합니다(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2.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득세법」 § 50(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 50(3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득세법」 § 50(3가))	2
배우자 (「소득세법」 § 50(2))	3	직계비속(자녀·임양자) (「소득세법」 § 50(3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득세법」 § 50(3나))	5*
형제자매 (「소득세법」 § 50(3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득세법」 § 50(3라))	7	위탁아동 (「소득세법」 § 50(3마))	8

* 관계코드 5: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 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3. 연령기준

- 경로우대: (. .) 이전 출생(만 70세 이상: 연 100만원 공제)

4. "부녀자 공제"란에는 소득자 본인이 여성인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표시합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것

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일 것

5. "장애인 공제"란에는 다음의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해당코드	1	2	3

6.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종교관련 종사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II. 연금보험료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국민연금보험료	보험료		전액	
		연금보험료 계				
III. 소 득 공 제	기부금 (이월분)	특례기부금	기부금이월액		작성방법 참조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기부금이월액			
		일반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기부금이월액			
		기부금이월분(합계)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납입금액		납입액 40%와 72만원	
	투자조합 출자 등(2017년 이전에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	조합 등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벤처 등				
		투자조합 출자 등 계				

구분		세액감면 · 공제명세				세액감면 · 공제 명세				
IV. 세액 감면 및 공제	세액공제	공 제 종 류		명세		한도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연금 계좌	과학기술인공제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12% 또는 1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금액					
			연금저축		납입금액					
		연금계좌 계								
		특별세액 공제	기 부 금	정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기부금액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100/110	
				특례기부금		기부금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기부금액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기부금액				
				일반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기부금액				
				기부금 계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납세국명					-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 종교단체명 등					
종사기간					직책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5조의3 제2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 Yes ☐ No ☐ Don't know

(서명 또는 인)

신고인

VI. 추가 제출 서류

1. 중(전) 근무지 명세	중(전) 종교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중(전) 종교인소득 총액 중(전) 결정세액	중(전) 근무지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2. 연금·저축 세액 공제명세서 제출 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그 밖의 추가 제출 서류		① 기부금명세서 (), ②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유 의 사 항

1. 종교관련 종사자가 중(전) 근무지의 종교인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공제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세액"란은 종교관련 종사자 본인이 적지 아니하고 빈칸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방법

-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등이 부모·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서에 적지 않습니다.
- 부녀자공제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해 연 50만원을 공제합니다.
- 한부모가족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 장애인공제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인 해당 부양가족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 인적공제 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국세청 자료"란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세액공제 명세의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 기타 자료란은 소득자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을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금액을 적습니다.
- 소득·세액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공제명세 작성방법

기부금(이월분)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한도초과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기부금액과 합하여 기부금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연도 기부금보다 우선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2010년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 한함) 납입액의 40%와 72만원 중 적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할 때에는 이 서식 제5쪽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에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를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치기업(이하 "벤처 등")에 직접투자한 경우에는 출자·투자금액 구간별로 30% ~ 10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구분출자·투자금액공제율한도액
	조합 등10%
	3천만원 이하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70%
벤처 등	5천만원 초과분30%

세액공제 작성방법

연금계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제외),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퇴직연금 납입액, 연금저축 납입금액을 적습니다. - 공제한도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 600만원이고,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 900만원 입니다. - 공제세액은 연금계좌 납입금액에 공제율 12%를 적용한 금액입니다.(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공제율 15%를 적용합니다) - 연금계좌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이 서식 5쪽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기부금	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 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우리사주조합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 30%(2015년 과세기간 이후에 발생한 기부금으로 한정하여 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한도액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10%] +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일반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30%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한도 내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20(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외국납부공제	① 외국납부세액과 ② 산출세액에 종교인 15%과 관련된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교인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 작은 금액

유의사항

-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등을 적습니다. 이 경우 종교관련종사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연 7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표준세액공제)받게 됩니다.
- 공제항목 중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고서 서식을 수정하거나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첨부서류

구분	첨부서류
기본공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추가공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장애아동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입소통지서등)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그 밖의 공제	공제 관련 서류 등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납입확인서(세액공제용)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 등 기부명세를 적고, 확인한 것에 한정합니다)

유의사항

- *"※"표시된 첨부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표등본은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 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습니다.
- * 국세청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세액 공제명세를 첨부서류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관리번호									
소득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소 득 · 세 액 공 제 명 세 (년도)									
④ 기본공제 대상자					⑤ 추가공제 등 대상 여부				
공제대상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결혼 상태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출산· 입양자
본 인			-						
배 우 자			-						
부양가족			-						
"			-						
"			-						
"			-						
"			-						

「소득세법」 제143조의6제1항에 따라 연금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신고인 제출 서류	1. 기본공제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가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 "*" 표시된 제출 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예를 들면, 세대주·공제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추가공제: 그 밖에 공제 관련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본인정보 제공요구 1.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 2. 주민등록표등본 1. 소득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및 공동이용 동의 *선택사항

1.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의 행정정보에 대하여 위의 민원처리기관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정보요구 대상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보요구 대상기관 : 법원행정처)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illegible]

작성 방법

1.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는 종교관련종사자에 대해서는 해당 세액 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계좌별로 납입금액과 세액 공제 금액을 적고, 공제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2. 퇴직연금계좌에서 "퇴직연금 구분"란은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 · 과학기술인공제회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저축 구분"란은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공제금액란은 종교관련종사자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액자 취급자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③
	④ 법인(주민)등록번호	⑤ 법인명(상호)	⑥ 대표자(성명)
연금액자 가입자	⑦ 성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 주소	⑩ 계좌유형	⑪ 계좌번호

확인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illegible]

확인일	⑱ 사유	⑳ 확인처(계좌)	㉑ 확인금액	사유
				1. 영 제201조의10제2항에 따라 확인되는 분
				2. 영 제201조의10제3항에 따라 확인되는 분
합계				

②② 확인대상납입액(⑩-⑪)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금계좌취급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1. ㉠란에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2. ㉡ ~ ㉢에서 납입액과 인출액은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연금납입 배제금액이 발생할 경우 '납입액 다목' 및 ㉢란의 차감항목으로 기재합니다.
4. ㉣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제1항에 따라 전한 신청된 금액을 적으며, 해당 금액은 ㉢납입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5. ㉤란에는 해당 계좌에서 이미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확인 사유를 구분(1 또는 2)하여 적습니다.
6. ㉥란에는 다른 연금계좌의 납입확인서를 제출받아 해당 계좌에서 과세제외금액으로 확인한 금액이 있는 경우(사유 중 '2'에 해당) 다른 연금계좌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7. ㉦란에는 해당 계좌의 납입액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제3항제1호에 따라 다른 계좌의 과세제외금액을 확인하기 위해 다른 계좌의 확인대상납입액에 합산될 수 있는 금액을 적습니다.

- 161 -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신청서

([]납입자 보관용 []발행자 보관용 []접수자 보관용)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납입 신청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④ 전화번호
연금계좌 정보	기관 ⑤ 법인명(상호)	⑥ 지점명
	계좌 ⑦ 연금계좌구분	⑧ 계좌번호

I. 납입 한도 등 계산 명세	연금계좌 납입한도 명세	⑨ 연간 납입 한도액	⑩ 당해연도 기 납입액	⑪ 잔여 납입 한도액 (⑨-⑩)
		1,800만원		
	주택차액 추가납입 한도 명세	⑫ 납입 한도액	⑬ 기 납입액	⑭ 잔여 납입 한도액 (⑫-⑬)
		1억 원		

II. 납입하는 주택차액 명세	주택차액 계산명세	⑮ 연금주택의 양도가액(기존주택)	⑯ 축소주택의 취득가액(신규주택)	⑰ 주택차액 (⑮-⑯)
	주택차액 추가납입 대상 명세	⑱ ⑰ 중 연금계좌 납입 희망 금액	⑲ 연간 잔여 납입 한도액 차감한 금액 (⑱-⑲)	⑳ 추가납입 한도 적용 최종 납입 대상 금액 【Min(⑱,⑲)】

※ 첨부 : 연금주택 및 축소주택의 매매계약서, 1주택 확인서 등

위 내용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라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기 위하여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납입 신청자

(인)

연금계좌 취급자 귀하

작성 방법

- ⑩당해연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ISA 만기에 따라 전환납입한 금액과 주택차액 추가납입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 ⑮연금주택 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에서 납입 신청인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⑯축소주택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에서 납입 신청인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⑲항목에서 차감된 금액은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액 이내에서 당해연도에 연금계좌에 납입된 것으로 봅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주 택 확 인 서

본인은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자로서 이 확인서를 제출하는 과세기간에 본인과 그 배우자가 연금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음을 확약하며,

주택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날 이후 5년 이내에 연금주택의 양도가액보다 가액이 높은 주택을 취득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8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이 추징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본인):

(인)

위 내용을 확약하고 자필서명(날인)하여 본인의 _____(가족관계 기재)인 _____(성명 기재)을 통해 제출합니다.

신청인(본인):

(인)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대리(수임)인: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

년 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하 이 서식에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이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하 이 서식에서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이라 합니다) 또는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분리과세로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중 단순경비를 적용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4)]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간편장부대상자(신규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천 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제외)가 장부에 따른 기장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를 기록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 분리과세하는 주택임대소득, 기타소득(가상자산소득, 계약금·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소득자용 신고서[별지 제40호서식(6)]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가상자산소득에 관하여는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작성 방법

1. 제3쪽 ❶ 기본사항란을 적습니다.
2. 제3쪽 ❸ 세무대리인:세무대리인이 기장, 조정, 신고서작성 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반드시 기재합니다(16대리구분은 11-4 중 한가지만 선택).
3. 제5쪽 ~ 제11쪽 ❷ ~ ❸ 각종 소득명세서를 작성합니다(해당 사항이 있는 명세서만 작성합니다).
4. 제13쪽 ❷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와 ❸ 이월결손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이월결손금이 없는 경우에는 ❸ 이월결손금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5. 제15쪽 ❶ 소득공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6. 제19쪽 ❷ 세액감면명세서, ❸ 세액공제명세서, ❹ 준비금명세서를 작성합니다(해당 사항이 있는 명세서만 작성합니다).
7. 제21쪽 ❷ 가산세명세서와 ❸ 기납부세액명세서를 작성합니다.
8. 제3쪽 ❹ 세액의 계산란을 적습니다[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23쪽의 ❶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를,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5쪽의 ❷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를 적용대상자용)를,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비사업용토지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제27쪽의 ❸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를, 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과 비사업용토지 등을 보유하여 발생하는 매매차익 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29쪽의 ❹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를 먼저 작성합니다].
9. 제3쪽 ❷ 환급금 계산신고란을 적습니다.
10. 각 서식에서 적을 난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11. 신고인은 반드시 신고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12. 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 수 증(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성 명		주 소	
※ 첨부서류 1. 재무상태표 () 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 2.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 7.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 · 감면신청서 () 3. 합계잔액시산표 () 8.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 4. 조정계산서 () 9. 그 밖의 첨부서류 () 5. 소득공제신고서 ()			접 수 자 접수일(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① ~ ④ 작성방법

1. 신고하는 귀속연도와 거주구분 등에 관한 표를 적습니다.
2. ㉔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㉑ 신고유형란: 해당되는 신고유형에 ☒ 표시 합니다. 신고유형은 신고서에 첨부하는 조정계산서 또는 소득금액계산서 등에 따라 구분하며, 둘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14, 12, 11, 10, 9, 8, 7의 순서에 따라 하나의 유형만을 선택합니다.
4. ㉒ 환급금 계산조항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5. ㉓ 세무대리인란: 해당되는 대리구분에 ☒ 표시합니다. 세무대리인이 기장, 조정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선택하며 1기장 2조정 3신고 4성실확인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6. 19 종합소득금액란: 제13쪽 9 종합소득금액 및 결산금·이월결산금공제명세서의 5란의 합계(종합소득금액)를 옮겨 적습니다.
7. 20 소득공제란: 제15쪽 1 소득공제명세서의 2 소득공제합계에서 23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22 세율란: ㉑ 산출세액란: 세율표에 따라 세율을 적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23쪽 16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를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64조를 적용받는 부동산배매일자인 경우에는 제27쪽 16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배매일자용)에 따라 계산하고, 부동산배매일자인 금융소득자인 경우에는 제29쪽 22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배매일자인 있는 금융소득자용)에 따라 계산합니다.
9. 24 세액감면란: ㉑ 세액공제란: 제19쪽 9 세액감면명세서의 5 세액감면 합계 또는 16 세액공제명세서의 6 세액공제 합계를 옮겨 적습니다.
10. 25, 47 가산세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소득세법」 제81조 및 제81조의2부터 제81조의14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각각 적습니다. 이 경우 26 가산세는 제21쪽 16 가산세명세서의 13 합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1. ㉑, 48 추가납부세액란: 추가납부세액계산서(별지 제51호서식)를 작성한 후 추가납부세액계산서의 "4. 소득세 추가납부액 합계란"의 금액을 ㉑ 추가납부세액란에 적고, 49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환급세액을 48에填入 적습니다.
12. ㉑, 50 기납부세액란: 제21쪽 11 기납부세액명세서의 11란 및 50란의 금액을 각각 옮겨 적습니다(외국인단일세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제33쪽 22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자)의 6란의 합계액을 더하여 적습니다).
13. ㉑ 납부(환급) 할 총세액란: ㉑ 합계 금액에서 ㉑ 기납부세액란의 금액을 빼서 적습니다.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받을 세액이므로 ㉑ 환급금 계산조항란에 환급금을 지급받을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14. ㉑, 54 납부특례세액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벤처기업의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관련한 소득세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4개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특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납하려는 경우 ㉑년에, 다음 4개 연도에 납부하는 경우 ㉑년에 납부특례세액을 적습니다.
5. 분납할세액란: ㉑ 납부할 총세액에서 ㉑, 54 납부특례세액을 차감·가감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총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한 것과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하려는 경우에는 분납할 세액을 이 안에 적습니다.
15. 농어촌특별세란: ㉑ 과세표준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별지 제68호서식)의 13 감면세액 합계란의 금액을 옮겨 적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세율(20 또는 10%)을 적용하여 ㉑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㉑ 농어촌특별세 합계란에는 48+47-48의 금액을 적습니다. 납부할 농어촌특별세 총세액이 5백만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세 율 표								
과세표준	2017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2018년~2020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2021년~2022년 종합소득세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210mm×297mm(백상지 80g/m²)

관리번호		-	
(년 귀속)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1 기본사항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4 주소지 전화번호																			
5 사업장 전화번호																			
6 휴대전화																			
7 전자우편주소																			
8 기장 의무		11복식부기의무자		12간편장부대상자		13비사업자													
9 신고 유형		11자기조정		12외부조정		14성실신고확인		15간편장부		16추계-기준을		17추계-단순을		18분리과세		19비사업자			
10 신고 구분		10정기신고		20수정신고		30경정청구		40기한후신고		50추가신고(인정상여)									

2 환급금 계좌신고 11 금융기관/채신관서명 12 계좌번호

3 세무 대리인		13성명		14사업자등록번호														15전화번호	
16대리구분		1기장		2조정		3신고		4성실확인		17관리번호								18조정반번호	

4 세액의 계산

구분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총합소득금액	19				
소득공제	20				
과세표준	21			41	
세율	22			42	
산출세액	23			43	
세액감면	24				
세액공제	25				
결정세액	총합과세	23-24-25	26	44	
	분리과세	27	27	45	
	합계	26+27	28	46	
가산세	29			47	
추가납부세액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환급세액)	30			48	
합계	28+29+30			49	
기납부세액	31			50	
납부(환급)할 총세액	32			51	
납부특례세액	차감			52	
	가산			53	
	2개월 내			54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	33-34+35-36			57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무기장·부실기장 및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접수(영수)일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각 1부)		전산입력필	(인)
------------	--	-------	-----

5 이자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은 이 서식의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개인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자소득이 있는 때에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이 있는 때에는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11 ~ 17)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중 원천징수 된 것: 11
다만,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지급받은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14% 세율) 된 것: 18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12
다만,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17 코드를 적습니다.
다. 그 밖의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 된 것: 13
라.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에서 지급받는 이자소득: 15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이자소득: 16
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의 이익(私債이자): 17
3. ② 일련번호란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상호(성명)란·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이자를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와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이자소득금액란: 이자의 지급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총 이자액을 적습니다.
6. ⑥ 원천징수된 소득세란: 이자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신고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⑤ 이자소득명세서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m²)

⑥ 배당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은 이 서식의 작성대상에 제외되며, 개인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배당소득이 있는 때에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2012년 귀속까지는 4천만원)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21 ~ 29)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배당가산(Gross-Up) 하는 배당소득: 21
나. 배당가산(Gross-Up) 하지 않은 배당소득: 22
- 23 ~ 29 코드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은 해당 코드로 분류합니다.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으로 인한 자본전입 또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재평가세율 1% 적용 대상)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준비금이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전체 배당소득을 이 코드로 분류합니다.
- 21코드에 해당하는 배당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라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합니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등은 감면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 코드로 분류합니다.
다.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23
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 26
마.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8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일기업에서 배분받은 배당소득: 29
3. 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법인명란·④ 사업자등록번호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배당액란: 지급자별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기 전의 총배당액을 적습니다.
6. ⑥ 대상금액란: 「21」코드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이 다른 코드의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배당액만을 적습니다.
(예) 이자소득 1천만원, 배당소득 1천5백만원(Gross-Up 대상)인 경우 ⑤ 배당액란은 1천5백만원을, ⑥ 대상금액란은 5백만원을 적음
7. ⑦ 배당가산액란: [⑥ 대상금액 × 가산율(2011. 1. 1. 이후의 배당소득은 100분의 11, 2009.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배당소득은 100분의 12)]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⑧ 배당소득금액란: [⑤ 배당액 + ⑦ 배당가산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⑨ 원천징수된 소득세란: 배당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신고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m²)

- 171 -

- 172 -

㉦ 사업소득명세서

①	소	득	구	분	코	드				
②	일	련	번	호						
③	사업장	소재지								
		국내1/국외9	소재지국코드							
④	상		호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	기	장	의	무						
⑦	신고유형코드									
⑧	주업종코드									
⑨	총수입금액									
⑩	필요경비									
⑪	소득금액(⑨-⑩)									
⑫	과세기간개시일									
⑬	과세기간종료일									
⑭ 대표 공동사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⑮ 특수관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부동산 임대소득 명세				
구분	⑬주택수(개)	⑬수입금액	⑬필요경비	⑬소득금액
주택 외 임대소득 (상가, 토지 등)				
주택임대소득				
합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⑳ 일련 번호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 세액	
	㉑ 상호(성명)	㉒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㉓ 소득세	㉔ 농어촌특별세

㉧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작성방법

1. 이 서식에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적지 않습니다.
2.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 순으로 적습니다.
- 가. 근로소득의 소득구분 코드
- 1)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 51
※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 2) 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52
- 3)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53
- 4) 근로소득납세조합 가입자가 받는 근로소득: 55
- 5)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 56
- 6)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57
※ 외국기관, 국제연합군(미군 제외),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국내지점·국내영업소·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을 말합니다.
- 7)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득세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확정신고한 종교인의 근로소득: 58
※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종교인소득)’을 선택하여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구분 코드 58’을 별도로 작성하게 하는 것은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연말정산을 포함)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를 파악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 나. 연금소득의 소득구분코드: 66
- 다.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코드
- 1) 61코드 및 67코드 이외의 기타소득: 60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기타소득: 61
- 3)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의 기타소득: 67
3. 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4. ③ 상호(성명)란·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외국소재 본점을 적거나 모회사의 국내소재 지점·연락사무소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5. ⑤ 총수입금액란: 지급자별로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총급여액(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연금소득은 총연금액(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을 적습니다.
6. ⑥ 필요경비란: 필요경비를 적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액을 적으며, 근무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되,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근로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연금소득은 연금소득공제액을 적습니다.

근로소득공제(한도 2,000만원)		연금소득공제(한도 900만원)	
총급여액	공제액	총연금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70%	360만원 이하	총 연금액
500~1,500만원 이하	36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360~700만원 이하	360만원+360만원 초과액의 40%
1,500~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700~1,400만원 이하	490만원+700만원 초과액의 20%
4,500~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400만원 초과	630만원+1,400만원 초과액의 10%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7. ⑦ 소득금액란: ⑤ 총수입금액에서 ⑥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적습니다.
8. ⑧ 소득세란·⑨ 농어촌특별세란: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된 소득세·농어촌특별세를 적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95조 및 제96조에 따라 신고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⑧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m²)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작성방법

1. ① 소득별 소득금액란: 소득의 구분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 가. 이자소득금액란: 제5쪽 ⑤ 이자소득명세서의 ⑤ 이자소득금액의 합계액
 - 나. 배당소득금액란: 제7쪽 ⑥ 배당소득명세서의 ⑥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제외한 금액
 - 다.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란: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
 - 라.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금액란: 제9쪽 ⑦ 사업소득명세서의 소득구분코드가 '30' 과 '31' 인 소득의 ⑩ 소득금액란의 합계액. 다만, 합계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적고, 그 결손금은 ① 이월결손금명세서의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금액의 이월결손금 발생금액(②)란에 적습니다.
 - 마. 부동산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란(주택임대업 포함): 제9쪽 ⑦ 사업소득명세서의 소득구분코드가 '32', '40', '41'인 소득의 ⑩ 소득금액란의 합계액
 - 바.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란: 제11쪽 ⑧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의 각 소득별 ⑦ 소득금액란의 합계액
2. 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결손금 공제금액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포함)이 결손(-)인 경우에는 그 결손금액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제외)·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불가)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 및 그 공제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납세자가 결정합니다.
3. ③ 부동산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 이월결손금 공제금액란: 부동산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포함)의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부동산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포함)·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금액(주택임대업 제외)·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과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이자·배당소득금액에서는 공제 불가)에서 순차로 공제합니다.
4. ④ 부동산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 이월결손금 공제금액란: 부동산산임대업의 사업소득(주택임대업 제외)에서 공제하는 부동산산임대업의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5. ⑤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 (①-②-③-④)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②와 같이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후에도 결손금이 남는 경우를 말합니다)에는 "0"으로 적고, 그 남은 결손금은 ⑩ 이월결손금명세서의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 외의 사업소득의 ② 이월결손금 발생금액란에 적습니다.

⑩ 이월결손금명세서 작성방법

2. ① 발생과제기간란 · ② 발생금액란: 해당 이월결산금이 발생한 과제기간의 종료일부터 15년 이내(2020.1.1. 이후 개시한 과제기간에 발생한 결산금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이월결산금은 10년 이내)의 이월결산금과 해당 과제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산금을 과제기간별로 차례로 적습니다.
2. ③ 전기까지 공제액란: 직전 과제기간까지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3. ④ 당기 공제액란: 당기에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먼저 발생한 이월결산금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당기 공제액의 합계액은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산금 · 이월결산금공제명세서 ④란 또는 ③란의 합계액과 같습니다).
4. ⑤ 소급공제액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해당 과제기간에 발생한 결산금을 「소득세법」 제85조의2에 따라 소급공제하는 경우 그 소급공제하는 금액[결산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0호의4서식)의 ⑩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산금을 말합니다]를 적습니다.
 - 1) 결산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40호의4서식)의 ⑩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산금
 - 2) 결산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 특례 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별지 제2호의3서식)의 ⑩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산금
5. ⑥ 그 밖의 공제액란: 이월결산금을 자산수증 및 채무면제액으로 보전(충당)한 경우 그 금액을 적습니다.
6. ⑦ 잔액란: 이월결산금 발생금액 중 당기까지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②-③-④-⑤-⑥)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⑨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소 득 소 득 금 액	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결 손 금 공 제 금 액	이 월 결 손 금 공 제 금 액		⑤ 결 손 금 · 이 월 결손금공제 후 소 득 금 액
			③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주택임대업 포함) 이 월 결 손 금 공 제 금 액	④ 부동산임대업의 사 업 소 득 (주택임대업 제외) 이 월 결 손 금 공 제 금 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금액(주택임대업 제외)					
부동산임대업 외의사업소 득금액(주택임대업 포함)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합계 종합소득금액)					

⑩ 이월결손금명세서

구 분	이월결손금 발생명세		③ 전기까지 공제액	당기 공제액			⑦ 잔 액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④ 당기 공제액	⑤ 소급공제액	⑥ 그 밖의 공제액	
부 동 산 임 대 업 의 사 업 소 득 (주택임대업 제외)							
부 동 산 임대업외의 사 업 소 득 (주택임대업 포함)							

210mm×297mm(백상지 80g/㎡)

⑪ 소득공제명세서 작성방법

※ 이 서식의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는 소득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소득공제는 해당 공제신청서를 작성한 후 작성합니다.

1. 인적공제(① ~ ⑦)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용됩니다.

가. 기본공제란: 본인과 연간소득금액(퇴직, 양도소득금액 포함)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인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대하여 각각 1명당 150만원(해당 인원 × 150만원)을 각 난에서 공제합니다.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만 60세 이상이거나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장애인과 수급자는 연령의 제한이 없으며, 위탁아동은 만 18세 미만입니다).

나. 추가공제란: 기본공제 대상자 중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인 자)는 ④ 경로우대자란에 1명당 100만원을, 장애인인 경우에는 ⑤ 장애인란에 1명당 200만원을, 본인이 여성(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⑥ 부녀자란에 50만원을,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⑦ 한부모가족란에 100만원을 각각 공제합니다. 다만, ⑥과 중복인 경우 ⑦을 적용합니다.

2. 연금보험료공제(⑨~⑩)란: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은 제외합니다)는 ⑨란에서, 그 밖의 각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부담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합계)은 ⑩란에서 각각 공제합니다.

3. ⑪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란: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해당 연금소득범위 내에서 2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4. 특별공제(⑫ ~ ⑭)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용됩니다.

가. ⑫ 보험료 공제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항목: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합니다), 고용보험료

나. ⑬ 주택자금공제란: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합니다)만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가 주택(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적용하지 않음)

다. ⑭ 기부금(이월분)공제란: 2013년 말까지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이월공제금은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합니다.

5. ⑮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란: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적으며, 내외국인란에 내국인은 "1", 외국인인 "9"로 구분하여 적고, 외국인인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를 적습니다.

6.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⑰~⑳)는 관련 제목(조문)을 ⑰ 「조세특례제한법」제목(조문)란에 적은 후, 그 소득공제 금액을 ⑲ 금액란에 적으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인 경우에는 ⑳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㉑ 코드란은 적지 않습니다.

7. ㉒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은 제17쪽 ㉑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 부표의 ㉑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을 옮겨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㉓ 소득공제명세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인 적 공 제	기 본 공 제	① 본 인		연 보 험 료 공 제	금 로 제	⑨ 국 민 연 금					
		② 배 우 자				⑩ 공무원·군인·사립 학교 교직원·별정우체 국 연금					
		③ 부 양 가 족(명)				⑪ 주택담보노후연금 이 자 비 용 공 제					
	추 가 공 제	④ 경 로 우 대 자(명)		특 별 공 제	공 제 합 계	⑫ 보험료 공제					
		⑤ 장 애 인(명)				⑬ 주택자금 공제					
		⑥ 부 녀 자				⑭ 기부금(이월분) 공제					
		⑦ 한 부 모 가 족				⑮ 근로소득이 있는 자 (⑫~⑭)					
	⑧ 인적공제계(①~⑦의 합계)						근로소득이 없는 자 (⑭)				

㉔ 인 적 공 제 대 상 자 명 세

관계	성 명	내외 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관계	성 명	내외 국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				-
			-				-
			-				-
			-				-

※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⑰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	⑱ 코드	⑲ 금 액	⑳ 사업자등록번호
㉑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합계			
㉒ 소득공제 합계 (⑧~⑪+⑮+⑰)		㉓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210mm×297mm(백상지 80g/㎡)

㉕-1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 부표 작성방법

※ 이 서식 작성 후 제15쪽㉕ 소득공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1. 소득공제 종합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 중 주택자금공제

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 다만,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출자·투자는 제외합니다.

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라.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

마.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항)

사.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 소득공제 종합한도 요약

항목	구 분	공제액 한도	종합한도 적용 여부
인 적 공 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1명당 100만원, 장애인 1명당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 100만원	×
연 금 보 험 료	공적연금보험료	전 액	×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연 200만원(연금소득금액 한도) 한도	×
특 별 소 득 공 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전 액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㉑)	(㉑+㉒) 연 4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㉒)	(㉑+㉒+㉓) 연 300만원-1,800만원 한도	○
그 밖 의 소 득 공 제	개인연금저축	연 72만원 한도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 (개인투자조합 출자 및 벤처기업 등 및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분은 제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사업소득(근로소득)금액별 연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㉔)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㉑+㉒) 연 400만원 한도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원 한도(벤처기업 1,500만원)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 240만원 한도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 600만원 한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330만원) 중 작은 금액 [총급여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자는 250 만원(28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230만원)]×결호의 금액은 2020년 과세연도에 적용 ※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 초과금 액과 전통시장사용분의 공제율·대중교통이 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에는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의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합친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각각 연간 100만원 한 도)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연 1,000만원 한도	×

210mm×297mm(백상지 80g/㎡)

㉑-1 소득공제 종합한도 계산 부표

「소득세법」상 특별공제			
구 분		금 액	대 상
① 주택자금			근로자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구 분		금 액	대 상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거주자
③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거주자
④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
⑤ 우리사주조합 출자(출연금)			근로자
⑥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근로자
⑦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근로자
⑧ 종합한도 적용 소득공제액 합계 (①~⑦)		⑨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종합한도 적용 소득공제액 - 2,500만원)	

210mm×297mm(백상지 80g/㎡)

㉒ 세액감면명세서 및 ㉓ 세액공제명세서 작성방법

-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적용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세액공제와 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합니다.
 -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가산세는 제외합니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납부할 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 등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① ⑤ 해당 제목(법 조문)란: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에 관한 해당 제목(「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을 적습니다.
 - 배당세액공제(「소득세법」 제56조)는 제23쪽 ㉑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의 ㉑ 배당세액공제의 ㉑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 주택(무수토지 포함) 등 매매차익이 있는 자(「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 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는 제29쪽 ㉑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의 ㉑ 배당세액공제의 ㉑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나. 전자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 : 전자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별지 제10호의4서식)를 먼저 작성하고 같은 서식의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 다. 자녀세액공제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7세 이상인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2명 이하: 1명당 15만원(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4명 : 30만원+(30만원×2명)=90만원)
 - 출산·입양 세액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 또는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한도(퇴직연금 포함) | | | 공제율 |
|------------------------------|------------------------------|-------------------------|---------------|-----|
| | 50세 미만 | 50세 이상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자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 |
| 4천만원 이하(5.5천만원) | 400만원(700만원) | 600만원(900만원) | 400만원(700만원) | 15% |
| 1억원 이하(1.2억원) | | | | 12% |
| 1억원 초과(1.2억원) | 300만원(700만원) | 300만원(700만원) | 300만원(700만원) | |
- * ISA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원 한도)의 12% 또는 15%(종합소득금액 4천이하 또는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추가 공제
- 라.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납입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교육비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한 후 이 난을 적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기부금 중 기부금코드별로 다음의 공제한도 범위 내의 금액을 공제대상기부금으로 하되, 기부금명세서의 코드 10, 40, 41의 기부금 공제액은 이 난에 적고, 코드 20, 42의 기부금 공제액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 란에 적습니다.

세액공제액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2022년에 지급한 기부금의 경우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또는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은 제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는 100/11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해당 금액의 15%(3천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25%)를 세액공제합니다.

[공제대상 기부금]

[기부금종류별 공제한도]

 - ㉑ **특례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종합소득금액 한도
 - ㉒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특례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합계액)] × 30%
 - ㉓ **일반기부금**(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아래 1과 2의 합계액
 - 종교단체기부금: [종합소득금액 - (특례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 × 10%
 - 종교단체와 **일반기부금**: [종합소득금액-(특례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 ×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종교단체와 일반기부금** 중 적은 금액
 - ㉔ **일반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특례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 × 30%
 -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13만원), 성실사업자로서 의료비·교육비·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12만원),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7만원)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세액공제금액과 세액감면금액을 각각 세액공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코드란: 납세자가 적지 않습니다.
 - ③ 세액감면·세액공제란: 해당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 금액을 적습니다.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의 경우 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적습니다.
 - ④ 사업자등록번호란: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㉔ 준비금명세서 작성방법

- ①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제목)란: 준비금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문(제목)을 적습니다.

[예: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
- ② 코드란: 납세자가 적지 않습니다.
- ③ 연도란 및 ④ 금액란: 준비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연도 및 준비금의 금액을 적습니다.
- ⑤ 당기 환입액 및 ⑥ 환입액 누계란: 준비금을 당기에 환입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금액 및 당기까지 환입한 누계금액(전기까지의 환입액 누계+당기 환입액)을 적습니다.
- ⑦ 사업자등록번호란: 준비금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㉓ 세액감면명세서			
① 제 목 (법 조문)	② 코 드	③ 세액감면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세액감면 합계			

15 세액공제명세서							
세 액 공 제 항 목		② 코드	공제대상 금액 (㉑)	적용률 (㉒)	③ 세액공제 (㉑×㉒)	④ 사업자등록번호	
① 「소득세법」 상 세액공제							
배 당 세 액 공 제							
기 장 세 액 공 제							
전자계산서 발급전 송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가)본가(자녀명)					
		(출산·입양명)					
연금계좌세액공제		과학기술인공제					
		퇴직연금		12%			
		연금저축		(15%)			
		ISA만기시연금 계좌납입액					
특별세액 공제	보험료	보장성		12%			
		장애인전용보장성		15%			
	의료비			15%, (20%, 30%)			
	교육비			15%			
	기부금	특례기부금		15% 또는 30%			
		일반기부금					
	표준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⑤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					
정 치 자 금	1 0 만 원 이 하			100/110	
기 부 금	1 0 만 원 초 과			15/100 (25/100)	
⑥ 세액공제 합계 (① 「소득세법」 + ⑤ 「조세특례제한법」)					

㉕ 준비금명세서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목 (조문)	② 코 드	준비금 손금산입액 ③ 연도 ④ 금액	준비금 환입액 ⑤ 당 기 환입액 ⑥ 환입액 누 계	⑦ 사 업 자 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㉖ 가산세명세서 작성방법	
1. ① 무신고가산세·② 과소신고가산세: 가산세율은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적용합니다. 복식 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무신고(과소신고)납부세액 또는 수입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복식 부기의무자가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2. ③ 납부지연가산세란: 가산세율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019년 2월 11일까지는 1단분의 3을 적용하고,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는 10단분의 25를, 2022년 2월 15일 이후부터는 10단분의 22를 적용합니다.	
3. ④ 보고불성실란 중 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와 ⑪ 신용카드거부등란과 ⑫ 현금영수증미발급등란의 위장가공가산세는 ' 18. 1. 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	
4. ⑤ 증빙불비가산세란: 정규증명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수취한 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적용합니다.	
5. ⑥ 무기장가산세란: 적전 과세기간의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기준(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와 복식부기의무자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무기장가산세와 무신고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을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으면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합니다.	
6. ⑥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란: 사업용계좌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하지 않은 기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 중 큰 금액에 1천분의 2를 적용합니다.	
7. ⑥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였으나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미사용금액에 1천분의 2를 적용합니다.	
8. ④ 보고불성실가산세·⑤ 증빙불비가산세·⑥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⑦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⑧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⑩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의무위반 종류별로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억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고의적으로 의무위반을 한 경우에는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9. ④ 동업기업 배분 가산세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가산세액을 적용합니다.	
10. 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인되지 않은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와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의 1만분의 2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11. ⑥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호에 따른 특정의국별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는 등 제출한 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에 1천분의 5를 적용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12. ⑦ 주택임대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1천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13. ⑧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불성실 가산세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제출 금액의 100분의 1을,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을 적용합니다.	
14. 「국제기부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에서 감면받을 세액을 빼서 적용합니다.	

㉗ 기납부세액명세서 작성방법	
1. ① 중간예납세액란: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적용합니다. 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환급받은 세액을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정산한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결산금 소급공제 세액 환급특례 정산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5서식)와 ② 추가납부세액을 중간예납세액에서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2. 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및 ③ 토지등 매매차익예정고지세액란: 부동산매매업자가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라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관할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하여 고지한 소득세액을 적용합니다.	
3. ④·⑤ 수시부과세액란: 「소득세법」·「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수시부과한 소득세액·농어촌특별세액을 각각 적용합니다.	
4. ⑥ 이자소득란: 제5쪽 ⑥ 이자소득명세서 ⑥란의 합계액을 적용합니다.	
5. ⑥ 배당소득란: 제7쪽 ⑥ 배당소득명세서 ⑥란의 합계액을 적용합니다.	
6. ⑦·⑧ 사업소득란: 제9쪽 ⑦ 사업소득명세서 ⑧란의 합계액과 ⑨란의 합계액을 각각 적용합니다.	
7. ⑧·⑨ 근로소득란: 제11쪽 ⑧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중 근로소득에 대한 ⑥란의 합계액과 ⑨란의 합계액을 각각 적용합니다.	
8. ⑨ 연금소득란·⑩ 기타소득란: 제11쪽 ⑨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중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에 대한 ⑥란의 합계액을 적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㉞ 가산세명세서										
				구분	계 산 기 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① 무 신 고				부 정 무 신 고	무 신 고 납 부 세 액		40/100(60/100)			
				일 반 무 신 고	무 신 고 납 부 세 액		20/100			
					무 신 고 납 부 세 액		7/10,000			
② 과 소 신 고				부 정 과 소 신 고	과 소 신 고 납 부 세 액		40/100(60/100)			
				일 반 과 소 신 고	과 소 신 고 납 부 세 액		14/10,000			
					과 소 신 고 납 부 세 액		10/100			
③ 납 부 지 연				미 지 납 부 (환) 세 액	()		22/100,000			
④ 보고불성실	지 급 명 세 서	미제출(불명)			지 급 (불 명) 금 액		1/100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5/100			
		간 이 지 급 명 세 서	미 제 출 (불 명)			지 급 금 액		0.25/100		
			지 연 제 출			지 연 제 출 금 액		0.125/100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 제 출 (불 명)	지 급 금 액		0.25/100	
				지 연 제 출	지 연 제 출 금 액		0.125/100			
	계 산 서	미발급(위장가공)			공 급 가 액		2/100			
		지연발급			공 급 가 액		1/100			
		불명			불 명 금 액		1/100			
		전자계산서 외 발급			공 급 가 액		1/100			
		전자계산서 미전송			공 급 가 액		3/1,000(1/100)			
		전자계산서 지연전송			지 연 전 송 금 액		1/1,000(5/1,000)			
		계 합 산 계 표	미제출(불명)			공 급 (불 명) 가 액		0.5/100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3/10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미제출(불명)	공 급 (불 명) 가 액		0.5/100		
		합			지연제출	지 연 제 출 금 액		0.3/100		
	소 계									
	⑤ 증 병 불 비		미 수 취			미 수 취 금 액		2/100		
			허 위 수 취			허 위 수 취 금 액		2/100		
	⑥ 영 수 증 수 취 명 세 서 미 제 출		미 제			미 제 출 금 액		1/100		
			불 명			불 명 금 액		1/100		
	⑦ 사업장 현 황 신 고 불 성 실		무 신 고			수 입 금 액		0.5/100		
			과 소 신 고			수 입 금 액		0.5/100		
	⑧ 공 동 사 업 장 등 록 불 성 실		미등록·허위등록			총 수 입 금 액		0.5/100		
			손익분배비율허위신고			등 총 수 입 금 액		0.1/100		
⑨ 무 기 장					산 출 세 액		20/100			
⑩ 사 업 용 계 차 미 신 고 등		미 신			수 입 (미 사 용) 금 액		0.2/100			
		미 사 용			미 사 용 금 액		0.2/100			
⑪ 신 용 카 드 거 부 등		거 래 거 부·불 성 실			성 실 금 액		5/100			
		거 래 거 부·불 성 실			성 실 건 수		5,000원			
		위 장 가 공			발 급 수 취 금 액		2/100			
		미 맹 수 입			금 액		1/100			
⑫ 현금영수증 미 발급 등		발 급 거 부·불 성 실			성 실 금 액		5/100			
		발 급 거 부·불 성 실			성 실 건 수		5,000원			
		위 장 가 공			발 급 수 취 금 액		2/100			
		미 발 급			금 액		20/100(10/100)			
		영수증 불성실 발급			불성실기재금액		5/100			
⑬ 기부금영수증불성실		발급명세서 미작성·미보관			미 작 성 등 금 액		0.2/100			
⑭ 동업기업 배분 가산세										
⑮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산 출 세 액		5/100			
					수 입 금 액		2/10,000			
⑯ 유보소득계산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		0.5/100			
⑰ 주택임대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미 등 록 기 간 수 입 금 액		2/1,000			
⑱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미 (불 명) 제 출 금 액		1/100			
⑲ 합 계										

㉞ 기납부세액명세서									
구 분					소 득 세		농 어 촌 특 별 세		
중 간 예 납 세 액					①				
토 지 등 매 매 차 익 예 정 신 고 납 부 세 액					②				
토 지 등 매 매 차 익 예 정 고 지 세 액					③				
수 시 매 부 과 세 액					④		㉑		
원 천 징 수 세 액 및 액					이 자 소 득		⑤	㉒	
					배 당 소 득		⑥	㉓	
					사 업 소 득		⑦	㉔	
					근 로 소 득		⑧	㉕	
					연 금 소 득		⑨		
					기 타 소 득		⑩		
기 납 부 세 액 합 계					⑪		㉖		

210mm×297mm(백상지 80g/㎡)

㉞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작성방법

※ 개인별 금융소득이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1. 용어의 정의

가. "금융소득"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이외에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을 말합니다.

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②,③,⑦)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을 말하고, 그 중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이익(③)과 그 외의 이자소득(②)으로 구분합니다.

다. "㉞기준초과금액"은 과세대상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2012귀속까지는 4천만원)

2. ㉞ 또는 ㉞의 작성란 선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㉞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의 개인별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㉞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3. ① 비영업대금이익란부터 ④ 위 ①·(a)·②·③ 외의 이자소득란까지: 제5쪽 ㉞ 이자소득명세서의 ⑤ 이자소득금액을 소득구분 코드별로 구분하여 해당 구분란 합계액을 적습니다.

(예: 이자 소득구분코드 "11"코드는 ①, "18"코드는 (a), "12·15"코드는 ②, "17"코드는 ③, "13·16"코드는 ④란에 적습니다)

4.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란: 제7쪽 ㉞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⑥ 대상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으며, "⑦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란은 제7쪽 ㉞ 배당소득명세서의 '23' 코드·'26' 코드 "⑤ 배당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⑧ 위 ⑥·⑦ 외의 배당소득란: 제7쪽 ㉞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22' 코드, '29' 코드 배당소득의 "⑤ 배당액" 합계액에서 "⑥ 대상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⑤ 배당액 - ⑥ 대상금액)을 적습니다.

6. ㉞ 배당가산액란: 제7쪽 ㉞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⑦ 가산액의 합계액(= ⑥ 배당가산액(Gross-Up) 대상금액×가산율)을 적습니다.

7. ⑬·⑭·⑮·⑯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란: 제13쪽 ㉞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중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이자소득 등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8. ㉞·㉞의 산출세액 계산 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제7쪽 ㉞ 배당소득명세서의 '28' 코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㉞, ㉞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㉞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포함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 × 기본세율

㉞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14% + [(다른 종합소득금액-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

9. ⑰·⑱·㉞ 소득공제란: 제15쪽 ㉞ 소득공제명세서의 ㉞ 소득공제합계에서 ㉞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0. ㉞·㉞ 세액란: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㉞ 세액란: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2. ㉞·㉞ 세액란: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100(또는 14/10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3. ㉞ 배당세액공제: ㉞란은 ⑬와 ⑰-㉞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㉑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1 금융소득 명세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① 비영업대금이익(25%)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	
(a) 비영업대금이익(14%)		⑦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	
②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⑧ 위 ⑥·⑦ 외의 배당소득	
③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이익		⑨ 배당소득 합계(⑥+⑦+⑧)	
④ 위 ①·(a)·②·③ 외의 이자소득			
⑤ 이자소득 합계(①+(a)+②+③+④)			

2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⑩ 금융소득금액(⑤+⑨)		㉒ $[(②+⑦) \times (14/100)]$	
⑪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0,000	㉓ $[③ \times (25/100)]$	
⑫ 기준초과금액(⑩-⑪)		㉔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⑬ 배당가산액		㉕ 소득공제	
⑭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㉖ 과세표준(㉔-㉕)	
⑮ 기준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⑫+⑬+⑭)		㉗ 기본세율	
⑯ 소득공제		㉘ 산출세액	
⑰ 과세표준(⑮-⑯)		㉙ 종합소득산출세액(㉒+㉓+㉘)	
⑱ 기본세율			
㉑ 산출세액			
㉒ $[⑪ \times (14/100)]$			
㉓ 비교산출세액계(⑱+㉒)			
㉔ 비영업대금이익 $[(①+③) \times 25/100 + (a) \times 14/100]$			
㉕ 비영업대금이익 외의 금융소득 $[⑩ - (①+(a) \times ③)]$			
㉖ $[㉔ \times (14/100)]$			
㉗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⑭)			
㉘ 소득공제			
㉙ 과세표준(㉖-㉘)			
㉚ 기본세율			
㉛ 산출세액			
㉜ 비교산출세액 계(㉔+㉖+㉙)			
㉝ 종합소득산출세액(㉑)와 ㉜ 중 큰 금액)			

4 배당세액공제

㉞ $[⑬와 ㉝ - ㉞] 중 작은 금액]$			
-------------------------	--	--	--

210mm×297mm(백상지 80g/㎡)

㉑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작성방법

※ 이 서식은 기준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소득구분별·사업장별로 별지에 작성하되, ①란부터 ⑨란까지, ㉒란부터 ㉔란까지 및 ㉞란부터 ㉟란까지의 순서로 작성합니다.

1. ① 소득구분코드란: 아래의 소득구분코드(30, 40, 32)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30

나.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0

다.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 32 (701101, 701102, 701103, 701104, 701301)

2. ② 일련번호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을 각각 사업장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둘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적고 그 다음 칸부터는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적어야 합니다.

3. 소득금액계산(①~⑨) 작성 시 같은 사업장에 여러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⑦ 업태/종목·⑧ 업종코드·⑨ 총수입금액란에 업종별로 적은 후, "계()"항목에 업종별 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단일 업종인 경우에는 오른쪽의 "계()"항목에 작성합니다.

4. 매입비용(㉔-㉕)과 임차료(㉔~㉕)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정규증명서류(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를 수취한 금액은 ㉔·㉕란에 적습니다.

나. 정규증명서류 외의 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에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적은 금액을 ㉔·㉕란에 적습니다.

다.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인 거래 등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은 ㉔·㉕란에 적습니다.

5. 인건비(c)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급여·임금·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을 ㉔란에 적습니다.

나.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금액을 ㉕란에 적습니다.

6. ㉞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란·㉟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란: 기초재고자산과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7. ㉟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란: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사업장별)"상의 ㉟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8. ㉞ 기준경비율(%)란: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습니다(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½).

9. ㉞ 단순경비율(%)란: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적습니다.

10. ㉞ 금액란: 1에서 ㉞란의 단순경비율을 뺀 비율에 ㉞란의 업종별 총수입금액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㉞ 비교소득금액란: ㉞란의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에 따른 배율(복식부기의무자: 3.4, 간편장부대상자: 2.8)"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㉞ 소득금액란: ㉞란의 기준소득금액을 적습니다. 다만, ㉞란의 기준소득금액과 ㉞란의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㉟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용)

가. 소득금액 계산

① 소 득 구 분 코 드	()	()	계()
② 일 련 번 호			
③ 사 업 장 소 재 지			
④ 과 세 기 간			. . .부터 . . .까지
⑤ 상 호			
⑥ 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⑦ 업 태 / 종 목	/	/	/
⑧ 업 종 코 드			
⑨ 총 수 입 금 액			

기 준 소 득 금 액	필 요 경 비	주 요 경 비	⑩ 기초재 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⑪ 당기에 지출한 주요경비(=㉔)			
			⑫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⑬ 계 (⑩ + ⑪ - ⑫)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비	⑭ 기준경비율(%)			
			⑮ 금액(⑨ × ⑭)			
		⑯ 필요경비 계 (⑬ + ⑮)				
		⑰ 기준소득금액 (⑨-⑯)("0"보다 작은 경우 "0"으로 적음)				

비 교 소 득 금 액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	⑰ 단순경비율(%)				
		⑱ 금액[⑨ × (1 - ⑱)]				
	㉔ 비교소득금액 (⑱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7조 에서 정하는 배율)					

㉔ 소득금액 (⑰ 또는 ㉔ 중 적은 금액)

나. 당기 주요경비 계산명세(소득구분별 · 사업장별)

구 분	계(A) (=B+C+D)	정규증명서류 수취금액 (B)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금액(C)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외금액(D)
매입비용	㉒	㉓	㉔	㉕
임 차 료	㉖	㉗	㉘	㉙
인 건 비	㉚	㉛	㉜	㉝
계(㉚=㉛)	㉞	㉟	㊱	㊲

첨부자료	주요경비지출명세서 1부
------	--------------

210mm×297mm(백상지 80g/㎡)

㉟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64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 등 매매차익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2021년 6월 1일 이후에는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한다))], 제8호, 제10호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부동산매매업자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제29쪽 ㉟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3. ① 종합소득금액 합계란: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서 각 란의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㉔ 총수입금액란: 제5쪽의 ⑤ 이자소득금액란의 합계액 · 7쪽의 ⑥ 배당소득금액란의 합계액 · 제9쪽의 ⑧ 총수입금액란의 합계액 · 제11쪽의 ⑤ 총수입금액란의 합계액을 전부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㉕ 소득금액란: 제13쪽의 ⑤ 결손금 · 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 ㉖ 필요경비란: ㉔총수입금액에서 ㉕소득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㉗ 소득공제(양도소득기분공제)란: 제15쪽의 ㉔ 소득공제합계에서 ㉕ 소득공제종합한도 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마. ㉘ 과세표준란: ㉕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㉗ 소득공제(양도소득기분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바. ㉙ 산출세액란: ㉘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4. ② 합계란: 「소득세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㉔~㉕란: 각각 ①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나. ㉕ 소득공제(양도소득기분공제)란: ③란의 금액과 ④란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다. ㉖ 과세표준란: ㉕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㉗ 소득공제(양도소득기분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㉙ 산출세액란: ③란과 ④란의 산출세액의 합계를 적습니다.

5. ③ 주택등매매차익 외 종합소득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㉔~㉕란: ② 합계란의 금액에서 ④ 주택등매매차익합계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나. ㉕ 소득공제(양도소득기분공제)란: ①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다. ㉖ 과세표준란: ㉕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㉗ 소득공제(양도소득기분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㉙ 산출세액란: ㉖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6. ⑤~⑭란: 주택 등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4호(2021년 6월 1일 이후에는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한다)), 제8호, 제10호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소득 세율별로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가. ㉔~㉕란: 매매가액(㉔)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계산한 필요경비(㉕)를 빼서 소득금액(㉔)을 계산합니다.

나. ㉕ 소득공제(양도소득기분공제)란: 양도소득기분공제는 연간 250만원입니다. 다만, 미등기주택매매차익은 양도소득기분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 ㉖ 과세표준: ㉔ 소득금액란의 금액에서 ㉕ 소득공제(양도소득기분공제)란의 금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라. ㉙ 산출세액란: ㉖ 과세표준란의 금액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7. ㉚ 세율란: 「소득세법」 제55조 및 제104조에 따른 세율 중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8. 비교산출세액: ① 종합소득금액 합계란의 ㉕ 산출세액과 ② 비교산출세액의 계산 합계란의 ㉕ 산출세액 중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㉑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

1. 종합소득산출세액 비교

구 분	① 종합소득 금액 합계	비교산출세액의 계산		
		② 합계	③ 주택 등 매매차익 외 종합소득	④ 주택등매매차익 합계(⑤+~+⑪)
㉒ 총 수 입 금 액 (주택 등 매 매 가 액)				
㉓ 필 요 경 비				
㉔ 장기보유특별공제				
㉕ 소 득 금 액				
㉖ 소 득 공 제 (양도소득기본공제)				
㉗ 과 세 표 준				
㉘ 세 율				
㉙ 산 출 세 액				

2. 주택 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구 분	⑤ 누진세율 적용자산	⑥ 누진+10%세율 적용자산	⑦ 누진+20%세율 적용자산	⑧ 누진+30%세율 적용자산	⑨ 40%세율 적용자산	⑩ 50%세율 적용자산	⑪ 60%세율 적용자산	⑫ 70%세율 적용자산
㉒ 총 수 입 금 액 (주택 등 매 매 가 액)								
㉓ 필 요 경 비								
㉔ 장기보유특별공제								
㉕ 소 득 금 액								
㉖ 소 득 공 제 (양도소득기본공제)								
㉗ 과 세 표 준								
㉘ 세 율								
㉙ 산 출 세 액								

210mm×297mm(백상지 80g/㎡)

㉒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작성방법

1. 용어정의

가. "금융소득"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 이외에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을 말합니다.

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②, ③, ⑦)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을 말하고, 그 중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이익(③)과 그 외의 이자소득(②)으로 구분합니다.

다. "㉔ 기준초과금액"은 과세대상금융소득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2012년 귀속까지는 4천만원)

2. ㉒ 또는 ㉓의 작성란 선택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㉒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나.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소득(국외금융소득 등)의 개인별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㉓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란에 작성합니다.

3. ① 비영업대금이익란부터 ④ 위 ①·(a)·②·③ 외의 이자소득란까지: 제5쪽 ㉑ 이자소득명세서의 ⑤ 이자소득금액을 소득구분 코드별로 구분하여 해당 구분란 합계액을 적습니다.

(예: 이자 소득구분코드 "11"코드는 ①, "18"코드는 (a), "12·15"코드는 ②, "17"코드는 ③, "13·16"코드는 ④란에 적습니다)

4. ⑥ 배당가산(Gross-Up)대상배당소득란: 제7쪽 ㉑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⑥ 대상금액"란의 합계액을 적으며, "㉒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소득"란은 제7쪽 ㉑ 배당소득명세서의 '23' 코드·'26' 코드 "⑤ 배당액"란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⑧ 위 ⑥·㉒ 외의 배당소득란: 제7쪽 ㉑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22' 코드, '29' 코드 배당소득의 "⑤ 배당액" 합계액에서 "⑥ 대상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⑤ 배당액-⑥ 대상금액)을 적습니다.

6. ㉔ 배당가산액란: 제7쪽 ㉑ 배당소득명세서의 '21' 코드 ㉒ 가산액의 합계액(= ⑥ 배당가산액(Gross-Up) 대상금액 × 가산율)을 적습니다.

7. ㉓·㉔·㉕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란: 제13쪽 ㉑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⑤ 결손금·이월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 중 이자소득금액과 배당소득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만, 이자소득 등에서 사업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8. ㉖·㉗·㉘·㉙의 산출세액 계산 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제7쪽 ㉑ 배당소득명세서의 '28' 코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 ㉚, ㉛ 중 큰 금액을 적습니다.

㉚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을 포함한 다른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기본세율

㉛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14% + [(다른 종합소득금액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소득공제] × 기본세율

9. ㉚·㉛·㉜ 소득공제란: 제15쪽 ㉑ 소득공제명세서의 ㉚ 소득공제합계에서 ㉛ 소득공제종합한도초과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10. ㉝·㉞·세액란: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㉟ 세액란: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금융소득은 14/100(200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한 금융소득은 15/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되거나 원천징수되지 않은 세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12. ㊱·㊲ 세액란: 비영업대금이익은 25/100(또는 14/10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3. ㊳ 배당세액공제: ㊳란은 ㊳와 [(㊴)-(㊵와 ㊶ 중 큰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14. ㉚·㉛ 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란: 제27쪽 ㉑ 종합소득세액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의 ㉒ 주택등매매차익합계란의 ㉔ 소득금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15. ㉝·㉞ 주택등매매차익세액란: 제27쪽 ㉑ 종합소득세액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업자용)의 ㉒ 주택등매매차익합계란의 ㉔ 산출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㉔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주택등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1 금융소득 명세			
구	분	금	액
① 비영업대금이익(25%)			
(a) 비영업대금이익(14%)			
②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			
③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이익			
④ 위 ①・(a)・②・③ 외의 이자소득			
⑤ 이자소득 합계(①+(a)+②+③+④)			
2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 금융소득금액(⑤+⑨)이 종합과세기준금액(2,000만원) 이하인 경우	
구	분	금	액
⑩ 금융소득금액(⑤+⑨)			
⑪ 종합과세기준금액		20,000,000	
⑫ 기준초과금액(⑩-⑪)			
⑬ 배 당 가 산 액			
⑭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			
⑮ 기준금액 외의 종합소득금액(⑭+⑬+⑮)			
⑯ 소 득 공 제			
⑰ 과 세 표 준(⑮-⑯)			
⑱ 기 본 세 율			
⑲ 산 출 세 액			
⑳ [(⑰)× (14/100)]			
㉑ 비교산출세액 계(⑲+㉑)			
㉒ 양도소득공제 전 주택등매매차익			
㉓ 주택등매매차익 외의 과세표준(⑰-㉒)			
㉔ 기 본 세 율			
㉕ 산 출 세 액			
㉖ 주택등매매차익세액			
㉗ 비교산출세액(㉕+㉖+㉖)			
㉘ 비영업대금이익[(①+③)×25/100+(a)×14/100]			
㉙ 비영업대금이익 제외한 금융소득[⑩-(①+a)×③]			
㉚ [(㉙)× (14/100)]			
㉛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⑬)			
㉜ 소 득 공 제			
㉝ 과 세 표 준(㉛-㉜)			
㉞ 기 본 세 율			
㉟ 산 출 세 액			
㊱ 비교산출세액 계(㉞+㉟+㉟)			
㊲ 주택등매매차익 이외의 과세표준(㉝-㊲)			
㊳ 기 본 세 율			
㊴ 산 출 세 액			
㊵ 비교산출세액 계(㊴+㊴+㊴+㉟)			
㊶ 종합소득산출세액(㉚・㉜・㉞・㊴ 중 큰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

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납부특례 세액계산 명세서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에 따라 벤처기업 임원 등이 2024. 12. 31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포함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관련한 소득세액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을 뺀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납부특례세액)은 제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2.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벤처기업 임원 등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확정신고납부 시 납부특례세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현황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발생하는 회사별로 작성합니다.
- ㉔ 납부특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기타)소득금액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따른 소득금액을 제외하여 산출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뺀 금액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 ㉔ 발생과세기간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를 적용받은 과세기간과 납부특례세액(분할납부세액)을 적습니다.
- ㉔ 1차년도 및 ㉔ 2차년도 ㉔ 3차년도 ㉔ 4차년도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납부 시 각각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분할납부세액의 4분의 1)을 적습니다.
- ㉔ 잔액은 ㉔ 발생당시 납부특례세액에서 ㉔ 1차년도 ㉔ 2차년도 ㉔ 3차년도 ㉔ 4차년도 납부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의 납부특례 세액계산 명세서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의 현황

① 법인명	② 사업자 등록번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⑨ 행사이의 $\{⑦ \times (⑧ - ⑤)\}$
		③ 일자	④ 주식 수	⑤ 주당 행사가액	⑥ 일자	⑦ 주식 수	⑧ 주당 시가	

2 납부특례세액의 계산

구 분	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의 포함	⑪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의 제외	⑫ 납부특례세액 (⑩ - ⑪) × 4/5
㉓ 근로(기타)소득금액			
④ 종합소득금액			
㉔ 소득공제			
㉕ 과세표준			
㉖ 세율			
㉗ 산출세액			
㉘ 세액감면			
㉙ 세액공제			
㉚ 결정세액			

3 분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계산

⑬ 발생과세기간	⑭ 발생당시 납부특례세액	납부액				⑰ 잔 액 (⑭ - ⑮ - ⑯ - ⑰ - ⑱)
		⑮ 1차년 도	⑯ 2차년 도	⑰ 3차년 도	⑱ 4차년 도	

210mm×297mm(백상지 80g/㎡)

2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자용)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단일세율 적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① 소득구분 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순으로 적습니다.
가.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 51
※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나. 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52
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53
라. 근로소득납세조합 가입자가 받는 근로소득: 55
마.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 56
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57
※ 외국기관, 국제연합군(미군 제외),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국내지점·국내영
업소·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을 말합니다.
- ② 일련번호란: 소득구분 코드별로 일련번호를 적으며, 코드별 일련번호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일련번호 다음 줄에
코드별 합계를 적습니다.
- ③ 상호(성명)·④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상호(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주민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외국소재 본점을 적거나 모회사의 국내소재 지점·연락사
무소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⑤ 연간근로소득란: 지급자별로 연간 지급한 근로소득 합계액(비과세 근로소득을 포함)을 적습니다.
- ⑥ 원천징수된 소득세란의 금액은 3쪽 ㉓기납부세액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단, 21쪽 ⑯ 기납부세액명세서에는 기재
하지 않습니다. 지방소득세는 3쪽에서 계산하므로 적지 않습니다.
- ⑦ 과세표준란: ⑤의 연간근로소득란 합계액을 적습니다.
- ⑧ 세율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세율을 말합니다.
- ⑨ 산출세액란의 금액은 3쪽 ㉔산출세액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자)**

1. 근로소득 명세서

[illegible]

2. 산출세액의 계산

⑦ 과세표준	⑧ 세율	⑨ 산출세액 (⑦×⑧)
	19%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분리과세 결정세액 계산서 작성방법

1. 「소득세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및 기타소득(가상자산소득,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 한정함)은 이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2. ② 필요경비반
- 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임대주택(이하 같음)은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을 적습니다.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월수로 계산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임대기간의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보아 산입합니다.

<등록임대주택 요건>

-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것에 한정한다]
- 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자의 임대주택일 것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는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등록임대주택에서 제외한다.

- ☐ 분리과세 기타소득(계약금에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 기타소득(가상자산 양도·대여): 양도(교환)한 가상자산의 필요경비는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선입선출법에 따라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한 경우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202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계산)
- ☐ 연금소득: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3. ㉓ 공제금액란
- ㉓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백만원을 공제하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4백만원을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등록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안분 계산합니다.

$$\left(\frac{\text{등록임대주택수입금액}}{\text{총주택임대수입금액}} \times 400\text{만원} \right) + \left(\frac{\text{미등록임대주택수입금액}}{\text{총주택임대수입금액}} \times 200\text{만원} \right)$$

4. ⑦ 세액감면란
- 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액을 적습니다.
5. ⑨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란
- 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⑦ 세액감면 금액을 적습니다.

● 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서

1.분리과세 소득 결정세액 계산

(단위: 원)

구 분	^㉓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㉑ 분리과세 기타소득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㉒ 기타소득 (가상자산 양도·대여)	^㉔ 연금소득
① 총수입금액				
② 필요경비				
③ 공제금액			2,500,000	
④ 소득금액(과세표준): ①－②－③				
⑤ 세율	14%	20%	20%	15%
⑥ 산출세액: ④×⑤				
⑦ 세액감면				
⑧ 결정세액: ⑥－⑦				
⑧ 결정세액 합계				

2. 농어촌특별세 계산

(단위: 원)

⑨ 과세표준: ⑦ 세액감면안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⑩ 세율	20%	
⑪ 산출세액: ⑨×⑩		
⑫ 결정세액		

부분 (6쪽 중 제1쪽)

관리번호

-

(년 귀속)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순경비율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역

거주지역코드

① 기본사항	① 성명 ③ 주소	② 주민등록번호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소지 전화번호	⑥ 주사업장 전화번호	⑦ 휴대전화번호
⑧ 신고유형	^㉒ 추계－단순율 ^㉔ 비사업자	⑨ 기장의무 ¹ 간편장부대상자 ³ 비사업자
⑩ 신고구분	¹⁰ 정·신고, ²⁰ 수정신고, ⁴⁰ 기하후신고	
② 환급금 계좌신고	⑪ 금융기관/채신관서명	⑫ 계좌번호
③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⑬ 종합소득금액: ⑤ 사업소득명세(⑦3)와 ⑦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⑧2)의 소득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⑭ 소득공제: ⑮~㉔합계-㉕		
소득 공제 명세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관 계 코	성 명 내외국인 코 주 민 등 록 번 호
	②2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부금 지출액 중 공제액을 적습니다.	
②3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연금		
②4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②5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40%를 곱한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②6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②7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②7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②8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3쪽의 ⑧ 근로소득자 소득공제명세 합계금액(②2)을 적습니다.		
②9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종합한도 적용 소득공제액 - 2,500만원		
③0 과세표준: ⑬－⑭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③1 세율: 5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③2 산출세액: ③0×③1－누진공제액(5쪽 작성방법 참고)		
③3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금액을 적습니다.		
③4 근로소득자 세액감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3쪽의 ⑨ 근로소득자 세액감면 합계금액(③7)을 적습니다.		
③5 세액공제: 세액공제명세(③6~④3)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③6 전자계산서 발급전출세액공제:5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세액 공제 명세	③6 자녀 7세 이상의 기본공제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30만원+2명 초과 1명당 30만원 공제 출산·입양 세액공제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③7 연금계좌세액공제: 5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공제 대상금액	
	과학기술인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납입액	
	③8 기부금세액공제: 기부금지출액 중 공제액의 20%(1천만원 초과분은 35%) ※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는 공제 가능)	
	특례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일반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우리시주조합기부금공제 대상금액	
	③9 표준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 7만원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13만원(특별소득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중 하나 이상의 소득·세액공제를 받는 경우는 0원)	
	④0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영수증상의 납세조합공제액을 적습니다.	
	④1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3천만원 초과분 25%)	
④2 근로소득자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3쪽의 ⑩ 근로소득자 세액공제명세 합계금액(③5)을 적습니다.		
④3 전자신고세액공제		
④4 결정세액: ③2－③3－③4－③5("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구 분						금 액	
④5 가산세액: 가산세액명세(④6~⑤4)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가산 세액 계산 명세	④6 무 신 고		부 정 무 신 고	무 신 고 납 부 세 액 수 입 금 액	40/100(60/100) 14/10,000	가산세액	
			일 반 무 신 고	무 신 고 납 부 세 액 수 입 금 액	20/100 7/10,000		
	④7 과 소 신 고		부 정 과 소 신 고	과 소 신 고 납 부 세 액 수 입 금 액	40/100(60/100) 14/10,000		
			일 반 과 소 신 고	과 소 신 고 납 부 세 액 수 입 금 액	10/100		
	④8 납 부 지 연		미 납 부 (환 금) 세 액	()	22/100,000		
	④9 보고 불 성 실	지 급 명 세 서	미제출(불명) 지 급 (불 명) 금 액		1/100		
		간 이 지 급 명 세 서	지 연 제 출 지 연 제 출 금 액		0.5/100		
			미제출(불명) 지 급 금 액		0.25/100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 급 금 액		0.125/100		
	⑤0 공동사업장 등 록 불 성 실		미 등 록 · 허 위 등 록 손익분배비율 허 위 신 등	총 수 입 금 액		0.5/100	
	⑤1 무 기 장			총 수 입 금 액		0.1/100	
	⑤2 신용카드거부		산 출 세 액			20/100	
			거 래 거 부 · 불 성 실 금 액			5/100	
	⑤3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		거 래 거 부 · 불 성 실 건 수			5,000원	
			미 가 맹 수 입 금 액			1/100	
발 급 거 부 · 불 성 실 금 액				5/100			
		발 급 거 부 · 불 성 실 건 수			5,000원		
		미 발 급 금 액			20/100 (10/100)		
⑤4 주택임대 사업자미등록		미 등 록 기 간 수 입 금 액			2/1,000		
⑤5 총결정세액: ④4+④5							
⑤6 기납 부 세 액	중간에납세액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의 합계: ⑥ 원천(납세조합)징수세액의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 세액 ⑦4 합계와 ⑦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명세의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 ⑧3 합계를 적습니다.						
⑤7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⑤5-⑤6							
㉠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⑤8 과세표준: ⑩0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금액을 적습니다.							
⑤9 세율						20%	
⑥0 산출세액: ⑤8×⑤9							
⑥1 가산세액							
⑥2 합계: ⑥0+⑥1							
⑥3 기납부세액: 원천징수면 ⑥4 농어촌특별세 합계를 적습니다.							
⑥4 납부(환급)할 세액: ⑥2-⑥3							

①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58 과세표준: ⑩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금액을 적습니다.	
59 세율	20%
60 산출세액: 58 × 59	
61 가산세액	
62 합계: 60 + 61	
63 기납부세액: 원천징수된 84 농어촌특별세 합계를 적습니다.	
64 납부(환급)할 세액: 62 - 63	

⑤ 사업소득명세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⑦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

[illegible]

⑧ 근로소득자 소득공제명세

특별소득	85 보험료 공제(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공제	86 주택자금 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87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88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89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90 신용카드등 사용액	
	91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92 합 계:	85+86+87+88+89+90+91	

⑨ 근로소득자 세액감면

㉔ 「소득세법」 상 세액감면 (제59조의5)	
㉕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 감면 (제18조 외)	
㉖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감면 (제30조)	
㉗ 조세조약(원어민교사 등)	
㉘ 합 계: ㉔+㉕+㉖+㉗	

⑩ 근로소득자 세액공제명세

㉘ 근로소득세액공제					
특별세액 공제	㉙ 보험료	보장성	공제대상금액		
		장애인전용보장성	세액공제액		
	㉚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㉛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㉜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공제					
㉝ 외국납부세액공제					
㉞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㉟ 합 계 : ㉘~㉞ 세액공제액 합계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 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 하거나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기부금영세서(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 각 1부(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가곡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곡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이 신고서는 5월 31일까지 서무서로 우송해야 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작성방법

※ 이 서식은 단순경비를 적용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만 있거나 두 개 이상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 ⑥, 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귀하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전산으로 적혀 있습니다): 계속사업자는 '㉑' 요건을 충족(2019년 귀속 이후부터는 '㉑' · '㉒' 요건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 신규사업자는 '㉑'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 다만,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을 포함한 전문직사업자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는 2008. 1. 1.부터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를 적용이 배제됩니다.
- ㉑ 직전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아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은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서비스업(인적용역 등): 2천400만원
- ㉒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㉑ 금융기관명/채신관서명란 및 ㉒ 계좌번호란: ㉑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환급받을 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인적공제를 받을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가. 관계코드: 본인과 인적공제대상자의 관계를 본인 기준으로 코드로 적습니다.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입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

나. 내외국인코드: 내국인은 "1", 외국인은 "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기본공제: 본인과 아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해당인원×150만원)을 공제합니다.

가. 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

나. 부양가족: 본인과(배우자 포함)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연령에 제한 없이 공제대상입니다.

- 1) 부모, 조부모로서 만 60세 이상인 자
- 2)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로서 만 20세 이하인 자
 (자녀 또는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 3) 형제자매로서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 5)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 ㉓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 100만원 ㉔ 장애인 200만원
- ㉕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50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
- ㉖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㉗과 중복인 경우 ㉘를 적용)

- ㉗ 기부금(이월분) 공제: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하고, 기부금 코드별로 지출액 중 공제한도 범위 이내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 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 출자·투자분에 대해 투자금액의 10%(벤처기업에 직접투자 3천만원 이하 100%,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를 공제합니다.
 *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하며,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㉙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500만원,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1억원 이하 300만원,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1억원 초과 200만원 한도

작성방법

- ㉚ 전가계산서 발급전송세액공제 : 전가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별지 제10호의4서식)를 먼저 작성하고 같은 서식의 공제할 세액을 적습니다.

- ㉛ 연금계좌세액공제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한도(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50세 미만	50세 이상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4천만원 이하(5.5천만원)	400만원(700만원)	600만원(900만원)	400만원(700만원)	15%
1억원 이하(1.2억원)				12%
1억원 초과(1.2억원)	300만원(700만원)	300만원(700만원)	300만원(700만원)	

→ 2019.12.31. 이전 납입분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 400만원(700만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세액공제 대상금액, 300만원 한도)의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추가 세액공제

- ㉜ 세율란 및 ㉝ 산출세액란: 아래의 세율 중 과세표준(㉞)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으며, [과세표준(㉞)×세율(㉜)]-누진공제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세 율 표											
과세표준	귀속년도	2017년		과세표준	귀속년도	2018년~2020년		과세표준	귀속년도	2021년~2022년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 ㉞ 사업소득자 중 기부금세액공제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으로서 간편장부대상자)만 가능합니다.
- ㉟ 무신고가산세 · ㊱ 과신고가산세: 미달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가산세율은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적용합니다.
- ㊲ 납부지연가산세란: 가산세율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019년 2월 11일까지는 1만분의 3을 적용하고,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는 10만분의 25를, 2022년 2월 15일 이후부터는 10만분의 22를 적용합니다.
- ㊳ 보고불성실가산세란: 지급금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 ㊴ 무기장가산세란: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이 4천 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20%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5)
- ㊵ 주택임대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1천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 세법에 따른 제출·신고·가입·등록·개설 등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50%를 감면하여 적습니다.
- ㊶ 원천징수 및 납세조항 징수세액란: ㊶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항 징수세액(㊴)과 ㊷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의 원천징수세액 합계를 적습니다.
- ㊸ 소득구분코드란: 아래의 소득구분코드(30, 32, 40) 중 해당하는 코드를 소득구분에 맞게 적습니다.
 가. 부동산임대업(주택임대업 제외)의 사업소득: 30
 나. 주택임대업의 사업소득: 32 (업종코드가 701101, 701102, 701103, 701104, 701301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업의 소득)
 다.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40
- ㊹ 소득구분코드란: 다음 중 해당되는 소득구분 코드를 코드 순으로 적습니다.
 가. 근로소득의 소득구분 코드

- 1)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 51
- ※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 2) 미군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52 3)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53 4) 근로소득납세조합 가입자가 받는 근로소득: 55
- 5) 외국에 소재하는 본점 또는 모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생한 근로소득: 56
- 6)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57
 ※ 외국기관, 국제연합군(미군 제외),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국내지점·국내영업소·국내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제외)을 말합니다.

작성방법

- 7)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득세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확정신고한 종교인의 근로소득: 58
- ※ 종교인소득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종교인소득)'을 선택하여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 구분 코드 58'을 별도로 작성하게 하는 것은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연말정산을 포함)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를 파악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 나. 연금소득의 소득구분코드: 66
- 다.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코드
- 1) 61코드 및 67코드 이외의 기타소득: 60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에 따라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기타소득: 61
 - 3)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의 기타소득: 67
21. ㉟ 보험료 공제란: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합니다), 고용보험료를 공제합니다.
22. ㉠ 주택자금공제란: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아래 금액을 공제합니다.
- 1) 주택임차차임금원리금 상환액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임금의 원리금상환액
- 2) 장기주택저당차임금 이자상환액 공제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가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임금의 이자상환액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적용하지 아니함)
23. ㉡~㉣ 그 밖의 소득공제란
- | 구 분 | 공제액 한도 |
|----------------------------|--|
|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임대차임금원리금상환액+주택마련저축) 연 400만원 한도 |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연 400만원 한도(벤처기업 1,500만원)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연 240만원 한도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330만원) 중 작은 금액
[총급여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자는 250만원(280만원), 1억2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230만원)] * 괄호의 금액은 2020년 과세기간에 적용
※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 초과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대중교통이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2021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0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해당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합친 금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이하 각 항목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 |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 연 1,000만원 한도 |
24. ㉤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감면(제18조 외)란 : 근로소득자가 아래 사유로 감면받는 세액합계액을 적습니다.
- 1)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제18조),
 - 2)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19조),
 - 3)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조특법 제29의6)
 - 4)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제18의3)
25. ㉥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감면(제30조)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세액을 적습니다.
- * 15세~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 5년간) 근로소득액 70%(청년 90%, 150만원 한도) 감면
26. ㉦ 월세액 세액공제란 : 근로소득자로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가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 17%를 공제합니다.

(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①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소지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번호	
⑦ 신고구분	☐ 정기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② 환급금 계좌신고	⑧ 금융기관/채신관서명		⑨ 계좌번호	
③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⑪ 총수입금액: ① 종교인소득 명세의 ⑩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⑫ 필요경비: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필요경비 금액을 적습니다.				
⑬ 종합소득금액: ⑪ - ⑫				
⑭ 소득공제: ⑬~⑮의 공제금액 합계에서 ⑯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소득공제명세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인적공제	
	관계성	명	내외국인코드	주 민 등 록 번 호
	⑯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부금 지출액 중 공제액을 적습니다.			
⑰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⑱ 개인연금저축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⑲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3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⑳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초과액: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초과액을 적습니다.				
㉑ 과세표준: ㉓ - ㉔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㉒ 세율: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㉓ 산출세액: ㉑ × ㉒ - 누진공제액(4쪽 작성방법 참고)				
㉔ 세액공제: 세액공제명세(㉕~㉗)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세액공제명세	㉕ 자녀	7세 이상의 기본공제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명
세액공제명세	출산·입양 자녀	출산·입양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명
세액공제명세	㉖ 연금계좌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대상금액과 공제액을 적습니다.	공제대상금액		

(4쪽 중 제2쪽)

구분					금액	
세액공제명세	㉓ 기부금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대상금액과 공제액을 적습니다.	특례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일반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공제 대상금액				
	㉔ 표준세액공제: 7만원					
	㉕ 전자신고세액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공제액을 적습니다.					
가산세액계산명세	㉖ 무신고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40/100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20/100	
	㉗ 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40/100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0/100		
㉘ 납부지연		미납일수	()		22/100,000	
㉙ 총결정세액: ㉔-㉘("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㉚ 가산세액: 무신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액명세(㉖~㉘)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가산세액계산명세						
㉛ 총결정세액: ㉙+㉚						
기납부세액	㉜ 원천징수세액: ㉑ 종교인소득 명세의 ㉗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㉝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㉛-㉜						

㉑ 종교인소득 명세				
㉖ 일련번호	소득의 지급자		㉙ 총수입금액	㉗ 원천징수세액
	㉗ 종교단체명	㉙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1				
2				
3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 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 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사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정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기부금영세서(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 각 1부(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이 신고서는 5월 31일까지 세무서로 우송해야 합니다.

(4쪽 중 제3쪽)

작성방법			
※ 이 서식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6조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자 중 해당 과세기간에 종교인소득(기타소득)만 있는 종교관련종사자가 사용(해당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제외)합니다.			
1. 신고하는 귀속연도와 거주구분 등에 관한 표를 적습니다.			
2. ㉔ 주민등록번호란: 외국인인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3. ㉗ 신고구분란: 해당되는 신고구분에 ✓표시 합니다.			
4. ㉔ 환급금 계작성고란: ㉝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란에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5. ㉑ 총수입금액란: ㉑종교인소득 명세의 ㉙총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6. ㉘ 필요경비란: 다음 표에 따른 필요경비를 적용(다만, 실제 든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포함)합니다.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비과세소득 제외)		필요경비	
2천만원 이하		종교관련종사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1,60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2,6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6천만원 초과		3,200만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7.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가. 관계코드란: 본인과 인적공제대상자의 관계를 본인 기준으로 코드로 적습니다.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 중 자녀·임양자=4, 직계비속 중 자녀·임양자 외(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5, 형제자매=6, 수급자=7, 위탁아동=8			
나. 내외국인코드: 내국인은 "1", 외국인인 "2"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 기본공제: 본인(㉑)과 다음에 해당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해당인원×150만원)을 공제합니다.			
가. 배우자(㉒):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나. 부양가족(㉓): 본인과(배우자 포함) 생계를 같이 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부양가족 중 장애인은 연령에 제한 없이 공제대상입니다.			
1) 부모, 조부모로서 만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동거임양자로서 만 20세 이하인 자			
(자녀 또는 동거임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3) 형제자매로서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5)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9.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㉔ 경로우대자(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원 ㉕ 장애인 1명당 200만원			
㉖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 50만원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			
㉗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임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㉔과 중복인 경우 ㉔을 적용)			
10. ㉘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란: 2013년 이전 기부금액 중 한도초과 등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기부금액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 이 경우 기부금영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하고, 기부금 코드별로 지출액 중 공제한도 범위 이내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11. ㉙ 개인연금저축(2010년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납입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12. ㉚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경우에 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0%를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이하 "조합 등")하되,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이하 "벤처 등")에 직접투자한 경우에는 출자·투자금액 구간별로 30% ~ 10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출자·투자금액	공제율	한도액
조합 등		10%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
벤처 등	3천만원 이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	70%	
	5천만원 초과분	30%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08 -

작성방법

13. ㉞ 소득세 등 종합하고 초과액란: 작성방법 12번의 1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액이 2천5백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4. ㉞ 세율란 및 ㉞ 산출세액란: 아래의 세율 중 과세표준(㉞)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으며, [과세표준(㉞)×세율(㉞)－누진공제액]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을 적습니다.

세 율 표								
과세표준	2017년		과세표준	2018년~2020년		과세표준	2021년~2022년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5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5억원 초과	40%	2,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15. ㉞ 연금계좌세액공제란: 아래의 공제한도와 공제율을 적용하여 공제 대상금액과 공제액을 적습니다.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한도(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50세 미만	50세 이상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4천만원 이하(5.5천만원)	400만원 (700만원)	600만원 (900만원) *	400만원 (700만원)	15%
1억원 이하(1.2억원)			300만원 (700만원)	12%
1억원 초과 (1.2억원)	300만원 (700만원)	300만원 (700만원)	300만원 (700만원)	

* ISA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원 한도)의 12% 또는 15%(종합소득금액 4천이하 또는 총급여 5.5천만원 이하) 추가 공제
16. ㉞ 기부금세액공제 및 ㉞ 정치자금기부금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를 먼저 작성한 후 기부금 유형별로 공제 대상금액과 세액공제 금액을 적습니다.

가. 공제 대상금액 한도

㉞ **특례기부금**(기부금명세서의 코드 10) 및 정치자금기부금: 종합소득금액

㉞ **우리사주조합기부금**(기부금명세서의 코드 42): (종합소득금액－㉞)의 기부금 공제액) × 30%

㉞ **일반기부금**(기부금명세서의 코드 40, 41)

- 종교단체기부금(코드 41)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㉞・㉞)의 기부금 공제액) × 10% + [(종합소득금액－㉞・㉞)의 기부금 공제액) × 20%와 코드 40의 기부금 중 적은 금액]

- 종교단체기부금(코드 41)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㉞・㉞)의 기부금 공제액) × 30%

나. 세액공제 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외의 기부금(㉞): "가"에 따라 계산한 공제 대상금액의 합계액 중 정치자금기부금의 공제 대상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2022년에 지급한 기부금의 경우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을 적습니다.

- 정치자금기부금(㉞):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해당금액의 15%(3천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7. ㉞ 납세자가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직접 신고하는 경우 2만원(「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을 공제합니다.

18. ㉞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외국납부세액과 ② 산출세액에 국외에서 발생한 종교인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㉞)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습니다.

19. ㉞ 무신고가산세 및 ㉞ 과소신고가산세란: 미달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20. ㉞ 납부지연가산세란: 가산세율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2019년 2월 11일까지는 1만분의 3을 적용하고,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는 10만분의 25를, 2022년 2월 15일 이후부터는 10만분의 22를 적용합니다.

22. ㉞ 원천징수세액란: ㉞종교인소득 명세의 ㉞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23. ㉞ **종교인소득 명세**: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종교인소득은 제외하고 ㉞ 총수입금액란은 지급자(종교단체)별로 총수입금액의 합계를 적고, ㉞ 원천징수세액란은 지급자(종교단체)별로 원천징수의무자(종교단체)가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분리과세 소득자용)

관리번호	-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① 기본사항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전자우편주소	
	⑤ 주소지 전화번호		⑥ 휴대전화번호	
② 환급금 계좌신고	⑦ 신고유형	㉞ 분리과세	⑧ 신고구분	⑩ 정기신고, ㉞ 수정신고, ㉞ 기한후신고
	⑨ 금융기관/채신관서명		⑩ 계좌번호	
③ 세무대리인	⑪ 성명	⑫ 사업자등록번호		- - - - -
	⑬ 관리번호	-	⑭ 전화번호	

①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분	합계	㉞ 주택임대 사업소득	㉞ 기타소득 (계약금이 위약금 · 배상금으로 대 체되는 경우)	㉞ 기타소득 (가상자산 양도 · 대여)	㉞ 연금소득
㉞ 총수입금액					
㉞ 필요경비					
㉞ 공제금액				2,500,000	
㉞ 소득금액(과세표준): ㉞－㉞－㉞					
㉞ 세율	14%		20%	20%	15%
㉞ 산출세액: ㉞×㉞					
㉞ 세액감면					
㉞ 결정세액: ㉞－㉞					
㉞ 가산세액: 가산세액명세(㉞－㉞)의 합계금액					
㉞ 추가납부세액: ㉞+㉞					
㉞ 합계: ㉞+㉞+㉞					
㉞ 기납부세액					
㉞ 납부(환급)할 세액: ㉞－㉞					

② 농어촌특별세액의 계산

㉞ 과세표준: ㉞ 세액감면란의 금액					
㉞ 세율	20%				
㉞ 산출세액(결정세액): ㉞×㉞					
㉞ 가산세액					
㉞ 추가환급세액					
㉞ 합계: ㉞+㉞－㉞					
㉞ 기납부세액					
㉞ 납부(환급)할 세액: ㉞－㉞					

③ 가산세액 명세

가산세액계산명세	구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㉞ 무신고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수입금액액		40/100(60/100)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수입금액액		14/10,000 20/100	
㉞ 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수입금액액		7/10,000 40/100(60/100)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14/10,000 10/100	

210mm×297mm(백상지 80g/㎡)

		(3쪽 중 제2쪽)					
가 산 세 액 계 산 명 세	구 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㉔ 납부지연		미 납 일 수		()	22/100,000	
			미 납 부 (환 급) 세 액				
	지 급 명 세 서	미 제 출 (불 명)	지 급 (불 명)	금 액		1/100	
		지 연 제 출	지 연 제 출	금 액		0.5/100	
		미 제 출 (불 명)	지 급	금 액		0.25/100	
		지 연 제 출	지 연 제 출	금 액		0.125/100	
	간 이 지 급 명 세 서		미 제 출 (불 명)	지 급	금 액	0.25/100	
			지 연 제 출	지 연 제 출	금 액	0.125/100	
	㉔ 보 고 불 성 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직 전 년 도 수입금액 이 기 준 금 액 이상으로 복식 부기의무자에 해 당 하 는 경 우 작 성)	미발급(위장가공)	공 급 가 액		2/100	

㉔ 추가납부세액 계산

1. 공제금액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㉒구분	㉓공제받은 과세기간	㉔추가 납부사유	추가납부액 관련 필요경비 및 공제금액			㉕소득세 상당액	가 산 액			㉖추가납부액 (㉔+㉕)
			㉗계	㉘필요 경비 차액	㉙공제 받은금액 차액		㉚이자율 [()/10,000]	㉛기간	㉜금 액 (㉔×㉚×㉛)	

2. 감면세액에 대한 추가납부세액									
㉓구분	㉔공제받은 과세기간	㉕추가납부 사유	㉖감면세액	가 산 액			㉗추가납부액 (㉕+㉖)		
				㉘이자율 [() /10,000]	㉙기 간	㉚금 액 (㉕×㉙×㉚)			

㉕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㉖ 종합소득금액(분리과세 소득 제외)	☐ 2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	---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와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 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작성방법

1. ㉔ 필요경비란
 - 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등록임대주택(이하 같음)은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을 적용한다.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월수로 계산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임대기간의 개사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인 경우 1개월로 보아 산입합니다.

<등록임대주택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한 것에 한정]

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한정)

2.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자의 임대주택일 것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등록임대주택에서 제외함

- ㉔ 분리과세 기타소득(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적용한다.
- ㉔ 기타소득(가상자산 양도·대여) : 양도(교환)한 가상자산의 필요경비는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적용한다. 선입선출법에 따라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한 경우에는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2025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4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계산)
- ㉔ 연금소득 :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적용합니다.

2. ㉔ 공제금액란
 - 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백만원을 공제하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 이면서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4백만원을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과 등록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등록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등록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안분 계산합니다.

$$\left(\frac{\text{등록임대주택수입금액}}{\text{총주택임대수입금액}} \times 400\text{만원} \right) + \left(\frac{\text{미등록임대주택수입금액}}{\text{총주택임대수입금액}} \times 200\text{만원} \right)$$

3. ㉔ 세액감면란
 - 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액을 적용한다.
4. ㉔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란
 - 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㉔ 세액감면 금액을 적용한다.
5. ㉔ 주택임대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란: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1천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적용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	(년 귀속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정산계산서)	
------	---	---	--

① 기본사항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④ 신고구분	110 정기신고	200 수정신고	300 경정청구 400 기한후신고				
⑥ 종교관련종사자 여부		⑤ 전화번호					
여 1 / 부 2							
② 환급금 계좌신고		⑦ 은행명					
		⑧ 계좌번호					
⑨ 세무 대리인		⑩ 성명					
⑫ 관리번호		⑪ 전화번호					
		⑬ 대리구분					
		⑭ 신고					
		⑮ 조정번호					
④ 퇴직소득명세	⑭ 지급처명	⑮ 입사일	⑯ 지급일	⑰ 퇴직급여	⑱ 비과세 퇴직급여	⑲ 과세대상 퇴직급여	
	⑮ 사업자등록번호	⑯ 퇴사일	⑰ 근속월수				
	합 계						
⑤ 근속연수계산		② 제외월수	④ 가산월수	⑤ 중복월수	⑥ 정산근속연수	⑦ 2012.12.31. 이전 근속연수	⑧ 2013.1.1. 이후 근속연수(⑤-⑦)

⑨ 2020년 이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개정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과세표준 계산	계 산 내 용		퇴직소득세 금 액
		퇴직소득(⑫)	⑳	
		근속연수공제	㉑	
		환산급여 [(㉒-㉓) × 12배 / 정산근속연수]	㉔	
		환산급여별공제	㉕	
	세액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퇴직소득과세표준(㉖-㉗)	㉘	
		환산산출세액(㉙ × 세율)	㉚	
		산출세액(㉛ × 정산근속연수 / 12배)	㉜	
		세액공제	㉝	
차감	가산세	㉞		
	기납부 세액	㉟		
	납부(환급)할 총세액(㊱+㊲+㊳)	㊴		
	분납할 세액(2월내)	㊵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㊶+㊷)	㊸		

⑩ 2016~2019년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 개정규정 및 종전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에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개정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과세표준 계산	계 산 내 용		퇴직소득세 금 액			
		퇴직소득(⑫)	㉑				
		근속연수공제	㉒				
		환산급여 [(㉓-㉔) × 12배 / 정산근속연수]	㉕				
		환산급여별공제	㉖				
	세액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퇴직소득과세표준(㉗-㉘)	㉙				
		환산산출세액(㉚ × 세율)	㉛				
		산출세액(㉜ × 정산근속연수 / 12배)	㉝				
		세액공제	㉞				
종전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	과세표준 계산	계 산 내 용		금 액			
		퇴직소득(⑫)	㉑				
		퇴직소득정률공제	㉒				
		근속연수공제	㉓				
		퇴직소득과세표준(㉔-㉕-㉖)	㉗				
	세액계산	계 산 내 용		2012.12.31.이전	2013.1.1.이후	합계	
		과세표준안분 (㉗ × 각근속연수 / 정산근속연수)	㉘				
		연평균과세표준(㉙ / 각근속연수)	㉚				
		환산과세표준(㉛ × 5배)	㉜				
		환산산출세액(㉝ × 세율)	㉞				
연평균산출세액 (12.12.31.이전: ㉟ × 세율, 13.1.1.이후: ㊱ / 5배)		㊲					
산출세액(㊳ × 각 근속연수)		㊴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퇴직소득 세액계산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46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35 × 퇴직연도별 비율) + [45 × (100% - 퇴직연도별 비율)]	47	
	세액공제	48	
	가산세	49	
	기납부 세액	50	
차감	납부(환급)할 총세액(47-48+49-50)	51	
	분납할 세액(2월내)	52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51-52)	53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1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접수(영수)
일 자 인

※ 첨부서류: 연금계좌지급명세서 퇴직소득계산명세서 부표(소득이연연금계좌의 퇴직소득확정신고 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종질지80g/㎡]

작성 방법

1. ㉠란은 적지 아니합니다.
2. 이 신고서는 퇴직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사용합니다.
3. ㉡ 기본사항(㉡)란: 퇴직소득자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22조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2제4항제4호의 퇴직소득을 확정신고하는 경우에만 "종교관련종사자 여부"란에 '여 1' 을 선택합니다.
4. ㉢ 환급금 계산신고(㉢·㉣)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5. ㉤ 세무대리인(㉤~㉦)란: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6. ㉧ 퇴직소득명세(㉧~㉩)란: ㉨ 퇴직급여란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한 종업원의 퇴직금 전환금을 포함합니다.
※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퇴직소득지급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2)] 또는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소득계산명세 부표에 따라 작성합니다.
7. ㉪ 근속연수계산(㉪~㉬)란: [근속연수 = (총근속월수 - 종복월수)/12]로 산정한 연수를 적습니다. 다만, 1월 미만의 월수는 1월로 하고, 1년 미만의 월수는 1년으로 합니다.
8. ㉭ 2016~2019년간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 퇴직소득란: ㉮ 과세대상 퇴직급여를 적습니다.
나. ㉯ 환산급여별공제란: 환산급여에 따라 아래의 공제액을 적습니다.

구분 \ 환산급여	8백만원 이하	8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의 100%	8백만원+ (8백만원 초과분의 60%)	4천520만원+ (7천만원 초과분의 55%)	6천170만원+ (1억원 초과분의 45%)	1억5천170만원+ (3억원 초과분의 35%)

- 다. ㉰ 환산산출세액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
- 라. ㉱ 과세표준안분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2012. 12. 31.이전 근속연수비율과 2013. 1. 1. 이후 근속연수비율을 각각 곱하여 계산합니다.
- 마. ㉲ 환산과세표준란과 ㉳ 환산산출세액란: 2013. 1. 1. 이후 부분의 연평균과세표준에 5배수 한 값과 세액을 산출하여 적습니다.
- 바. ㉴ 연평균산출세액란: 2012. 12. 31. 이전 부분은 ㉴ 연평균과세표준에 「소득세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2013. 1. 1. 이후 부분은 ㉳ 환산산출세액을 5로 나누어 산출한 값을 적습니다.
- 사. ㉵ 퇴직소득세 산출세액란: ㉵ 퇴직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따라 아래의 퇴직연도별 비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 퇴직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퇴직연도별 비율	20%	40%	60%	80%

- 아. ㉶ 세액공제란: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라 거주자의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 자. ㉷ 가산세란: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의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습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에 해당하는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해당하는 기한후 신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9. 이 신고서는 1부를 제출하며, 반드시 신고인의 성명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 뒤쪽의 신고안내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2. 과세기간

㉣해당 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직전 과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3. 환급신청 명세

구 분		사업장(1)	사업장(2)	합 계
사업장 정보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해당 과세기간	㉨ 사업장별 결손금			
	㉩ 소급공제 받을 사업장별 결손금			
직전 과세기간	㉪ 사업장별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종합소득 산출세액			
	㉮ 종합소득 결정세액			
	㉯ 사업장별 종합소득 산출세액 : ㉬×(㉪÷㉫)			
	㉰ 사업장별 종합소득 결정세액 : ㉮×(㉪÷㉫)			
환급세액 계산	㉱ 소급공제 후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 (㉬-㉩합계)×직전과세기간 세율×[(㉪-㉩)÷㉫]			
	㉲ 소급공제 가능액: ㉬-㉱			
	㉳ 소급공제 한도액: ㉲			
	㉴ 환급대상세액: MIN[㉲, ㉳]			
	㉵ 기환급세액			
	㉶ 환급신청세액: ㉴-㉵			

4. 국세환급금 계좌신고(환급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금융기관/채신관서명		㉸ 계좌번호	
--------------	--	--------	--

신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9조의2제3항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세무대리인

(서명)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앞쪽)

② 해당 연도 기부 명세

[illegible]

③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

기부자 구 분	총 계	공제대상 기부금					공제제외 기부금	
		특례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우리사주조합 기 부 금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기타
코 드		10	20	40	41	42	10,40,41	50
합 계								
본 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 외								

④ 기부금 조정 명세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구 분	특례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종교단체)
코 드	10	20	42	40	41
이월공제가능기간	10년	-	-	10년	10년

아. 다음 연도로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 이후 기본공제대상자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일련번호

(앞 쪽)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지점명) (지점 사업자등록번호 등)

소 재 지	기부금공제대상
-------	---------

(지점 소재지) 기무금난체 근거법령

* 기부금 단체의 지점(분사무소)이 기부받은 경우, 지점명 등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illegible]

150 160 170

(서명 또는 인)

☐ Yes ☐ No ☐ Not sure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1. ② 기부금 단체는 해당 단체를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2.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기부금 구분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4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42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기부금	43
필요경비(손금) 및 소득공제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부금	50

구 분	기부자		기부받는 공익법인
	법인	개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Max(장부가액, 시가)	Max(장부가액, 시가)	시가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장부가액		장부가액

* 기부한 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 개인이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자산을 기부한 경우 : 개인의 최초 취득가액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기부금 조정명세서

과세기간	년	월	일부터 일까지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1.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 등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계산

① 기준소득금액		⑤ 이월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 MIN[④ , ②⑥]	
②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		⑥ 당해연도 지출액 필요경비 산입액 MIN[(④-⑤)>0, ③]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		⑦ 한도초과액[(③-⑥)>0]	
④ 한도액 [(①-②)>0]		⑧ 소득금액 차감잔액 [(①-②-⑤-⑥)>0]	

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계산

⑨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		⑫ 소득금액 차감잔액 [(⑧-⑪)>0]	
⑩ 한도액 (⑧×30%)		⑬ 한도초과액[(⑨-⑩)>0]	
⑪ 필요경비 산입액 MIN(⑨, ⑩)			

3.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계산

⑭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기부금 해당 금액		⑮ 이월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 MIN[⑭ , ②③]	
⑮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 해당 금액		⑯ 당해연도 지출액 필요경비 산입액 MIN[(⑭-⑮)>0, ⑬]	
⑰ 기부금 해당 금액 (⑭+⑮)		⑳ 한도초과액[(⑰-⑱)>0]	
⑰ 기부금 한도액(㉑또는㉒) ㉑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⑳×10%+㉑×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금액] ㉒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㉑×30%)			

4. 기부금 한도초과액 총액

㉑ 기부금 합계액(③+⑨+⑰)	㉒ 필요경비 산입 합계 (⑥+⑪+⑱)	㉓ 한도초과액 합계(㉑-㉒)=(⑦+⑬+㉔)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 기부금 이월액 명세

기부금 코드	기부연도	㉔ 기부금액	㉕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㉖ 공제대상 금액 (㉔-㉕)	㉗ 해당 과세기간 필요경비 산입액	㉘ 다음 과세기간 이월액(㉖-㉗)
합 계						

작성 방법

- ①기준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과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 ③, ⑨, ⑩, ⑮ 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의 '3. 구분코드별 기부금의 합계'에 해당하는 기부금 종류별 합계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④한도액란: "(①-②)>0"은 ①에서 ②를 차감한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이하에서 (㉖-㉗)>0 표시된 경우는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
- ⑤이월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란: 전기 이월된 한도초과액 잔액 중 「소득세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되는 금액을 적되, 「소득세법」 제34조제5항의 기부금 전기이월액 중 ㉗해당 과세기간 필요경비 산입액의 합계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⑥당해연도 지출액 필요경비 산입액란: ④금액에서 ⑤금액을 뺀 금액과 ③금액 중 작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⑦한도초과액란: ③금액에서 ⑥금액을 빼서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 3. 일반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 계산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⑧소득금액 차감잔액란: ①금액에서 ②금액을 뺀 금액에서 ⑤란과 ⑥란의 손금산입액을 뺀 금액을 적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 "5. 기부금 이월액 명세"는 ⑤, ⑬란에 적어 필요경비로 산입한 기부금 이월액을 과세기간별·기부금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앞 쪽)

과세기간	. . . ~ . . .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1.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따른 한도액	①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⑬의 계)		②설정률	③한도액 (①×②)	비 고
			5/100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른 한도액	④장부상 총당금 기초잔액	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종업원의 퇴직급여충당금	⑥연도중 총당금 환입액	⑦기초충당금 부인누계액	⑧연도중 퇴직금 지급액
					⑨차감액 (④-⑤-⑥-⑦-⑧)
	⑩추계액 대비 설정액 (⑫ × 설정률)		⑪퇴직금전환금		⑬누적한도액 (⑩-⑨+⑪+⑫)
			⑫설정률 감소에 따른 환입을 제외하는 금액 MAX(⑨-⑩-⑪, 0)		
한도초과액 계 산	⑭한도액 (③과 ⑬ 중 작은 금액)		⑮필요경비 계상액		⑯한도초과액 (⑭-⑮)

2.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명세

구 분	⑰총급여액		⑱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종업원에 대한 급여액		⑲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액		⑳기말현재 종업원 전원의 퇴직시 퇴직급여 추계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계정명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

작성 방법

- ①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란에는 ⑱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액란중 계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 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종업원의 퇴직급여충당금란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종업원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습니다.
- ⑦기초충당금 부인누계액란에는 ④장부상 총당금 기초잔액 중에 세무상 부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동 부인액(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설정종업원의 설정전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과 관련된 부인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 ⑨차감액란에는 ④란의 장부상총당금기초잔액에서 ⑤란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종업원의 퇴직급여충당금, ⑥란의 기중충당금환입액, ⑦충당금부인누계액(기중환입분을 제외합니다) 및 ⑧란의 기중퇴직금지급액을 뺀 잔액으로 하되, 그 잔액이 음수(-)인 경우는 "0"으로 적고 () 안에 그 잔액을 적습니다.
- ⑩추계액 대비 설정액란에는 ⑳기말현재 종업원 전원이 퇴직시 퇴직급여추계액에 아래의 설정률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사업연도 개시일이	'10년 중	'11년 중	'12년 중	'13년 중	'14년 중	'15년 중	'16년 중
설정률	30%	25%	20%	15%	10%	5%	0%(폐지)

- ⑪퇴직금전환금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고 재무상태표상 자산으로 계상한 금액을 적습니다.
- ⑰총급여액란 : 계정명별로 상여금을 포함하여 적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된 자는 제외하며,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종업원과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으로 구분하여 ⑱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종업원에 대한 급여액란 및 ⑲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에 대한 급여액란에 각각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1. 업무용 사용비율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

- 가. 복식부기의무(①) :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만 작성하며, 해당되는 경우 "Y"로 표시합니다.
- 나. 차량번호란(②) : 업무용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적습니다.
- 다. 차종란(③) : 업무용 승용차의 차종을 적습니다.
- 라. 임차여부(④) : 업무용 승용차의 임차여부(자가, 렌트, 리스)를 적습니다.
- 마. 보험가입여부란(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4항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를 적습니다.
- 바. 총주행거리란(⑥) : 해당 과세기간의 총 주행거리를 적습니다.
- 사. 업무용사용거리란(⑦)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에 따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근 및 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적습니다.
- 아. 업무용사용비율란(⑧)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에 따른 비율을 적으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영 제78조의3제7항에 따라 아래 각 호에 따른 비율을 적습니다.
- 1)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하 같음)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 2) 해당 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
- 자. 보유 또는 임차기간란(⑩) : 사업연도 중 신규 취득(임차)하는 경우 취득일부터 처분일(임차의 경우 임차 개시일부터 종료일)을 적습니다.
- 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란(⑪) :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을 각 항목별로 적습니다.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불산입액 계산

- 가. 업무사용금액(㉓)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용 사용비율을 곱한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나. 업무외사용금액(㉔)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서 업무사용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다.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㉕) :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이 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8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3.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명세

- 가. 전기이월액(㉙) :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 나.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 누계(㉚) : ㉙의 금액과 ㉙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 다. 필요경비추인(산입)액(㉛)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8항의 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비(상당액) 이월액을 필요경비로 추인(산입) 합니다.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및 한도초과금액 필요경비불산입액 계산

- 가. 감가상각비 누계액(㉞)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3항에 따른 상각범위액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누계액을 적습니다.
- 나. 처분손실(㉟) : 처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습니다.
- 다. 당기필요경비산입액(㉡) : ㉟의 금액이 800만원 이하인 금액을 적습니다.
- 라.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필요경비불산입액(㉢) : ㉟의 금액이 ㉡를 초과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5.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

- 가. 전기이월액(㉞) : 전기에 발생한 차기이월액을 적습니다.
- 나. 필요경비산입액(㉡) : 전기이월액(㉞)의 금액이 있는 경우 전기이월액 중 800만원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앞쪽)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귀속)					
①주소지				②전화번호	
③성 명				④생년월일	
사업장	⑤ 소 재 지				
	⑥ 업 종				
	⑦ 주 업 종 코 드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과 세 기 간	. . .부터	. . .부터	. . .부터	. . .부터
		. . .까지	. . .까지	. . .까지	. . .까지
⑩ 소 득 총 류	(30, 40)	(30, 40)	(30, 40)	(30, 40)	
총 수 입 금 액	⑪장 부 상 수 입 금 액				
	⑫수입금액에서 제외할 금액				
	⑬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				
	⑭세무조정 후 수 입 금 액 (⑪-⑫+⑬)				
필 요 경 비	⑮장 부 상 필 요 경 비 (부표 ⑪의 금액)				
	⑯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금액				
	⑰필요경비에 가산할 금액				
	⑱세무조정 후 필요경비 (⑮-⑯+⑰)				
⑲차가감 소득금액(⑭-⑱)					
⑳기부금 한도초과액					
㉑기부금이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					
㉒해 당 연 도 소 득 금 액 (⑲+㉑-㉒)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3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첨부서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별지 제82호서식 부표)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한 사업장 내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2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 칸부터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별지 제41호서식)를 첨부합니다.
- ⑦주업종코드란 : 한 사업장에 해당되는 업종코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
- ⑩소득종류란 : 해당되는 소득의 코드에 "○"표시를 합니다.
가. 부동산임대소득 : 30
나. 사업소득 : 40
- ⑪장부상 수입금액란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별지 제82호서식 부표)의 ⑮수입금액 합계와 같습니다.
- ⑬수입금액에 가산할 금액란 :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준비금 및 총당금의 환입액 등을 기재합니다. 간주임대료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1)·(2)(별지 제53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⑭세무조정 후 수입금액란 : [7]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별지 제40호서식(1)] ⑧총수입금액 또는 별지 제40호의 3서식의 ㉑총수입금액과 같습니다.
- ⑮장부상 필요경비란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별지 제82호서식 부표)상의 ⑰필요경비 합계와 같습니다.
- ⑯·⑰·⑱·⑲·㉑란 :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별지 제48호서식)상의 조정금액을 해당 사유별로 합계하여 각 란에 기재합니다.
- ㉑기부금 한도초과액란 : 해당 연도의 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말합니다)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초과금액을 기재합니다.
- ㉒기부금이월액 중 필요경비 산입액란 : 해당 연도의 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말합니다)이 한도에 미달하고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부금이월액 중 필요경비산입액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앞쪽)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귀속)					
①주소지			②전화번호		
③성 명			④생년월일		
사업장	⑤ 소 재 지				
	⑥ 업 종				
	⑦ 주 업 종 코 드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과 세 기 간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부터 까지
	⑩ 소 득 총 류	(30, 40)	(30, 40)	(30, 40)	(30, 40)
장부상 수입금액	⑪ 매 출 액				
	⑫ 기 타				
	⑬ 수입금액 합계(⑪+⑫)				
필요 경비	매출원가	⑭ 기 초 재 고 액			
		⑮ 당기 상품매입액 또는 제조비용(㉔)			
		⑯ 기 말 재 고 액			
		⑰ 매출원가(⑭+⑮-⑯)			
		제조비	⑱ 기 초 재 고액		
	⑲ 당기 매입액				
	㉑ 기 말 재고액				
	㉒ 당기 재료비 (⑱+⑲-㉑)				
	일반관리비등	㉓ 노 무 비			
		㉔ 경 비			
		㉕ 당기제조비용(㉒+㉓+㉔)			
		㉖ 급 료			
		㉗ 제 세 공 과 금			
		㉘ 임 차 료			
		㉙ 지 급 이 자			
		㉚ 접 대 비			
		㉛ 기 부 금			
		㉜ 감 가 상 각 비			
		㉝ 차 량 유 지 비			
		㉞ 지 급 수 수 료			
		㉟ 소 모 품 비			
		㊱ 복 리 후 생 비			
		㊲ 운 반 비			
	㊳ 광 고 선 전 비				
㊴ 여 비 교 통 비					
㊵ 기 타					
㊶ 일반관리비등계 (㉝-㊵의 합계)					
㊷ 필요경비 합계 (㉒+㊷)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작성 방법

1. 이 서식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0조제5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한 사업장내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사업장별로 2 이상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그 합계를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 칸부터 사업소득과 그 합계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㉑주업종코드란 : 한 사업장에 해당되는 업종코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
3. ㉑소득종류란 : 아래의 해당되는 소득의 코드에 "○"표시를 합니다.
가. 부동산임대소득 : 30
나. 사업소득 : 40
4. ㉑・㉑기초재고액란은 직전 과세기간 명세서상의 기말재고액과 같아야 하며, ㉑・㉑기말재고액란은 다음 과세기간 명세서상의 기초재고액이 됩니다.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기 매입액만 기재합니다.
5. 제조비용란(㉑~㉑) : 제조원가명세서를 작성하는 제조업 등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6. ㉑제세공과금란 : 사업장에서 부담한 재산세, 상공회의소비, 협회비 등을 기재합니다.
7. ㉑접대비란의 해당 과세기간 접대비 지출금액이 [1,2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600만원) × 과세기간 월수/12]을 초과할 때에는 접대비조정명세서(1)・(2)[별지 제55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8. ㉑기부금란의 기부금(「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른 기부금을 말합니다) ㉑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특별수선충당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준비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때에는 해당 계정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및 분배·유보 내역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1. 신고대상 기간	년 (상/하) 반기	
2. 신고인 (집합투자업자)	① 상호	② 사업자번호
	③ 주소(본점소재지)	④ 전화번호

이익(손실) 및 분배·유보 내역

(단위: 원)

[illegible]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6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3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및 분배·유보 내역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100 100 100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작성 방법

이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의3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기
이익 및 분배·유보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이며, 집합투자업자가 복수의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경우 이익(손실) 및
분배·유보 내역란에 해당 집합투자기구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1. 신고대상 기간: 제출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결산일이 속하는 반기를 적습니다.
(결산일이 2025.3.15.인 경우 → 2025년 상반기)
2. ①~④란: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3. ⑤ 명칭란: 집합투자기구의 명칭을 적습니다.
4. ⑥ 종류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적습니다. 이 때 종류는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18-1-2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와 같이 형태별/운용자산별/개방폐쇄형/추가형·단위형/특수형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예, 투자신탁, 증권펀드(혼합채권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5. ⑦ 협회표준코드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개별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12자리 고유번호를 적으며, 집합투자기구 표준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한 집합투자업자의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6. ⑧ 최초 설정일란: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설립일)을 적습니다.
7. ⑨ 결산기간란: 집합투자기구의 결산기간을 적습니다. (예 2025.1.1. ~ 2025.12.31.)
8. ⑩ 통화코드: 펀드를 외화로 거래하고 기준가격이 외화로 표시되는 펀드인 경우 그 외화의 통화코드를 적습니다. (예 USD, QNY 등)
9. ⑪ 기초이월이익잉여금: 해당 결산기간의 기초이월이익잉여금을 적습니다.
10. ⑫ 설정및해지조정금: 해당 결산기간의 설정 및 해지조정금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⑬ 당기순이익(손실): 해당 결산기간의 순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손실)을 적습니다.
12. ⑭ 분배금란: 총이익금 중 해당 결산기간에 분배한 금액을 적습니다.
13. ⑮ 유보금란: 총이익금 중 해당 결산기간에 유보한 금액을 적습니다.

관리번호	-
------	---

(년)속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결손금 신고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1. 납 세 의 무 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내·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④ 전자우편주소		⑤ 전화번호		⑥ 주 소	
2. 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						
⑦ 구 분	합 계		상장주식 등 소득		기타 금융투자소득	
⑧ 금융투자소득금액 (금융투자결손금)						
⑨ 기신고·결정·경정된 금융투자소득금액 합계						
⑩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						
⑪ 과세표준 (⑧ + ⑨ - ⑩)						
⑫ 세 율						
⑬ 산출세액						
⑭ 감면세액						
⑮ 외국납부세액공제			3.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⑯ 무(과소)신고		⑳ 소득세 감면세액			
가 산 세	㉑ 납부지연		㉒ 세 율			
	㉓ 계 (⑯ + ㉑)		㉔ 산출세액			
㉕ 원천징수세액공제			㉖ 수정신고가산세등			
㉗ 기신고·결정·경정세액			㉘ 기신고·결정·경정세액			
㉙ 납부할세액 (㉓ - ㉔ - ㉕ + ㉖ - ㉗ - ㉘)			㉚ 납부할세액			
㉛ 분납할세액			㉜ 분납할세액			
㉝ 납부세액			㉞ 납부세액			
㉟ 환급세액			㊱ 환급세액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87조의21(예정신고)·제87조의23(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제45조의3(기한 후 신고)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4. 환급금 계좌신고(환급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붙임서류	1. 금융투자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 1~6 중 해당하는 것) 1부				
	2.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및 매입 등에 관한 계약서 사본 1부				
	3. 양도비 등의 명세서 1부				
	4. 감면신청서 등 1부				
	5. 그 밖에 금융투자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 방법

이 서식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를 위한 서식으로 제3쪽 금융투자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를 먼저 작성한 후 작성합니다.

- ① 성명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 ② 주민등록번호란: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되, 외국인으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 “2. 금융투자소득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장주식 등 소득”과 “기타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⑧ 금융투자소득금액(금융투자결손금액)란: 제3쪽 ㉑ 금융투자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의 ㉕ 이월결손금 공제 후 금융투자소득금액(결손금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⑨ 기신고·결정·경정된 금융투자소득금액합계란: 같은 과세기간에 기신고 또는 결정·경정된 금융투자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㉑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란: 「소득세법」 제87조의20제2항에 따른 방식(소득금액 차감방식)으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을 적용 받으려는 경우 그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 ㉑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란: 「소득세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에 따른 “상장주식 등 소득”은 5,000만원,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타 금융투자소득”은 25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금액을 적습니다.
- ㉑ 과세표준란: 「소득세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별로 계산(⑧+⑨-⑩-㉑)한 금액을 적습니다.
- ③ 세율란: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의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 세율을 적습니다.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

- ㉑ 산출세액란: ㉑과세표준 금액에 ㉑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㉑ 감면세액란: 「소득세법」 제87조의20제1항(세액감면방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적습니다.
- ㉑ 외국납부세액공제란: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을 적습니다.
- ㉑ 무(과소)신고란: 무(과소)신고납부세액에 가산세율(일반무신고 20%, 일반과소신고 10%, 부당무(과소) 신고 4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㉑ 납부지연란: 미납부 세액에 가산세율(1일 2.2/10,000)과 미납일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 ㉑ 원천징수세액공제란: 금융회사등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 ㉑ 기신고·결정·경정세액란: 기신고세액 또는 결정·경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적습니다.
- ㉑ 분납할세액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 분납하려는 경우 해당 세액을 적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 ㉑ 납부세액란부터 ㉑환급세액란까지: 계산 결과 신고·납부(또는 환급)할 세액 등을 적습니다.
- “3.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에서 ㉑소득세 감면세액란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을 적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㉑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4. 환급금 계좌신고”는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좌개설(변경)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에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① 금융투자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① 금융투자상품별 소득금액 (결손금액)	② 해당연도 결손금액 공제금액	③ 금융투자 소득금액 (결손금액)	④ 이월결손금 공제금액	⑤ 이월결손금 공제후 금융투자 소득금액 (결손금액)
상장주식 소득	소 계					
	상 장 주 식					
	중 소 · 중 건 기 업 K-O T C 거 래 주 식					
	주 식 형 편 드					
	상장주식 장외교환·이전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기타 금융투자 소득	소 계					
	비 상 장 주 식 등					
	채 권 등					
	투 자 계 약 증 권					
	집 합 투 자 기 구					
	파 생 결 합 증 권					
	파 생 상 품					
합 계						

② 이월결손금명세서

이월결손금 발생명세		③ 전기까지 공제액	④ 당기 공제가능 이월결손금 (② - ③)	⑤ 당기공제액	⑥ 잔 액 (④ - ⑤)
① 발생 과세기간	② 발생금액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① 금융투자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작성방법

이 서식은 금융투자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를 작성하기 위한 서식으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 부표1~부표6의 해당 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먼저 작성한 후 작성합니다.

- ① 금융투자상품별 소득금액란: 「소득세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에 따른 "상장주식 등 소득" 과 그 외의 소득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 1-1. 상장주식 등 소득(「소득세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의 소득금액)
 - 가. 상장주식: 주식등 소득금액 계산명세서(부표1)상의 ③주식등 구분 코드가 "11, 12, 13(상장주식)" 이고 ④장내/장외란이 "01(장내)" 이면서 ⑤국내/ 국외란이 "1(국내)" 에 해당하는 경우 ⑧ 과세대상소득금액란의 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 나. 중소·중견기업 K-OTC거래 주식: 주식등 소득금액 계산명세서(부표1)상의 ③주식등 구분 코드가 "14(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 이고 ⑤국내/국외란이 "1(국내)" 에 해당하는 경우 ⑧ 과세대상 소득금액란의 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 다. 주식형펀드: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계산명세서(부표4)상의 ③ 기본공제 구분 코드가 "41(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에 해당하는 경우 ⑩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란의 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 라. **상장주식 장외교환·이전·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주식등 소득금액 계산명세서(부표1-1)상의 ③주식등 구분 코드가 "11, 12, 13(상장주식)" 이고 ④장내/장외란이 "03(장외 교환·이전·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이면서 ⑤국내/ 국외란이 "1(국내)" 에 해당하는 경우 ⑧ 과세대상 소득금액란의 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 1-2. 기타 금융투자소득(「소득세법」 제87조의18제2호의 소득금액)
 - 가. 비상장주식등: 주식등 소득금액 계산명세서(부표1)상의 ③주식등 구분 코드가 상기 1-1의 가. 상장주식 및 나. 중소·중견기업 K-OTC거래 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등에 대해 주식등 소득금액 계산명세서(부표1)상의 ⑧ 과세대상 소득금액란의 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 나. 채권등: 채권등 소득금액 계산명세서(부표2)상의 ⑦ 소득금액란의 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 다. 투자계약증권: 투자계약증권 소득금액 계산명세서(부표3)상의 ⑥ 소득금액란의 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 라.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계산명세서(부표4)상의 ⑤ 기본공제 구분 코드가 "40(국내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 투자기구 외)" 에 해당하는 경우 ⑩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란의 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 마.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계산명세서(부표5)상의 ⑦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란의 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 바. 파생상품: 파생상품 소득금액 계산명세서(부표6)상의 ⑩ 파생상품 소득금액란의 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 ② 해당연도 결손금 공제금액란: 「소득세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구분별로 ① 금융투자상품별 소득금액 소계란이 0보다 큰 경우에 한하여 다음의 금액을 적습니다.
 - 가. "상장주식 등 소득" 의 해당연도 결손금 공제금액란: "기타 금융투자소득" 의 ① 금융투자상품별 소득금액 소계란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해당 금액을 적되 "상장주식 등 소득" 의 ① 금융투자상품별 소득금액 소계란 금액을 한도로 적습니다.
 - 나. "기타 금융투자소득" 의 해당연도 결손금 공제금액란: "상장주식 등 소득" 의 ① 금융투자상품별 소득금액 소계란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해당 금액을 적되 "기타 금융투자소득" 의 ① 금융투자상품별 소득금액 소계란 금액을 한도로 적습니다.
- ③ 금융투자소득금액(결손금액)란: 다음의 금액을 계산하여 적습니다.
 - 가. ① 금융투자상품별 소득금액의 소계란 금액이 0보다 큰 경우: ① 금융투자상품별 소득금액의 소계란 금액에서 ②해당연도 결손금 공제 금액란의 금액을 차감하여 적습니다.
 - 나. ① 금융투자상품별 소득금액의 소계란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① 금융투자상품별 소득금액의 소계란 금액을 적되, 그 결손금을 해당 소득 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 금액(② 해당연도 결손금 공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제한 금액을 차감한 후의 잔여 결손금을 적습니다.
- ④ 이월결손금 공제금액란: 「소득세법」 제87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으로서 하단의 ② 이월결손금명세서상의 ④ 당기 공제가능 이월 결손금의 금액을 적되 이월결손금 공제는 ③ 금융투자소득금액(결손금액)이 0보다 큰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또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은 "상장 주식등 소득" 의 ③ 금융투자소득금액과 "기타 금융투자소득" 의 ③ 금융투자소득금액이 모두 0보다 큰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5 제1항에 따라 "상장 주식 등 소득" 의 ③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며, 과세기간별로 먼저 발생한 결손금부터 차례대로 공제합니다.
- ⑤ 이월결손금 공제 후 금융투자소득금액(금융투자결손금)란: ③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④ 이월결손금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④ 이월결손금 공제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③ 금융투자소득금액(결손금액)란의 금액을 그대로 적습니다.

② 이월결손금명세서 작성방법

- ① 발생과세기간란·② 발생금액란: 직전 5개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과세기간별로 먼저 발생한 순으로 적습니다.
- ③ 전기까지 공제액란: 직전 과세기간까지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적습니다.
- ④ 당기 공제가능 이월결손금란: ② 발생금액에서 ③ 전기까지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 ⑤ 당기공제액란: 당기에 공제한 금액을 적습니다.
- ⑥ 잔액란: 소득세법상 공제기한인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발생한 금융투자결손금 잔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주식등 소득금액 계산명세서

① 일련 번호	② 계좌 번호	주식등 상세내역							소득금액의 계산								⑱ 과세대상 소득금액 (⑭-⑮-⑯)	⑲ 합산과세 신청여부	㉑ 과세이연 신청여부
									양도가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비과세 · 감면					
		③ 주식등 구분	④ 장내/ 장외	⑤ 국내/ 국외	⑥ 증권 표준 코드	⑦ 종목명	⑧ 양도일	⑨ 취득일	⑩ 양도 주식수	⑪ 양도 가액	⑫ 취득 가액	⑬ 양도비등 필요경비	⑭ 소득금액 (⑪-⑫-⑬)	⑮ 비과세	⑯ 감면	⑰ 감면종류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주식을 거래한 경우 금융투자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원천징수된 경우는 제외).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 방법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내역을 작성하는 서식으로 양도한 주식등을 계좌번호별, 종목별, 양도일자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으며「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 부표 1-2 “주식등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를 먼저 작성한 후 작성합니다.

1. ① 일련번호란: 작성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기입하되 계좌번호별, 종목별, 양도일자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② 계좌번호란: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 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별로 부여된 고유관리번호(계좌번호)를 적습니다.

3. ③ 주식등 구분란: 주식등 구분에 따라 다음의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OTC거래 중소·중견기업	K-OTC중소·중견기업 외	그외
코드	11	12	13	14	15	19

4. ④ 장내/장외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내에서 양도한 경우 코드 “01”로 적고, 장외거래 중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 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장외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03”으로, 그 외의 장외거래는 “02”로 적습니다.

구분	장내거래	장외거래	장외교환·이전·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코드	01	02	03

5. ⑤ 국내/국외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에 따라 내국법인이 발행하여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었거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인 경우 코드 “9”로 적고 그 외는 “1”로 적습니다.

구분	국내주식	국외주식
코드	1	9

6. ⑥ 증권표준코드란: 한국거래소에서 금융투자상품에 개별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12자리 고유번호를 적으며, 비상장주식 등 표준코드가 없는 그 밖의 경우에는 주식발행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국외주식의 경우 국제증권식별번호(ISIN코드)를 적으며 동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발행법인 소재 국가의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7. ⑦ 종목명란: 양도한 주식등의 종목명을 적습니다. 종목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8. ⑧ 양도일란: 주식등의 양도일자를 적습니다.

9. ⑨ 취득일란: 양도한 주식등의 취득일자를 적습니다. 다만, 양도한 주식등의 취득일자가 서로 다르거나 이동평균법에 따라 산정하여 취득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둡니다.

10. ⑩ 양도주식수량: 양도한 주식등의 수량을 적습니다.

11. ⑪ 양도가액란: 양도한 주식등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으며, 국외주식은 양도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⑫ 취득가액란: 양도한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87조의12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적으며, 국외주식은 취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3. ⑬ 양도비등 필요경비란: 양도한 자산을 취득한 후 정승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과 주식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권거래세, 수수료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합계하여 적습니다.

14. ⑭ 소득금액란: ⑪ 양도가액에서 ⑬ 취득가액과 ⑬ 양도비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15. ⑮ 비과세란: ⑭ 소득금액 중 비과세대상 소득금액이 있으면 비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6. ⑯ 감면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감면받는 소득금액이 있으면 감면되는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7. ⑰ 감면종류란: 주식등 금융투자소득세 감면규정 등을 적습니다

18. ⑱ 과세대상 소득금액란: ⑭ 소득금액에서 ⑮ 비과세 소득금액과 ⑯ 감면 소득금액을 차감하여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9. ⑲ 합산과세 신청여부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례 적용(비과세, 분리과세)받은 소득금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제14항, 제24조의2제6항, 제81조의4제5항, 제82조의2제6항, 제83조제12항, 제92조의13제10항, 제93조의3제9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합산과세 신청을 하는 경우 “여”로 적습니다.

20. ㉑ 과세이연 신청여부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과세이연 특례 신청 여부를 적습니다

※ ⑮비과세, ⑯감면, ⑲합산과세 신청, ㉑과세이연 신청을 하는 경우 과세특례 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	---

주식등 양수인 명세서

(단위: 주, 원)

[illegible]

작성 방법

이 서식은 상장주식등을 장외에서 거래하거나, 비상장주식등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 명세를 작성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 ① 일련번호만: 작성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② 일련번호: 주시동들 뿐 아니라 법연명도 적습니다.
- ③ 증권증권코드(기업자산등록번호):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투자상품등록 개편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12자리 고유번호를 적으며, 비상장주식등록 코드(증권코드) 없는 경우에는 주식명명명의 기업자산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④ 성명(일련번호): 양도장권별로 적지, 양도인간 다수 경우에는 양수인을 구분하기 모두 적습니다.
- ⑤ 양수(일련번호)(기업자산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양수등록번호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적으며, 법인인 경우 기업자산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⑥ 양도주식수: 양수인별로 양도한 주식들의 수를 적습니다.
- ⑦ 양도인명: 양도인별로 양도한 주식들의 양도인명을 적습니다. 양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양도인명 총 해당 양수인이 전체 양도 주식 중 양도인 수를 포함한 가액을 적습니다.
- ⑧ 관계: 양도인과의 관계에 따라 아래에 예시와 같이 적습니다.
- ⑨ 예시: 양도인이 아버지이고 양수인이 아들인 경우 → 자녀, 양도인이 남편이고 양수인이 부인인 경우 → 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절지 80g/㎡]

(앞 쪽)

관리번호	-
------	---

채권등 소득금액 계산명세서

[illegible]

297mm×210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작성방법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채권등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계산시 작성하는 서식으로 양도한 채권등의 계좌번호별, 채권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1. ① 계좌번호란: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채권등을 양도한 경우 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별로 부여된 고유관리번호(계좌번호)를 적습니다. 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않고 채권등을 직접 실물로 거래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등의 발행번호를 적으며, 채권등의 종류, 발행일, 이자지급일이 동일하고 보유수량이 다량인 경우에는 대표 발행번호를 적습니다.
2. ② 채권등 구분란: 양도한 채권등의 구분에 따라 다음의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외국채	기타
코드	21	22	23	24	25	29

3. ③ 장내/장외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내에서 양도한 경우 코드 “01” 로 적고 그 외(장외)는 “02” 로 적습니다.

구분	장내거래	장외거래
코드	01	02

4. ④ 국내/국외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에 따라 내국법인이 발행하여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되었거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등인 경우 코드번호 “9” 로 적고 그 외는 “1” 로 적습니다.

구분	국내채권	국외채권
코드	1	9

5. ⑤ 증권표준코드란: 한국거래소에서 증권상품에 개별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12자리 고유번호를 적으며, 표준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채권등 발행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국외채권인 경우 국제증권식별번호(ISIN코드)를 적으며 동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발행법인 소재 국가의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6. ⑥ 채권명란: 채권등의 금융투자상품명을 적으며, 금융투자상품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채권등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7. ⑦ 양도일란: 채권등의 양도일자를 적습니다.

8. ⑧ 취득일란: 양도하는 채권등의 취득일자를 적습니다.

9. ⑨ 양도수량란: 양도하는 채권등의 수량을 적습니다.

10. ⑩ 양도가액란: 양도하는 채권등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으며, 국외채권은 양도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⑪ 취득가액란: 양도하는 채권등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취득유형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른 평가액 등 법령에서 정한 가액)을 적되, 취득가액에 포함된 경과이자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⑫ 이자등상당액란: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적습니다.

13. ⑬ 양도비등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14. ⑭ 소득금액란: ⑩ 양도가액에서 ⑪ 취득가액과 ⑫ 이자등상당액, ⑬ 양도비등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5. ⑮ 감면소득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감면받는 소득금액이 있으면 감면되는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6. ⑯ 감면종류란: 채권등 금융투자소득세 감면규정 등을 적습니다.

17. ⑰ 과세대상 소득금액란: ⑭ 소득금액에서 ⑮ 감면 소득금액을 차감한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8. ⑱ 합산과세 신청여부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례 적용(비과세, 분리과세, 분리과세)받은 소득금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제14항, 제24조의2제6항, 제81조의4제5항, 제82조의2제6항, 제83조제12항, 제92조 의13제10항, 제93조의3제9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합산과세 신청을 하는 경우 “여” 로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투자계약증권 소득금액 계산명세서

① 계좌번호	투자계약증권 상세내역						소득금액의 계산								
							양도가액(총수입금액)		필요경비		⑫ 소득 금액 (⑨-⑩-⑪)	감면		⑮ 과세대상 소득금액 (⑫-⑬)	⑯ 합산과세 신청여부
	② 장내/장외	③ 국내/국외	④ 증권표준코드	⑤ 투자계약증권 상품명	⑥ 양도일	⑦ 취득일	⑧ 양도수량	⑨ 양도가액	⑩ 취득가액	⑪ 양도비등		⑬ 감면 소득	⑭ 감면 종류		
합 계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금액 계산시 작성하는 서식으로 양도한 투자계약증권의 계좌번호별, 상품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1. ① 계좌번호란: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투자계약증권을 양도한 경우 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별로 부여된 고유관리번호(계좌번호)를 적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않고 거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계약증권의 발행번호 또는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이 경우 투자계약증권의 종류, 발행일이 동일하고 보유수량이 다량인 경우에는 대표 발행번호 또는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② 장내/장외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내에서 양도한 경우 코드 "01"로 적고 그 외(장외)는 "02"로 적습니다.
- | 구분 | 장내거래 | 장외거래 |
|----|------|------|
| 코드 | 01 | 02 |
3. ③ 국내/국외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된 투자계약증권인 경우 코드 "9"로 적고 그 외는 "1"로 적습니다.
- | 구분 | 국내증권 | 국외증권 |
|----|------|------|
| 코드 | 1 | 9 |
4. ④ 증권표준코드란: 한국거래소에서 증권상품에 개별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12자리 고유번호를 적으며, 증권표준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투자계약증권 관련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국외증권인 경우 국제증권식별번호(ISIN코드)를 적으며 동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발행법인 소재 국가의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5. ⑤ 투자계약증권 상품명란: 양도하는 투자계약증권의 금융투자상품명을 적으며, 금융투자상품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투자계약증권 관련 공동사업의 상호 또는 사업명을 적습니다.
6. ⑥ 양도일란: 양도하는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일자를 적습니다.
7. ⑦ 취득일란: 양도하는 투자계약증권의 취득일자를 적습니다.
8. ⑧ 양도수량란: 양도하는 투자계약증권의 수량을 적습니다.
9. ⑨ 양도가액란: 양도하는 투자계약증권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으며, 국외 증권은 양도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⑩ 취득가액란: 양도하는 투자계약증권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 투자계약증권 취득가액의 평가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별법을 적용합니다.
11. ⑪ 양도비등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등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⑫ 소득금액란: ⑨ 양도가액에서 ⑩ 취득가액과 ⑪ 양도비등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3. ⑬ 감면소득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감면받는 소득금액이 있으면 감면되는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4. ⑭ 감면종류란: 투자계약증권 금융투자소득세 감면규정 등을 적습니다.
15. ⑮ 과세대상 소득금액란: ⑫ 소득금액에서 ⑬ 감면소득을 차감한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6. ⑯ 합산과세 신청여부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례 적용(비과세, 분리과세) 받은 소득금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제14항, 제24조의2제6항, 제81조의4제5항, 제82조의2제6항, 제83조제12항, 제92조의13제10항, 제93조의3제9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합산과세 신청을 하는 경우 "여"로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 계산명세서

① 계좌 번호	집합투자기구 상세내역						집합투자기구 소득금액의 계산									
	② 국내 /국외	③ 기본공제 구분	④ 증권표준 코드	⑤ 집합투자기구 상품명	⑥ 환매일 (매도일)	⑦ 취득일 (매수일)	⑧ 장내/ 장외	⑨ 환매 좌수	⑩ 매도가격	⑪ 매수가격	⑫ 수수료등	⑬ 소득금액 (⑩-⑪-⑫)	감면		⑮ 과세대상 소득금액 (⑬-⑭)	⑯ 합산과세 신청여부
													⑭ 감면 소득	⑮ 감면 종류		
합 계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① 계좌번호란: 금융회사들을 통하여 집합투자증권권을 보유 또는 양하는 경우 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별로 부여된 고유관리번호(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 집합투자증권권을 금융회사들을 통하지 않고 보유 또는 거래한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의 발행번호 또는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종류와 발행일이 동일하고 보유수량이 다량인 경우에는 대표 발행번호 또는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② 국내/국외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과세) 따라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코드 "9"로 적고 그 외는 "1"로 적습니다.

구분	국내 집합투자기구	국외 집합투자기구
코드	1	9

구분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 (기본공제 5,000만원 적용 대상)	이 외 집합투자기구(기본공제 250만원 적용 대상)
코드	41	49

8. ⑧ 장내/장외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내에서 양도한 경우 코드번호 “01”로 적고 그 외(장외)는 “02”로 적습니다.

구분	장내거래	장외거래
코드	01	02

11. ⑩ 매수가격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좌당 매수가격에 환매좌수를 곱하여 매수가격을 적되, '24.12.31. 이전 보유한 집합투자증권(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집합투자증권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 의제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수가격을 적습니다.

구분	가. ETF · 상장투자회사 집합투자증권	나. 기타 집합투자증권(가.다 제외)	다.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서 매도
취득가액	직전 결산 · 분배 직후 기준가격 (직전 결산 · 분배 없었던 경우 매수시 기준가격)	매수시 기준가격(매수 후 결산 · 분배가 있었던 경우 결산 · 분배 직후 기준가격) ± 직전 결산 · 분배시 파세되지 않은 손익	실제 매수가격
의제취득가액	직전 결산 · 분배 직후(직전 결산 · 분배 없었던 경우 매수시) 기준가격 = A - (B - C) A :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B :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파세표준기준가격 C :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 · 분배 직후의 과세표준기준가격	매수시 기준가격 = A - (B - C ± D) A :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B :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파세표준기준가격 C : 매수 시 파세표준기준가격 D :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직전 결산 · 분배시 발생한 파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파세손익 * 단, 국내 공모주식형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A는 MAX(A, A') 적용 A :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기준가격 A' : 매수시(또는 직전 결산 · 분배 직후) 파세표준기준가격	MAX (A - (B - C), 실제취득가액) A :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시세금액 B :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파세표준기준가격 C : 매수시 파세표준기준가격 *단, 국내주식형ETF 및 상장투자회사의 경우 (B - C)를 0으로 함

17. ⑦ 합산과세 신청여부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별 적용(비과세, 분리과세)받은 소득금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제14항, 제24조의2제6항, 제81조의4제5항, 제82조의2제6항, 제83조제12항, 제92조의13제10항, 제93조의3제9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합산과세 신청을 하는 경우 “여”로 적습니다.

(앞쪽)

관리번호	-
------	---

파생결합증권 소득금액 계산명세서

[illegible]

1. ① 계약변환: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파생결합증권 보유 또는 양도한 경우 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별로 부여된 고유관리번호(계약번호)를 적습니다. 파생결합증권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않고 보유 또는 거래한 경우에는 해당 파생결합증권의 발행번호 또는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이 경우 파생결합증권의 종류와 발행일이 동일하고 보유수량이 다량인 경우에는 대표 발행번호 또는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② 파생결합증권 구분란: 파생결합증권 구분에 따라 다음의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3. ③ 국내/국외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에 따라 국외에서 발행된 증권인 경우 코드번호 “9”로 적고 그 외는 “1”로 적습니다.

4. ④ 증권표준코드란: 한국거래소에서 증권상품에 개별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12자리 고유번호를 적으며, 증권표준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둡니다.

5. ⑤ 파생결합증권의 수익금에 대하여는, 파생결합증권의 만기일에 투자자산의 손익이 확정되는 경우 증권에 기재된 파생결합증권의 명칭을 적습니다.

6. ⑥ 소득구분란: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중 구분에 따라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7. ⑦ 양도일(분배일)란: 소득구분에 따라 파생결합증권에서 발생한 이익을 지급받은 날(손익이 발생한 날)을 적습니다.

8. ④ 취득일란: 파생결합증권을 취득한 날을 적습니다. 양도한 파생결합증권의 취득일이 서로 다른 경우 취득일이 가장 빠른 날을 적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19제6항에 따라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취득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은 공란으로 둡니다.

9. ⑨ 장내/장외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내에서 양도한 경우 코드 "01" 로 적고 그 외(장외)는 "02" 로 적습니다.

10. ⑩ 양도(분배) 수량란: 양도 및 분배등 발생한 파생결합증권의 수량을 적습니다.

11. ⑪ 양도가액 (분배금액) 란: ⑥ 소득구분이 “01” 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고, “02” 인 경우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자가 투자자에게 분배한 금액을 적습니다.

가. 상장지수증권(ETN): 증권시장에서 매도한 경우에는 실제 매도가격을, 그 외에는 양도등이 발생하는 시점의 기주가격에 양도수량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나. 주식워런트증권(ELW): 권리행사 또는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증권이 소멸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에 소멸하는 수량을 곱한 금액을 전합니다.

[(A - B) × C × D]와 0 중 큰 금액
A: 최종거래일의 권리행사결제준가액
B: 증권의 행사가액
C: 증권의 유형이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인 경우에는 1.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증권의 경우에는 -1
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 제1항의 증권상징규정에 따른 전환비율

다 가 및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실제 매도가격 또는 상환금액

12. ⑫ 취득가액란: ⑥ 소득구분이 “01(양도 등)” 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적고, “02(분배)” 인 경우 공란으로 둡니다.

가. 상장지수증권(ETN): 증권시장에서 매도한 경우에는 실제 매수가격을, 그 외에는 매수시 기준가격에 수량을 곱한 금액을 적습니다.
(단, '24.12.31 이전 보유한 상장지수증권(ETN)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의제취득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Max(A-(B-C), 실제취득가액)
A: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
B: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과세표준기준가격
C: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
※ 국내주식 ETN의 경우 (B-C)를 0으로 함

나. 주식워런트증권(FLW): 최종거래일의 종료로 증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의 매수가격을 적습니다.

다. 가 및 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실제 매수가격

13. ⑬ 수수료등란: 파생결합증권의 소득금액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보수·수수료등을 적습니다.

14. ⑭ 소득금액란: ⑪ 양도가액에서 ⑫ 취득가액과 ⑫ 수수료등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4. ⑮ 감면소득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감면받는 소득금액이 있으면 감면되는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5. ⑯ 감면종류란: 집합투자증권 금융투자소득세 감면규정 등을 적습니다.

16. ⑬ 과세대상 소득금액란: ⑭ 소득금액에서 ⑮ 감면소득을 차감한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7. ⑧ 합산과세 신청여부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례 적용(비과세, 분리과세)받은 소득금액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제14항, 제24조의2제6항, 제81조의4제5항, 제82조의2제6항, 제83조제12항, 제92조의13제10항, 제93조의3제9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합산과세 신청을 하는 경우 “여”로 적습니다.

(앞쪽)

파생상품 소득금액 계산명세서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 ① **계좌번호**: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파생상품을 거래한 경우 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별로 부여된 고유관리번호(계좌번호)를 적습니다. 파생상품을 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않고 보유 또는 거래한 경우에는 해당 파생상품의 발행번호 또는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구분	선물	선도	스왑	콜옵션	풋옵션	차액결제거래(CFD)	기타
코드	61	62	63	64	65	66	69

3. ③ 국내/국외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이면 코드 “9”로 적고 그 외는 “1”로 적습니다.

※ 국외 파생상품인 경우 국제증권식별번호(ISIN코드)를 적으며 동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발행법인 소재 국가의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8. ⑨ 매도가액란: 같은 종목의 매도가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11. ⑮ 지출액란: 차액결제거래 계약에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이자비용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손 이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을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148조의2제5항에 따라 비교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이 있는 자가 비교세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배제되도록 금융회사 등에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 ①~④란: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 ⑤ 계좌번호란: 비교세 대상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한 거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⑥ 금융투자소득 상세구분란: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을 구분하되 다음과 같이 해당되는 상세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주식등(10)					채권등(20)					투 자 계 약 증 권	집합투자지구 (40)		파생결합증권(50)										파생상품(600)					
	상장			비상장		국 채	지 방 채	특 수 채	회 사 채	외 국 채		기 타		공 모 국 내 주 식 형 적 격 집 합 투 자 지 구	그 외	E L W	E L S	D L S	E T N	골 드 뱅크	실 버 뱅크	기 타	선 물	스 왓	콜 옵션	풋 옵션	C F D	기 타	
	코스 피	코스 닥	코넥 스	K-OTC 거래																									그 외
				중소·중견기업	그 외																								
코드	11	12	13	14	15	19	21	22	23	24	25	29	30	41	49	51	52	53	54	55	56	59	61	62	63	64	65	66	69

- ⑦ 국내/국외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에 따라 국외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파생상품인 경우 코드번호 "9"로 적고 그 외는 "1"로 적습니다.

구분	국내주식	국외주식
코드	1	9

- ⑧ 증권표준코드란: 한국거래소(비상장 집합투자지구인 경우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상품에 개별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12자리 고유번호를 적으며 표준코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권 등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 국외증권의 경우 국제증권식별번호(ISIN코드)를 적으며 동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발행법인의 소재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 ⑨ 금융투자상품명(종목명)란: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한 금융투자상품의 상품명(종목명)을 적습니다. 상품명에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권 등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 ⑩ 수입시기(양도일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주식등의 경우 양도시기)를 적습니다. 수입 시기(양도일) 도래 전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종목)의 계좌개설일을 적습니다.
- ⑪ 양도 등 수량란: 양도(환매·분배등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의 총수량(주수, 좌수 등)을 적습니다. 수입시기(양도일) 도래 전인 경우 공란으로 둡니다.
- ⑫ 양도 등 가액란: 양도(환매·분배등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의 구분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적습니다. 수입시기(양도일) 도래 전인 경우 공란으로 둡니다.
 - 주식등, 채권등, 투자계약증권소득: 해당 증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
 - 집합투자지구소득: 집합투자증권 양도소득은 환매 등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적격집합투자지구 분배소득은 집합투자지구로부터 분배받은 금액
 - 파생결합증권소득: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의 총액
 - 파생상품소득: 소득세법 제87조의16에 따른 파생상품소득금액
- ⑬ 취득가액란: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에 든 실제 취득가액(취득 부대비용 포함)을 적습니다.
- ⑭ 금융투자소득금액란: 「소득세법」 제87조의8, 제87조의9, 제87조의10, 제87조의14, 제87조의15 및 제87조의16에 따라 계산한 금융투자소득금액(비과세 금융투자소득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 ⑮ 비과세 금융투자소득금액란: ⑭ 금융투자소득금액 중 비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금액을 적습니다.
- ⑯ 비과세 근거법령란: 비과세하는 근거법령을 아래의 구분에 따른 코드로 적습니다.

구분	비과세 종합저축	재형 저축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ISA)	중소기업창업투자회 사 등에 대한 출자 (소득법 §14①)	벤처기업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이익 (소득법 §16의4)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대한 과세특례 (§88의4④)	기타
코드	08	09	10	11	12	13	14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적용(변경)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	------

신청인 (계좌보유자)	① 성명(단체명)	② 주민등록번호(고유번호)
	③ 전화번호	

- 신청 금융회사 및 적용시기

금융회사명	과세기간(적용연도)
-------	------------

- 기본공제 적용신청 내용

구 분	기본공제 적용 신청금액
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소득 (5,000만원 한도)	
기타 금융투자소득 (250만원 한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적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금융회사 등 귀하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원천징수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시 기본공제 적용을 받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신청하는 서식으로 금융회사등별로 기본공제를 최초 적용 받으려는 자는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 종료일까지 기본공제를 적용 받으려는 금융회사등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공제를 최초로 신청한 후 다음 과세기간에 기본공제 금액 및 기본공제를 적용할 금융회사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소득금액은 5,000만원, 이 외의 소득금액에서는 250만원을 한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 과세기간에는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한 금융회사등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소득금액

가. 주식등소득금액 중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나. 주권비상장법인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 거래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다. 집합투자지구소득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지구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라.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금액

원천징수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요청인 (계좌보유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거소)	④ 전화번호

원천징수 요청 소득내역

(단위: 원)

[illegible]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의2제13항에 따라 원천징수요청서를 제출합니다.

$\overline{m}$
 $\overline{op}$
 $\overline{r}$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제출할 서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	-------------------------

작성 방법

이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의2제12항에 따라 원천징수에서 제외 되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의2제1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원천징수를 요청하는 경우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 ①~④란: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적습니다.
- ⑤ 계좌번호란: 원천징수를 요청하는 소득이 발생한 거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 ⑥ 금융투자소득 상세구분란: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을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해당하는 상세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주식등(10)						채권등(20)						투자계약증권	집합투자기구 (40)		파생결합증권(50)						파생상품(60)								
	상장			비상장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외국채	기타		공모 주식형 적격집합 투자기구	그외	E L W	E L S	D L S	C D T N	골드뱅크	실버뱅크	기타	선물	선도	스왑	콜옵션	풋옵션	CFD	기타	
	코스 닥	코스 스파	코넥스	K-OTC 거래 중소·중견기업	그외	그외																								
코드	11	12	13	14	15	19	21	22	23	24	25	29	30	41	49	51	52	53	54	55	56	59	61	62	63	64	65	66	68	69

4. ⑦ 국내/국외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에 따라 국외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파생상품인 경우 코드번호 “9”로 적고 그 외는 “1”로 적습니다.

구분	국내주식	국외주식
코드	1	9

5. ⑥ 증권표준코드는 한국거래소(비상장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상품에 개별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12자리 고유번호를 적으며 표준코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권등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 국외증권의 경우 국제증권식별번호(ISIN코드)를 적으며 동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발행법인 소재의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6. ⑥ 금융투자상품명란: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한 금융투자상품의 상품명(종목명)을 적습니다. 상품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권 등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7. ⑥ 취득일자란: 원천징수를 요청하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일자를 적습니다.
8. ⑥ 취득구분(입고사유)란: 취득구분에 따라 아래 해당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매수	기타	계좌간이체			
			본인	타인		
				양수	수증	상속
코드	01	11	12	13	14	15

9. ⑩ 수량란: 원천징수를 요청한 금융투자상품의 총 수량(주수, 좌수 등)을 적습니다.
10. ⑬ 취득가액란: 원천징수를 요청하는 금융투자소득의 계산에 필요한 취득가액(취득 부대비용 포함)을 적습니다.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명세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원천징수의무자 (금융회사등)	① 금융회사명	②사업자번호
	③ 주소 (본점소재지)	④ 전화번호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명세

(단위: 원)

[illegible]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의2제14항 또는 제203조의4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명세서를 제출합니다.

$\overline{m}$ $\overline{of}$ $\overline{u}$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원천징수 제외통지 내역 2. 원천징수배제신청서 (영 제203조의4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작성 방법

이 서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의2제12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이 계약모양자에게 원천징수 제의를 통지하였거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의4제2항에 따라 계약모양자로부터 원천징수배신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 명세서 제출시 원천징수대상 소득 중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 명세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1. ①~④란: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등의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2. ⑤ 주민등록번호 및 ⑥ 성명란: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의 소득자(계좌보유자)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3. ⑦ 계좌번호란: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이 발생한 거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4. ⑧ 금융투자소득 상세구분란: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을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해당되는 상세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주식등(10)					채권등(20)					투자 계약 보증 증권	집합투자기구 (40)	파생결합증권(50)								파생상품(60)								
	상장		비상장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외국채			기타	공모 주식형 적격집합 투자기구	그외	ELLW	ELLS	DLS	ETN	골드뱅크	실버뱅크	기타	선물	선도	스왑	콜옵션	풋옵션	CFD	기타
코스 피	코스 닥	코넥스	K-OTC 거래 중소·중견기업			그외																							
코드	11	12	13	14	15	19	21	22	23	24	25	29	30	41	49	51	52	53	54	55	56	59	61	62	63	64	65	66	68

5. **⑤ 장래/장외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내에서 양도한 경우 코드 “01”로 적고, 장외거래 중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주등을 장외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03”으로, 그 외의 장외거래는 “02”로 적는다.

구분	장내거래	장외거래	장외교환·이전·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코드	01	02	03

6. ⑩ 국내/국외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에 따라 국외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파생상품인 경우 코드번호 "9"로 적고 그 외는 "1"로 적습니다.

구분	국내주식	국외주식
코드	1	9

7. ⑩ 증권표준코드란: 한국거래소(비상장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부여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종목코드를 적습니다(표준코드12자리). 종목코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권등 발행법인의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 ※ 국외증권의 경우 국제증권식별번호(ISIN코드)를 적으며 동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발행법인 소재의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8. ㉔ 금융투자상품명(종목명)란: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 금융투자상품의 상품명(종목명)을 적습니다. 상품명에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권
이름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9. ⑬ 수입시기(양도일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8에 따른 금융투자소득의 수입시기(주식등의 경우 양도일자)를 적습니다.

10. ⑭ 양도 등 수량란: 양도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주수, 좌수 등)을 적습니다.

11. ⑮ 양도 등 가액란: 양도(환매·분배등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의 구분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적습니다.

- 주식등, 채권등, 투자계약증권소득: 해당 증권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
- 집합투자기구소득: **집합투자증권 판매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 파생결합증권소득: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의 총액
- 파생상품소득: 「소득세법」 제87조의16에 따른 파생상품소득금액

12. ㉞ 원천징수 제외사유상: 원천징수하지 않은 사유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23조의2제12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금융회사가 원천징수 제외토지를 하였으며 “01”로 적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제2항에 따라 비과세금 융투자소득금액에 해당되어 계좌보유자가 원천징수 배제신청을 하였으며 “02”로 각각 구분하여 적는다.

구분	원천징수 제외통지	원천징수 배제신청
코드	01	02

210mm×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① 원천징수기간

년 월 일 ~ 월 일까지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금융투자소득 지급명세서

1. 원천징수의무자

② 금융회사등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 (본점소재지)
---------	-----------	--------------

2. 소득자

⑤ 성 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기본공제 신청금액	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소득	기타 금융투자소득
-------	----------	-------------	---------------	-----------

3. 원천징수세액

구 분		금융투자 소득금액			⑪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⑫ 공제 후 금융투자소득금액 (⑩ - ⑪)	원 천 징 수 세 액								
		⑧ 금융투자소득금액 (결손금)	⑨ 기신고 금융투자소득금액 (결손금)	⑩ 공제 전 금융투자소득금액 계 (⑧ + ⑨)			⑬결정세액			⑭기납부세액			⑮차감징수세액		
							소득세	지방 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소득세	지방 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소득세	지방 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일반	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타 금융투자소득														
분리 과세	9% 세율														
	14% 세율														
비과세															
ISA계좌 중도해지등															
계															

4. 금융투자소득금액 내역

⑬ 계좌번호	⑭ 과세구분	⑮ 금융투자소득 구분	⑯ 국내/국외	⑰ 통화코드	⑱ 증권표준 코드	⑲ 금융투자 상품명	⑳ 양도 등 수량	㉑ 양도가액 (분배금액)	㉒ 취득가액	㉓ 양도비등 필요경비	㉔ 금융투자 소득금액(결손금) (㉑-㉒-㉓)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을 지급하는 금융회사등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으로 계좌보유자별로 작성합니다.
1. ① 원천징수기간란: 원천징수 대상 기간을 적습니다.(예, 해당 과세기간의 반기(1.1~6.30, 7.1~12.31) 또는 반기 시작일부터 계좌해지일)
2. ② 금융회사등란: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의 상호 또는 법인명을 적습니다.
3. ③ 사업자등록번호란: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의 상호 또는 법인명을 적고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4. ④ 주소(본점소재지)란: 원천징수의무자의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를 적습니다.
5. ⑤ 성명란: 금융투자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이때 금융투자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6. ⑥ 주민등록번호란: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되, 외국인으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7. ⑦ 기본공제 신청금액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의2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득자의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적용신청서” 상의 신청금액을 「소득세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구분별로 적습니다.
8. ⑧ 금융투자소득금액(결손금)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적습니다.
- (일반과세) 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소득금액: 4. 금융투자소득금액 내역에서 ㉑ 과세구분 코드가 “01” 인 ㉒ 금융투자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일반과세) 기타 금융투자소득 금융투자소득금액: 4. 금융투자소득금액 내역에서 ㉑ 과세구분 코드가 “02” 인 경우 ㉒ 금융투자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분리과세) 9% 세율 금융투자소득금액: 4. 금융투자소득금액 내역에서 ㉑ 과세구분 코드가 “03”, “04”, “05”, “07” 인 ㉒ 금융투자소득금액을 합계하여 적되, ㉒ 금융투자소득금액이 (-)음수인 내역은 합계하지 않습니다.
 - (분리과세) 14% 세율 금융투자소득금액: 4. 금융투자소득금액 내역에서 ㉑ 과세구분 코드가 “06” 인 ㉒ 금융투자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되, ㉒ 금융투자소득금액이 (-)음수인 내역은 합계하지 않습니다.
 - (비과세) 금융투자소득금액: 4. 금융투자소득금액 내역에서 ㉑ 과세구분 코드가 “08” 부터 “14” 까지에 해당하는 ㉒ 금융투자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 (ISA계좌 중도해지등) 금융투자소득금액: 4. 금융투자소득금액 내역에서 ㉑ 과세구분 코드가 “19” 인 ㉒ 금융투자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9. ⑨ 기신고 금융투자소득금액(결손금)란: 「소득세법」 제148조의2제4항에 따라 상반기 금융투자결손금을 하반기에 공제하는 경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의3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하는 경우 및 반기 중 계좌를 해지 후 재개설한 경우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습니다.
- 「소득세법」 제148조의2제4항에 따라 상반기의 금융투자결손금을 하반기의 원천징수대상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결손금을 적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의2제10항에 따라 같은 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의 기본공제 소득구분에 따른 해당 소득금액에서만 공제되도록 적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의3에 따라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상반기 금융투자소득금액을 적습니다.
 - 반기 중 계좌를 해지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로서 해당 반기 중 계좌를 재개설하여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개설한 계좌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이미 원천징수한 중도 해지 계좌의 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적습니다.
10. ⑩ 공제전 금융투자소득금액란: ⑧ 금융투자소득금액(결손금)과 ⑨ 기신고 금융투자소득금액(결손금)을 합계한 금액을 적습니다.
11. ⑪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란: ⑩ 공제전 금융투자소득금액이 0보다 큰 경우 ⑦ 기본공제 신청금액을 적되, ⑪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금액이 ⑩ 공제전 금융투자소득금액보다 큰 경우 ⑩ 공제전 금융투자소득금액을 한도로 적습니다.
12. ⑫ 공제 후 금융투자소득금액란: ⑩ 공제전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⑪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13. ⑬ 결정세액란: 소득세는 ⑫ 공제후 금융투자소득금액에 원천징수 세율(20%)을 곱한 금액(분리과세인 경우 9%, 14% 세율을 곱한 금액)을 적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계산(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한 금액을 적으며,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농어촌특별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4. ⑭ 기납부세액란: 기신고 금융투자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기납부(원천징수)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액을 적으며 상반기에 소액 부정수한 경우, 그 소액 부정수한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기재합니다.
15. ⑮ 차감징수세액란: ⑬ 결정세액에서 ⑭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16. 4. 금융투자소득금액 내역: 계좌번호, 금융투자소득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한 금융투자상품이 다른 경우 금융투자상품(종목)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17. ㉑ 계좌번호란: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한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 방법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87조의2제1호에 따른 주식등에 대한 거래내역을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7. ⑧ 계좌구분란: 주식등을 거래한 계좌의 구분에 따라 다음의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일반계좌	특례 적용 계좌								
		분리과세				비과세, 면제				
		뉴딜펀드	공모부동산펀드	세금우대종합저축	투융자펀드	비과세종합저축	재형저축	해외주식선용펀드	기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코드	A	B	C	D	E	F	G	H	I	J

7. ⑨ 주식등 구분란: 국내 상장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해당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상장			비상장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OTC 거래		그외
				중소·중견기업	그외	
코드	11	12	13	14	15	19

8. ⑩ 거래구분란: 거래구분에 따라 다음의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수량 증가(입고)												수량 감소(출고)									
	매수	공모	유상 증자	무상 증자	주식 배당	분할	출자	기타	계좌간이체				매도	유상 감자	무상 감자	병합	기타	계좌간이체				
									본인	타인								본인	타인			
										양수	수증	상속							양도	증여	상속	
코드	01	02	03	04	05	06	07	11	12	13	14	15	31	35	36	37	38	39	40	41	42	

- ⑩ 장내·장외판: 장내·장외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내에서 양도한 경우 코드 “01”로 적고, 장외거래 중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03”으로, 그 외의 장외거래는 “02”로 적는다.

구분	장내거래	장외거래	장외교환 · 이전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코드	01	02	03

10. ⑫ 거래일자란: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른 대금을 청산한 날을 적습니다. (주식등을 장내에서 매도, 매수한 경우에는 결제일(T+2일)을 적습니다.)

11. ⑬ 국내/국외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에 따라 내국법인이 발행하여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되었거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인 경우 코드 “9”로 적고 그 외는 “1”로 적습니다.

구분	국내주식	국외주식
코드	1	9

12. ⑭ 통화코드란: 국외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국가 또는 외국 증권시장에서 거래한 통화코드를 적습니다(예 USD, CNY 등)

13. ⑮ 증권표준코드란: 한국거래소에서 금융투자상품에 개별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12자리 고유번호를 적으며 표준코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권 등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번호를 적습니다.

※ 국외주식의 경우 국제증권식별번호(ISIN코드)를 적으며 동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발행법인의 소재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14. ⑯ 종목명란: 거래한 주식등의 종목명을 적습니다. 종목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15. ⑰ 거래수량란: 거래한 주식등의 수량(주수, 좌수 등)을 적습니다.

16. ⑧ 거래가액란: 거래한 주식등의 실제거래가액을 적습니다. 다만, 취득가액은 취득유형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른 평가액 등 법령에서 정한 가액을 적습니다(국외주식은 매매일 현재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제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7. ㉑ 수수료등란: 거래시 발생한 수수료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가목은 제외)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을 합한 금액을 적습니다.

18. ㉔ 증권거래세 및 ㉕ 농어촌특별세란: ㉔ 거래구분 코드가 "31(매도)"인 경우 증권거래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적용합니다.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의2서식] <개정 2023. 3. 00.>

(앞쪽)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	--

*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채권등 거래명세서
(금융회사등 제출용)

① 금융회사등(제출의무자)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거래기간
----------------	-----------	--------

[illegible]

「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채권등 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150 151 152

금융회사등(제출의무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3항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거래내역을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8. ㉠ 거래구분란: 거래구분에 따라 아래의 코드를 적습니다.

9. ⑩ 장내/장외라: 「자보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 내에서 양도한 경우 코드 "01"로 적고 그 외(장외)는 "02"로 적습니다.

10. ⑪ 거래일자란: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른 대금을 청산한 날을 적습니다.

12. ⑬ 통화코드라: 국외증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국가 또는 외국 증권시장에서 거래한 통화코드를 적습니다 (예 USD, CNY 등)

* 관리번호는 기업아이디 마칩시오.

간접비용을 간접적으로 귀속시킨다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거래내역을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 | 구분 | 일반계좌 | 특례 적용 계좌 | | | | | | |
|----|------|----------|---------|----------|-------|---------|------|----------|
| | | 분리과세 | | | | 비과세, 면제 | | |
| | | 뉴딜펀드 | 공모부동산펀드 | 세금우대종합저축 | 투융자펀드 | 비과세종합저축 | 재형저축 | 해외주식전문펀드 |
| 코드 | A | B | C | D | E | F | G | H |
| | | | | | | | | I |
| | | | | | | | | J |

- | 구분 | 수량 증가(입고) | | | | | | | 수량 감소(출고) | | | | | | | 결산
분배 |
|----|-----------|-------|----|-------|----|----|----|-----------|-------|----|-------|----|----|----|----------|
| | 매수 | 결산·분배 | 기타 | 계좌간이체 | | | | 환매·양도 | 해지·해산 | 기타 | 계좌간이체 | | | | |
| | | | | 본인 | 타인 | | | | | | 본인 | 타인 | | | |
| | | | | | 양수 | 수증 | 상속 | | | | | 양도 | 증여 | 상속 | |
| 코드 | 01 | 10 | 11 | 12 | 13 | 14 | 15 | 32 | 33 | 38 | 39 | 40 | 41 | 42 | 54 |

- | | | |
|----|------|------|
| 구분 | 장내거래 | 장외거래 |
| 코드 | 01 | 02 |

- | | | |
|----|----------|----------|
| 구분 | 국내집합투자기구 | 국외집합투자기구 |
| 코드 | 1 | 9 |

- 국외증권인 경우 국제증권집번번호(USIN코드)를 적으며 동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발행법인의 소재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 집합투자자 상품명: 집합투자기구의 상품명을 적습니다. 집합투자기구가 상품명이 없는 경우 집합투자자명 명칭 또는 집합투자업자 명칭을 적습니다.
- 국외증권 구분란: '소득세법' 제87조의8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금융투자증권기본증권 구분 코드번호를 적습니다.

- ※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 5천만원 적용 대상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1호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적격집합투자기구일 것

- | 구분 | 공모 | 사모 | 기타 |
|----|----|----|----|
| 코드 | 01 | 02 | 09 |

- | 구분 | 거래가액 |
|------------------|---|
| 매수, 결산·분배 | 실제 매수가액 또는 분배받은 금액 |
| 환매·양도, 해지·해산 | 환매등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실제 매도가액 또는 환매시 기준가액×환매차수) |
| 종여(수종)·상속 | 법령에 따라 정한 가액 (종여·상속할 현재 기준가액×종여·상속 적수) |

- 297mm×210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illegible]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297mm×210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1. 금융회사등: 거래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금융회사의 법인명 또는 상호를 적습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란: 금융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거래기간란: 거래명세서 제출 대상기간을 적습니다.
4. 일련번호란: 계좌번호 및 계좌차별호, 거래일자, 빠른 순서부터 적습니다.
5.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란: 계좌주사항을 적습니다.
6. 계좌비고란: 파생결합증권 금융투자상품을 구매한 계좌비고를 적습니다.
7. 계좌구분란: 파생결합증권을 거래한 계종의 구분에 따라 다음의 코드를 적습니다.

8. ⑨ 파생결합증권 구분란: 파생결합증권 구분에 따라 다음의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9. ⑩ 거래구분란: 거래구분에 따라 아래 코드번호를 적습니다.

10. ⑩ 장내/장외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내에서 양도한 경우 코드 "01" 로 적고 그 외(장외)는 "02" 로 적습니다. 단, ⑩ 거래구분 코드가 "51(결산분배)" 인 경우 공란으로 둡니다.

11. ⑫ 거래일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8제1항제4호에 따른 이익을 지급받은 날을 적습니다.

14. ㉔ 증권표준코드란: 한국거래소에서 증권상품에 개별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12자리 고유번호를 적으며, 증권표준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둡니다.

※ 국외증권인 경우 국제증권식별번호(ISIN코드)를 적으며 동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발행법인의 소재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⑯ 파생결합증권 상품명란: 파생결합증권의 금융투자상품명(종목명)을 적으며, 상품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권에 기재된 파생결합증권의 명칭을 적습니다.

⑬ 거래구당란: 거래한 파생결합증권의 구당(주주, 좌주 등)을 적습니다.

⑭ 거래가액란: 거래구분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적습니다. (국외파생결합

구분	

18. ⑬ 수수료 등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각종 보수 및 수수료 등 합계액을 적습니다.

- 273 -

(앞쪽)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illegible]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금융회사등(제출의무자) 대표자

297mm×210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작성 방법

이 서식은 금융회사등이 「소득세법」 제87조의6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인 금융투자상품의 납세자별 보유내역을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1. ① 금융회사등 및 ② 사업자등록번호란: 금융투자상품 보유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등의 법인명 또는 상호와 금융회사등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③ 보유연도란: 금융투자상품 보유명세서 제출대상 연도를 적습니다.
3. ④ 일련번호란: 계좌보유자 및 계좌번호별, 보유한 금융투자상품별 순서대로 번호를 적습니다.
4. ⑤ 주민등록번호 및 ⑥ 성명란: 계좌보유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5. ⑦ 계좌번호란: 금융투자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6. ⑧ 계좌구분란: 보유하고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계좌구분에 따라 아래의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일반계좌	특례 적용 계좌									
		분리과세					비과세, 면제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ISA)
		뉴딜펀드	공모부동산펀드	세금우대종합저축	투융자펀드	비과세종합저축	재형저축	해외주식전용펀드	기타		
코드	A	B	C	D	E	F	G	H	I	J	

7. ⑨ 금융투자소득 상세구분란: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의 구분에 따라 아래의 해당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주식등(10)					채권등(20)							투자 계약 증권 (30)	집합투자기구(40)				파생결합증권(50)								파생상품(60)					
	상장		비상장			국 채	지 방 채	특 수 채	회 사 채	외 국 채	기 타	공모 국내주식형 적각집합 투자기구		그 외	E L W	E L S	D L S	E T N	골드 뱅크	실버 뱅크	기 타	선 물	선 도	스 왓	콜 옵 션	풋 옵 션	C F D	기 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OTC 거래 중소·중견기업																									그외		
코드	11	12	13	14	15	19	21	22	23	24	25	29	30	41	49	51	52	53	54	55	56	59	61	62	63	64	65	66	69		

8. ㉑ 국내/국외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2에 따라 국외 금융투자소득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파생상품인 경우 코드번호 “9”로 적고 그 외는 “1”로 적습니다.

구분	국내	국외
코드	1	9

9. ㉒ 통화코드란: 국외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발행국가 또는 외국 증권시장에서 거래한 통화코드를 적습니다.(예 USD, CNY 등)
10. ㉓ 증권표준코드란: 한국거래소(비상장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상품에 개별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12자리 고유번호를 적으며 표준코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증권 등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자번호를 적거나 공란으로 둡니다.
※ 국외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국제증권식별번호(ISIN코드)를 적으며 동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발행법인의 소재 국가코드를 적습니다.
11. ㉔ 상품(종목)명란: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의 상품명 또는 종목명을 적습니다.
12. ㉕ 보유수량란: 보유한 금융투자상품의 수량(주수, 좌수 등)을 적습니다.
13. ㉖ 취득가액란: 계좌별, 금융투자상품별로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실제 취득가액을 적습니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둡니다.
14. ㉗ 보유가액란: 계좌별, 금융투자상품별로 1.1. 현재 금융투자상품의 현재가액을 적으며 1.1. 기준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란 1.1.이전 증권시장에서 매매가 있는 마지막 날의 최종시세가액을 말합니다. 현재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공란으로 둡니다.(국외금융투자상품의 경우 보유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구분	주식등	채권등	파생결합증권등	상기 외 기타 금융투자상품
1) 상장주식등 및 K-OTC 시장 거래 비상장주식등	1.1. 기준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 주식 수	1.1. 현재 이물 처분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 다만, 예상되는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취득가액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 액면가액	1.1. 기준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 채권 수	1.1. 기준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 금융투자상품 수
2) 1) 이외의 주식등	1.1. 현재 이물 처분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 다만, 예상되는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 취득가액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 액면가액	1.1. 현재 이물 처분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 다만, 예상되는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에 1.1.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1.1. 현재 이물 처분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 다만, 예상되는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에 1.1.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취득가액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채권등	1.1. 기준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 채권 수	1.1. 현재 이물 처분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 다만, 예상되는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에 1.1.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1.1. 기준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 파생결합증권 수	
2)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채권등	1.1. 현재 이물 처분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 다만, 예상되는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에 1.1.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1.1. 현재 이물 처분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 다만, 예상되는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에 1.1.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1.1. 현재 이물 처분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 다만, 예상되는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에 1.1.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파생결합증권등	1.1. 기준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 파생결합증권 수	1.1. 현재 이물 처분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 다만, 예상되는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에 1.1.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1.1. 현재 이물 처분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 다만, 예상되는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에 1.1.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2)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파생결합증권등	1.1. 현재 이물 처분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 다만, 예상되는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에 1.1.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1.1. 현재 이물 처분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 다만, 예상되는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에 1.1.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1.1. 현재 이물 처분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금액. 다만, 예상되는 금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취득가액에 1.1.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1)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기타 금융투자상품	1.1. 기준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 금융투자상품 수			
2)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는 기타 금융투자상품	취득가액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의8서식] <개정 2023. 3. 00.>

금융회사등 자료제출기한 연장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대표자(성명)		
	④ 업종	⑤ 전화번호	
	⑥ 소재지(주소)		
신청내용	⑦ 제출기한		
	⑧ 제출기한 연장을 받으려는 서류 또는 자료		
	⑨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⑩ 연장을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 부터 (일간) 년 월 일 까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5항에 따라 자료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제출기한 연장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양도자)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		
상생임대주택 (양도주택)	④ 소 재 지		
	⑤ 취득일		⑥ 양도일
	⑦ 거주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⑧ 상생임대차계약 체결일(년 월 일)

임대내역(⑨)							
구 분	임차인		임대료		임대기간		
	성명	생년월일	보증금	월세	개시일	종료일	기간
⑩ 직전 임대차계약							
⑪ 상생 임대차계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5항에 따라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고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고인 제출 서류	1. 직전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 상생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작 성 방 법
1. ⑦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6항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
2. ⑧란: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까지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내역을 적습니다.
3. ⑩·⑪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4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하는 모든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내역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2010. 1. 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쪽 중 제1쪽)

(년) **년(귀속)양도소득(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① 신고인 (양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내·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거주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주소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국적	국적코드
② 양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소재지				지분	양도인과의 관계	
③ 세율구분	코드	양도소득세합	국내분 소개	-	-	-	국외분 소개		
④ 양도소득금액									
⑤ 기신고·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⑦ 양도소득기본공제									
⑧ 과세표준 (④+⑤-⑥-⑦)									
⑨ 세율									
⑩ 산출세액									
⑪ 감면세액									
⑫ 외국납부세액공제									
⑬ 원천징수세액공제									
⑭ 전자신고세액공제									
⑮ 가산세	무(과소)신고								
	납부지연 기장불성실 등 계								
⑯ 기신고·결정·경정세액, 조정공제									
⑰ 납부할세액 (⑩-⑪-⑬-⑭+⑮-⑯)									
⑱ 분납(물납)할세액									
⑲ 납부세액									
⑳ 환급세액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㉑ 소득세 감면세액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㉒ 세율			
㉓ 산출세액			신고인
㉔ 수정신고가산세 등			
㉕ 기신고·결정·경정세액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㉖ 납부할세액			
㉗ 분납할세액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㉘ 납부세액			
㉙ 환급세액			세무서장 귀하

붙임서류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 1, 부표 2, 부표 2의2, 부표 2의3 중 해당하는 것) 1부 2. 매매계약서(또는 증여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1부 4. 감면신청서 및 수용확인서 등 1부 5. 그 밖에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접수일 인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1. 관리번호는 작성자가 적지 않습니다.
2. ① 신고인(양도인)란: 성명란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full name)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상기 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내·외국인 및 거주구분의 □안에 “√”표시를 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참고하여 국적(국적코드)과 거주지국(거주지국코드)을 적습니다.
3. ② 양수인란: 양도물건별로 적되, 양수인이 공동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별 지분을 적고, 양수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양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주민등록번호란에는 ①을 참고하여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 양도인과의 관계 예시: 타인, 배우자, 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손녀 등
4. ③ 세율구분란: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2)의 ④ 주식등 종류코드란의 세율이 같은 자산(기타자산 주식은 제외합니다)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5. ④ 양도소득금액란: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의 ㉞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⑥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2항(소득금액 차감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7. ⑦ 양도소득기본공제란: 해당 연도 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차례대로 공제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은 공제하지 않습니다(부동산 등, 파생상품, 신탁수익권은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하며, 주식은 ’20.1.1.이후 양도분부터 국내·국외 주식 양도소득금액 통산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합니다).
8. ⑩ 산출세액란: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아래 ‘가’와 ‘나’ 중 큰 금액이 계산되는 경우의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가.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차감한 금액
나.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액을 차감한 금액
9. ⑪ 감면세액란·⑫ 외국납부세액공제란: 해당 신고분까지 누계금액을 적습니다.
※ ⑪ 감면세액란은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세액감면방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적습니다.
10. ⑬ 원천징수세액공제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인이 원천징수한 세액을 적습니다.
11. ⑭ 전자신고세액공제란: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1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20,000원)을 적되, 공제세액이 ㉞란의 세액에서 ㉞란부터 ㉞란까지의 세액을 뺀 후의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이 대리신고한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12. ⑮ 가산세란: 산출세액에 기한 내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무(과소)신고(일반무신고 20%, 부당무신고 40%, 일반과소신고 10%, 부당과소신고 40%)·납부지연[1일 3/10,000(2019. 2. 12. 이후 1일 2.5/10,000, 2022. 2. 15. 이후 1일 2.2/10,000)]·기장불성실 등 가산세[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감정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5%),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 미신고 가산세(주식 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는 기장불성실 등 가산세 란에 기재] 금액을 적습니다.
13. ⑯ 기신고·결정·경정세액, 조정공제란: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합니다), 무신고결정·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적고, 국외전출세의 경우에는 국외전출 후 양도에 따른 조정공제세액을 적습니다.
14. ⑰ 납부할 세액란부터 ⑳ 환급세액란까지: 계산 결과 신고·납부(또는 환급)할 세액 등을 적습니다.
15. ㉙ 환급금 계좌신고(㉙·㉚)란: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작 성 방 법				(4쪽 중 제3쪽)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국 내 자 산	1.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 일반세율 적용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1-10	6-42%(' 21.1.1.이후 양도분 6-45%)	
	②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1-15	40%	
	③ 1년 미만 보유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제외)	1-20	50%	
	④ 1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1-40	40%	
	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21.6.1.이후 양도분)	1-39	60%	
	⑥ 1년 미만 보유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21.6.1.이후 양도분)	1-46	70%	
	⑦ 1년 이상 보유 분양권(' 21.6.1.이후 양도분)	1-23	60%	
	⑧ 미등기 양도	1-30	70%	
	⑨ 일반세율에 1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비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1-11	16-52%(' 21.1.1.이후 양도분 16-55%)	
	⑩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1-35	40%	
	⑪ 1년 미만 보유 비사업용토지	1-36	50%	
	⑫ 일반세율에 2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 18.1.1. 이후 양도분)	1-31	26-62%(' 21.1.1.이후 양도분 26-65%)	
	⑬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 18.1.1. 이후 양도분)	1-37	40%	
	⑭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비사업용토지(' 18.1.1. 이후 양도분)	1-38	50%	
	⑮ 비사업용토지, ' 09.3.16. ~ ' 12.12.31. 취득하여 양도분	1-10	6-42%(' 21.1.1.이후 양도분 6-45%)	
	⑯ 일반세율에 1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18.3.31. 양도분)	1-71	16-52%	
	⑰ 1년 미만 보유 지정지역 내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18.3.31. 양도분)	1-73	40%	
	⑱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18.1.1.~ ' 21.5.31.양도분)	1-21	50%	
	⑲ 일반세율에 1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18.4.1.~ ' 21.5.31. 양도분)	1-51	16-52%(' 21.1.1.이후 양도분 16-55%)	
	⑳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18.4.1.~ ' 21.5.31. 양도분)	1-53	40%	
	㉑ 일반세율에 1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21.1.1. 이후 취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18.4.1.~ ' 21.5.31. 양도분)	1-52	16-52%(' 21.1.1.이후 양도분 16-55%)	
	㉒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21.1.1. 이후 취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18.4.1.~ ' 21.5.31. 양도분)	1-54	40%	
	㉓ 일반세율에 2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18.4.1.~ ' 21.5.31. 양도분)	1-55	26-62%(' 21.1.1.이후 양도분 26-65%)	
	㉔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18.4.1.~ ' 21.5.31. 양도분)	1-57	40%	
	㉕ 일반세율에 2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18.4.1.~ ' 21.5.31. 양도분)	1-56	26-62%(' 21.1.1.이후 양도분 26-65%)	
	㉖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18.4.1.~ ' 21.5.31. 양도분)	1-58	40%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 성 방 법				(4쪽 중 제4쪽)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세 율 구 분	코 드	세 율	
국 내 자 산	㉗ 일반세율에 2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1.6.1. 이후 양도분)	1-47	26-65%	
	㉘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1.6.1. 이후 양도분)	1-84	70%	
	㉙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1.6.1. 이후 양도분)	1-82	60%	
	㉚ 일반세율에 2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21.1.1. 이후 취득)을 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21.6.1. 이후 양도분)	1-48	26-65%	
	㉛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21.1.1. 이후 취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21.6.1. 이후 양도분)	1-85	70%	
	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21.1.1. 이후 취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21.6.1. 이후 양도분)	1-83	60%	
	㉝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21.1.1. 이후 취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21.6.1. 이후 양도분)	1-49	36-75%	
	㉞ 일반세율에 3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1.6.1. 이후 양도분)	1-88	70%	
	㉟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1.6.1. 이후 양도분)	1-86	60%	
	㊱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1.6.1. 이후 양도분)	1-50	36-75%	
	㊲ 일반세율에 30% 가산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21.6.1. 이후 양도분)	1-89	70%	
	㊳ 1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21.6.1. 이후 양도분)	1-87	60%	
	㊴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21.1.1. 이후 취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21.6.1. 이후 양도분)			
	2.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①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국내주식	1-70	30%	
	② 중소기업법인의 소액주주 국내주식, 중소기업법인 국외주식	1-62	10%	
	③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소액주주 국내주식, 중소기업 외 법인 국외주식	1-61	20%	
	④ 중소기업 법인의 대주주가 보유한 국내주식,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국내주식	1-63	20-25%	
	3.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기타자산)			
	① 주식	1-10	6-42%(' 21.1.1.이후 양도분 6-45%)	
	② 주식 외의 것	1-10	6-42%(' 21.1.1.이후 양도분 6-45%)	
	③ 비사업용토지 과다보유법인 주식(' 09.3.16. ~ ' 15.12.31. 양도분)	1-10	6-42%(' 21.1.1.이후 양도분 6-45%)	
			6-35%(' 12.1.1.이후 6-38%)	
	4.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파생상품 등)	1-80	5%(' 18.3.31. 이전)	
		1-81	10%(' 18.4.1. 이후)	
	5.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6호(신택의 이익을 받을 권리)	1-95	20-25%	
	6.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92	20%	
	7. 「소득세법」 제3장제11절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국외진출세)	1-94	20-25%	
국 외 자 산	1.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1호 및 제2호(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2-10	6-42%(' 21.1.1.이후 양도분 6-45%)	
	2. 「소득세법」 제118조의2제5호(기타자산)			
	① 주식	2-10	6-42%(' 21.1.1.이후 양도분 6-45%)	
	② 주식 외의 것	2-10	6-42%(' 21.1.1.이후 양도분 6-45%)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 관리번호는 적지 마십시오.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양도자산 및 거래일									
① 세 율 구 분 (코 드)		합 계		(-)		(-)		(-)	
② 소재지국 소 재 지									
③ 자 산 종 류 (코 드)				()		()		()	
거 래 일 ④ 양도일 (원인)				()		()		()	
(거래원인) ⑤ 취득일 (원인)				()		()		()	
거래자산 면적 (㎡)		⑥ 총면적 토 지 (양도지분) 건 물		(/)		(/)		(/)	
		⑦ 양도면적 토 지 건 물							
		⑧ 취득면적 토 지 건 물							
1세대1주택		⑨ 보 유 기 간		년 이상 년 미만		년 이상 년 미만		년 이상 년 미만	
비과세대상		⑩ 거 주 기 간		년 이상 년 미만		년 이상 년 미만		년 이상 년 미만	

□ 양도소득금액 계산

거래금액	⑪ 양 도 가 액			
	⑫ 취 득 가 액			
	취 득 가 액 종 류			
⑬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				
⑭ 기 타 필 요 경 비				
양도차익	전 체 양 도 차 익			
	비과세 양도차익			
	⑮과세대상양도차익			
⑯ 장 기 보 유 특 별 공 제(코드)				
⑰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대상거주기간				
⑱ 양 도 소 득 금 액				
감면소득 금 액	⑲ 세 액 감 면 대 상			
	⑳소득금액감면대상			
㉑ 감 면 종 류 감 면 율				

□ 기준시가 (기준시가 신고 또는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양 도 시	㉒ 건 물			
기 준	㉓ 토 지			
시 가	합 계			
취 득 시	㉔ 건 물			
기 준	㉕ 토 지			
시 가	합 계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 방법

- ① 세율구분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하나의 자산에 둘 이상의 세율(단일세율, 누진세율)이 해당될 경우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양도소득세 감면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의 산출세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하단 () 내 세율은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소 재 지 구 분	소재지		토지·건물																				
	국 내	국 외	세 율 구 분	2년 이상 보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미만 보유주택 및 조합원 임주권 (~'21.5.31. 양도분)	미 등 기	비사업용토지								지정지역내 '09.3.16~ '12.12.31. 취득하여 양도분 (2년이상보유)						
									2년 이상 보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1년미만 보유	2년 이상 보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1년미만 보유		
												26~ 62% (65%)	40%	26~ 62% (65%)	50%	26~ 62%					50%	6~42% (45%)	
코드	1	2	코드	10	15	10	20	40	10	30	11	35	11	36	11	31	37	31	38	31	10		
- ③ 자산종류란: 다음의 자산종류 및 코드를 적습니다.

세 율 구 분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다주택 (~'18.3.31. 양도분)		다주택('18.4.1.~'21.5.31. 양도분)														2년 이상 보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조세대상 지역내 토지 (~'21. 5.31. 양도분)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법인주식	그 외 기타자산
	지정지역내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3주택		1세대2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임주권('21.1.1.이 후 분양권 포함)의 합이 2인 경우 해당 주택		1세대3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임주권('21.1.1.이 후 분양권 포함)의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6~ 42%	6~ 42%	50%	50%	16~ 52%	6~ 42%			
세율	16~ 52%	40%	16~ 52%	16~ 52%	40%	16~ 52%	16~ 52%	40%	16~ 52%	26~ 62%	26~ 62%	40%	26~ 62%	26~ 62%	6~ 42%	40%	6~ 42%	50%	50%	16~ 52%	6~ 42%	
코드	71	73	71	51	53	51	52	54	52	55	57	55	56	58	56	10	15	10	20	21	11	10
- ③ 자산종류란: 다음의 자산종류 및 코드를 적습니다.

자 산 종 류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택 수익권
	토지	고가 주택	일반 주택	기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특정 주식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이촉권	부동산 과다 보유법 인주식				
								조합원 임주권		분양권						기타			
코드	1	2	3	4	5	6	7	24	25	8	14	15	16	23	17	26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 방법

3. ④, ⑤ 양도·취득원인: 매매, 수용, 협의매수, 교환, 공매, 경매, 부담부증여(양도에 해당), 상속, 증여, 상속, 분양, 기타 등을 적습니다.
4. ⑥ 총면적란: 양도자산의 전체면적을 적고, 양도지분을 별도로 적습니다.
5. ⑦ 양도면적란: ⑥ 총면적 × 양도지분으로 산정한 면적을 적습니다.
6. ⑨ 보유기간란: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을 적습니다.
7. ⑩ 거주기간란: ⑨의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적습니다.
8. ⑫ 취득가액란: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상속·증여받은 자산은 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현재의 나, 다, 기준시가 중 확인되는 가액을 적습니다).
- 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 취득에 실제 든 가액(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의 ⑤번란의 금액)
- 나. 매매사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래가액을 적용
- 다.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 2개 이상의 평균가액을 적용 ('20.2.11. 이후 양도분부터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의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도 인정)
- ※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의미합니다.
- 라. 환산취득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가액(⑨번) × [취득시기기준시가(⑩+㉔)/양도시기준시가(⑩+㉕)]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
- ※ 취득가액 종류란: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래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기준시가로 구분하여 적으며, 국외자산의 경우 실지거래가액, 해당정부평가액, 매매사래가액, 감정가액으로 구분하여 원화환산금액을 적습니다.
9. ⑬ 기납부토지초과이득세란: 해당 양도토지에 대하여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는 경우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액을 적습니다.
10. ⑭ 기타 필요경비란: 취득당시 가액을 실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액 등(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의 ⑬란의 금액)을 적고, 취득 당시 가액을 매매사래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을 참조하여 적습니다.
11. ⑯ 장기보유특별공제(코드)란: 토지·건물의 ⑩양도차익에 다음의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국외자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코드)는 아래 표의 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분	코드	내 용
1세대1주택	01	'21.1.1.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 이상 보유 12%부터 매년 4%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40%한도로 공제하고, 3년 이상 거주 12%(다만 보유기간 3년 이상자 중 2년 이상 거주는 8%)부터 매년 4%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40%한도로 공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
1세대1주택 외	02	'19.1.1.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 이상 보유 6%부터 매년 2%씩 추가 공제하며 15년 이상은 30%한도로 공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03	'18.12.31.까지 양도분은 3년 이상 보유 10%, 4년 이상 보유 12%부터 매년 3%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30%한도로 공제
장기일반 양도주택 (「소득법」 97조의3)	04	보유·거주기간 미충족 또는 미등기 양도자산, 종과대상 다주택 등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소득법」 97조의4)	05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소득의 70% 공제(8년 이상은 50%)
지방비분양주택 취득 (「소득법」 98조의2)	06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의 공제율에 임대기간 6년 이상 2%, 7년 이상 4%, 8년 이상 6%, 9년 이상 8%, 10년 이상 10%를 추가공제
		'08.11.3.~'10.12.31.중 취득한 지방비분양 주택을 '08.12.26.이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 「소득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의미합니다.

12. ⑰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대상거주기간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 1세대1주택('21.1.1. 이후 양도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적습니다(전체 거주기간으로 ⑩의 거주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13. ⑱ 세액감면대상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세액감면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4. ⑳ 소득금액감면대상란: 양도소득세액의 감면을 「소득세법」 제90조제2항(소득금액 차감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양도자산의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5. ㉑ 감면종류 및 감면율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적습니다(감면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6. ㉒ 건물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양도 당시 금액을 적습니다.
- 가. 일반건물: 국제청장이 고시한 금액(건물 ㎡당 가액)에 건물면적(전용+공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나. 상업용·오피스텔: 국제청장이 고시한 금액(토지+건물)에 건물면적(전용+공용)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개별·공동주택: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금액(토지+건물)
17. ㉓ 토지란: 양도 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8. ㉔ 건물란: ㉒ 건물의 작성방법에 따라 취득당시 금액을 적습니다(최초 고시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최초 고시금액을 취득 시로 환산한 가액).
19. ㉕ 토지란: 취득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취득일이 '90.8.29. 이전인 경우에는 '90.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토지등급에 의해 취득 시로 환산한 가액).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관리번호	-
------	---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양도주식 취득유형별 내용											
① 주 식 등 종 목 명	합계										
② 주식등 종목코드 또는 사업자등록번호(해 외주식은 ISIN코드와 국가명)											
③ 국 내 / 국 외 구 분											
④ 주 식 등 종 류 코 드											
⑤ 양 도 유 형											
⑥ 취 득 유 형											
⑦ 취 득 유 형 별 양 도 주 식 등 수											
양 도 소 득 금 액 계 산 내 용											
⑧ 양 도 일 자											
⑨ 주 당 양 도 가 액											
⑩ 양 도 가 액 (⑦ × ⑨)											
⑪ 취 득 일 자											
⑫ 주 당 취 득 가 액											
⑬ 취 득 가 액 (⑦ × ⑫)											
⑭ 필 요 경 비											
양도소득금액 (⑩ - ⑬ - ⑭)	전 체 양도소득금액										
	비 과 세 양도소득금액										
⑯ 감 면 소 득 금 액	⑮ 과 세 대 상 양도소득금액										
⑰ 감면종류	감 면 율										
⑱ 과 세 이 연 신 청		1.여	2.부	1.여	2.부	1.여	2.부	1.여	2.부	1.여	2.부

※ 주식을 거래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원천징수된 경우는 제외).

210mm×297mm(백상지 80g/㎡)

작성 방법

1. ① 주식등 종목명란: 주식발행법인명을 적습니다.
2. ② 주식등 종목코드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주식의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주식종목코드를 적으며, 종목코드가 없는 그 밖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 국외주식의 경우 국제증권식별번호(ISIN코드)를 적으며 동 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발행법인소재 국가명을 적습니다.
3. ③ 국내 / 국외 구분 : 국내·국외주식 구분에 따른 코드를 적습니다.(국외주식은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기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형	국내주식	국외주식
코드	1	2

4. ④ 주식등 종류코드란: 다음의 주식종류코드를 적습니다.

주식등 종류	비상장주식등 주권 등 비상장법인					상장주식등 주권등 상장법인					기타 자산 (주식등 양도분)	기타자산 (주식등 양도분 -비사업용 토지)	국외 주식등	
	중소 기업 (소액주주)	중소 기업 (대주주)	중소 기업외 법인 (소액주주)	중소 기업외 법인 (대주주)	중소 기업외 법인 1년 미만	중소 기업 (소액주주)	중소 기업 (대주주)	중소 기업외 법인 (소액주주)	중소 기업외 법인 (대주주)	중소 기업외 법인 1년 미만			중소 기업	중소 기업외 법인
세율	10%	20~25%	20%	20~25%	30%	10%	20~25%	20%	20~25%	30%	누진	누진	10%	20%
코드	31	34	32	35	33	코스피 43 코스닥 21 코넥스 71	코스피 44 코스닥 24 코넥스 74	코스피 42 코스닥 22	코스피 45 코스닥 25	코스피 41 코스닥 23	51	52	62	61

※ 국외주식란의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한 주식등으로서 외국의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말합니다.

5. ⑤ 양도유형란: 다음의 주식등 양도유형 및 코드를 적습니다.

양도 유형	매매	국외전출 시 주식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코드	1	2

6. ⑥ 취득유형란: 다음의 주식등 취득유형 및 코드를 적습니다.

취득유형	매매	공모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합병	증여	상속	출자	기타
코드	1	2	3	4	5	6	7	8	10	9

7. ⑦ 취득유형별 양도주식등 수란: 양도주식등의 수를 적되, 양도하는 주식등의 취득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취득유형별로 각각 적습니다.
8. ⑧ 주당양도가액란: 양도하는 주식등의 1주당 실질거래가액을 적습니다.
9. ⑩ 양도가액란: 양도하는 주식등의 실질거래가액(⑦×⑨)을 적으며, 국외자산은 원화환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0. ⑫ 주당취득가액란: 취득유형별로 취득한 주식등의 1주당 가액(상속·증여취득의 경우 법령에 정한 가액)을 적습니다.
※ 취득한 주식등의 1주당 취득가액은 실질거래가액을 적되, 실질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적습니다. 국외자산의 경우 실질거래가액, 해당정부 평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적습니다.
11. ⑭ 필요경비란: 취득가액을 실질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등 실제 양도비용과 취득비용을 적되, 실질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 시가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12. ⑯ 감면 소득금액란: 양도소득금액 중 감면되는 소득금액을 적습니다(과세이연 특례 신청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13. ⑰ 감면종류 및 감면율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적습니다(감면 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4. ⑱ 과세이연 신청 :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과세이연 특례 신청 해당여부에 따라 각각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과세특례에 따른 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에서: 중소기업 소액주주가 비상장 국내주식(사업자등록번호: 1238145678)을 매개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가. 주식등 종목명: 주식발행법인명, 나. 주식종목코드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1238145678 다. 국내 / 국외구분 : 1 라. 주식등 종류코드: 31 마. 양도유형: 1 바. 취득유형: 1
210mm×297mm(백상지 80g/㎡)

작성 방법

15. 국외전출 시 주식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⑤ 양도유형란에 2번을 적고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 ④ 주식등 종류코드란: 주식 종류에 따라, 34, 35, 33, 44, 24, 74, 45, 25, 41, 23, 51 코드 중 하나만 적습니다.
- ⑧ 양도일자란: 출국일(국외전출일)을 적습니다.
- ⑩ 주당양도가액란: 출국일 당시의 1주당 시가를 적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9제2항에 따른 가액을 적습니다.
- ⑫ 양도가액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시가(⑦×⑨)를 적습니다.

※ 국외전출 시 주식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4.주식등 종류코드 관련 표에도 불구하고 20~25% 세율을 적용합니다.

관리번호	-
------	---

*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파생상품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①과세대상연도	년
---------	---

②세율 구분코드	종목				파생상품 등 매도 내용			파생상품 등 매수 내용			기타 수입액 및 지출액		⑤양도소득금액
	③국내/외	④파생상품 유형	⑤증권사 등	⑥계좌번호	⑦매도수량	⑧매도가액	⑨수수료 등	⑩매수수량	⑪매수가액	⑫수수료 등	⑬수입액	⑭지출액	
합계													

297mm×210mm(백상지 80g/㎡)

작성 방법

1. 본 서식은 파생상품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따라 작성하며 란은 적지 않습니다.
2. ①과세대상연도란: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연도를 적습니다.
3. ② 세율구분코드란 : 파생상품 양도일이 속하는 기간에 따라 코드를 적습니다.
- | | | |
|-----|----------------------|--------------|
| 양도일 | 2016.1.1.~2018.3.31. | 2018.4.1. 이후 |
| 세율 | 5% | 10% |
| 코드 | 80 | 81 |
4. ③국내/외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생상품 등을 거래한 경우에는 ‘국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상품을 거래한 경우에는 ‘국외’로 적습니다.
5. ④파생상품 유형란: 거래기법에 따라 선물, 콜옵션, 풋옵션, 콜 주식워런트증권, 풋 주식워런트증권, 차액결제거래 중 해당하는 사항을 적습니다.
6. ⑤증권사 등란: 증권회사 또는 선물회사 등 금융투자업자의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7. ⑥계좌번호란: 해당 파생상품을 거래한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8. ⑦매도수량 및 ⑩매수수량란: 같은 종목의 연간 합계 수량을 적으며 매도수량과 매수수량은 같아야 합니다.
9. ⑧매도가액란: 같은 종목의 연간 합계 매도가액을 적습니다.
10. ⑨ 및 ⑫수수료 등란: 파생상품 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한 수수료(「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6조의3제4항에 따른 수수료) 연간 합계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기간에 제출 대상인 거래 또는 행위와 관련된 비용만 연간 합계액으로 합산합니다.
11. ⑪매수가액란: 같은 종목의 연간 합계 매수가액을 적습니다.
12. ⑬수입액란: 차액결제거래 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익 이외의 계약에 따른 지급받는 소득을 적습니다.
13. ⑭지출액란: 차액결제거래 계약에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이자비용 등 약정에 따른 매매차손 이외의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을 적습니다.
14. ⑤양도소득금액란: 같은 종목의 양도소득금액(⑧ - ⑨ - ⑪ - ⑫ + ⑬ - ⑭)을 적습니다.

297mm×210mm(백상지 80g/㎡)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

구분			구분 코드	거래상대방		지급일	지급 금액	증빙 종류 (코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취득 가액	① 타인 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	111							
		취득세	112							
		등록세	113							
		기타부대 비용	법무사비용	114						
			취득증개수료	115						
			기타	116						
	소계									
	② 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		120							
			120							
	③ 가산항목	취득시 쟁송비	변호사비용 기타비용	131						
				132						
		매수 양도	자부담 소득세	133						
		기타		134						
		소계								
	④ 차감항 목	감가상각비	141							
	⑤ 계 (①+③-④ 또는 ②+③-④)									
기 타 필 요 경 비	⑥ 자본적 지출액	용도변경·개량·이용 편의를위한지출	260							
		엘리베이터냉난방설치	260							
		피난시설등설치	260							
		재배등요양관리인양생구	260							
		개발부담금	261							
		재건축부담금								
		자산가치증가등	260							
		수선비	260							
		기타	260							
		소계								
	⑦ 취득후 쟁송비용	변호사비용	271							
		기타소송, 화해비용	272							
	⑧ 기타비 용	수익자부담금	281							
		토지장애철거비	280							
		도로시설비등	280							
		사방사업소요비용	280							
		기타	280							
		소계								
	⑨ 계 (⑥+⑦+⑧)									
	양도비 등	⑩ 양도시증개수수료등직접지출비용		290						
		⑪ 국민주택채권및토지개발채권매각차손 등 기타경비		291						
		⑫ 계 (⑩+⑪)								
		⑬ 기타필요경비계 (⑨+⑫)								

작성 방법						
(음영표시란은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1. 증빙종류 코드						
	증빙종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계약서
	코드	01	02	03	04	05
						기타 10
2. ①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란: 기타부대비용은 취득 시 지출한 법무사비용, 증개수수료 등을 적습니다.						
3. ② 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란: 원재료비, 노무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취득세·등록세를 포함합니다), 설치비, 기타부대비용을 합하여 적습니다.						
4. ③ 가산항목란: 취득 시 쟁송비용은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을 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5. ④ 차감항목란: 감가상각비는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을 적습니다.						
6. ⑥ 자본적 지출액란						
가.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말하며, 개발부담금 또는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금액을 적습니다.						
나. 자산가치 증가 등 수선비: 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적습니다.						
7. ⑦ 취득 후 쟁송비용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든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을 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8. ⑧ 기타비용란						
가. 수익자부담금: 「하천법」·「담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을 적습니다.						
나. 토지 장애 철거비: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 철거비용을 적습니다.						
다. 도로시설비 등: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 또는 해당 토지에 인접한 타인 소유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취득당시 가액을 적습니다.						
9. ⑨ 양도 시 증개수수료 등 직접 지출비용란: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계약서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부동산증개수수료 등을 적습니다.						
10. ⑩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 등 기타경비란: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령 등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매각 전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3항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증권회사 및 은행)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적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3항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증권회사 및 은행)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날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3항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증권회사 및 은행)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합니다.						
유의 사항						
1. 해당 항목의 금액을 적고 실제로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2. ⑤란 개의 금액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의 ⑩ 취득가액란에 옮겨 적습니다.						
3. 이 서식의 ⑬ 기타 필요경비 계란의 금액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1)의 ⑫ 기타 필요경비란에 적습니다.						
4. 해당 항목의 지출증빙이 다수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란에 “별지 작성”으로 적고 「지급금액」란에 “합계액”을 적은 후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2)에 상세 명세를 작성합니다.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2)

일련 번호	구분 코드	구 분	거래상대방		지급 일	지급금액	증빙종류 (코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작성 방법

1. 구분 코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의 구분코드를 이용하여 적습니다.
2. 증빙종류(코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의 증빙종류(코드)를 이용하여 적습니다.
3. 해당 항목의 금액을 적고 실제로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1)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별지 작성”으로 적고 「지급금액」란에 “합계액”을 적은 금액이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2)에 적은 금액의 합계와 같아야 합니다.

관리번호	-				
------	---	--	--	--	--

(년 귀속)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소명자료 제출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 []소명자료 제출서)

① 양도인 (판매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내·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거주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주소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국적	국적코드	

② 양수인 (산상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지분	양도인과의 관계

양도자산 및 거래일	③ 자산종류 (코드)	()	④ 세율구분 (코드)	(-)
------------	-------------	----------	-------------	-----------------

자산소재지	비과세	⑦보유기간	년 이상 년 미만
⑤ 양도일 (원인)	판단	⑧거주기간	년 이상 년 미만
양도면적 (토지)		⑨고가주택거주기간	년 이상 년 미만

양도소득세 계산

⑩ 양도가액 (판가격)					
⑪ 취득가액 (오른쪽 ^㉕ 합계)					
⑫ 필요경비 (오른쪽 ^㉖ 합계)					
⑬ 양도차익 (⑩-⑪-⑫)					
⑭ 장기보유 특별공제 (코드)	()				
⑮ 양도소득금액 (⑬ - ⑭)					
⑯ 양도소득 기본공제					
⑰ 과세표준 (⑮ - ⑯)					
⑱ 세 율					
⑲ 산출세액 (⑰ × ⑱)					
⑳ 전자신고 세액공제					
㉑ 가산세 (오른쪽 ^㉗ 합계)					
㉒ 납부할세액 (⑲-⑳+㉑)					
㉓ 분납할세액					
㉔ 납부세액 (㉒ - ㉓)					

① 취득가액	지급금액	지급일	사업자번호 (상 호)	구분 코드	증빙종류 (코 드)
매입금액					
취득·등록세					
매입부대비용					
㉕ 합 계	← 왼쪽 ① 취득가액에 기재				
⑫ 필요경비	지급금액	지급일	사업자번호 (상 호)	구분 코드	증빙종류 (코 드)
자본적지출					
기 타 비 용					
중개수수료 등					
㉖ 합 계	← 왼쪽 ⑫ 필요경비에 기재				
㉑ 가 산 세	금 액				
무(과소)신고					
납 부 지 연					
가정불성실 등					
㉗ 합 계	← 왼쪽 ㉑ 가산세에 기재				

☐ 소명자료제출서로 활용하는 경우

기본사항(양도인, 양수인, 양도자산 및 거래일)만 적고 소명자료(1세대1주택 비과세 증명서류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서액계산 불필요)

☐ 신고인(양도인)은 「소득세법」 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양도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일자 : 신고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 방법

1. ① 양도인(판사직)란: 성명란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full name)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면 국내거소신고증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외국인이면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으며, 상기 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 네. 외국인 및 거주구분의 □안에 “√”표시를 하고,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중 국명 약어 및 국가코드를 참고하여 국적(국적코드)과 거주지국(거주지국코드)을 적습니다.
2. ③ 자산종류(코드)란: 다음의 자산종류 및 코드를 적습니다.

자산 종류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택 수익권
	토지	고가 주택	일반 주택	기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대권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특정 주식	영업권	시설물 이용권	이촉권	부동산과 보유방법 이치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기타						
코드	1	2	3	4	5	6	7	24	25	8	14	15	16	23	17	26

3. ④ 세율구분(코드)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적고, 하나의 자산에 둘 이상의 세율(단일세율, 누진세율)이 해당될 경우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적용합니다. 다만, 하단 () 내 세율은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합니다.

소재지 구분	소재지			세출구분	토지·건물															
	국내	국외	기타		2년 이상 보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1년미만 보유주택 및 조합원 임주권 (~'21.5.31.양도분)	미등기	비사업용토지										
										2년 이상 보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1년미만 보유	지정지역내				'09.3.16~'12.12.31.취득하여 양도분 (2년이상보유)			
													2년 이상 보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1년미만 보유					
코드	1	2	코드	10	15	20	40	45	30	11	35	55	36	11	31	37	31	38	31	10
				서울 42% (45%)	40%	42% (45%)	50%	40%	42% (45%)	70%	16~52% (40%)	16~52% (55%)	50%	16~52% (55%)	26~62% (66%)	40%	26~62% (66%)	50%	26~62%	6~42% (45%)

세 술 구 분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다주택(∼'18.3.31. 양도분)		다주택('18.4.1.∼'21.5.31.양도분)								2년 이상 보유		1년이상 2년미만 보유		1만 미만 보유		조정대상 지역내 분양권 (∼'21.5. 31. 양도분)		비사업용 토지 과다보유 법인·주식		그 외 기타자산		
	자정지역내		조정대상지역내																				
	1세대3주택		1세대2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인 주택(21.11. 이후 분양 포함) 합이 2인 경우 해당 주택		1세대3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인 주택(21.11. 이후 분양 포함) 합이 3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1세대 1주택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1년 이상 보유	1년미만 보유												
서울	16∼ 52%	40%	16∼ 52%	16∼ 52%	40%	16∼ 52%	16∼ 52%	40%	16∼ 52%	26∼ 62%	40%	26∼ 62%	26∼ 62%	40%	62%	26∼ 62%	6∼ 42%	40%	6∼ 42%	50%	50%	16∼ 52%	6∼ 42%
코드	71	73	71	51	53	51	52	54	52	55	57	55	56	58	56	10	15	10	20	21	11	10	

세 율 구 분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21.6.1.이후 양도분)																신 탁 수 익 권						
		다주택																						
		초장대상지역내																						
		1세대2주택								1세대3주택 이상												2년미만 1년이상 보유주택 및 조합원 임주권	1년미만 보유주택 및 조합원 임주권, 분양권	1년 이상 보유 분양권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임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 해당주택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임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0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 미만 보유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미만 보유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미만 보유	2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보유	1년미만 보유	60%	70%	60%	20 ~25%						
세율	26~ 65%	60%	26~ 65%	70%	26~ 65%	60%	26~ 65%	70%	36~ 75%	60%	36~ 75%	70%	36~ 75%	36~ 75%	60%	36~ 75%	70%	36~ 75%	60%	70%	60%	20 ~25%		
코드	47	82	47	84	48	83	48	85	49	86	49	88	49	50	87	50	89	50	39	46	23	95		

4. ⑤ 양도일(원인), ⑥ 취득일(원인)란: 거래 날짜와 함께 매매, 수용, 협의매수, 교환, 공매, 경매, 부담부증여(양도의 경우), 상속, 증여, 인척, 분양, 기타 등을 ()에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 방법~

5. ⑦ 보유기간 :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에 따른 보유기간을 적용합니다.
6. ⑧ 거주기간 : ⑦의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적용합니다.
7. ⑨ 고가주택거주기간: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적용되는 1세대1주택(‘21.1.1.이후 양도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전체 기간을 기재합니다.
8. ⑩ 양도가액: 해당 자산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적용합니다.
9. ⑪ 취득가액: 그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오른쪽 ㉔ 계산 후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0. ⑫ 필요경비: 그 자산의 양도시 실제 들어간 비용 및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오른쪽 ㉔ 계산 후 합계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 ※ ㉔, ㉕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상세란
- 구분코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별지 제84호서식 부표 3)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 증빙종류(코드)는 현금영수증(01), 신용카드영수증(02), 세금계산서(03), 계산서(04), 계약서(05), 기타(10)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적을 난이 부족한 경우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명세서(별지 제84호 서식 부표 3)에 별도로 적습니다.
11. ⑭ 장기보유특별공제(코드) :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에 다음의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 (코드)는 아래 표의 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구분	코드	내 용
1세대1주택	01	‘21.1.1.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 이상 보유 12%부터 매년 4%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40%한도로 공제하고, 3년 이상 거주 12%(다만 보유기간 3년 이상자 중 2년 이상 거주는 8%)부터 매년 4%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40%한도로 공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 ‘20.12.31.까지 양도분은 3년 이상 보유 24%부터 매년 8%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은 80%한도로 공제
1세대1주택 외	02	‘19.1.1.이후 양도분부터는 3년 이상 보유 6%부터 매년 2%씩 추가공제하며 15년 이상은 30%한도로 공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 ‘18.12.31.까지 양도분은 3년 이상 보유 10%, 4년 이상 보유 12%부터 매년 3%씩 추가공제하며 10년 이상은 30%한도로 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03	보유·거주기간 미충족 또는 미등기 양도자산, 종과대상 다주택 등에 해당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소득법」 97조의3)	04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소득의 70% 공제(8년 이상은 50%)
장기임대주택 (「소득법」 97조의4)	05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1의 공제율에 임대기간 6년 이상 2%, 7년 이상 4%, 8년 이상 6%, 9년 이상 8%, 10년 이상 10%를 추가공제
지방비보양주택 취득 (「소득법」 98조의2)	06	‘08.11.3.~‘10.12.31.중 취득한 지방비보양 주택을 ‘08.12.26.이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 「소득법」은 「소득특별제한법」을 의미합니다.

12. ⑯ 양도소득기본공제: 거주자별로 연간 2,500,000원을 공제합니다.
13. ⑯ 세율: 「소득세법」 제104조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합니다.
14. ⑯ 산출세액: ⑰란의 과세표준에 ⑯란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용합니다.
15. ⑳ 전자신고세액공제란: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소득특별제한법」 제104조의8제1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 (20,000원)을 적되, 공제세액이 ㉑란의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16. ㉑ 가산세란: 산출세액에 기한 내 신고·납부 불이행에 따른 무(과소)신고(일반무신고 20%, 부당무신고 40%, 일반과소 신고 10%, 부당과소신고 40%)·납부지연(1일 3/10,000(2019. 2. 12. 이후 1일 2.5/10,000))·기장불성실 등 가산세[감정 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감정가액 또는 취득가액의 5%)는 기장불성실 등 가산세 란에 기재] 금액을 적용합니다.
17. ㉒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납부할 세액 중 아래 금액을 적으며, 해당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나.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18. 이 서식을 “소명자료제출서”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①양도인(판사람)란부터 ⑨고가주택거주기간란까지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⑩양도가액(판가액)란 이후부터는 기재하지 않으며, 소명자료나 증명서류(예: 1세대1주택 비과세 증명서류 등)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년 귀속) 국외전출자의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1. 납 세 의 무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내 · 외 국 인	[] 내국인, [] 외국
	전화번호	전 자 우 편 소	주 소	

2. 국외전출세액 계산

① 구	분	합	계	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소득	그 외의 금융투자소득	기타자산 양도소득
② 금융투자·양도소득금액						
③ 기 신고·결정·경정된 금융투자·양도소득금액 합계						
④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						
⑤ 금융투자·양도소득 기 본 공 제						
⑥ 과 세 표 준 (② + ③ - ④ - ⑤)						
⑦ 세						
⑧ 산						
⑨ 감						
⑩ 외 국 납 부 세 액 공 제						
⑪ 원 천 징 수 세 액 공 제						
⑫ 전 자 신 고 세 액 공 제						

3.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

⑬ 가 산 세	무(과소) 신고	⑰ 소 득 세 감 면 세 액	
	납 부 지 연	⑱ 세	을
	보 유 현 황 무(과소) 신고	⑲ 산	출 세 액
	계	⑳ 수 정 신 고 가 산 세 등	
⑭ 기신고·결정·경정세액, 조정공 제액		㉑ 기신고·결정·경정세액	
⑮ 납 부 세 액 (⑧ - ⑨ - ⑩ - ⑪ - ⑫ + ⑬ - ⑭)		㉒ 납 부 세 액	
⑯ 환 급 세 액		㉓ 환 급 세 액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26조의9(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납부),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4. 환급금 계좌신고(환급세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

㉔금 용 기 관 명			㉕계 작 번 호		
불입서류	1. 금융투자·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부표 1, 부표1의2) 1부 2. 매매계약서(또는 증여계약서) 1부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명서류 1부 4. 감면신청서 등 1부 5. 그 밖에 국외전출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접수일 인
세무대리인	성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국외전출자의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를 위한 서식입니다.
1. 납세의무자란: 성명란은 외국인이면 영문으로 적되 여권에 기록된 영문성명 전부를 적습니다. 주민등록번호란은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적되, 외국인으로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표상의 외국인등록번호를 적고 그 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상의 여권번호를 적습니다.
 2. ① 구분란: 국외전출세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1호의 소득 중 「소득세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득은 "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소득" 으로 그 외 소득은 "그 외의 금융투자소득" 으로 구분하고,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및라목에 따른 "기타자산 양도소득" 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② 금융투자·양도소득금액란: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 부표1 "국외전출자 주식등 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상의 총과세대상을 적습니다.
 4. ④ 소득감면대상 소득금액란: 「소득세법」 제87조의20제2항 및 「소득세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방식(소득금액 차감방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을 적용 받으려는 경우 그 감면소득금액을 적습니다.
 5. ⑤ 금융투자·양도소득 기본공제란: 「소득세법」 제87조의18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소득" 은 5,000만원을 한도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그 외의 금융투자소득" 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타자산 양도소득" 합계액은 25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3조의6제3항에 따라 계산하여 공제받을 금액(모두 합하여 5,000만원 한도)을 적습니다.
 6. ⑥ 과세표준란: 「소득세법」 제87조의18제1항 각 호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및라목에 대해 계산(② + ③ - ④ - ⑤)한 금액을 적습니다.
 7. ⑦ 세율란: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의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 세율을 적습니다.

국외전출세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
 8. ⑧ 산출세액란: ⑥과세표준 금액에 ⑦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9. ⑨ 감면세액란: 「소득세법」 제87조의20제1항 및 「소득세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방식(세액감면방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적습니다.
 10. ⑩ 전자신고세액공제란: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1항에 따른 전자신고 세액공제 금액(20,000원)을 적되, 공제세액이 ⑥란의 세액에서 ⑩란부터 ⑭란까지의 세액을 뺀 후의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이 대리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11. ⑪ 가산세란: 무(과소)신고란은 무(과소)신고납부세액에 가산세율(일반무신고 20%, 일반과소신고 10%, 부당무(과소) 신고 40%)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납부지연란은 미납부 세액에 가산세율(1일 2.2/10,000)과 미납일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보유현황 무(과소)신고란은 국외전출자가 출국일 전일까지 보유현황 신고서를 무(과소)신고한 경우 무(과소)신고한 주식 등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가액에 가산세율(2%)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
 12. ⑮ 납부세액란 및 ⑯환급세액란: 계산 결과 신고·납부(또는 환급)할 세액 등을 적습니다.
 13. 3. 농어촌특별세 납부계산서에서 ⑮소득세 감면세액란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을 적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⑮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14. 4. 환급금 계좌신고는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좌개설(변경) 신고서(별지 제22호서식)에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 부표 1]

관리번호	-
------	---

국외전출자 주식등 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주식등 상세내역									소득금액의 계산									
									양도가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감면		
① 일련 번호	② 계좌 번호	③ 주식등 종류 코드	④ 장내/ 장외	⑤ 증권 표준 코드	⑥ 종목명	⑦ 취득 유형	⑧ 양도일	⑨ 취득일	⑩ 양도 주식수	⑪ 양도가액	⑫ 취득 가액	⑬ 기타 필요 경비	⑭ 전체 (⑪ - ⑫ - ⑬)	⑮ 비과세	⑯ 과세 대상 (⑭ - ⑮)	⑰ 감면 소득금액	⑱ 감면종류	⑲ 감면율
1																		
2																		
3																		
4																		
5																		
6																		
7																		
8																		
9																		
10																		
11																		

※ 주식을 거래한 경우 금융투자·양도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원천징수된 경우는 제외).

210mm×297mm(백상지 80g/㎡)

작성 방법

1. ① 일련번호란: 작성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기입하되 계좌번호별, 종목별로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 | 상품구분 | 상장 | 비상장 | 기타자산 |
|------|----|-----|------|
| | | | |

구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OTC중소·중견	K-OTC중소·중견 외	기타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
코드	11	12	13	14	15	19	16	17

- | 구분 | 장내거래 | 장외거래 |
|----|------|------|
|----|------|------|

6. ⑥ 종목명란: 양도한 주식등의 종목명을 적습니다. 종목명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법인명을 적습니다.

- | | | | | | | | | | | |
|------|----|----|------|------|------|----|----|----|----|----|
| 취득유형 | 매매 | 공모 | 유상증자 | 무상증자 | 주식배당 | 합병 | 증여 | 상속 | 출자 | 기타 |
|------|----|----|------|------|------|----|----|----|----|----|

코드	01	02	03	04	05	06	07	08	10	09
----	----	----	----	----	----	----	----	----	----	----

8. ⑧ 양도일란: 출국일(국외전출일)을 적습니다.

10. ⑩ 양도주식수란: 양도한 주식등의 수량을 적습니다.

12. ㉔ 취득가액란: 양도한 주식등의 취득가액(「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8호서식 부표1의2 “국외전출자 주식등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상의 ㉔취득가액)을 적습니다.

14. ⑮ 비과세 소득금액란: 금융투자·양도소득금액 중 비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16. ㉘ 감면종류 및 ㉙ 감면율란: 금융투자소득·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적습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관리번호	-	국외전출자 주식등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	---	----------------------------------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

이 서식은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등(단,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 제외)」과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식등」을 출국일에 앞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국외거주자 주식등 소득금액 계산면제서 작성시)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면세를 작성하는 서식으로 앞둔 주식등을 계좌번호별, 종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 | | |
|----|------|------|
| 구분 | 장내거래 | 장외거래 |
| 코드 | 01 | 02 |

- | 구분 | 실지거래가액 | 의제 취득가액 | 매매 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취득가액 | 외국정부 평가액 |
|----|--------|---------|---------|------|--------|----------|
| 코드 | 01 | 02 | 03 | 04 | 05 | 06 |

- 210mm×297mm(백상지 80g/㎡)

	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8호의4서식의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40조의2제7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38호의5서식의 1주택 확인서 2. 축소주택을 일반 매매 외의 방식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등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 (잔금영수증 등) 제16조의3 (공동소유하는 주택의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영 제40조의2제2항제1호다목3)을 적용할 때 주택전체의 가액은 공동 소유자가 보유한 해당 지분의 가액을 해당 지분의 지분율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신 설>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제23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영 제53조제3항제1호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2를 말한다.	① ----- ----- ----- 29를-----.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생 략)	제4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 (현행과 같음)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영 제112조제4항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2를 말한다.	제57조(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이자율) ----- ----- ----- 29를-----.
<신 설>	제60조의2(간접투자회사 등으로 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영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납부한 같은 항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해당 사업연도 또는 회계기간 이후 환급된 경우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은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환급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말일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9조의2(국외금융투자자산의 범위) 영 제150조의6에서 “국외에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이하 “국외금융투자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내국법인이 발행한 법 제87조의2제1호에 따른 주식등(이하 “주식등”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채권등(이하 “채권등”이라 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이하 “해외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채권등으로서 영 제150조의14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지 않은 것	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9조의2(국외금융투자소득의 범위) 영 제150조의6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호의 소득(이하 “국외금융투자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법 제87조의2제1호에 따른 주식등(이하 “주식등”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채권등(이하 “채권등”이라 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외 증권시장(이하 “해외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채권등으로서 영 제1	3. 법 제8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외국에서 발행된 것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9조의3(적격집합투자기구의 요건) ① 영 제150조의7제2항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은 집합투자재산으로 인	50조의14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지 않은 것 다. 법 제87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투자계약증권으로서 외국에서 발행된 것 2. 법 제87조의6제1항제4호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한 이익 3. 법 제87조의6제1항제5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서 국외에서 발행된 것으로부터의 이익 4. 법 제87조의6제1항제6호에 따른 파생상품으로서 국외에서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삭 제>
---	---	--	--

식되지만 실제로 귀속되지 않은 이익으로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이자, 미수 배당금, 미수 임대료 수입 등을 포함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영 제150조의7제2항제3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및 분배·유보 내역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9조의7(국외금융투자자산의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 ① 영 제150조의12제1항 단서에 따라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취득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를 계산할 때 국외금융투자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의 평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가액을 포함한다. ② (생략) ③ 국외금융투자자산의 금융투자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가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9조의7(국외금융투자소득 계산시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 등) ① ----- ----- 해당자산-----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외금융투자소득의 소득금액-----	액 및 필요경비의 외화환산에 관하여는 영 제178조의5를 준용한다. 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9조의9(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영 제150조의18제1항제3호에서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영 제150조의18제1항제3호가 목의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영 제150조의17제3항제1호가목의 경우: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시세 가액 나. (생략)	외화환산----- -----. 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9조의9(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 ----- -----. 1. ----- ----- 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024년 과세기간 종료일의 최종시세 가액 나. (현행과 같음)
--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848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69조의13(공모 국내주식형 적격 집합투자기구 요건) <신설>	제69조의13(공모 국내주식형 적격 집합투자기구 요건 등) ① 영 제150조의26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은 집 합투자재산으로 인식되지만 실 제로 귀속되지 않은 이익으로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이자, 미수 배 당금, 미수 임대료 수입 등을 포 함한다.
<신설>	② 집합투자업자는 영 제150조 의26제1항제3호에 따라 집합투 자기구의 이익 및 분배·유보 내역 신고서를 결산·분배일이 속하는 반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영 제150조의26제3호에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영 제150조의26제2항제3호-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영 제150조의17제3항제1호 각 목의 집합투자증권	2. -----제150조의17제2항제1호 가목(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 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한다) 및 나목-----
② 영 제150조의26제1호 및 제2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 제 87조의18제1항제1호다목에 따 른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투 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공모국 내주식형 적격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적격 재간접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는 직접 보유한 제1항 각 호의 자산 가액에 다음 계산식 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하여 영 제150조의26제3호를 적용한 다.	④ 영 제150조의26제2항제1호 ----- ----- ----- ----- ----- ----- ----- ----- ----- ----- 영 제150조의26제2항제3호----- --.

$$A \times \frac{B}{C}$$

- A: 적격제한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보유한
공모국내주식형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
합투자증권의 가액
- B: 공모국내주식형적격집합투자기구가 직
접 보유한 제1항 각 호의 자산 가액
- C: 공모국내주식형적격집합투자기구의 자
산총액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삭
제

② ~ ⑥ (생 략)

⑦ 영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
제8항 및 제10항제5호에서 “기
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제1
항제2호가목 및 제10항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
(영 제155조제8항의 경우를 말
한다)이 제7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A \times \frac{B_1+B_2}{C}$$

- A: 적격제한집합투자기구가 직접 보유한
공모국내주식형적격집합투자기구의 집
합투자증권의 가액
- B₁: 공모국내주식형적격집합투자기구가 직
접 보유한 제1항 각 호의 자산 가액
- B₂: 공모국내주식형적격집합투자기구가 다른
공모국내주식형적격집합투자기구에 투자
하여 간접 보유한 제1항 각호의 자산 가액(
다른 공모국내주식형펀드에 투자한 금액에
다른 공모국내주식형집합투자기구의 자산
총액 중 제1항 각호의 가액의 비중을 곱
한 금액을 말한다)
- C: 공모국내주식형적격집합투자기구의 자
산총액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영 제155조제8항 -----

-----영 제155조제10
항제5호-----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
는 경우를 말한다.

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
은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
양증명서 등 해당 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영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
를 말한다)에 따른다.

⑨ (생 략)

<신 설>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
위등) ① (생 략)

<신 설>

-----.

⑧ -----

----- 주민등록표등본-----

-----.

⑨ (현행과 같음)

제74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
세대1주택의 특례) 영 제155조
의3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

1. 종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한 경우
2.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제76조(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범
위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58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
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② (생략)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을 말한다.
제81조(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삭제	제81조(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신설>	② 영 제165조제4항제1호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94조의3(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생략)	제94조의3(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203조의2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를 말한다.	② 영 제203조의2제9항-----
기획재정부령 제95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제94조의3(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② (생략)	-----
	제94조의3(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203조의2제1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203조의2제14항-----
1.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주식등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고되거나 계좌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
<신설>	-----
2. (생략)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금융투자상품이 -----
3. 2025년 1월 1일 전에 출자, 증자, 감자, 주식배당 등으로 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분비율, 보유주식액면총액 또는 보유 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	-----
<신설>	가. 상속, 증여 또는 대차나. 금융회사등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지 않는 양도
	2. (현행과 같음)
	3. 주식등이 2025년 1월 1일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 금융회사등이 금융투자상품의 금융투자소득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94조의3(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③ (생략)
<신설>

제95조의3(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
례) 영 제208조의2제1항제9호에
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
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1. ~ 8의6. (생략)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
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
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94조의3(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203조의20제1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
법”이란 「주식·사채 등의 전
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4항제5호에 따른 전자
등록 방법 및 이와 유사한 방법
을 말한다.

제95조의3(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
례) -----

--.

1. ~ 8의6. (현행과 같음)

9. -----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
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
은 경우

나. (생략)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
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
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를 제외한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61조
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 제110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용폐자원
등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
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

가.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제2호-----

나. (현행과 같음)

다. -----
- (「부가가치세법」 제36
조제1항제2호-----

라.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제2호-----

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마. ~ 자. (생략) <신설>	----- 마. ~ 자. (현행과 같음) 제96조의4(매입자발행계산서) ① 영 제212조의4제1항에 따른 거래사실확인신청서는 별지 제29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212조의4제7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자의 부도,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공급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2. 세무공무원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2회 이상 공급자를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③ 영 제212조의4제9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별지 제29호의3서식과 같다.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통하여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3. (생략) <신설>	및 제3항----- ----- 지급명세서등----- ----- -----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 ----- ----- -----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법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은 제외한다)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제99조의3(인적용역제공사업자 등의 범위) 영 제224조제1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 3. (생략) <신설>
제96조의4(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지급명세서 작성방법 등) 영 제213조의2제2항에 따라	제96조의5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지급명세서등의 작성 방법 등) 영 제213조의2제2항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제100조(일반서식)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따른다.	----
<신설>	11의2. 영 제117조의2제6항 및 제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7항제6호에 따른 별지 제66호서식을 준용한다.	1. 영 제150조의7제2항제3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및 분배·유보 내역 신고서는 별지 제76호서식에 따른다.	1. 영 제150조의26제1항제3호-----
12. ~ 44. (생략)	12. ~ 44. (현행과 같음)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① (생략)	제102조(조정계산서 관련서식) ① (현행과 같음)	4. 영 제203조의2제6항에 따른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적용 신청서는 별지 제78호의2서식에 따른다.	4. 영 제203조의2제6항 및 제7항-----
②조정계산서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서류 중 해당 사업자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5. 영 제203조의2제13항에 따른 원천징수요청서는 별지 제78호의3서식에 따른다.	5. 영 제203조의2제15항-----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6. 영 제203조의2제14항 및 제203조의4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하지 않은 소득 명세서는 별지 제78호의4서식에 따른다.	6. 영 제203조의2제16항-----
9.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 <u>절대비조정명세서(1)·(2).</u>	9. ----- <u>기업업무추진비조정명세서(1)·(2).</u>	7. ~ 15. (생략)	7. ~ 15. (현행과 같음)
10. ~ 36. (생략)	10. ~ 36. (현행과 같음)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① ~ ⑫ (생략)	제103조(양도소득세 관련서식) ① ~ ⑫ (현행과 같음)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령 제907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⑬ 영 제183조의8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전출자과세표준 신고서 및 납부계산서는 별지	⑬ -----
제102조의2(금융투자소득세 관련서식)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102조의2(금융투자소득세 관련서식) -----		

<u>제84호</u> 서식에 따른다. ⑭・⑮ (생 략)	<u>제108호</u> -----. ⑭・⑮ (현행과 같음)
-----------------------------------	-------------------------------------